

2009 - 2020

UN Harmony with Nature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결의안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 지침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위임

하상섭·전주람·장수환·김윤경 옮김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결의안

2009 - 2020

자은이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
역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울긴이 하상섭·전주람·장수환·김윤경
감수자 박태현·정혜진·최정호
펴낸곳 다해 02.2266.9247

인쇄일 2022년 1월 21일 인쇄
발행일 2022년 1월 27일 발행

주 소 서울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3호
등록번호 제301-2011-069호

ISBN 979-11-5556-224-6 934450 비매품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6A3A0205802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NRF-2019S1A6A3A02058027)

발 간 사

최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더불어 자연을 인간 이익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온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감소와 환경오염에 이어 작금의 코로나19 같은 전대미문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생태환경 위기의 배후로 ‘인간’이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더이상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자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 지구의 일 구성원으로서 다른 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탈 인간 중심적’ 사고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가한 선문답(禪問答)이나 추상적 성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와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이름으로 구체화 되었다. 에콰도르 헌법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실정법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현실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유엔에서도 이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유엔 하모니위드네 이처(UN Harmony with Nature/ HwN)가 있다. HwN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산하의 공식프로그램으로, 2009년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지구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로 지정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HwN는 탈 인간 중심적인 ‘자연의 권리’ 사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톡홀름 선언(1972) 같은 인간 중심적인 ‘환경 보호 운동’과는 근본적인 격차를 달리한다. 이는 HwN가 핵심적인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는 ‘지구 법학’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철학자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주창한 ‘지구 법학’은 법체계를 기존의 인간중심에서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즉, 법에서 최우선적인 가치를 인간공동체가 아닌 지구공동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권리’ 수용이나 ‘지구 법학’의 적용을 둘러싼 국가 간,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갈릴 수는 없다. 대체로 중남미, 서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등은 이 개념에 호의적인 듯하나 북미와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다소 거부해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전 지구적 동의를 얻기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HwN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현재까지 모두 13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HwN이 걸여온 자취가 담겨있는 이 결의안들을 이번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인문 한국 플러스(HK+) 사업단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게 되었다. ‘자연의 권리’와 ‘지구 법학’ 개념은 물론 지구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유엔결의안 번역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된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결의안』은 한국외대-HwN이 지난 1년간 기울여 온 공조의 첫 번째 산물이다.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과 유엔 HwN의 인연은 1년 전 시작되었다. HK+사업단이 2021년 2월 24-25 양일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생태 문명을 위한 경험과 실천을 찾아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주목한 HwN 측에서 먼저 접촉을 시도해 왔다. 몇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두 기관은 서로의 인식과 목표가 같음을 알게 되었다. 즉, 한국외대 사업단의 HK+ 어젠더인 ‘21세기 문명 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산업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연구내용과 HwN이 추구하는 ‘자연의 권리’, ‘지구 법학’의 지향점이 동체이명(同體異名)임을 확인한 것이다. 의기투합한 두 기관은 즉각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교류 첫해의 실행목표로 HwN 결의안 한국어 번역본 발간과 자연의 권리, 지구 법학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설정되었다. HK+사업단은 이 책을 발간함으로써 그 첫 번째 실행목표를 달성했다.

특별히, 이 책은 HwN의 공식 후원하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2022.2.14.-16) 기간에 맞춰서 출간되었다. 그렇게 한 것은 HwN과의 교류 첫해 두 번째 실행목표 실현의 강화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 세계관: 지구법학과 라틴아메리카의 자연권’을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 180명의 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HwN 결의안 중 대부분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 책은 초판에 불과하다. 조만간 결의안의 의미를 담은 해설문과 HwN 기관 소개, 중남미연구소 HK+ 어젠더는 물론,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적인 저명인사들의 기조 연설문까지 포함한 확대, 개정판을 출간하여 ‘자연의 권리’와 ‘지구 법학’ 개념을 한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 과정을 밝힌다. 초역은 본 사업단 소속 5인 박사과정 연구원(김나현, 김민태, 성승연, 양수영, 최민지/ 이상 가나다순)이 담당하였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박사과정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다. 내용을 고려한 본격적인 번역작업은 사업단 소속 4인의 HK 연구교수(하상섭, 전주람, 장수환, 김윤경/ 이상 결의안 번역 순)가 담당했다. 그리고 최종 번역본의 감수 작업은 국내 지구 법학 전문가들인 법학자 3인(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 정혜진 변호사, 최정호 서울대 연구교수)의 꼼꼼한 손을 거쳤다. 초역에서 감수에 이르기까지 이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해 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이 책의 발행을 후원해 준 한국연구재단과 출판을 맡아준 다해 출판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년 1월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장

전 용 갑

차 례

2009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_RES_64_196_E)	1
2009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_RES_64_196_E)	3
2010년 12월 20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_RES_65_164_E)	5
2011년 12월 22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_RES_66_204_E)	8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의 보고서(A/66/302)	11
2012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RES/67/214)	32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A/67/317)	36
2013년 12월 20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A/RES/68/216)	53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A/68/325)	58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A/68/325/Corr.1)	78
2014년 12월 19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RES/69/224)	79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A/69/322)	84
2015년 12월 22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A/RES/70/208)	103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A/70/268)	108
2016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RES/71/232)	121
2018년 12월 20일의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A/RES/73/235)	127
하모니워드네이처 유엔사무총장 보고서(A/73/221)	135
2019년 12월 19일에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RES/74/224)	158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A/74/236)	165
2020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2020 A_RES_75_220_E)	190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2020-1 A_75_266_E)	197
하모니워드네이처 부록	216



총회

배포: 일반

2009년 5월 1일

원문: 영어

제63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49(d)

2009년 4월 22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주 위원회에 대한 참조 없이 주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A/63/L.69 Add.1)]

63/278,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총회는,

의제 21¹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²을 재확인하고,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를 상기하고,

또한 2008년 세계 지구의 해를 선언한 2005년 12월 22일 결의안 60/192를 상기하고,

지구와 생태계가 우리 공동의 집임을 인정하고, 경제 · 사회와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적 요구 간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함임을 확신하고, 이에 따라 지구와 자연과의 조화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머니 지구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지구를 부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인간과 그 밖의 다른 생명 중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을

¹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 제II권,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유엔 간행물, 판매 E.93.I.8 및 정오표), 결의안 1, 부속서 II.

²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보고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26일-9월 4일(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03.II.A.1 및 정오표), 제I장, 결의안 2, 부속서.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구의 날은 많은 나라에서 매년 기념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1.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하고,
2.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이 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엔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회, 지역 및 소지역, 시민 사회, 비정부기구, 관련 이해관계자를 초청하고,
3.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현재의 결의안을 알릴 것을 또는 주지시킬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제80회 총회
2009년 4월 22일



총회

배포: 일반

2010년 2월 12일

원문: 영어

제64차 회기

의제 항목 53

2009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2위원회 보고서 (A/64/420)]

64/196 자연과의 조화

총회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연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 1982년 환경 선언을 재확인하고¹,
-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오 선언을 재확인하고²,
- 의제 21³ 및 이의 추가 이행 프로그램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⁵,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이행 계획(“요하네스버그 버그 선언 이행”)⁶을 재확인하고,
-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⁷를 상기하고,
- 2009년 4월 22일 결의안 63/278에 따라 지정된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재확인하고,

¹ 결의안 37/7, 부속서.

²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 제1권 I,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3.I.8 및 정오표), 결의안 1, 부속서 I.

³ 위와 동일, 부속서 II.

⁴ 결의안 S-19/2, 부속서.

⁵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보고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26일-9월 4일(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S.03.II.A.1 및 정오표), 제1장, 결의안 1, 부속서.

⁶ 위와 동일, 결의안 2, 부속서.

⁷ 결의안 60/1 참조.

-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⁸,
 1. 환경과 삶의 조화에 대한 견해를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회원국과 국제연합체계 관련 기구, 국제, 지역 및 소지역의 관련 단체들을 초청하며,
 2.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삶에 대한 경험과 원칙에 대한 적절한 활동과 견해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회원국, 국제연합체계 관련 기구, 국제, 지역 및 소지역의 관련 단체들을 초빙하며,
 3. 제65번째 회기의 임시 안건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항목 아래 “자연과 조화”라는 하위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며,
 4. 사무총장에게 현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과 그 의견을 고려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65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제65회 총회
2009년 12월 21일

⁸ 결의안 35/7 참조.



총회

배포: 일반

2011년 3월 15일

문: 영어

제65차 회기

의제 항목 20(i)

2010년 12월 20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2위원회 보고서 (A/65/436/Add.9)]

65/164. 자연과의 조화

총회는,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¹의 의제 21²과 의제 21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이행 프로그램³,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⁴ 및 그 이행 계획⁵을 재확인하고,

2009년 12월 21일 자연과 조화에 관한 결의안 64/196과 2009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지정에 관한 결의안 63/278을 상기하고,

또한 1982년 세계 자연 현장⁶을 상기하고,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결의안 47/193호와 9월 16일을

¹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 제1권,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3.I.8 및 정오표), 결의안 1, 부속서 I.

² 위와 동일, 부속서 II.

³ 결의안 S-19/2, 부속서.

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보고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26일-9월 4일(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03.II.A.1 및 정오표), 제1장. 결의안 1, 부속서.

⁵ 위와 동일, 결의안 2, 부속서.

⁶ 결의안 37/7, 부속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지정한 1994년 12월 19일 결의안 49/114호, 5월 22일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한 2000년 12월 20일 결의안 55/201호, 세계 산림의 해에 관한 2006년 12월 20일 결의안 61/193호와 2010년 2월 2일 “국제 누르즈의 날”에 관한 결의안 64/253호를 상기하고,

2010년 4월 20일-22일까지 볼리비아 코차밤바(Cochabamba)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기후변화 및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회의에 유념하고,

2012년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대해 강조하고,

공식적으로 증명된 환경파괴 상황과 인류가 자연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인류 활동에 따른 환경파괴를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가 아님을 인정하고,

또한 많은 고대 문명들과 원주민 문화들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상호공생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해 온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 사회, 학계, 과학자들이 생산과 소비를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지식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학제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체론적 개념임을 고려하여,

1.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첫 번째 보고서를 유념하고,⁷
2. 제65차 회기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2011년 4월 20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기념일에 유엔 회원국, 유엔 산하기관, 독립적 전문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하여 두 번의 전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아래와 같은 주제들로 위의 참가자들이 2012년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참여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a)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증진하는 방법,

(b)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에 대한 국가 간 경험 공유

⁷ A/65/314.

3. 또한, 2011년 4월 20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기념일이 개최되는 두 번의 전체 회의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을 요청하고, 회원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를 초청하여 신탁 자금에 기여하도록 검토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며,
4. 추가적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사무국과 유엔 경제사회사무국 지속가능발전 분과가 전통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성공 사례를 포함한, 과학적 학문 간 작업의 통합과 기존 국가들의 법률 및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포털을 활용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와 후속 회의 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5. 제66차 회기에서 결의안 이행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제69회 총회
2010년 12월 20일



총회

배포: 일반

2012년 3월 29일원

문: 영어

제66차 회기

의제 항목 19(h)

2011년 12월 22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2위원회/ 보고서(A/66/440/Add.8)]

66/204,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

총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¹과 의제 21,² 의제 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³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⁵을 재확인하며,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2009년 12월 21일 결의안 64/196, 2010년 12월 20일 결의안 65/164 및 2009년 4월 22일 결의안 63/278에 따라 4월 22일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했음을 상기하며,

또한 1982년 세계 자연 현장을 상기하며,⁶

“국제 누르즈의 날”이라는 제목의 2010년 2월 23일 결의안 64/253, 그리고 “행복: 발전에

¹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 vol. I,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유엔 간행물, 판매 E.93.I.8 및 정오표), 결의 1, 부속서 I.

² 위와 동일, 부속서 II.

³ 결의안 S-19/2, 부속서.

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보고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26일-9월 4일 (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03.II.A.1 및 정오표), 제1장, 결의안 1, 부속서.

⁵ 위와 동일, 결의안 2, 부속서.

⁶ 결의안 37/7, 부속서.

대한 전체론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2011년 7월 19일 결의안 65/309를 상기하며,

2011년 4월 20일에 개최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증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에 대한 국가적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유념하고,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다민족국가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 세계회의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유념하고,⁷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백히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자연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악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기둥, 곧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기초 통계 자료의 균질하지 않은 이용 가능성과 그에 대한 질적, 양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생산-소비 방식에서 근본 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을 장려해야 하며, 모든 국가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도록 선진국이 주도해야 하며 해야, 리우 환경 및 발전 선언(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 7에 명시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또는 차별화된 공동책임 원칙을 포함한 리우 원칙을 재확인하고,

많은 고대 문명과 원주민 문화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 관계를 이해하여 상호 유익한 관계를 조성하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구상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 사회, 학계 및 과학자들이 수행한 작업과 생산 및 소비를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고안하려는 노력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학제 간 연계 강화를 요구하는 전체론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⁷ A/64/777, 부속서 I 그리고 II 참조.

1.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의 2번째 보고에 유념하고,⁸
2. 2012년 4월 23일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동안 소집될 총회에서 회원국과 유엔기구, 독립적 전문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소집될 제66차 총회에서 어떻게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발견에 대해 논의할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며,
3. 사무총장은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2012년 4월 23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기념일 동안 소집되는 총회에서 독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이 기금에 기부를 고려하도록 요청하며,
4. 또한 사무총장은 포탈이 2012년 운영 개시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UN 지속가능발전 회의 사무국과 경제사회부의 지속가능발전 사무국에서 유지 관리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행 정보 포털을 계속 사용해, 전통 지식 이용의 성공 사례를 포함한 학제 간 과학 작업의 통합과 현행 국가 법률의 통합을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전체론적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아이디어와 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여 활동을 수집할 것을 요청하며,
5.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의 준비 과정에 유념하며,
6. 모든 국가와 유엔 체제의 관련 기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3기둥에 대한 기본 통계 자료의 질과 양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국제 사회와 유엔 체계 관련 기관을 초청하여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며,
7.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국내총생산(GDP)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 잘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전문가 및 학계를 포함한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고,
8. 사무총장에게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67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제91차 본회의
2011년 12월 22일

⁸ A/66/302.



총회

배포: 일반

2011년 8월 15일

문: 영어

제66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19(h)**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의 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총회 결의안 65/164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총회는 2011년 4월 20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65차 회의에서 사무총장에게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상호대화 방식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했다. 201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 준비 과정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공헌하기 위해, 제66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환경 법규에 반영된 자연과 인류의 진화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를 활용한다. 회원국들이 주제에 대한 추가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제공된다.

* 2011년 9월 23일 기술적인 이유로 재발행.

** A/66/150.

목차

- I. 서문
- II. 자연과 인류의 관계 진화
 - A. 고대 문명과 관련된 교훈
 - B. 환경 운동의 등장: 16-19세기
 - C. 20세기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
- III. 21세기 자연과 조화 개선
 - A. 입법 및 공공 정책의 활성화 역할
 - B. 자연: 소유 혹은 존재?
- IV. 결론
- V. 제언

I. 서문

1.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로 불리는 2010년 총회는 결의안 65/164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2011년 4월 20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양방향 대화 방식의 2번의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회원국, 유엔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회의의 참석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 과정 차원에서 적극 참여했다. 양방향 상호대화 방식의 총회에 두 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a) 지속 가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촉진하는 방법, 그리고 (b)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와 국가적 경험 공유.¹
2. 결의안 65/164에서 총회는 또한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요청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사무국에서 유지 관리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존 정보 포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촉진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회의 이후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헌을 할 목적으로 전통 지식 이용의 성공사례와 기존 국내 입법을 포함한, 학제 간 과학 연구의 통합 등을 요구했으며, 이런 일련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 포털은 현재 개발 중으로 2012년 6월에 운용 개시될 예정이다.
3. 유엔은 2012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Rio+20)을 위한 유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 보고서는 특히 환경법을 통해 표현된 바와 같이 다양한 문명이 자연과 맺은 역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¹ <http://www.uncsd2012.org/rio20/index.php?page=view&type=13&nr=252&menu=46>. 참조.

뒷받침하는 전체론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사무총장의 첫번째 보고서(A/65/314)와 함께 읽어야 한다.

4.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60년대 환경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이해 관심의 증대로 1970년 지구의 날이 마련되었다. 2년 후인 1972년에 개최된 스톡홀름 회의는 전 세계 국가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환경 악화가 풍요와 빈곤 모두에 의해 야기되며, 비록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적 인식을 확고히 했다. 1982년 스톡홀름 회의 10주년 기념일에 정부는 보존과 개발의 상호 의존성을 반영한 세계 자연 헌장을 채택했다.
5. 스톡홀름 회의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세계환경개발 위원회(WCED,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를 설립했다. 그 개념은 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1987년, A/42/427, 부속서 참고)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6. “우리의 공동 미래”에 이어서, 정부는 1994년 환경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 프로그램을 이끌어냈다. 의제 21로 알려진 총회의 결과인 그 문서는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운영하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정부 간 협의 위원회 구성을 위한 2년간의 준비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총회는 또한 산림을 보호하고 사막화와 가뭄을 퇴치하기 위한 협상을 통해 일련의 합의된 원칙들을 만들어 냈다.
7.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기본 원칙은 리오 선언의 첫 번째 원칙에 설명되어 있다. “인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1994년 회의 이후 유엔은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 회담을 소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글로벌 약속을 갱신했다. 2012년 6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좀 더 진전된 상황을 더 평가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다.

II. 자연과 인류의 관계 진화

8. 인류와 자연과의 진화하는 관계에서 동양과 서양의 지적 전통은 크게 다르다. 다음의 뿌리는 원래 철학과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지적 전통은 역사적으로 구별되지만, 아시아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기본 질문들은 미국과 유럽의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에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는 문명 간의 대화를 위한 기회와 함께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음 장에서는 인류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진화된 관계가 어떻게 21세기의 오늘날 환경 입법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오늘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교훈 또한 고려되었다.

A. 고대 문명에서 얻은 관련 교훈

9. 동양의 전통은 종종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과 신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삼사라’(samsara: 윤회, 환생), ‘카르마’(karma: 업보), 목사(moksha: 해방, 해탈) 및 아트만(atman: 내 안의 나에 대한 성찰)의 개념을 포함하여 형이상학에 초점을 맞춘다.²
10. 중국의 문화 관행과 사상 체계에서, “외부 자연은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것은 항상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 문화는 실재가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연속체인 도(道)의 무수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해 오고 있다. 중국인은 우주가 상호 의존적인 부분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우주론적 신화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견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만물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주장하게 했다.³
11. 나일강의 연간 범람에 식량 공급을 의존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으며 그들의 복잡한 신앙과 의식 체계는 그들이 살았던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죽은 사람이 문헌 건조한 사막과 대조적으로, 나일강 자체가 그들의 농경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의 인식은 그들의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형성했다.
12.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한때 자연현상이 영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고,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자연 세계를 존중했다. 어떤 나무는 신성하고 치유력을 가진 신의 나무로 여겨졌다. 땅은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자로 구성된 씨족에

² Grant Hardy, “Great Minds of the Eastern Intellectual Tradition”, The Teaching Company, 2011. 괄호는 역자 주.

³ 위와 동일.

속한다는 개념은 자연을 공유하고 돌본다는 사고를 고양하였다.

13. 콜럼버스 이전의 초기 문화는 태양과 달을 포함한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추적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삶의 모든 측면에 짜여 일상적인 것과 천상의 것은 한데 묶여 있었다. 안데스 산맥 전역에서 빠차마마는 어머니 지구의 가장 널리 퍼진 이름이다. 그 이름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비옥하고 풍요로운 어머니 지구를 의미한다. 빠차마마는 인간과 자연 간 공생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은 존중의 대상이다.
14. 서구 전통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만든 법칙과 달리 자연법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시민 질서와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음을 인식하고 자연법(jus naturale)과 관습법(jus commune)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15. 많은 고전 서양 사상가들은 초기 문명이 자연과 더 친밀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로마인들은 동물의 권리(jus animalium)를 믿었다. 이는 철학자들이 나중에 인간 문명과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연권(Rights of Nature)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연을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자연 세계의 가치는 오로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정의되었다.⁴
16. 공기, 물, 물고기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은 로마인에 의해 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서기 535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로마법대전; Corpus Juris Civilis)이 공포되어 기존의 로마법을 간단하고 명료한 법체계로 정리했다. 첫번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서기 529년에 완성되었으며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 자신의 법과 다른 법률 분야에 대한 두 권의 책이 추가로 포함되어 확장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최초의 법전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연법은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곧 인간에게 배타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대기 중의 혹은 물속의 모든 생명 형태와 관련된다고 단언한다.
17. 로마제국의 몰락과 함께 유럽 대륙의 법체계는 파편화되었으며, 지방 정부체제의 출현과 함께 시민법과 교회법이 결합된 누더기 상태의 봉건법이 유일한 법적 틀을 구성했다. 포스트 봉건시대인 나폴레옹 법전이 도입되면서 유럽에서는 일관된 법체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 법전은 봉건시대의 이질적인 법체계를 대체했으며, 유럽과 기타 세계 전역에 로마-게르만 법 전통을 확장하는 주요 기둥 중 하나가 되었다.

⁴ Roderick Frazier Nash, *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B. 환경운동의 출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18. 17세기에 일어난 의학의 진화 발전에서 생체 해부는 신체의 작용을 연구하는 데 널리 이용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초기 인도주의자들을 화나게 했고 생체 해부주의자들은 연구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에게 의지했다. 저명한 수학자이자, 생리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인 데카르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윤리가 무관하다는 일반 철학을 제시했다.
19. 데카르트에 따르면 동물은 감각이 없고 비합리적인 생물이며 고통 감각이 없는 생물이다. 반면에 인간에게는 영혼과 정신이 있다. 사실 사유가 유기체로서 인간을 규정한다. “코기토 에르고 슴(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은 데카르트의 기본 공리였다. 이러한 이원론, 즉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생체 해부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정당화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데카르트는 자연의 객관화가 과학과 문명의 진보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믿었다.
20. 16세기와 17세기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존 레이(John Ray, 1627-1705, 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영국 박물학자),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5, 《에티카》에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 이원론에 반대)를 포함한 유럽의 다른 동시대 학자들은 자연과 야생이 영적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1790년 작가 존 로렌스(John Lawrence)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하고 이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요구한 반면,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연권”으로서 자기 보존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21. 유럽에서 데카르트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초기 미국 정착민들은 동물이 단순히 고통받는 삶을 위한 멍청한 짐승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견해를 믿었다. 대안적이지만 소수 견해에 불과한 이 견해는 부분적으로 동물이 자연 상태의 일부이며,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고전적인 그리스-로마 사상에서 파생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비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 뉴잉글랜드의 초기 정착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에서 1641년에 출판된 “매사추세츠 자유 법령(Massachusetts Body of Liberties)”은 영미 법학에서 가축 학대를 금지하는 최초의 일반법이다.
22. 존 로크(John Lock)는 그의 책,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1693)에서 데카르트와 반대로 동물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

게 동물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추론했다. 1693년의 담론에서 로크는 엄격한 효용 개념을 넘어서 소와 말과 같이 관습적으로 소유되는 유익한 동물뿐 아니라 다람쥐, 새, 곤충,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살아 있는 것”도 잘 대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⁵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나다니엘 워드(Nathaniel Ward, 1578–1652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의 첫 번째 법전을 작성했는데, 이는 미국 헌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이자 미국 자유 전통의 이정표로 간주)와 존 로크와 같은 사람들의 저술에 힘입어 인간이 자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대안적 세계관의 씨앗이 심어졌다. 영국의 식물학자 존 레이(John Ray)는 1691년 출판한 “창조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The Wisdom of God manifested in the Works of Creation)”에서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유용한지에 달려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3. 존 레이(John Ray)와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시기적으로 과학의 지평이 급격히 넓어지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다. 망원경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제안했으며, 현미경은 인류가 인간을 둘러싼 세계보다 다른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공동체를 드러냈다. 탐험가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로 가득 찬 광활한 무인도의 존재를 밝혀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주가 오직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24. 1660년대에 루이 14세 집권 시기, 중상주의 정치인이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1665-1683년 루이 14세 재무부 장관을 역임)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엄격한 산림법을 도입하고 시행했다.⁶ 1822년 영국에서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의 행동주의는 가축, 특히 소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Cruel Treatment of Cattle Act 혹은 Martin's Act 1822). 2년 후 1824년 마틴(Martin),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끈 정치인) 및 다른 사람들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왕립 학회를 만들었다. 20년 전, 윌버포스(Wilberforce)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의 리더였다. 19세기의 저명한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동물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썼다. 억눌린 존재를 해방시킨다는 사상은 인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25.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은 인간의 진화를 동물의 진화와 나란히, 즉

⁵ James L. Axtell, ed., *The Educational Writings of John Locke: A Critical Edit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1968.

⁶ Paul Walden Bamford, “French Forest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1660-1789”, *Agricultural History*, vol. 29, No. 3, 1955.

자연의 일부로 둠으로써 인류의 오만함에 충격을 주었다. 지구상의 생명체의 증식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은 수천 년 된 이원론적 철학에 충격을 주었다. 다윈의 저서인 ‘종의 기원’(1859)과 ‘인간의 기원’(1871)은 환경주의와 환경윤리 발전에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독일 과학자인 디트리히 브랜디스(Dietrich Brandis)는 인도의 임업 관리를 개척했으며, 헨리 그레이브스(Henry Graves)와 훗날 미국 산림청 국장이 될 기포드 핀초(Gifford Pinchot)를 비롯한 많은 산림학자들의 멘토가 되었다.⁷

26. 영국에서 인도주의적 입법을 위한 투쟁은 1876년 동물 학대법이 통과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생체 해부는 영국의 과학 및 인도주의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의견을 이끌어낸 문제였다. 19세기에는 인도주의적 가치와 권리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회와 그에 수반되는 법률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그들 주변의 모두의 권리를 빼앗았다.
27. 비록 인간중심주의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발전된 형태의 생명체로서 계속해서 다른 존재를 착취하고 환경에서 원하는 것을 추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특히 종교적 이해를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변화의 중심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구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몇 가지 혼란케 하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했다.
28.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야생 지대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신대륙인 아메리카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프랑스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 '미국의 민주주의'와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 저서)과 네덜란드 루터교 목사이자 작가인 존 브루크너(John Bruckner, 1726-1804, 1767년 '동물 체계 이론' 저술) 같은 작가들은 야생동물의 광범위한 도살을 예측하면서 이러한 예측 가능한 추세에 대해 썼다. 18세기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생체 해부, 닭싸움, 무대 투견, 여우 사냥 등의 목적 없는 잔혹 행위를 비롯한 동물 학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환경권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은 자연의 영적, 문화적, 회복적 가치의 존중이 지속적이고 점점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환경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9. 미국의 환경 운동이 자리를 잡았던 시기에 다른 사회 운동, 특히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개인적 명성과 돈을 동원하고 미적 가치를 대중화할 수 있었던 존 제임스 오듀본(John James Audubon, 조류학자 및 화가), 존 뮤어(John Muir, 자연보호주의자), 루이스 머퍼드(Lewis Mumford, 문명 비평가), 기포드 핀초트 (Gifford Pinchot, 미국의 산림 보존의 아버지), 헨리 스티븐 솔트(Henry Stephens

⁷ Obituary: Sir Dietrich Brandis, F.R.S.,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30, No. 1, 1907.

Salt, 동물 치료 분야 선구자) 및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철학자, 시인, 수필가)를 비롯한 저명한 인물들은 미국에서 환경 운동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생물다양성 개념의 선구자인 머퍼드(Mumford)는 많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환경·사회 논평가인 라마찬드라 구하(Ramachandra Guha)가 대표적이다.

30.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긴밀하게 조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트들은 야생보호를 요구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1800년대 중반, 헨리 데이비드 소로(Thoreau)가 보호지역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목표를 위해 따로따로 논쟁을 벌였다. 1863년에 캘리포니아 요세미티(Yosemite,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를 방문한 후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 도시공원의 설계자)와 이스라엘 와드 레이몬드(I. W. Raymond, 중앙아메리카 증기선 운송회사)는 미국 의회에 이 지역을 자연 상태로 보전할 것을 청원했다. “공공 사용, 휴양지 및 레크레이션”을 위해 10 평방마일을 남겨둔 채 요세미티 보존을 위한 법안은 1864년(링컨 대통령)에 승인되었다.
31.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동물과 동물의 권리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는 노예제도의 종식, 아동 노동법 제정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요구와 유사하게 병행 성장해 온 인본주의와 인도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는 이후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혁명(1789년)으로 유럽과 전 세계에서 인간의 권리 개념과 통합해 발전했다.
32. 미국에서는 세기의 전환기에 에드워드 페이슨 에반스(Edward Payson Evans, 1831~1917)는 환경윤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에반스(Evans)는 모든 “감각을 지닌” 생물을 포함하여 인간이 아닌(비인간) 생명체들, 심지어 암석과 광물과 같은 무생물까지도 인간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본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지리학자이자 아나키스트 운동가, 철학자)과 레프 톨스토이(Leo Tolstoy, 소설가이자 시인, 개혁가, 사상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저술)와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인도의 정신적·정치적 지도자)가 모두 환경 보호를 자신들 세계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삼았다.
33. 동양의 지적 전통의 학자들 또한 이전 세기부터 인간과 자연의 진화하는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 철학자 왕양명(Wang Yangming, 1472-1529, 명나라의 정치인·교육자·사상가)은 데카르트의 이원론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정신 과정과 신체 사이의 연결을 압축해 “마음과 정신”(Heart-Mind, 心學)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자기 자신으로 축소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나무와 식물로, 그리고 거기서 돌과 물질로 흘러간다고 설명한 바 있다.

C. 20세기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

34. 19세기에 환경 보호는 식량, 목재 또는 주거지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크게 발전한 반면에, 환경과 자연 자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은 20세기에 들어 중요한 근거를 얻기 시작했다. 학자와 과학자들은 지구 생명의 상호 연결성과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했다.
35. 프레더릭 클레먼츠 (Frederic E. Clements, 1874-1945 식물생태학자)는 그가 식물의 “천이(succession)”라고 부르는 것을 조사했다. 그는 많은 생물이 함께 기능하고 전체가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식물은 기후, 토양과 상호 작용해 초원 서식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과학자 아서 톰슨(J. Arthur Thomson, 1861-1933 자연주의자)도 자신의 ‘생명 그물’ 개념을 설명했고, 빅터 어니스트 셸포드 (Victor E. Shelford, 1877-1968 동물 생태학, 환경운동가)는 생물 군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했다. 리버티 하이드 베일리(Liberty Hyde Bailey, 1858-1954, 식물학자)는 “우주적 이기심(cosmic selfishness)”을 버리고 “땅의 올바름”에 대한 감각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학문의 전례론적 지향 때문에 이 초기 생태학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과학적 연구를 도덕 철학과 연결했다.
36. 1927년 찰스 서덜랜드 엘튼(Charles Sutherland Elton, 1900-1991, 동물 생태학자)은 “먹이 사슬”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의 생태학적 연구는 태양이 식물, 초식 동물 및 육식 동물에게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시작된 영양 의존성을 밝혀냈다. 엘튼은 피라미드의 은유를 사용했다. 가장 짧은 먹이 사슬을 가진 가장 단순한 유기체는 가장 많고 구조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다.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매 또는 인간을 제거하면 시스템을 거의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식물이나 토양 박테리아와 같은 가장 단순한 유기체를 제거하면 피라미드가 무너질 것이다.
37. 철학과 신학적 탐구는 또한 환경보전 윤리에 영향을 미쳤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 생명에 대한 경외 철학)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환경을 가치 있게 여기는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했다. 인도와 중국 전통의 윤리적 교훈에 대한 연구에서 슈바이처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살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한 가치 이론을 확장했다. 그는 인간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에 하는 것과 같은 생명 경외를 보여야 한다고 믿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 수리 논리학)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정체와 목적은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아이디어에 추가했다. 모든 유기체, 실제로 모든 원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조각들의 지속적인 현실에 공헌한 것만으로도 본래 가치를 지닌다. 생명의 보존, 증진 및 향상을 요구하면서

슈바이처는 동물을 인간과 같은 위치에 두었다.

38. 미국의 학자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1887-1948, 철학자, 박물학자, 과학자, 생태학자, 산림보호자, 환경보호론자)도 환경윤리의 발전, 강화 및 확대에 공헌했다. 그는 환경윤리의 발전, 강화 및 확대와 지구가 우리의 육체적 존재의 근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윤리적 고려를 했다. 과거의 인도주의자들이 오로지 생물들에 관심을 가진 것과 달리, 레오폴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는 지구의 중요한 요소들인 바다와 산들은, 무기 상태지만,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철학자 피터 오우펜스키(Peter D. Ouspensky, 1878~1947)는 레오폴드의 주장을 지지하며, “자연에서 어떤 것도 죽어있다거나 기계적일 수 없다 ... 모든 것의 생명과 느낌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⁸ 이 사상가들은 인간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우주의 모든 것은 목적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39.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성 측면으로만 대하는 태도가 심각한 생태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요구했다. “우리는 토지를 우리 소유의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토지를 남용한다. 토지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볼 때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지구는, “정도 측면에서 우리보다 덜 할 수 있지만, 살아 있었고, 시간과 공간 면에서는 우리보다 광대하다.” 1950년대 폴리처상 수상자이자 미생물학자인 르네 듀보스(René Dubos, 1901-1982, 환경주의자, 인본주의자)는 지구의 자연적 조화의 일부로서 세균과 그에 수반되는 질병을 포함한 미생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40.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 1907-1964)은 환경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인 “침묵의 봄”(Silence Spring)에서 인간과 자연에 끼치는 살충제의 유해한 영향을 기록하였다. 카슨은 사람들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인간 능력의 증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인류가 이해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인간에게 그녀가 “겸손함”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피조물과 지구를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는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1. 에드워드 오즈번 윌슨(Edward O. Wilson)에게 개미와 꿀벌과 같이 사회적 유대를 나타내는 곤충 연구는, 혈연관계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윌슨은 인간의 생존이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로 위협받고 있다고 논증했다. 특정 종들의 유용성이 아직 판명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일부가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데 사용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윌슨의 바이오풀리아(biophilia: 생명 또는 살아있는 시스템의 타고난 친화력으로 정의)는 인간의 심리적 연결을 설명하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환경에 의존한다는 다른 설명으로 보완되었다.

⁸ Peter D. Ouspensky, *Tertium Organum*, Knopf, New York, 1981.

42. 20세기 말까지 인류는 여전히 바탕에는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유지하면서도 동물, 식물, 암석, 생태계, 행성 및 우주와 같은 모든 형태로서 자연의 존재를 완전히 수용했다. 따라서 인간 존재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방식은 점차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체론적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43.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함에 따라, 주요 성과 중 일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20세기 말 유엔환경개발회의에 공헌한 남녀들(사람들)의 업적은 우리 미래 세대가 영감을 찾을 햇불로 이어 갈 명예로운 유산이다.

III. 21세기 자연과의 조화 증진

A. 입법 및 공공 정책의 활성화 역할

44. 1992년 리우선언에 포함된 27개 원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어 왔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합하려는 여정에서 의사 결정자, 과학자, 연구원, 환경운동가, 작가 및 시민사회 구성원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원칙은 인류가 자연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늘날 이해관계자는 자연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제도 장치에 접근할 수 있다.
45. 자연에 대한 인류의 공감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법률 시스템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20년 동안 많은 회원국은 리우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헌법 조항이나 부문별 법률의 일반 조항을 통해 국내 입법에 통합했다. 다음 예는 관련 이해 관계자가 자유롭게 채택한 제도의 일부 사례다.
46. 2001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대중 참여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지역, 국가 및 국경을 초월한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대중의 참여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공공의 권리를 부여한 협약, 덴마크)이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범위가 지역적이지만 협약의 중요성은 특히 정부나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7. 오르후스 협약은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리를 설정하여 공공기관이 다음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a) 이용 가능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배포할 의무를 포함하여 대중의 요청에 따라 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b) 환경과 관련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준비, 집행 규정 및 기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의 초안 작성을 포함하여 환경 의사 결정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수립한다. (c) 환경과 관련된 국내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또는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 거부를 포함하여 개인, 공공기관의 불법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수립한다.

48. 지역 협정은 국가 수준에서 야생동물 규제의 기본 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표준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내의 환경 법률은 회원국이 해당 규칙을 국가 법률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회원국이 적용되는 집행과 이의 이행 결여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유럽연합 사법 시스템의 존재는 그러한 법률적 수용과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⁹

49.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지역 협약이 야생동물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당사국의 법률 초안 작성자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 천연자원 보전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은 원래 1968년 알제(Algiers, 알제리 수도)에서 체결되었으며, 2003년 아프리카 연합 총회가 있었던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Maputo)에서 개정되었다. 개정된 협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동식물 종과 그 환경의 보전과 관리이다. 동물,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존하기 위해 당사국은 자연 서식지 안팎에서 해당 종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정책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지속적인 과학적 연구 및 모니터링은 종과 환경 관리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50. 1976년 ‘남태평양 자연보전에 관한 협약’(Apia Convention)은 남태평양 지역의 자연보전을 위한 광범위한 틀, 특히 철새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 야생동물 서식지 및 육상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는 보호지역 설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국립공원에서 이러한 종의 사냥 및 상업적 착취를 금지하고 완전한 보호를 위해 전통적인 문화 관습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토착 동식물 목록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제5조).

51. 1985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협정은 필수 생태 과정과 생명 부양 시스템을 유지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며 수확된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보전 조치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다루고 있다.

52. 사법에 대한 접근은 오르후스 협약을 떠받치는 기둥인 법적 권한 중 하나다. 그것은

⁹ Elisa Morgera, “Wildlife law and the empowerment of the poor”,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2010.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중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권리를 보호한다. 오르후스 협약 제9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으며, 대중은 환경과 관련된 불법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해 이익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 및/또는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 거부를 포함하여 행정행위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53. 법률은 야생동물 관련 문제에 민간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관여하는 경우, 사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법률은 공적 권한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사법심사나 행정심판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일반 환경 법률이 이러한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 관련 특별 조항의 사례들도 있다.
54. 법은 보통 분쟁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수단을 언급하지만 이해 관계자는 사용자 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 · 과정을 보장하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행정 및 사법 수준에서 정부 결정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야생동물 규제 시스템에 대한 공공책임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또한 법률은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대안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재자는 특정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 사회와 야생동물 기관이 보호지역 관리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를 협상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법원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저렴하고,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선호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예: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빈곤층의 법적 권한 부여 위원회). 경우에 따라, 법률은 시민이 야생동물법 위반에 대한 이익 신청을 하거나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55. 미국에서는 연방야생동물법에 따라 대중이 특정 야생동물종의 파괴 또는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은 환경 자체에 대한 피해가 아닌 개인 피해, 인과관계 그리고 구제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예: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대 레이드로 환경서비스(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Inc)의 미국 대법원 판결 2000 참조). 피해구제는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증명된 행위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제재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1973년 멸종위기종보호법은 이 규칙에 대한 분명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 시민이 정부 기관이나 공무기관을 포함한 누구라도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특정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998년 미국 법률은 환경분쟁해결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원주민 공동체에 경험이 있는 특별한 중재자 그룹을 포함하여, 환경 중재자로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개인의 명단을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다.

56. 예를 들어, 연례적인 환경과 개발에 대한 국제 협약과 해양 환경보호 및 개발 협약 등 환경 보호 및 이의 향상을 위한 수많은 협정과 협력 메커니즘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등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환경법은 국가 및 다자간 수준에서 시행된다.
57. 1970년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전문환경법원 및 재판소의 수가 소수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41개국 350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 환경 거버넌스 및 세계 전역의 환경 보호에 대한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점점 환경법이 복잡해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다. 환경법원과 재판소는 최근 아부다비, 볼리비아(다민족 국가), 칠레, 중국, 엘살바도르, 인도, 태국 및 필리핀에 설립되었다. “접근권”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가와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종의 멸종 및 자연 지역 손실을 포함한,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에 따라 환경법의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58. 정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중의 참여 중요성과 필요성은 의제 21과 리우선언의 핵심이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와 빈곤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위기는 반복되고 있다. 이는 주로 경제적인 틀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약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다.

B. 자연: 소유 혹은 존재?

59. 전 세계의 현재와 같은 소비 및 생산 양식은 지구와 그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문제의 뿌리는 소비 양식의 진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과 많은 문화 시스템에 걸쳐 지배적인 현재의 문화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삶의 의미, 만족 및 수용을 찾으려 하는 소비주의이다.¹¹
60. 역설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소비주의는 심리적 욕구 충족 및 즉각적인 쾌락을 가져다주지만, 더 많은 소비가 반드시 더 많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실제로 일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돈과 복지는 특정 지점까지만 관련이 있다. 저개발 국가에서 돈의 부족은 사회의 빈곤한 계층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을 달성하더라도 이러한 추가적 증가는 복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적당한 풍요를 넘어서는 소득 증가는 더 이상의 인간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¹²

¹⁰ George and Catherine Pring, *Greening Justice: Creat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Courts and Tribunals*, The Access Initiative, 2009.

¹¹ Donella Meadows, “Leverage Points: Places to Intervene in a System”, The Sustainability Institute, 1999.

¹² d Diener, *The Science of Well-Being*, 2009.

61. 소비주의 기동의 하나로써,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복지와 반비례 관계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대상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지만, 설사 얻었다 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물질주의의 독성 효과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결코 완전히 성취될 수 없는 목표로 이어진다고 가정한 바 있다.
62. 환경 과학자 및 시스템 분석가인 도넬라 메도즈(Donella Meadows, 1941-2001)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가장 효과적인 레버리지 포인트(leverage point; 가치사슬 전반에 걸치는 광범위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상의 특정 개입/관련점/위치/단계)는 패러다임, 즉 시스템이 작동하는 공유 아이디어 또는 기본 가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주의 패러다임의 경우, 변화해야 할 가정에는 더 많은 상품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영속적인 성장이 좋으며,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고, 자연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자원의 저장고라는 가정들이 포함된다.¹³
63. 소비주의 패러다임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비 양식을 통해 자신 스스로와 복지를 정의하도록 독려하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은 또 다른 대안적 열망을 찾고 문화적 제도와 동인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이 얼마를 벌고, 집이 얼마나 크거나, 물질적 재화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지구 복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¹⁴
64. 일반적으로 확인된 지금까지 해결책은 배출을 방지하기보다는 줄이는데,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소비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적게 생산하기보다는 그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녹색 기술이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지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구에 끼치는 우리의 집단적 영향은 ...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사용하고,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가 결합된 결과이다.”¹⁵
65. 현재 과학자, 지식인 및 기타 사상가들은 복지의 척도를 찾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을 국가 복지의 간접적 지표로 사용해 왔다. 대체로 대부분 국가의 목표는 인구의 경제적 수단을 늘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돈이 항상 행복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복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측면들 예를 들어, 대인관계, 건강 및 깨끗한 환경을 포함한다.
66. 인구의 복지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복지에 대한

¹³ Donella Meadows, “Leverage Points: Places to Intervene in a System”, The Sustainability Institute, 1999.

¹⁴ *State of the World 2010: Transforming Cultures: From Consumerism to Sustainability*, The Worldwatch Institute, 2010 (<http://www.worldwatch.org>).

¹⁵ Annie Leonard, *The Story of Stuff*, Simon and Schuster, New York, 2010.

새로운 정의와 우리의 공동된 사회적 목적에 중점을 두는 대안적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존중과 함께, “좋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부가 아니라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성, 자유, 건강, 안전, 그리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소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정도로만 중요하다.”¹⁶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덜 소비적인 사회의 추가적인 지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자연은 유용하고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를 둔 우리의 현재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67. 오늘날 우리는 “영양실조의 이중 부담”이라고 불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에는 거의 10억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지만¹⁷, 비만과 관련된 많은 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모든 사람이 하루에 2,70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성인 권장량보다 600칼로리 더 많다.¹⁸ 또한 매년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되는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유한 국가는 주로 소비자 수준에서 식품이 낭비되지만, 개발도상국의 주요 문제는 열악한 저장, 가공 및 포장 시설을 포함하여 농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취약한 기반 시설로 인해 손실되는 식품이다. 부유한 국가의 소비자들이 낭비하는 식량(2억 2,200만 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2억 3,000만 톤)의 전체 식량 생산량과 거의 같다.¹⁹

68.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전염성 질병에 관한 첫 번째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서 2008년에 3,610만 명이 4대 비전염성 질환인 심혈관 질환, 암, 만성 폐질환 및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큰 경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분명히 비전염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잘못된 식습관(심혈관 및 당뇨병), 흡연, 독성 화학물질 및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암 및 호흡기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한 세계적으로 집단적 대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총회는 2011년 9월 19-20일에 비전염성 질병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69. 지구처럼 인간도 항상성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외부적 조건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유기체나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을 유지하는, 예를

¹⁶ *State of the World 2004: Special focus: The Consumer Society*, The Worldwatch Institute, 2004 (<http://www.worldwatch.org>).

¹⁷ 2010년에 세계 영양실조 인구는 9억 2,500만 명이었다. 이 숫자는 여러 번의 위기로 인해 2009년에 10억 2,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의 이 미미하게 개선된 숫자는 2010년 후반 식량 가격 급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0*,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2010. 참조.

¹⁸ “How much is enough?”, <http://www.economist.com/node/18200702>.

¹⁹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2011.

들어 체액의 화학적 조성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적절한 균형이 없으면 건강한 식단도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신진대사를 하는지가 곧 우리를 결정하며, 이는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지구의 최상층 토양(표토)인, 즉 살아있는 플라스마(plasma)가 연간 에이커 당 5~100톤 비율로 벗겨지고 있으며, 특히 오염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0. 현재 인류는 그 근원인 어머니 대지의 토대를 침식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71. 자연재해가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을 강타함에 따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와 고통은 인류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자연재해에 비추어, 일본의 에너지 계획은 재검토되고 있으며 원자력에서 대체 에너지로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이 고려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도 각각 2022년과 2034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 찬성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발표했다.
72. 재앙을 피하려면 인간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의 축인 환경, 사회, 경제와 관련되는 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의 세계 상황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사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정의해 왔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 자연과의 상호 연관성을 깨닫는 것,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연시켜 왔다.
73. 두 번째 천년이 시작될 무렵, 세계의 많은 개별 국가들은 이미 수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986년 뉴질랜드 환경법에서는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자연적 · 물리적 자원의 관리에서 생태계의 본질적인 본래 가치를 충분히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²⁰
74. 스웨덴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은 1999년 환경법에 포함된 5가지 목표 중 하나이다.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에 생물다양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생태계의 장기적인 생산 능력이 보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동·식물종의 다양성 모두와 관련이 있다.”²¹ 핀란드의 2006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은 국가적 및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수용력 한도 내에서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²² 2010년 1월에 발효된 노르웨이의 동물복지법

²⁰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86/0127/latest/DLM98975.html>.

²¹ <http://www.sweden.gov.se/content/1/c6/02/05/49/6736cf92.pdf>. 참조

²² <http://www.ymparisto.fi>. 참조

제3조에서 “동물은 인간에게 유용한 가치를 가지는지 상관없이 본질적인 본래 가치를 지니며 동물을 잘 대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긴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²³

75. 새로 채택된 에콰도르 헌법(2008)은 계획된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자연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환, 기능 및 진화 과정의 유지 및 재생을 포함하여 완전한 방식으로 존재를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회복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었다.²⁴ 2010년 12월 볼리비아 다민족국가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세파 구조가 수정되거나 유전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권리,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 균형을 이룰 권리, 인간에 의해 중단됨 없이 중요한 순환과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권리.²⁵

IV. 결론

76. 현대 후기산업사회는 무한한 행복, 물질적 풍요, 자연의 지배에 대한 환상적 약속에 기초하여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으로 변했다. 산업화 시대 이후로 발전해 온 경제체제는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며,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경제 성장에 이로운 지에 따라 결정되어왔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우리의 근원이자 우리 존재의 기본 토대인 자연은 무시되고 착취당했다. 이러한 사실에 눈을 감은 우리는 어머니 지구가 인간 존재뿐 아니라 자신의 재생 능력 안에서 지구를 유지·존속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준 놀라운 능력과 풍부한 영양소 그리고 에너지를 손상하였다.
77. 반복되는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듯이, 유한한 자원의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물질적 성장에 기반을 둔 사회 경제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모든 형태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만이 진정으로 건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도덕적 가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경제적 부, 지식 및 기술은 가치 있는 공헌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현재의 과잉과 어머니 지구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연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머니 지구를 오염시키고 고갈시키는 일은 우리 자신을 오염시키고 고갈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를 증가시키는 힘과

²³ <http://www.regjeringen.no>. 참조

²⁴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ecuador/ecuador.html>. 참조

²⁵ <http://www.gacetaoficialdebolivia.gob.bo/normas/>. 참조

불균형에 기여해 왔다.

78.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를 준비하면서, 지구에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려면 커다란 가치전환이 요구됨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생존은 어머니 지구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매년 지구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에서 3분의 1 이상을 더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소비와 생산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범위로 수렴되어야 한다.
79. 도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연을 지도원리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여전히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빈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또한 우리 정신의 결핍을 해결하여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으려면 자연을 지도원리의 원천으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과 재통합해야 한다. 자연과 자연의 본래 가치는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의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둥을 통합된 전체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80. 자연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여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 뒤에 숨겨진 의도에서 인간의 본래 가치의 기반을 재인식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역사를 통해 추구해 온 많은 사람의 유산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인류는 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류 전체가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이의 세계적 의식 변화를 담은 새 일정표를 만들고, 고대 문명의 지혜를 이끌어내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문명의 근원인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문명의 근원을 복원해 낼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세대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V. 제언

81. 앞의 논의와 정부 간 회의에서 표명된 견해 및 자연과 조화에 대한 주요 그룹 협의의 바탕으로 개별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 (a) 2012년 6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에서 자연의 본래 가치와 재생 능력을 인정하는 선언을 고려한다.

- (b)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지식 기반을 추가로 갱신하기 위해, 총회는 적절한 경우 기관, 조직, 연구 센터, 학계의 대표들 및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 (c) 유엔 지속가능발전 웹사이트를 통해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세 기둥을 통합하여 하모니워드네이처에서 모두를 위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 중인 작업을 계속한다.



총회

배포: 일반

2013년 3월 15일원

문: 영어

제67차 회기

의제 항목 20(h)

2012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제2위원회 보고서(A/67/437/Add.8)]***67/214. 하모니워드네이처**

총회는,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¹ 의제 21,² 의제 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³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⁵을 재확인하고,

2009년 12월 21일 결의안 64/196, 2010년 12월 20일 결의안 65/164 및 2011년 12월 22일 하모니워드네이처에 대한 결의안 66/204 그리고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한 2009년 4월 22일자 결의안 63/278을 상기하고,

1982년 세계 자연 현장을 상기하고,⁶

¹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vol. I,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I.8 and corrigendum), resolution I, annex I.

² *Ibid.*, annex II.

³ Resolution S-19/2, annex.

⁴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ust-4 September 200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II.A.1 and corrigendum), chap. I, resolution 1, annex.

⁵ *Ibid.*, resolution 2, annex.

⁶ Resolution 37/7, annex.

“국제 누루즈의 날”이라는 제목의 2010년 2월 23일 결의안 64/253와 “행복: 발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2011년 7월 19일 결의안 65/309를 상기하고,

지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발견을 논의함으로써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4월 18일에 열린 자연과 조화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에 주목하고,

또한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다민족국가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대회를 주목하고,⁷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문서를 상기하고,⁸

증명된 환경악화, 증가하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 공평하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보장하며,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악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3가지 기둥 아래 기초 통계 데이터의 불균등한 가용성과 그 품질 및 양적 개선의 필요성을 또한 인정하고,

주도하는 선진국과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국가와 함께, 환경 및 발전에 관한 리오 선언 제7원칙에 명시된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원칙’을 포함한 리오 원칙을 고려하면서, 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과,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많은 고대 문명과 원주민 문화가 상호 유익한 관계를 조성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 관계를 이해하는 풍부한 역사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구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학계 및 과학자들이 수행한 작업과

⁷ 또한 A/64/777, annexes I and II.

⁸ Resolution 66/288, annex.

생산 및 소비를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고안하려는 노력을 또한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학제 간 연계의 강화가 필요한 전체론적 개념임을 고려하고,

1.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의 3번째 보고서에 유념하고,⁹
2. 총회 회장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경제적 접근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 나아가 인류와 지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윤리적인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국, 유엔기구, 독립적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함께, 2013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기념일 동안 소집될 본회의에 예정된 상호적 대화를, 총회 제67차 회기 중 소집할 것을 요청하고,
3.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소집될 본회의에서 열릴 상호대화에서 독립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한 신탁 기금 설립과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 신탁 기금에 대한 기부를 고려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결의를 상기하고,
4. 유엔 지속가능발전 사무국과 사무국의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 분과가 주최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를 계기로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환영하고, 사무총장에게, 전통 지식의 사용과 기존 개별 국가 법률에서 성공 사례를 포함하여, 과학적 학제 간 작업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자연과 조화 속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체론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활동들에 대한 정보와 공헌을 수집함으로써, 분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기존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며;
5. 지구와 그 생태계가 우리의 고향이며 “어머니 지구”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된 표현이며, 일부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증진의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승인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고,
6.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7. 국가와 유엔 체제의 관련 기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의 질과 양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 체제의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고무하고,

⁹ A/67/317.

8. 정책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하기 위한 광범위한 그리고 진전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유엔 체제의 관련 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과 협의하여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이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¹⁰의 결과로서 도출된 문서 38항을 근거로 통계위원회에 제출된 요청을 상기하고,
9. 이와 관련하여, 이 작업 프로그램의 시작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10. 사무총장에게 제68차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2015년 이후 (Post-2015)’발전 의제 논의를 위한 의견으로 포함하여,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11. 제68차 회의의 임시 의제(provisional agenda)에 “지속가능발전” 항목 아래 “하모니위드네 이처”라는 하위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한다.

제61차 소집회의
2012년 12월 21일

¹⁰ Resolution 66/288, annex.



총회

배포: 일반

2012년 8월 17일

문: 영어

제67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20(h)*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

요약

이 보고서는 총회 결의안 66/204에서 제시된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었다. 총회가 그 결의안에서 역시 요청했듯이, 2012년 4월 18일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회의가 되도록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2번째 대화를 소집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과 자연의 진화하는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과학 및 경제 분야에서 상호대화를 통해 논의된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권고 사항은 회원국의 추가 고려를 위하여 제공된다.

* A/67/150.

목차

- I. 서문
 - 하모니위드네이처 웹사이트
- II. 지구와 인간의 상호작용
 - A. 지구에 대한 거대하고 확대되는 인간 영향의 진화
 - B. 인류세(Anthropocene): 지질학적 시간의 새로운 세
- III.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의 변모
- IV. 인류와 지구 관계의 윤리적 기반
- V. 결론
- VI. 권고 사항

I. 서문

1. 총회는 “하모니위드네이처”라는 제목의 결의안 66/204를 통해서, 사무총장에게 제66차 회기 동안,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 준비 과정에서 효과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와 함께, 2012년 4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총회의 본회의에서 개최될 예정인 상호적 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2. 총회의 상호적 대화에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특히 그러한 영향이 이미 지구의 재생 능력에 영향을 미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다. 이 대화를 통해 과학과 경제학의 기여를 더욱 강조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대화에서 언급된 문제를 기반으로 한다.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하모니위드네이처의 절차가 공헌한 구체적인 결과는 2012년 7월 27일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결의안 66/288)를 인정한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인류의 근원이자 자양물인 지구와의 평등하고 균형잡힌 관계를 의미한다. 존중과 지구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지구 체계의 건강과 온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모두에 놓여있다. 인류와 지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워진 인식은 인간의 존재가 불가분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 믿음에 기초한 행동으로의 길을 나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결과문서는 일부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의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은 또한 어머니 지구는 세계 도처에서 공통되는 우리 행성의 이름임을 인정했다.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

4. 총회는 또한 결의안 66/204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사무국 및 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지속가능발전 분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존 지속가능발전 정보 포털을 계속 활용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으로써, 이 포털을 통해 전통 지식과 기존 국가 입법의 성공 사례를 포함하여, 과학적 학제간 작업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착수되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활동에 대한 정보와 기여가 수집 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목적을 위한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는 그 회의에서 개설되었고, www.harmonywithnatureun.org에서 접근가능하다.¹
5.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에는 국내법들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도처의 헌법에서 환경을 명시함을 강조하고 있다. 각 국가의 페이지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는 국가 헌법을 포함하는 국가 법률의 관련 구절과 각국의 헌법에 환경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에 대한 짙막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적절한 환경 관련 법령의 도입에 대해 언급한다.
6. 수년에 걸쳐 회원국이 제정한 환경 법규 및 헌법 조항의 방대한 수와 길이를 고려해볼 때, 웹사이트의 목적은 그러한 법규의 모든 부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환경법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의식의 진화에 대한 개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경로에서 취해진 법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총회 결의안 66/204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특히 과학 및 경제 분야에서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상호적 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를 논의한다.

II. 지구와 인간의 상호작용

8. 우리 종의 전체 역사는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구의 역사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전통적으로 홀로세(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로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이름, 역사주)라고 불리는 지질학적 기간에 일어났다. 그동안 인류는 지구 환경의 모든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행성 생태계에는 우리 존재의 흔적이 있다.
9.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잘 알려진 측면이 많이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후 변화이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대륙 전체에 걸치는 광활한 토지의 삼림벌채는 막대한

¹ Also, Resolutions 65/164 and 66/204. 참조.

양의 토양이 침식되고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부한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고대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료의 영양분은 들판과 강을 씻어내며 광대한 녹조가 발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바다를 만든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1,500만 년 만에 최고 수준일 수도 있다.

10.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에 진입했다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인류세는 특히 2000년 파울 크뤼첸(Paul J. Crutzen, 1933년-2021년 네덜란드의 대기 화학자)과 유진 스토머(Eugene F. Stoermer, 1934년-2012년, 미국 미시간대 생물학자)가 논문²을 발표한 이후로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많은 조건과 과정이 인간활동에 의해 크게 변경되고 있는 현재의 세(epoch)를 나타낸다.

- (a) 식민화, 농업, 도시화 및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에 의한 과정과 관련된 침식 및 퇴적물의 이동
- (b) 탄소, 질소, 인 및 다양한 금속과 같은 요소의 분포에 있어 상당한 인위적 변화를 포함하여 대기, 해양 및 토양의 화학적 조성 변화
- (c) 지구온난화, 해양 산성화 및 해양 “사각지대(dead zone)”의 확산을 포함하여, 이러한 섭동(攝動: 주요한 힘의 작용에 의한 운동이 부차적인 힘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란되어 일어나는 운동)에 의해 생성된 환경조건
- (d) 서식지 손실, 포식, 종의 침입 및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생물권(biosphere)의 변화.³

11. 이러한 전개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전에 직면한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미래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는 불가역적인 연쇄 변화의 위험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조건을 초래한 주요 인간 활동을 다룬다.

A. 지구에 대한 거대하고 확대되는 인간 영향의 진화

12.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 넘는다. 마지막 지질 시대인 제4기는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와 홀로세(Holocene)의 두 개의 세(epoch)를 포함한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단연

² Crutzen, P. J., and 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vol. 41 (2000).

³ 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Subcommission on Quaternary Stratigraphy, Working Group on the Anthropocene (<http://www.quaternary.stratigraphy.org.uk/workinggroups/anthropocene>).

가장 짧은 후자는 약 10,0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그린란드의 얼음 핵에서 추적할 수 있는 기후 변화가 특징이다.

13. 홀로세는 지난 200만 년 동안 혹독한 빙하 기후를 단절시킨 일련의 간빙기 기후 변화 중 마지막이다. 그것은 실용적인 면에서 하나의 세(epoch)로 구분된다. 우리가 밭 딛고 있는 많은 지표 퇴적물, 토양, 하천 퇴적물, 삼각주 및 해안 평야가 이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
14. 인류(Homo) 속(genus)의 가장 초기 종 중에는 호모 하빌리스(도구를 만들어 쓴 초기 인류)가 있었는데, 그 기원은 약 1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 동아프리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로 수 세기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구와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힘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힘은 처음에는 원시 기술을 통해 나중에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도구와 기술에 위해 보완되었다.
15. 홀로세 초기부터 인간 활동의 증거가 더욱 널리 퍼졌으며, 특히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농업이 부상하면서 더욱 그러했다. 수렵에서 수렵 및 경작 문명으로의 전환은 그 시대부터 연속적으로 보존된 퇴적물인 꽃가루에 명확한 화석 기록을 남겼다. 또한, 농업의 부상과 관련된 산림 개간은 산업혁명이 있기 오래 전에 이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16. 신석기 시대의 농업 혁명에 따라 인류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정착촌에 살기 시작했고,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3세기(기원전 3000~2001년)에는 나일 계곡, 인더스 유역, 그리고 황하 강변에 확고하고 독특한 문명이 형성되었다. 이어진 수 세기 동안 도시화된 문화는 전 세계의 열대 및 온대 지역에 퍼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중남미 및 중국에 확립된 문화는 기원전 1세기에 크게 발전했다. 도시화의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화되었으며, 중세 후기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최초의 도시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인구가 1,000만에서 2,000만 사이인 수많은 도시가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7. 도시화는 세계 인구 폭발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세계 인구가 약 10억이었던 1800년 이래로, 오늘날 인구는 70억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메가시티는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며, 인류세에 독특한 특징이다.
18. 인구가 적었을 때, 경제 활동은 지역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더라도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의 온전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식물과 동물이 널리 살아가며 복원력을 가졌고, 그러한 자원의 인간 이용은 지구 생태계의 전반적인 기능에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기술이 세계 경제를 엄청나게 확장하는 차원으로 밀어붙이는 오늘날,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지원하는 복잡한 지구 시스템이 조립되는 것보다 더 빨리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19. 인간의 발자국은 세계 메가시티 건축물 같은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깊은 영향을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산성도를 높이고 많은 먹이사슬의 기초를 형성하는 수많은 유기체에 스트레스를 주어 해양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구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졌으며 화석 기록에 증거를 남길 것이다.

B. 인류세: 지질학적 시간의 새로운 세(epoch)

20. 2000년 노벨상을 수상한 대기 화학자 파울 크뤼첸은, 많은 핵심 과정이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는 현재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용어로서 이미 과학계에서 널리 논의된 인류세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 개념은 인간에 의해 야기된 지구 환경 변화의 정도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 되었으며, 현재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공식 단위로 인정할 것인지를 ‘국제 층위학(層位學)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Stratigraphy)’에서 논의되고 있다.
21. 다른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속도로 발생한 전환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인류세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산업화 이전의 사건이 인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홍적세(洪積世) 시기 거대 동물군의 멸종의 물결이었으며, 두 번째는 홀로세 초기에 농업의 도래, 이른바 신석기 시대 혁명이었다.
22. 17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배적인 활동으로서 농업의 쇠퇴를 나타냈으며 이 시기는 홀로세 시대에 확립된 것과는 훨씬 다른 궤적을 남겼다. 1750년에 산업혁명이 거의 시작되지 않았음이 분명했지만, 1850년에는 영국을 거의 완전히 변화시켰고, 유럽과 전 세계 다른 국가로 확산되었다. 도시 생활을 위해 농장과 마을을 광범위하게 포기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발전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 중 하나였다.
23.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인간 활동의 전 지구적 영향이 분명히 눈에 띄게 되었다. 빙하 핵에서 검색된 데이터는 여러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의 대기 농도 증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날짜는 놀랄 것 없이 1784년 제임스 와트(James Watt, 1736년-1819년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이자 기계공학자)의 증기 기관 발명과

일치한다.

24. 환경에 대한 인류의 증가하는 영향력은 오래전인 1873년 지질학자 안토니오 스토파니(Antonio Stoppani, 1824년-1891년, 이탈리아 가톨릭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가 “인류 지배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힘과 보편성 면에서 지구의 더 큰 힘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지력”에 대해 말했을 때 인식되었다. 1926년 지구화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블라디미르 베르나드스키(V. I. Vernadsky, 1863년-1945년, 구소련 광물 및 지구 화학자)도 인간의 의식과 사상의 증가하는 영향을 인정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년-1955년, 철학자)과 베르나드스키는 “사상의 세계”를 뜻하는 “지식권(혹은 노스피어: noösphere; 지식권을 생물권의 새로운 상태로 정의하고, 지식권은 생물권 발달의 가장 높은 단계를 나타내며, 그것을 정의하는 요소는 인류의 합리적 활동의 발달)”이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인간 지능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표현했다.
25. 조지 퍼킨스 마시(George Perkins Marsh, 1801년-1882년, 미국의 환경 운동가이자 지속 가능성 개념의 선구자)의 영향력 있는 저서 인간과 자연(Man and Nature, 1864년 출간)은 아마도 인간에 의한 지구 변화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중요한 작품일 것이며, 스토파니(Stoppani)는 이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인류세(Anthropozoic)”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26.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겼다. 그러나 20세기에 새로운 기술, 화석연료 및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지구의 토양, 숲 및 물고기의 인간 사용이 크게 가속화되어 현재에는 보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비되고 있으며, 동시에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7. 21세기 초 인류가 지구에 끼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제조 및 운송 부문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 토질 악화, 소음 및 전자파 오염을 발생했다. 물론, 도시 개발, 조경, 대규모 농업, 삼림 벌채, 강의 댐 건설과 같은 수많은 의도적인 영향도 있다.⁴
28. 이러한 인간의 영향은 대기, 암석권, 수권, 빙권 및 생물권에 포함되어 있다. 인간 활동의 영향은 너무 많고 지배적이어서 지구 생태계의 상호 연결된 주기와 기능을 지배하거나 방해하는 “인류권”을 구성한다. 심각하게 고려 중인 이러한 영향들, 특히 “기후 공학”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평가되어야 하며 관련 거버넌스 구조가 발전해야 한다. 집단적 영향을 통해 인간은 지구 표면과 지구 대기를 전 지구적 공간 규모와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 형성했으며 계속 형성하고 있다.

⁴ Mark Lawrence, “The Anthropocene — Humans in the Earth System”, secon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2 (www.harmonywithnatureun.org).

29. 인간을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지구의 주인으로 보는 인간-환경적 관계, 즉 인간 면제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오랜 관점이 존재한다.⁵
30. 이 교리의 역사적 기원은 이미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의 이전 두 보고서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A/65/314 및 A/66/302).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300년 된 과학적 교리가 너무 단순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물리적 실체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변화 가능한 맥락과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지구 시스템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을 받아들였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기능에 셀 수 없이, 그리고 종종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있다.

III.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의 변모

31. 20세기와 21세기의 2차 과학 혁명 동안 일반적으로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뉴턴 물리학의 인간과 환경 시스템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가정이 도전을 받았고 효과적으로 변경되었다. 뉴턴 물리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년-1955년 독일 물리학자)에 의해 발전된 양자역학 및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32.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은 현재의 과학적 관점에서 우주는 매끄럽게 상호 연결되고 복잡한 전체로 간주되며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의 집합은 우리 개개인이 고립되어 있고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현실적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의해 길러진 환상이다.⁶
33. 현재 생물학 분야 인식으로 지구상의 생명 체계는 분자, 세포는 발생학적 수준에서 스스로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은 대기 가스의 수준을 조절하고 전체의 존재를 영속시키는 조건을 유지한다. 단백질, 지질, 핵산, 세포, 조직, 기관 및 유기체 간의 피드백 루프는 환경의 변화하는 조건에 반응하여 시스템 및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수정한다.
34. 새로운 과학적 이론은 또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우리 종이 다른 생명체와 분리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거나 우리가 우주에서 특권적인 위치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가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가족의

⁵ R. E. Catton and W. R. Dunlap, "Environmental Sociology: A New Paradigm", The American Sociologist, vol. 13 (1978).

⁶ Capital Institute, "Economics, Finance, Governance and Ethics for the Anthropocene", working paper of the Third Millennium Economy (3ME) project, June 2012.

일원이자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선견지명과 공감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있다.⁷

35. 기관, 학계, 과학, 경제 및 시민사회 조직은 인류가 지구와 관계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인류가 지구를 존중하여 대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한 존중은 인류가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꿀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주인이 아닌 지구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수준에서 우리 종의 생존에 근본적이며 우리 자신과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36. 환경 사회학, 생태 경제학 및 법학과 같은 분야의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지난 2세기 동안의 놀라운 과학적 변화와 발전이 현대 경제학의 틀에서 사실상 벗어났다고 믿는다. 그들은 현 경제 체제가 인간 면제주의 패러다임에 편안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구는 인간의 것이며 환경은 인간 경제의 부분집합이라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37.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다른 분야의 과학자와 학자들은 그러한 가정이 과학적 현실과 상충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왔다. 인류와 인류의 경제적 목표는 지구 시스템의 일부로, 행성과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통합된 전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인류는 우리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를 사용하기보다 지구에 봉사해야 할 때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학을 고려할 때, 인간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손상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손상을 입힐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천천히 고려하기 시작했다.
38. 생태 경제학자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교리와 그 목적에 도전했다. 경제이론의 근본적인 목표가 소수를 위한 극단적인 부의 성장을 계속 지원하여 전반적인 사회 및 생태학적 복지를 파괴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제공하고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가 생명의 온전성, 복원력 및 아름다움을 보존 및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가?
39. 대부분의 경우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과학자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을 아직 채택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약 10,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 시작된 홀로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전히 가르치고

⁷ Capital Institute, "Economics, Finance, Governance and Ethics for the Anthropocene", working paper of the Third Millennium Economy (3ME) project, June 2012.

있다. 인간 행동이 지구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한다.

40.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가공할 범위와 확장은 현대의 많은 경제학자에 의해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자연과의 조화는 그러한 접근을 위한 과학적, 윤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수반한다. 현대 물리학과 생태학의 기본 법칙이 없다면 성장의 한계는 쉽게 간과될 수 있다. 윤리적 기반이 없으면 경제 원리가 잘못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계효용체감의 원칙은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보다 빈곤을 완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반영하는 윤리적 기반이 없다면 한계 효용의 감소는 생산자(및 광고주)로 하여금 그밖에 충분히 만족하여 물린 사회에서 새로운 시장에 부응하게 할 뿐이다.⁸
41. 적절하게 기반을 둔 보다 생태학적 정보에 입각한 경제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생(renewable) 가능한 자원 추출은 재생(renewable)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 오염물 배출은 흡수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추출이나 오염 중 어느 것도 필수 생태계 기능을 위협할 수 없다.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필수 자원은 대체 자원의 개발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없다.⁹
42. 현재 정의된 경제성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총체적인 생산과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너무 자주 간과된다. 이는 증가하는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증가하는 인구 및/또는 1인당 소비를 수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태양전지판이나 기타 녹색 제품의 개발은 그러한 활동이 총체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종합하면, GDP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은 인간이 아닌 종의 경쟁적 배제에서 창출된다. 우리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을 그것이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성장은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기보다는 경제적 목표를 유지(초과하지는 않더라도)할 뿐이다.¹⁰
43. 주류 경제 용어에서 성장은 편익의 측면에서 측정될 뿐만 아니라, 부의 생산을 측정하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은 정화 및 환경 개선에

⁸ Joshua Farley, "Economics in Harmony with Nature and Science", secon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2 (www.harmonywithnatureun.org).

⁹ Joshua Farley, "Economics in Harmony with Nature and Science", secon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2 (www.harmonywithnatureun.org).

¹⁰ Brian Czech, "Steady State Economics for Harmonizing with Nature", secon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2 (www.harmonywithnatureun.org).

지출된 비용의 결과로 경제적 이익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오염은 GDP에서 긍정적인 지표로 나타난다.¹¹ 사회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GDP가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까닭은 GDP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지표로서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² 이와 관련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GDP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진전 및 복지 측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UN은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 작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¹³

44. 시민사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 경제학자, 법률 전문가들은 지구 자연계의 점진적 파괴를 비난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과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기 위해 자연에 대한 권리 기반 운동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한 자연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어야 할 재산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를 둔, 인간의 잘못된 행동 양식으로 인해 환경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경고에 사회가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소수를 위한 사적 부를 쌓아 올리기 위해 자연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왜곡하는 파괴적인 경제정책들을 시급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는 인간과 지구 자체의 더 큰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45. 그러한 체계에서 법, 과학 그리고 경제학의 원칙은 지구에 대한 고려에서 정초될 것이다.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년-2009년, 문화 역사가, 생태 신학자)는 그의 간행물 “위대한 과업(The Great Work, 1999 출판)”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연 생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 지원의 지속적인 패턴을 제공하는, 다른 생명체와 상호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는 이러한 유형의 노력이 인간을 행성의 역동성 안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이며, “지구 공동체의 인간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생물학적 구성 요소에게도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철학과 법적 체계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46. 생태 법칙의 지배에 기반을 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핵심

¹¹ Peter G. Brown and Geoffrey Garver, Right Relationship: Building a Whole Earth Economy (Berrett-Koehler), 2009.

¹² A/65/314, resolutions 65/164 and 66/204. 참조

¹³ Resolution 66/288, para. 38.

¹⁴ Vandana Shiva, statement on Harmony with Nature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Peter G. Brown, The Commonwealth of Life: Economics and Politics for a Flourishing Earth (Black Rose Books), 2007; Cormac Cullinan, “Governing People for Earth: The Challenge of the Twenty-first Century”, first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1 (www.harmonywithnatureun.org); Riane Eisler, “The Real Wealth of Nations: Creating an Economics of Partnership”, first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1 (www.harmonywithnatureun.org); Linda Sheehan, Earth Law Center (<http://earthlawcenter.org>);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 (www.therightsofnature.org).

과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세계에서 자신의 생태 시민성을 수용하고 지구 시스템의 복잡한 작동을 존중할 책임에 따라 행동하는 민주주의로의 변화된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유지하는 생태적 토대에 다시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잘 작동하는 질서 속에서 그러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다.

47. 지금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 증가하는 통화와 부, 수요와 공급, 시장 역학 및 재정적 인센티브 증가와 같은 전통적인 용어로만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받아들이고, 세계 경제가 의존하는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이해는 등한시켰다.
48. 우리는 200년 전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년-1859년, 독일 지리학자, 박물학자, 탐험가)가 인간이 자연의 풍요로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인류가 비용이 아닌 세계 유기체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용어인 “세계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49. 신고전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이윤 창출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 의식을 연구 조사하는 기술의 사용을 통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 예로 우리의 생각, 신념, 감정 및 인식이 우리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관련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비자 심리과학의 상업적 적용이 있다.
50. 이 분야의 공식적인 정의 중 하나로 소비자 심리과학을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대한, 그리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제품, 서비스, 경험 또는 아이디어의 선택, 획득, 사용 및 폐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소비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한다.¹⁵ 소비자 행동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 인류학 및 경제학적 요소를 혼합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인구 통계 및 행동 변수와 같은 개별 소비자의 특성도 연구한다. 또한, 가족, 친구, 준거집단 및 사회 전반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려 시도한다.
51. 생산자가 소비자가 제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광고, 브랜드 및 사회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메시지에 대한 뇌의 반응에 대한 연구인 신경 마케팅의 발전이 점점 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신경 마케팅은 내부 신체 구조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뇌에서 방출되는 전기 주파수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자기공명영상 기술을

¹⁵ <http://psychology.about.com/od/branchesofpsychology1/a/consumer-psychology.htm>.참조.

비롯한 의로기술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소비자 제품 디자인에서 뇌가 다양한 시각적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¹⁶

52. 이러한 마케팅 기법의 존재 이유는 뇌가 의식 활동에 에너지의 2%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의식적 처리에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파생된다. 신경 마케팅(Neuromarketers)는 소비자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 조사 방법이 본질적으로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참가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적인 인상을 결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53. 새로운 시대를 특징짓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Know-How(실질적인 기술이나 경험)”의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 가능한 기술 선택의 평가나 “Know-What(목표나 상황을 알, 혹은 목적의식)”의 신중한 식별, 기술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요구에 대한 참여 분석인 “Know-Why(원리의 규명)”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어떤 이슈에 기술적 투입이 필요한지, 어떤 기본 원칙이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이슈와 다시 통합되어야 한다. 인류 전체가 소비재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기술력이 대기, 수권 및 생물권과의 조화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생태 경제학과 깊이 얽혀있는 영역인 기술 및 위험 평가의 핵심 범주에 속한다.¹⁷
5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완전히 도모하는 데에 방해되는 현재 경제 시스템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과소비 사회가 과도하게 홍보되고 광고되는 상황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르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다. 2050년까지 추정되는 90억 인구 모두의 현재 생활 방식을 수용하려면 몇 개의 행성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와 우리 자신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막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전반적인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정 의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년-1948년, 인도 변호사, 정치 윤리학자)는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55.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큰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의 도전 과제인 교통, 기아, 빈곤 및 폭력 대부분은 널리 퍼진 “지배 패러다임”의 징후이다. 우리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결합할 때, 이 패러다임은 우리를 지구 시스템의 능력 이상으로 이끌 수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¹⁸

¹⁶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persuaders/etc/neuro.html>.

¹⁷ Pat Mooney, “Who Will Control the Green Economy”, secon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2 (www.harmonywithnatureun.org).

56. 다양한 사회 분야의 과학자와 학자들은 이미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인간이 주요 환경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벅찬 일이 눈앞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 세계 사회는 현재의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넘어서 파괴적인 통치 프로세스에 도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의도적으로 구축된 것의 변화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인간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우리가 진정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V. 인류와 지구 관계의 윤리적 기반

57. 우리의 현재 상황은 작가 토마스 베리(Thomas Berry)의 간단한 진술로 요약될 수 있다. “20세기에 인간의 영광은 지구의 적막감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적막함은 인간의 운명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 모든 인간의 제도, 직업, 프로그램 및 활동의 척도는 인간-지구의 상호 증진 관계를 억제, 무시 또는 촉진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¹⁹
58. 학자들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 파생된 시장 시스템의 역학에 대한 비과학적인 가정에 따라 끊임없이 재확인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 시스템이, 인간과 환경 시스템 사이의 깊은 관계로 상호 연결된 모자이크의 과학에 뿌리를 둔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59. 이 새로운 경제적 접근 방식은, 궁극적 가치가 지구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식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이에 입각해야 한다.
60. 최근의 과학적 발전은 우리의 환경적 생명 유지 구조를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인간 활동의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과학은 또한 지구 시스템이 종과 생태계를 포함한 생물권 간의 비선형 피드백과 복잡한 상호작용과 물리적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61. 기후 시스템은 대기, 해양, 육지 및 암석권 사이의 가스 및 에너지 교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대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된다. 육지와 수생 생태계는 담수와 비옥한 토양과 같이 지구상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과 자원을 제공할 뿐만

¹⁸ Riane Eisler, “The Real Wealth of Nations: Creating an Economics of Partnerships”, first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1 (www.harmonywithnatureun.org).

¹⁹ Thomas Berry, *The Dream of the Earth* (Sierra Club), 1988.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의 기후변화와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62. 행성 생명 유지 시스템의 보호는 분명히 새로운 종류의 거버넌스 대응을 요구하는 과학적으로 정의된 상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범주이다. 그러한 거버넌스가 비시장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3. 물리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재정, 거버넌스 등 여러 분야의 과학자와 학자들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지구가 우리의 기존 경제 시스템을 위한 자원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의 많은 윤리적 신념과 윤리적 원칙은 인간이 지구의 생명의 일부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기존 도덕적 신념이 모두 폐기되거나 전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가정이 수 세기 동안 시험, 조정 및 재수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도덕적 신념도 시험, 조정 및 재수정이 요구된다.
64. 1500년에 유럽의 과학자들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양과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도록 교육받았고 모든 천문학 문헌은 그렇게 말했다. 그 당시 지구는 과학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1512년에 코페르니쿠스는 오랫동안 우주의 움직이지 않는 중심으로 여겨져 온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결론지었다.
65. 수 세기에 걸친 다양한 과학적 진보는 환원론자에서 벗어나 지구 시스템과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관찰, 인식 및 연구에서 전체적인 접근법으로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와 그 안에서 인류의 역할을 도왔던 과거의 발견을 분별, 보존, 축적해, 인류는 이질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분리된 우주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확립할 수 있었다.
66. 현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발견은 인류와 지구 체제가 이윤의 축만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 경제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빈곤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상품과 서비스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지도 않았으며, 지구 시스템을 잘 돌보지도 못했다. 시급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과학의 발견을 적용해야 한다.

V. 결론

67. 지난 100년간의 과학적 진보를 포함하는 지구 중심의 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영역과 관행을 식별, 유지 및 구축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68. 그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인류가 의존하는 지구에 대한 깊은 존중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구는 인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왔고 이제는 인류가 보답해야 할 때이다.
69.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 1936년-2011년, 체코의 정치가, 극작가, 전직 반체제 인사)에 의하면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인류의 이해만이 새로운 행동 모델, 삶의 가치 및 목표의 척도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이러한 수단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정신과 의미를 특정한 규정, 조약 및 제도에 묶을 수 있을 것이다.”
70. 많은 과학자, 학자, 환경 변호사, 정치 활동가, 예술가, 시민의 목소리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생각을 기초로 반향하고, 실증하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다. 이들은 생물권을 구성하는 생물과 무생물의 복합체, 즉 모든 생명체의 서식지인 자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자연을 세계 경제를 먹여 살리는 자원의 집합체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무한한 우주에서 유래하고 존재하는 통합 생태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²⁰
71. 과학자들은 세계의 물리적 현실에 대하여 높은 통찰력이 있으나 우리 주변의 자연 행동의 일부분을 넘어서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은 실제 삶의 범위와 우주에 대해 극히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겸손함은 우리 행복과 지구에서 우리 미래와 관련된 “현실의 희미한 빛”에 대한 이전의 견해에 새로운 타당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현실의 희미한 빛을 엿보더라도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경외심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존경심은 무관심보다는 낫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감싸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갈 이유를 준다.²¹
72. 원주민 지도자이자 생태학적 책임 대변인인 시애틀 추장(1780-1866)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가닥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물에 무엇을 하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성에는 역사가 있으며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과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혹은 거주 가능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수억 년이 걸렸다. 가속화되는 기술 능력과 이의 확장은, 세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결합하여,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과 더불어 우리 환경에 비할 데 없는 도전 과제이다.²²

²⁰ Barbara Baudot, statement by the Triglav Circle on Harmony with Nature, November 2011 (www.triglavcircleonline.org).

²¹ Barbara Baudot, statement by the Triglav Circle on Harmony with Nature, November 2011 (www.triglavcircleonline.org).

73. 우리는 우리의 지식, 힘, 숫자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위험한 시점에 있다. 우리 세계의 거주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이 균형에 달려 있으며, 우리 생애 동안 외교가 이보다 더 요구된 적은 결코 없었다.²³ 인류는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VI. 권고 사항

74.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유엔, 국제 및 과학 공동체, 주요 그룹 및 전 세계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어 왔다. 앞서 논의한 하모니워드 네이처에 대한 총회의 상호적 대화,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리고 위 분석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다음의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 모든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문제를 고려하여 본 문서에 요약되어 있는 하모니워드네이처 접근 방식을 이끌어낼 것
- (b) 지속가능발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류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발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지구 시스템의 건강과 온전성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결의안 66/288)의 40항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작업을 추가로 소개할 것

²² Owen Gingerich, “The Harmony of Nature”, secon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2 (www.harmonywithnatureun.org).

²³ Owen Gingerich, “The Harmony of Nature”, secon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pril 2012 (www.harmonywithnatureun.org).



총회

배포: 일반

2014년 2월 12일원

문: 영어

제68차 회기

의제 항목 19(h)

지속가능발전

2013년 12월 20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제2 위원회 보고서(A/68/438/Add.8)

68/216. 하모니워드네이처

총회는,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¹ 의제 21,² 의제 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³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⁵을 재확인하고,

2009년 12월 21일 결의안 64/196, 2010년 12월 20일 결의안 65/164 및 2011년 12월 22일 결의안 66/204 그리고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한 2009년 4월 22일 결의안 63/278을 상기하고,

¹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vol. I,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I.8 and corrigendum), resolution 1, annex I.

² Ibid., annex II.

³ Resolution S-19/2, annex.

⁴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ust–4 September 200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II.A.1 and corrigendum), chap. I, resolution 1, annex.

⁵ Ibid., resolution 2, annex.

1982년 세계 자연 현장을 상기하고,⁶

인류와 지구의 관계를 위한 더욱 윤리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다양한 경제적 접근 방식을 논의함으로써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22일 개최된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를 주목하고,

또한 2010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다민족국가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 개최한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 권리에 관한 첫 번째 세계 민중대회를 주목하고,⁷

많은 국가가 어머니 지구를 모든 생명과 영양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국가들이 어머니 지구와 인류를 분리할 수 없고, 상호 연관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상기하고,⁸

증명된 환경 악화, 잠재적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내총생산이 인간 활동에서 비롯되는 환경 악화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는 작업에 관해서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세 가지 차원에서 기초통계자료의 불균등한 이용가능성과 그 질과 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또한 인정하고,

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 지구적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가 리오 원칙을 고려하여 선진국이 선도하고 모든 국가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음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촉진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많은 고대문명, 원주민 및 원주민 문화가 인간과 자연 간의 공생관계를 이해할 풍부한 역사와

⁶ Resolution 37/7, annex.

⁷ A/64/777, annexes I and II.

⁸ Resolution 66/288, annex.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조성할 본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 및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노력과 함께 지구 생명의 불안정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학계 및 과학자가 수행한 작업을 인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지식의 다른 영역에서 학문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체론적인 개념임을 고려하면서,

1.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의 4번째 보고서를 주목하고,⁹
2. 인류와 지구의 관계에 관한 더 많은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주제에 관한 추가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다른 경제적 접근법에 대해 2013년 4월 22일에 열린 것과 같은 총회 상호대화에서의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하모니워드 네이처에 관한 기존 연구 및 보고서를 고려하기 위해 회원국을 초청하고,
3.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차원의 균형 잡힌 통합을 위해 하모니워드네이처에 대한 토론의 진전을 위하여,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014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소집될 본회의에서 열릴 제68차 총회에서, 정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며;
4.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정교화할 때 자연과의 조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권장하고,
5.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소집될 본회의에서 열리는 상호대화에 독립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결의를 상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일단 설립된 이 신탁기금에 대한 기부를 고려하도록 초대하고,
6.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 사무국과 사무국의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 분과가 주최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를 계기로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을 상기하고, 사무총장에게, 전통 지식의 사용과 기존 개별 국가 법률에서 성공 사례를 포함하여, 과학적 학제 간 작업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자연과 조화 속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체론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활동들에 대한 정보와 공헌을 수집함으로써, 분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기존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며,

⁹ A/68/325 and Corr.1.

7. 지구와 그 생태계가 우리의 고향이며 “어머니 지구”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된 표현임을 인정하고, 일부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승인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고,
8.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9. 국가들을 초대하여;
 - (a) 현재의 과학적 정보에 의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인류와 자연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에 대한 지원과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원동력과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경제적 접근 방식을 식별해, 전체론적 개념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더욱 구축하고,
 - (b) 원주민 문화에서 발견되는 지구와의 조화를 촉진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자연보호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수준부터 지역 사회 수준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고,
10. 모든 국가와 유엔 체계 관련 기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기초통계 데이터의 질과 양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원조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와 유엔 체제 관련 기관을 초청하고,
11. 국내총생산을 보완하기 위한 광범위한 진전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현행의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관행에 대한 현황 파악에 기반한 이 작업이 최상의 관행을 식별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현존하는 노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할, 광범위한 진전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에 통계위원회가 착수한 점을 환영하며,¹⁰
12. 사무총장이 제69차 회의에서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13.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의 항목 아래 제69차 회기에서 “하모니위드네이처”라는

¹⁰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3, Supplement No. 4 (E/2013/24), chap. I, sect. C, decision 44/114.

하위 항목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기로 결정한다.

제71차 본회의
2013년 12월 20일



총회

배포: 일반

2013년 8월 15일

문: 영어

제68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19(h)*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총회 결의 67/214의 요청에 의거하여 제출된다. 이 결의안에서 총회는 또한 제67차 회기에서, 총회 의장이 2013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기념식에서 하모니워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제3차 상호대화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사무총장에게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한 2015년 이후 유엔 발전 의제 논의를 위한 자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68차 회기에서 결의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A/68/150.

목차

- I. 서문
- II. 자연의 사회적 구성
- III. 인간 구성물로서의 환경 출현
- IV. 국제 의제에서의 환경
- V. 환경 변화를 통한 발전
- VI. 현재의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경제 성장
- VII.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 자연과의 조화
- VIII. 결론
- IX. 권고

I. 서문

1. 총회는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라는 제목의 결의안 67/214호에서 총회 의장에게, 제67차 회기에서, 2013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기념식 동안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소집될 총회 본회의에서 이 주제에 관한 상호대화가 개최될 수 있도록 소집을 요청하였고, 제68차 회기에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논의 자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결의안 이행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총회 상호대화의 목적은 인류와 지구의 관계에 대한 보다 윤리적 근거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다른 경제적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 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결의안 66/288, 부속서)에서 회원국과 이해당사자들은 “어머니 지구 (Mother Earth)”가 다수의 사회에서 공동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이라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유념하였다.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와 관련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의 복지가 재화와 서비스의 축적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의 행복이 경제 발전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생태경제학은 우리와 자연의 불균형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따라서 생태경제학은 지속가능성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그 안에서 보존하고 투자함으로써 생태적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복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4. 생태경제학 분야에서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공동의 복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생태경제학은 세대 간 평등을 포함하여 번영하는 자연계와 통합된 건강한 사회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미 이러한 관점을 채택했으며, 자국의 법에서 자연의 권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정하였다.
5.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과 그 종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조성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시켜야 할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6.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 공동의 복지와 발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생태경제학은 공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7.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는 현실적이고 증가하는 문제이며, 종종 탐욕에 의해 추진되는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착취가 지구의 취약한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점점 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근시안적인 상업 거래가 어류 자원을 감소시키고, 해양 산성은 바다 전체의 먹이사슬을 위협한다.
8. 발전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인류가 지구와 보다 전체적인 관계 속에 공존하려면, 자연 시스템을 고려하고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부터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까지 이 문제를 다루는 모든 주요 정상회담과 회의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9. 동시에, 우리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만 가능한 경제적 효율성과 좋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천연자원의 고갈, 오염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 외부 효과는 비용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이러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향한 움직임에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 의식도 높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속가능성을 발전의 지침으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10. 다음 장에서는 자연이 환경에 관한 국제적 담론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지, 경제 발전과 경제학 분야가 자연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어떻게 지속되었으며, 전체적 형태의 지속가능발전 성취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II. 자연의 사회적 구성

11. 그 모든 놀라운 복잡성 속에서 자연의 개념은 자연계의 기본 요소인 나무, 강, 동물에서부터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이나 인간 문명이 없는 세계, 우리의 행성을 넘어 우주에 까지 이른다. 자연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의미하며, 형이상학적, 아원자적, 우주적 영역 어디서나 발견된다. 개념으로서 그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해 왔다.¹
12. 대부분의 관찰자는 자연은 단순하고 대상화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과 마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사이의 모든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와 시인, 그리고 연구, 상상력, 직관, 영적 계시, 영감으로 자연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필요하다.
13. 철학자 고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주 전체와 그 모든 부분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경이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은 우리 육체적 삶의 중심지이자 영양소이며, 일시적이고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에 초월적인 가치를 부여한다.²
14. 물리적 차원과 형이상학적 차원이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과학자, 철학자 및 시인이 자연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여전히 신비와 매혹에 뒤덮여 있다. 지구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증가하는 지식과 이해, 영혼과 이성을 가진 국제 사회에 달려 있다.
15. 지구에 가해진 피해를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고, 그 희망이 무생물 세계와 인간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생태학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한때 광물의 왕국, 동식물의 왕국, 인간의 왕국으로 불리던 것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는 사라졌다. 따라서 생태학 개념의 범위는 보편적이다.
16. 환경 철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자 “심층 생태학(deep ecology)”라는 용어를 만든 아르네 네스(Arne Naess)는 오슬로 대학(University of Oslo)에서 30년간 철학을 가르친 후, 1970년대 초에 “표층생태운동과 심층적이고 멀리 보는 생태운동(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이라는 짧은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¹ Barbara Baudot, “Nature: The Lost Sheep in the World Debate on the Environment”, delivered at the New Hampshire Institute of Politics, Saint Anselm College (April 2013) and at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September 2012) (unpublished).

² Ronald Dworkin, Religion without Go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두 종류의 생태운동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주로 오염, 천연자원의 고갈, 인간을 위한 지구의 유용성(인간중심주의)과 관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자연계의 풍요로움, 다양성 및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심층 생태학이다.

17. 심층 생태학은 모든 생명체, 즉 동식물이 살고 번성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네스는 2009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 발표한 마지막 에세이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은 행성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자연에 충실해야 한다. 그 생각은 모든 인간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해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Ⅲ. 인간 구성물로서의 환경 출현

18. 환경은 산업화 확산 및 세계 경제의 현대화와 함께 19세기 초반에 시작된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과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은 우리의 사용을 위한 원자재라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 개념으로서 “환경(environment)”은 “자연(nature)”보다 더 큰 정치적 함의를 가지며, 그 개념의 그늘에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고려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자연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19. 그러나 엄밀히 말해 자연계를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해롭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자연 보존과 관련된 가치관이다. 자연은 행복의 가치와 인간 정신의 만족에 대한 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자연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때, 우리는 그것이 단편적인 방식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 19세기에 동서양의 수많은 사상가와 정치인은 자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그들의 감상을 기록했다. 그들의 작업은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이전 3개의 사무총장 보고서 (A/65/314, A/66/302, A/67/317)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그들은 농업과 산업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에서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문명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21.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현대 산업 시대에서, 특히 서구 문명에서 전반적인 환멸(disenchantment)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리처드 젠킨스(Richard Jenkins)에 따르면, 환멸은 “인간이 원칙적으로 계산을 통해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다.³ 환멸은 자연을 인간의 개선과 물질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과학 및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다.

22. 이러한 광범위한 환멸을 가중하는 것은 인구의 일부, 특히 도시 거주자들이 “자연 결핍 장애(nature deficit disorder)”로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이다. 주변 환경을 감안 할 때 자연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부족한 많은 도시 거주자들은 자연계의 장엄함이나 그것의 다층적 복잡성과 경이로움을 충분히 접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23. “자연 결핍 장애”라는 개념을 만든 저널리스트이자 아동과 자연 네트워크(Childrens and Nature Network)의 설립자인 리처드 루브(Richard Louv)는 많은 어린이가 이러한 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30년 동안 아이들과 자연에서의 직접적인 경험 사이의 급속한 이탈이 증가하는 속도는 ... 미래 세대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자체의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⁴

24. 이 장애의 증상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발견된다. 확실히 강력한 환경 옹호자 중 많은 이들은 어린 시절에 자연환경의 경이로움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다.

25. 우리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에 반영된 현대 사회의 과도함에 대응하여, 생태 복원력 증가를 위해 인간의 삶을 조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을 촉진하려는 이니셔티브가 준비되어 있다. 루이즈 루니(Louise Rooney)와 캐서린 던(Catherine Dunne)이 제안한 “전환 마을(transition towns)”이라는 아이디어는 천연 자원의 무자비한 착취에 대한 대응으로, 긴 공급망과 화석 연료에 덜 의존적인 지역 규모의 작은 공동체를 제공하는 대안이다. 전환 마을 이니셔티브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장이 경제적 선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응하고, 공동체 관계를 강화하고, 행복, 사회 정의 및 회복력을 활성화하는 지역 및 공동체 공유 생산과 청정 에너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경제 정책이 포괄적이어야 하고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6. 2013년 5월 현재 43개 국가에서 1,100개 이상의 전환 마을 계획이 확인되었다.⁵ 킨세일 대학(Kinsale College of Further Education)의 학생들이 작성한 킨세일 2021-에너지 저감 행동계획(Kinsale energy descent action plan 2021)과 같은 일부 이니셔티브는

³ Richard Jenkins, “Disenchantment, Enchantment and Re-Enchantment: Max Weber at the Millennium”, *Mind and Matter*, vol. 10, No. 2, 2012.

⁴ See Richard Louv, *Last Child in the Woods: Saving Our Children from Nature-Deficit Disorder*, Algonquin Books, 2005.

⁵ <http://www.transitionnetwork.org> 참조

특히 에너지 및 화석 연료 감소, 식품 및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실용적이고 세부적인 단계를 설정한다.

27. 위 내용에서, 우리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소비 사회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보다 광범위하고 공동체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IV. 국제 의제에서의 환경

28.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환경을 국제적인 의제로 설정했다. 이 회의는 산성비, 발트해의 오염, 살충제 및 어류와 조류의 중금속 수치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시기에, 산업 폐기물이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스웨덴이 처음 제안하였다. 국가들은 그들의 환경이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취한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29. 국제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환경의 다양한 측면은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이며, 따라서 그들은 경험적 평가와 가시적인 진전에 도움이 된다. “환경”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세계관은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설명한다.

환경: 우리의 주변 환경

30. 사물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환경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이전에는 일반적이지 않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미적 감상을 전달하는 데에만 사용되었다.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이 용어는 자원의 고갈과 오염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다. 정치적으로, 이 개념은 현재 환경과 보존에 관한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of Environment and Conservation)에서 “환경 보존, 특히 오염의 영향으로 인한 우려; 이와 관련된 정치와 정책”으로 정의되며, 환경주의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환경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둘러싼 물리적, 화학적, 생물 조건을 가리킨다.

환경: 개인 또는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집합(여기서는 평화, 정의,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31. 현대 환경 정치의 영역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접근법은 19세기에 사용되었다. 그것은 산업 국가의 천연 자원 및 생물권(biosphere) 변화에 초점을 맞춘

담론과 남-북 대화의 일부로 도입된 담론을 구분한다. 이는 1972년 제1차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의 제1 원칙에 간직되어 있다.

“인간은 삶에 존엄과 행복을 주는 환경 안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적합한 삶의 조건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를 갖고 있고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갖는다.”

32. 그다음, 사회경제 발전은 국제 환경정책 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기 위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 착취, 투자의 방향, 기술 개발 방향, 제도적 변화가 모두 함께 작용하는 변화 전략에서 환경 보호와 사회경제적 진보를 관련짓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이디어로 구현된다.

환경: 유기체나 생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그 형태와 기능을 결정

33. 세 번째 관점은 환경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생태 개념에서 파생된다. 생물학에 대한 환경과 보존에 관한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는 이러한 관점을 포함한다. 그 사전에서는 생태학을 살아있는 유기체와 주변 환경, 서식지 및 삶의 방식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 동식물 경제의 과학으로 정의한다. 이 관점은 지구의 거주자와 환경을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공생 관계라고 본다.

34. 따라서 새로운 범주의 문제인 “글로벌 이슈”가 등장하였다. 스톡홀름 회의(The Stockholm Conference)는 국가적 관심과 상황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렇게 연관된 세계가 수많은 공동의 제약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인식한 1970년대 일련의 중요한 유엔 회의의 서막이었다.

35. 석유 위기 영향이 추가되면서 1970년대 이르러서야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자본 형성이나 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독자 생존 가능한 자연계(또는 천연자원)의 장기적인 유용성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Gro Harlem Bruntland)은 1987년 총회에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소개하면서, 환경을 우리 모두가 사는 장소로, 발전을 우리 모두가 거주지 내에서 우리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⁶ 환경에 대한 브룬틀란의 정의는 경제학과 생태학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⁶ A/42/427 부속서 참조

36.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의제 21(Agenda 21)의 채택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 의제 21의 이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지구의 상호의존성 및 인간 가족의 복지, 더 큰 생명 공동체,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책임 공유 의식을 고취하는” 지구 헌장(Earth Charter)에 제시되어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결과 문서에서 인간은 환경 사고방식의 중심에 남아있었다.
37. 그다음으로 환경을 다룬 중요한 국제회의는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였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인류의 생존이 건강한 환경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8. 10년 후인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 문서는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접근법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접근법은 사회, 환경적 고려사항과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 문서는 환경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강화하였다.

V. 환경 변화를 통한 발전

39. 발전 과정을 통해, 물체나 유기체의 잠재력은 증진되고 향상된다. 18세기 말, 사회사의 보수주의 창시자인 유스트스 뢰저(Justus Moser)는 사회 변화의 점진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어 단어인 *발전(Entwicklung)*을 사용했다.
40. 1800년대에 *Entwicklung*은 재귀동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기 발전(self-development)이 유행했고, 발전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발전을 자연법과 같은 방식으로 펼쳐진 역사의 과정으로 묘사했다. 헤겔의 역사 개념과 다윈의 진화 개념은 모두 어느 정도 우리의 발전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41. 발전은 정치인들이 산업 생산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발전은 사회 진화를 위한 선형적 접근법을 규정하게 되었다.
42. 19세기 후반의 영어 출판물들은 진화의 맥락에서 발전을 설명하였으며, 많은 저자가 그들의 글에서 주요 이용 용어로 발전을 계속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책 제목에는 진화를 도입하였다.

⁷ <http://www.earthcharterinaction.org> 참조

43. 20세기 초에 이 용어의 새로운 사용이 확산되었다. 그때부터 “도시 개발(urban development)”은 도시 공간의 거대하고 동질적인 산업 생산을 기반으로 도시 환경을 재형성하는 특정한 방식을 의미하였다.
44. 한 세기를 거치면서 도시 개발 및 식민지 개발(colonial development)과 관련된 의미들이 개발의 의미를 바꾸었으며, 이제 이 용어의 중요성은 이것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45. 발전은 성장, 진화, 성숙과 같이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용어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생각, 행동을 어느 정도 무분별하게 하는 의미의 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용어는 개인과 사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필요하고,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법에 의거하여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발전은 1세기 전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만든 의미, “발전은 이 순간부터 우리를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우리를 해결책으로 이끌 수 있는 마법의 단어이다.”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⁸
46. 사회 구성 후 2세기 동안 깊이 뿌리내린 발전이라는 단어의 긍정적 의미는 지구 인구의 3분의 2에게 현재 많은 사회의 바람직하지 않고, 품위 없는 상태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는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VI. 현재의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경제 성장

47. 경제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Oiko*와 “관리하다”를 의미하는 *nemein*에서 파생되어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oikonomos*에서 유래했다. *oikonomos*에서 파생된 *Oikonomi*는 “가정 또는 가족 관리”라는 의미뿐 아니라 “절약”, “지시”, “행정”, “배치”, “국가의 공적 수입”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1440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경제라는 단어는 “경제 문제의 관리, 이 경우에는 수도원의 관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오늘날의 경제라는 단어의 사용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신고전파 경제 체제를 지칭하는데, 이는 19세기나 20세기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48. 수 세기에 걸쳐 발전의 의미는 점차 경제 성장으로 축소되었다. 발전이 경제적으로

⁸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Press, 2012.

낙후된 지역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로 구성된다는 생각은 1944년 아서 루이스(W. Arthur Lewis)가 처음 제안하였으며, 1947년 유엔 헌장에 통합되었다.

49.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배가 아닌 성장이다.”라는 1955년 루이스의 말은 경제 성장에 대한 강조가 발전 관련 생각의 전 분야에 스며들어 있음을 반영한다. 영향력 있는 개발 경제학자 폴 바란(Paul Baran)은 1957년 성장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글을 썼으며, 성장 또는 개발을 1인당 물질 재화 생산의 증가라고 정의했다.
50. 1960년대 제1차 유엔 개발 10년(First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별개로 고려하였으나, 1970년대 제2차 유엔 개발 10년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때는 정책 및 프로그램 공식화에 경제 및 사회적 요소를 완전히 통합할 수 있도록 발전과 계획에 통일된 접근법을 요구하였다.
5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는 분산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느리게 진화하였다. 환경, 인구, 기아, 여성, 고용 등 주요 현안이 연이어 전면에 등장했다. 모든 이슈는 대중과 기관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독립적으로 추진되었다.
52. 통일된 원칙에 대한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계속되었다. 1974년, 꼬코옥 선언(Cocoyoc Declaration)은 발전의 목적이 사물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식량, 피난처, 교육, 고용, 보건 등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더 심하게는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성장 과정은 발전의 개념을 왜곡한 것이다.⁹ 이러한 개념 중 일부는 1975년 제의된 또 다른 발전 방식, 즉 인간 중심 발전인 다그 함마르셴드 재단(Dag Hammarskjöld Foundation)의 제안에서 확장되었다.
53. 다음 10년인 1980년대는 “발전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렸다. 많은 국가에서 “조정 과정”은 좁은 의미로 해석된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이전의 성과를 포기하거나 해체하는 것을 의미했다. 1985년이 되자 발전 후 시대가 도래 하는 것 같았다.⁸ 28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발전 의제인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54.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에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노선을 따르는 새로운 발전 정신이 탄생했다. 북부에서는 재개발(redevelopment), 즉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금은 쓸모없게 된 것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북부에서는 개발되어 온 것이

⁹ UNEP Series A/C.2/292, 1974년 10월 8~12일, 유엔 환경 계획/자원 사용, 환경, 발전 전략 패턴에 관한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심포지엄(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Symposium on Patterns of Resource Us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trategies)에서 채택된 꼬코옥 선언 참조

파괴, 해체 또는 대체되는 속도와 조건(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와 유독성 살충제)이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남부에서는 재개발을 위해 소위 조정 과정에 의해 남겨진 것의 해체를 필요로 했다.

55. 개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재개발은 앞서 언급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정의 및 설명된 대로 지속가능발전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주류 해석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종종 엄청나게 다양한 자연 및 사회적 삶의 번영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어왔다. 지속가능발전은 원래 이해되었던 대로, 전체론, 회복력 및 형평성의 개념을 고려하였지만, 그러한 본질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운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현재 시장에서의 효용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미래 비용을 할인하는 경제 성장 모델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이 오늘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에게 제공하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무시한다.
56. 경제학의 창시자들은 부족, 결핍, 불충분함, 검소함을 의미하는 희소성에서 경제학 이론 구성의 초석을 찾았다.
57. “희소성의 법칙”은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큰 반면 그 수단은 개선할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기술적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 제한한 것이다. 이 가정은 수단(자원)의 할당에 대한 선택을 암시한다. 이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통해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제 문제를 규정한다.
58. 런던 경제과학학교(School of Economic Science)의 이안 메이슨(Ian Mason) 교장은 현재 시장 시스템의 또 다른 주요 결함은 토지와 같은 주요 생산 요소가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인 풍요는 이것이 모두 토지에 적용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단 하나의 공통된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의 모든 원자가 지구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 이는 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오늘날의 많은 원주민 문화들도 이를 여전히 이해하고 있다.¹⁰
59. 식품 생산 분야에서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ETC 그룹(침식·기술·집중에 대한 활동그룹(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이라고도 함)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식품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지배적인 서구 모델, 즉

¹⁰ Ian Mason, “One World, One Wealth: Economics, Justice and Rights for Nature”, third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22 April 2013 (www.harmonywithnatureun.org).

산업적 먹이사슬이 불가피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해답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육류와 유제품 소비, 비만, 인간과 자연을 해치는 비료와 살충제의 필요 증가를 부채질하였다. 대부분 사람은 모든 소비 식품의 30%만이 산업적 먹이사슬을 통해 생산되고, 나머지 70%는 소규모 농부들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¹¹ 이는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성찰을 촉구할 것이다.

VII.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 자연과의 조화

60.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인류의 욕구를 재정의하고, 사회 발전과 자연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성장만을 더욱더 추구하는 지속불가능함을 넘어 나아갈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사람들이 무한한 자원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리는 유한한 지구에서 성장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야 한다. 1972년 도넬라 메도우즈(Donella Meadows) 등이 이 사실을 처음 지적하였고, 오늘날의 생태학 경제학자들이 반향을 보이고 있다.
61. 자연과의 조화는 또한 인간 정신의 회복, 전체주의 개념과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요소로서의 관련성을 요구한다. 인간의 생활양식은 생태학적 한계와 자연의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62. 자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 효율이 좋은 기계의 발전, 환경위해성평가 분석, 자연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더 큰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타 실용적 조치가 필요하다. 비록 이러한 계획들이 중요할지라도, 사회는 자연을 착취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경향이 있으며, 착취는 오직 성장 축진을 목표로 하며, 이 성장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구의 생존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종종 시장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3.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실질적 조치는 신경제학의 틀 내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생태학적 영향을 무시하고 자연과 전 세계 많은 사람의 복지뿐 아니라 자연의 악화를 초래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
64. 신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신고전주의와 환경 경제학을 넘어 심층 생태학, 자연의 권리, 체계이론의 개념에서 배워야 한다.¹² 자연에 기여하고 자연의 고유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¹¹ ETC Group, "Who Will Feed Us?: Questions for the Food and Climate Crises", communiqué No. 102, November 2009 (www.etcgroup.org).

것은 정의, 형평성, 세계 모든 시민의 권리와 그들이 그 존재를 얻는 자연계의 권리 등 지속가능성의 모든 핵심적인 동인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신경제모델 기초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65. 이안 메이슨이 하모니워드네이처 세 번째 상호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¹⁰ 현재 이해되듯이 경제학은 광범위한 빈곤과 이익을 유지 위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파괴와 함께 막대한 부의 축적이 포함되는 많은 부정의를 초래한다. 이는 경제학에 대한 현대의 이해를 철저히 수정하고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을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생태경제학자들의 권고대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사람과 지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메이슨은 또한 자연과 서로를 돌보는 의무를 윤리적 경제학의 핵심으로 채택하고, 우리가 인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행하여 그 신조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⁰

66. 자연의 고유한 재생력 손상은 직접적으로 자연계 특정 요소의 과잉 개발에 의해서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생태적 과정을 통한 다른 관련 자연 요소의 손상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프래킹(fracking)이라고 불리는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은 셰일 암석을 파쇄하여 내부의 천연가스를 방출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고압으로 유체를 지면에 주입하는 과정이다. 각각의 가스정(gas well)에 물과 물자를 오가기 위해 각 가스정에는 평균 400대의 탱커 트럭이 필요하다. 각 파쇄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100만에서 80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하다. 운반된 물은 모래 및 화학물질과 혼합되어 파쇄 유체를 만든다. 각 작업 과정에서 대략 40,000갤런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납, 우라늄, 수은 등 발암 물질과 독소를 포함하여 최대 600가지 화학물질이 파쇄 유체에 사용된다. 공학적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프래킹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감소하는 담수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67.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이러한 만연한 활동에 비추어 볼 때, 과학 및 의료계에서 지구와 거주자의 건강에 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으나, 대중은 자연이 취급되고 침해되는 방식에 대해 점점 더 의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자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번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람들은 자연의 한계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행동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관계는 과학과 윤리 모두에 기반을 두고 있다.

68. 사무총장은 제3차 상호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¹² Arne Naess, *The Ecology of Wisdom: Writings by Arne Naess*, Counterpoint Press, 2008; Robert Frazier Nash, *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and Donella H. Meadows, *Thinking in Systems*, Chelsea Green Publishing, 2008. 참조

“우리가 지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집과 미래의 생존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증가하는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다민족국가)는 특히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는 법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 사회들은 환경에 대한 존중을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¹³

69. 캘리포니아 지구법 센터(Earth Law Center)의 린다 시한(Linda Sheehan) 상임이사는 제3차 상호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 협력, 우정, 의무 등 행복과 번영하는 가정을 만드는 윤리적 특성은 강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리와 탐욕이 전제된 경제시스템을 위해 이러한 윤리를 버렸습니다.…… 이러한 관점 변화의 필수적인 요소는 우리가 참여자들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해야만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권리 거부가 분리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예전에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과 완전하고 번영하는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자연계까지 확대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구의 시민이며, 우리 스스로 번영하려면 생태계와 종의 존재 및 번영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¹³

70. 시한 상임이사는 나아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작성할 때 초안작성위원회가 인간의 최고가치는 세속적인 권력의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계의 최고가치와 권리를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¹³

71.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자연 시스템의 존재하고, 번영하고, 진화할 권리를 인정하는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간 및 환경과 조화롭게 살 권리에 원치 않는 유해 행동을 하는 기업의 권리를 거부한다. 지역 사회환경법방위기금(Community Environmental Legal Defense Fund)이 언급한 것 같이, 이런 법률은 지역 사회가 거주지의 파괴를 목격하기보다는 거주지를 보살필 권리를 지지한다.¹⁴ 일례로, 2012년에 뉴질랜드는 황가누이 강(Whanganui River)과 그 지류의 권리를 인정했다.¹³

72. 신경제시스템이 지속가능하려면 자연을 충실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자연의 한계와 자연의 권리 그리고 인류가 이러한 믿음을 고수해야 할

¹³ 2013년 4월 22일, 하모니 워드 네이처 제3차 상호대화 참조, 검색: <http://www.harmonywithnatureun.org>.

¹⁴ <http://www.celdf.org>. 참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신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자연을 단순히 진행 중인 상품의 더 많은 공급 및 무한한 자본 축적을 위한 산업 생산의 원자재 원천으로 취급할 수 없다.¹³ 한계는 일방향이 아니지 않다. 한계는 자연과 사회 사이에서 상호작용한다. 자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한계를 의미하며, 사회에 어떤 한계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자연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존중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¹⁵

73. 제3차 상호대화에서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기획부(National Secretary of Development Planning) 장관인 판데르 팔코니(Fander Falconí)는 우리의 경제사회 과정에서 자연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 기본 측면으로 해석된다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열역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생태경제학자들이 철저하게 연구해 온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경제 성장의 비합리적인 측면, 즉 과학의 관점에서 지속불가능한 측면에 생물물리학적 한계를 두고, 대신 열역학의 작용에 따라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인간 경제 성장에 한계를 설정하고 자연의 권리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¹³

74. 두 번째 측면은 사회 및 개인의 행동 양식, 특히 부의 분배, 사회적 취약성 및 문화유산의 특정 측면을 고려할 때, 남반구에서 발견되는 행동 양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팔코니 장관은 에콰도르 헌법이 세계 최초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 복지 계획을 통해 이를 시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가 복지 계획은 생태 발자국을 포함하여 국가 소비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¹³

75. 제3차 상호대화에서 존 로살레스(Jon Rosales) 뉴욕 세인트로렌스 대학 환경학과(Environmental Studies at Saint Lawrence University) 부교수는 경제와 자연 사이의 적절한 관계는 자연이 부모이고 경제는 그것의 하위 시스템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과학은 이미 자연의 한계를 확인했고, 경제 활동은 그 한계 내에서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계의 기초는 생태학적 한계를 존중하고,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학(home economics)” 체계에서 살면서 자연과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생존 원주민 문화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많은 생존 문화에서 공유는 특히 중요하며, 이것이 이러한 문화가 종종 “도덕 경제”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원주민 문화들은 오래전에 어머니 자연(Mother Nature)의 권리, 풍요로움, 구조적 완전성 그리고 한계를 인정했다.¹³

76. 키토(Quito)에서 열린 제128차 국제의회연맹 총회(Assembly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에서 의회 의원들은 “끊임없는 성장에서 목적 있는 개발까지, ‘부엔비비르(Buen Vivir)’: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해답”이라는 주제에 관해 토론하였다. 2013년 3월 27일

¹⁵ Vandana Shiva, “Resources”,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Press, 2012.

총회에서 채택된 끼또 성명(communiqu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유한한 세계에서 현재 경제 모델의 핵심인 소비와 생산 증가의 반복적인 순환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성장만이 우리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은 아니며, 사실은 성장이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 연대, 자연과의 조화라는 인간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구 공동체로 진화하려면 모든 차원에서 복지에 초점을 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¹⁶

77. 린 하몬(Lin Harmon) 뉴욕 페이스대학교 법학부(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환경법학장은 1982년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of Nature)(총회 결안안 37/7, 부속서) 이 일반 원칙에서 “자연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본질적인 과정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며 “헌장에 명시된 원칙은 국제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각 국가의 법률과 실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음을 상기하였다. 하몬 환경법학장은 세계 공동체가 여전히 비손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법과 현재의 법 집행 수준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고 생태계와 종의 붕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78. 환경 변호사와 학자들은 우리의 집단적인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함께, 자연의 권리는 더 폭넓게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이 우리를 보살피듯이 자연을 보살핌으로써 이미 이를 시작하였다.
79. 2013년 2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과학자들이 폭넓은 협의를 거쳐 제작한 다큐멘터리 “우주에서 본 지구”(Earth from Space)는 우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120개의 지구 관측 위성들이 전달한 정보를 소개했다. 이 위성들에서 가져와서 시각적 시퀀스로 변형된 데이터는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복잡하고 놀라운 힘의 관계망을 보여준다. 바다에서 증발하는 물 분자의 미시적 세계에서부터 지구 자체보다 더 큰 자기장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는 변화하는 우리 지구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보여준다.
80. NASA 고더드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의 피어 셀러스(Piers Sellers)는 세계를 대기와 바다를 통해 모두 연결되어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위성 데이터는 우리가 하나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 안에 살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다른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어떤 지역에서는 문순이, 다른 지역에서는 사막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¹⁶ <http://www.ipu.org> 참조

81.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의 성공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초래했고, 오늘날 우리의 존재는 전 세계 육지의 80%에 걸쳐서 나타난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는 지구를 지배하는 다양한 자연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요인이 우리 주변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 특히 기후 패턴에서의 극적인 변화에 일조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는 인간의 활동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VIII. 결론

82. 오늘날 우리는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정의하려는 또 다른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 의제는 자연을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자원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자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생명을 의미했다. 그 뿌리는 땅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라틴어 동사 *surgere*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자연의 자가 재생 능력을 강조하고 그 놀라운 창의성에 주의를 촉구하였다. 더욱이 그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포함하였다. 즉, 자연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인간도 그에 따라 관대함의 원천인 자연에 존중을 표하고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자원”이 재생분 아니라 상호성을 의미했다.
83. 그러나 산업주의와 식민주의의 출현과 함께 개념적 단절이 발생했고, “천연자원”은 산업 생산과 무역을 위한 투입을 위해 필요한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재생 능력이 사라지면서, 상호주의의 태도도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이제 자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창의성과 근면성이라고 잘못 추정한다.
84. 2015년 이후 발전 의제 형성으로 이어지는 논의에서 자연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에 위치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 부가 존재론적으로 생명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부드럽게 경고했던 고대의 지혜, 곧 자주 인용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속담에서 자세하게 담아내고 있는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

“마지막 나무가 잘리면 마지막 물고기가 잡히고 마지막 강물이 오염된다.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질 때, 돈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IX. 권고

85. 전술한 분석,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세 번의 상호대화,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 자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총회 제68차 회기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a)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인류학, 의학, 언어학 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최첨단에 있는 존경받는 실무자, 사상가, 학자들의 지식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하여 신경제 패러다임의 전체론적 개념화를 진전시킨다. 이 패러다임은 현재의 과학 정보, 특히 결과를 시각화하는 우수한 우주 과학 센터의 최신 과학 정보에 의존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원리, 동인, 가치 등을 반영한다.
- (b) 과학과 윤리에 따라 인류와 자연 모두의 복지를 고려하여 경제학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대학과 연구기관을 장려한다.
- (c) 리우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 문서를 준수하여, 국가 상황에 적절하게, 시행 가능한 법령 및 헌법 조항의 도입을 통해 자연 및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을 위한 주의를 인식하고 안내한다.
- (d) 이미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원주민 문화를 촉진하고 그들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법률 및 거버넌스 시스템에 자연 보호를 반영하고 또 이 법률을 인간과 자연계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부터 지역 사회 수준까지 수행되는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 (e) 정책 결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진보를 더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더 광범위한 진전 측정에 관한 유엔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의 작업을 장려하고 이에 관여하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¹⁷
- (f)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고, 지구 시스템의 건강과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개발하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의 결과 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40항에 따라 회원국,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과 이 주제에 관한 확대하는 지식 네트워크를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

¹⁷ E/2013/24, decision 44/114 참조

(www.harmonywithnatureun.org)를 통해 추가로 보여주고 지원한다.

- (g) 총회 제68차 회기 임시 의제에 “하모니워드네이처”라는 제목의 하위 항목을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에 관한 논의 자료로 포함시킨다.



총회

배포: 일반

2013년 9월 25일원

문: 영어

제68차 회기
의제 항목 19(h)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

정요표

각주 1

기존 문서 대체

¹ 세인트 안셀름 대학의 뉴햄프셔 정치 연구소(New Hampshire Institute of Politics, Saint Anselm College)(2013년 4월)와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2012년 9월)에서 발표(미출간)된 바바라 보도(Barbara Baudot)의 “Nature: The Lost Sheep in the World Debate on the Environment(자연: 환경에 관한 세계적 논의에서 잃어버린 양)”. 본 보고서는 이 문서의 12, 14, 18, 19, 21-24, 29-33 단락(para)에 포함된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총회

배포: 일반

2015년 2월 3일

제68차 회기

의제 항목 19(h)

2014년 12월 19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2차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A/69/468/Add.8)]

69/224. 하모니워드네이처

총회는,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¹ 의제 21(Agenda 21),² 의제 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³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⁴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이행 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을 재확인하고,⁵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의 결과 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상기하며,⁶

¹ 유엔 환경과 발전에 관한 회의 보고서, 리우 데 자네이루, 1996년 6월 3~14일, vol. I,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출판물, 판매번호 E.93.I.8 및 정오표), 결의안 1, 부속서 I

² Ibid., 부속서 II

³ 결의안 S-19/2, 부속서

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보고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26일~9월 4일 (유엔 출판물, 판매번호 E.03.II.A.1 및 정오표), 1장, 결의안 1, 부속서

⁵ Ibid., 결의안 2, 부속서

⁶ 결의안 66/288, 부속서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결의안 2009년 12월 21일의 64/196, 2010년 12월 20일의 65/164, 2011년 12월 22일의 66/204, 2012년 12월 21일의 67/214 및 2013년 12월 20일의 68/216 및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로 지정한 2009년 4월 22일의 결의안 63/278을 또한 상기하며,

1982년 세계 자연 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상기하고,⁷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4월 22일에 개최된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에서 하모니위드네이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 잡힌 통합 촉진에 관한 상호대화를 유념하고,

지구와 그 생태계가 우리 공동의 집이며“어머니 지구”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된 표현임을 인정하고, 일부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하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촉진함에 있어, 지구 시스템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밝혀진 환경 파괴, 잠재적으로 더 빈번하고 강한 자연재해 및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 공평하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할 목적으로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볼리비아 다민족국가(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가 꼬차밤바(Cochabamba)에서 주최한 기후변화 및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회의(Peoples's Worl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를 유념하고,⁸

많은 국가가 어머니 지구를 모든 생명과 양분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이 국가들이 어머니 지구와 인간을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의 분리할 수 없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사는 것에 관한 정책 문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관한 많은 계획이 있었음을 유념하고,

⁷ 결의안 37/7, 부속서

⁸ A/64/777, 부속서 I과 부속서 II 참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⁹의 개념적 틀을 유념하며,

국내총생산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과 지속가능발전 및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초통계자료의 불균등한 이용 가능성과 그 질과 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또한 인정하며,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생산 및 소비 방식에서 근본 변화가 필수적이며 리우 원칙(Rio principles)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고 모든 국가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촉진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많은 고대 문명, 원주민 및 원주민 문화가 상호 유익한 관계를 조성하는, 인간과 자연 간의 공생 관계에 대한 이해의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지구상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것에 있어 시민 사회, 학계 및 과학자가 수행한 작업과 그들이 정부 및 민간 부문 조직과 함께 더욱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과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행한 노력을 또한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이 다양한 지식 분야의 학제적 연계 강화를 요구하는 전체론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 제5차 사무총장 보고서를 유념한다.¹⁰
2. 하모니워드네이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 잡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22일에 열린 대화와 같은 총회 상호대화에서의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한다.
3. 총회 의장에게, 총회 제69차 회기에서, 2015년 4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동안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 잡힌 통합을 촉진하도록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⁹ IPBES/2/17.

¹⁰ A/69/322.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소집될 총회 본회의에서 포괄적인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4.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정교화에서 하모니워드네이처 이슈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5.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소집될 본회의에서 열리는 상호대화에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신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상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신탁 기금이 설립되면 회원국과 기타 이해 당사자가 이 기금에 출연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6. 회의 사무국과 경제사회사무국 지속가능발전과(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Secretariat)의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계기로 하모니워드네이처의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또한 상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활동에 대한 정보와 기여를 모으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지속가능발전과에서 관리하는 기존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전통 지식의 사용과 기존 국가 법률에 관한 성공 사례를 포함한 학제적 과학 작업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7.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끄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8. 국가들에 요청한다.
 - (a)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과학 정보에 의존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동인과 가치를 반영하는 다양한 경제적 접근법을 식별하는 전체론적 개념을 증진하기 위해 지식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근본적인 상호관계에 관한 지원과 인식을 촉진할 것
 - (b) 원주민 문화에서 발견되는 지구와의 조화를 촉진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자연 보호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지역 공동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
9.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의 관련 기관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기초 통계데이터의 질과 양을 진전시키고 강화하도록 고무하고, 국제 사회와 유엔 시스템의 관련 기구가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0. 정책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진전 척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가 보다 광범위한 진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는 작업 프로그램을 환영한다. 이는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현재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해 이 분야의 기존 노력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1. 사무총장에게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70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12. 제70차 회기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항목 하에 “하모니워드네이처”라는 하위 항목에 대한 고려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제75차 본회의
2014년 12월 19일



총회

배포: 일반

2014년 8월 18일원

문: 영어

제69차 회기

의제 항목 19(h)*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유엔 총회 결의안 68/216에 따라 제출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차원을 고려하여 2015년 이후 유엔 발전 의제 논의를 위한 자료로 포함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2014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하모니워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네 번째 상호대화에서 이뤄진 발표와 토론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I. 서문

1.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총회 결의안 68/216에 따라, 총회 의장은 제68차 회기에서 2014년 4월 22일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주요 단체,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동안 이 주제에 대한 네 번째 상호대화를 소집했다.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에 대한 논의 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화의 토론을 포함한 결의안 68/216의 이행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 A/69/150

2.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네 번째 상호대화의 목적은 우리와 자연의 상호 연결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비추어 과학, 거버넌스 및 경제학의 진화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인류와 지구의 윤리적 관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발전시키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3.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된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국가 및 정부 수반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결의안 66/288, 부속서)라는 제목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에서 그들은 지구와 그 생태계가 우리의 집이며,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의 공통된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지속가능 발전 촉진의 맥락에서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였다. 그들은 또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4. 전 세계 비정부기구(NGO), 원주민 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주요 단체, 기타 이해당사자들도 인류가 자연계의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성을 표명했다.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리우+20 정상회의(Rio+20 People's Summit)”의 주요 그룹,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전 세계 정부와 국민들에게 “세계 어머니 지구 권리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0년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및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회의(World's People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에서도 같은 요청이 있었다.
5. 2012년부터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살기(Living Well in Harmony with Nature)”(스페인어 원문에서는 “Vivir Bien en Harmonía con la Naturaleza”)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정책 문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 입법에 관한 새로운 발전, “어머니 지구(Mother Earth)” 용어의 사용이 더 넓게 인지되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관한 중요한 선도적 실천계획이 있었다.
6. 2012년 9월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자연보전총회(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World Conservation Congress)와 2013년 10월 제10차 세계야생지총회(World Wilderness Congress)에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¹
7. 2013년 12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플랫폼(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s Services)의 두 번째 세션에서, 자연과 어머니

¹ <http://www.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html> 참조

지구와의 조화로운 삶에 관한 지식체계가 채택된 개념적 열개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¹

8. 2014년 4월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네 번째 상호대화에서 연설한 회원국 대표들은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정교화 할 때 이러한 사안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²

9. 2014년 6월, 볼리비아의 산따끄루스 데 라 시에라(Santa Cruz de la Sierra)에서 열린 77그룹(Group of 77)과 중국의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담(Commemorative Summit)을 계기로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산따끄루스 데 라 시에라 선언문(Declaration of Santa Cruz de la Sierra) “잘 살기 위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하여(Towards a New World Order for Living Well)”를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살기” 패러다임, “자연의 권리”, 어머니 지구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많은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¹

10. 위에서 언급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성명에서 사무총장은 우리가 어머니 지구를 소홀히 한다면, 어머니 지구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전환점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산따끄루스 데 라 시에라의 선언문에 명시된 “잘 사는 것(Living Well)”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인류가 어머니 지구와의 관계를 재정 의하고 태도와 실천의 전 지구적 전환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11.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차원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대부터 원주민들이 어머니 지구와 맺어 온 전체론적 관계가 어떻게 현대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지구를 단일 요소가 다른 요소에 우선하지 않는 전체론적 시스템으로 보게 하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끝없는 연속체 내에서 분리 불가한 것으로 과학자들이 지구 시스템 과학(Earth system science)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12. 지구 시스템 과학은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Earth system governance), 지구에 기반한 법률(Earth based law) 및 지구에 기반한 경제학(Earth based economics)을 위한 길을 닦았으며, 이 모든 내용 또한 본 보고서에서 다룬다. 이러한 각각의 진화적 변화는 개별적으로 또 함께, 우리가 지구와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나타낸다.

² 2014년 7월 18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개발실무그룹(Open Working Group)의 결과 문서에서 자연과의 조화는 도입 및 목표 12.8에서 총 두 번 언급되었다.

II.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살기(Living well in Harmony with Nature)”: 개발도상국에서 확장 가능한 패러다임³

13. “잘 사는 것(Living well)”이라는 개념⁴은 지난 10년 동안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등장했다. 이는 현재의 발전 모델-자연자원의 추출에 기반한 성장 지향의 모델에서부터 번영의 관념이 물질적 복지와 소비에 있지 않은, 원주민의 우주관을 이야기하는 더 전체론적인 세계관까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생활양식에 관한 다른 사고방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14. 잘 사는 것의 주창자 중 한 명인 우루과이의 생태학자 에두아르도 구디나스(Eduardo Gudynas)는 잘 사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좋은 삶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개념은 두 가지 주요 요점을 가진다. 즉, (a) 고전적 발전 이론에 대한 비판적 반응을 포함하고, (b) 현재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대안, 즉 원주민 전통에서 나오는 대안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개념은 현대 유럽 중심적(Eurocentric) 전통 너머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15. 잘 사는 것이라는 용어는 삶의 질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복지는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포함한다. 또한 대부분의 접근법에서 공동체 개념을 자연을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로 이해한다. 잘 사는 것은 다른 사람 그리고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거주하는 것을 포함하는 복지의 넓은 개념을 담고 있다.
16. 잘 사는 것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접근법은 다른 사람 그리고 자연과 함께 공동체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켄추아어(Kichwa) 단어인 예과도르의 수막 까우사이(*sumak kawsay*) 개념과 볼리비아의 아이마라(Aymara) 개념인 수마 까마냐(*suma qamaña*)이다. 이러한 개념은 광범위한 관심을 받으며 단기간에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원을 받았다. 이 개념들은 현재 이해되고 있는 방식으로서의 “개발”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다문화 환경에서의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귀중한 길을 제시한다.
17. 볼리비아 아이마라 사회학자 시몬 암파라(Simon Yampara)의 연구는 개발에 관한 현재의 경제적 이해가 부과하는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는 전통 지식에 관하여 상세하고 정교하게 설명한다. 그는 수마 까마냐(*suma qamaña*)가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인 재산의 소유나 소비로 표현되는 물질적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 간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이는 공동체라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공동체는 그 자체가 통합된 사회적-생태적 단위이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사회 · 생태적 개념은 안데스의 아이유(*ayllu*)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 개념은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과

³ 이 부분은 에두아르도 구디나스(Eduardo Gudynas)의 논문 “Buen Vivir: Today’s Tomorrow”, 2011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http://www.palgrave-journals.com/development/journal/v54/n4/full/dev201186a.html> 참조).

⁴ 스페인어 원어로는 Vivir Bien 또는 Buen Vivir

소, 그리고 나머지 자연도 포함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고 그것들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를 자연으로부터 분리하는 고전적 개발 이론론은 사라진다.

18. 잘 사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전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대안을 촉진하면서 포스트 발전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을 제시하는 과정을 표현한다. 잘 사는 것은 원주민에게만 국한되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사는 것에 대한 다른 접근법은 현재의 경제적 신념을 비판하는 현대 사회의 소외된 집단에서 비롯되었다.
19. 이러한 대안적인 접근법의 예는 발전 및 포스트 발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콜롬비아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아르투로 에스꼬바르(Arturo Escobar)의 연구이다. 그의 분석은 수막 까우사이 또는 수마 까마냐와 같은 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20. 두 번째 예는 심층 생태학 및 기타 생명 중심 접근법처럼 근대성의 인간 중심적 관점을 거부하고 환경의 본래 가치를 인식하는 환경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는 몇몇 원주민의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발견되는 태도와 유사하다.
21. 잘 사는 것은 가치에 근거한 윤리적 관점을 장려한다. 이는 특히 생명의 단순한 경제적 가치로의 축소, 그에 따른 자연의 많은 부분의 상품화 표현되는 현재 지배적인 실용주의적 가치에 대한 반작용이다. 잘 사는 것은 미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영적 요소를 포함하여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 방법이 있음을 인정한다. 자본 범주(인적 자본, 자연 자본 등)의 무소부재함은 가치를 부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재정의 되고, 전체적 복지를 지원하는 보다 넓은 경제학 열개에 포함된다.
22. 이러한 모든 접근법에서 본래 가치가 인식된다. 그 결과 자연도 주제가 된다. 잘 사는 것이 촉진하는 시각은 기존 지식을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탈식민화 또한 잘 사는 것의 한 측면이다. 잘 사는 것은 많은 내부 신념을 위계를 두지 않고 존중한다. 다문화주의의 고전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이를 위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화 간의 입장이 추구된다. 잘 사는 것은 단순한 공존 또는 병치 이상의 것인데, 이는 그들이 발전을 위한 대안 촉진에 초점을 둔 대화와 실천을 통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23. 잘 사는 것은 법률 개혁, 환경 회계 도입, 세금 개혁, 경제의 비물질화, 남아메리카 내 대안적 지역 통합과 같은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우선시하기보다는 현지 및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을 제시한다.

24. 잘 사는 것은 사회와 자연 간 이원론의 해체를 옹호한다. 자연은 사회 세계의 일부가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그러한 공동체는 비인간 형태의 삶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생명 중심적 환경 관점과 비인간 존재(동물, 식물 또는 생태계)가 모두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원주민의 입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폴리스가 확장되고 시민권의 개념이 자연을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III. 지구 시스템 과학 (Earth system science)

25. 인간-환경의 관계에 대한 오랜 관점인 인간예외주의 패러다임(human exemptionalism paradigm)은 인간을 지구의 주인으로서 다른 종 및 환경과 분리된 존재라고 본다. 이 이론의 역사적 기원은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2개의 사무총장 보고서 (A/65/314 및 A/66/302)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다. 간단히 말해, 과학자들은 이 300년 된 과학적 이론이 너무 단순하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부터 인정하였고, 실체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맥락과 관계를 통해 작동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6. 과학자들은 지구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을 받아들였으며,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요소의 변화가 셀 수 없이 많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요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대한 이러한 전체론적 관점을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 부른다.
27. 지속가능성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ustainability Studies)의 마크 로렌스(Mark Lawrence) 교수는 복잡한 지구 시스템은 대기권(atmosphere), 암석권(lithosphere)(단단한 대지), 수권(hydrosphere)(바다와 강의 액체, 대기 중 수증기 및 구름 속 액체와 얼음), 빙하권(cryosphere)(얼어붙은 대지), 생물권(biosphere) 및 인류권(anthropospher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류권은 기술권(technosphere), 즉 산업발전의 모든 것과 우리의 집단 의식인 인지권(noosphere)을 모두 포함한다.⁵
28. 이러한 각각의 요소는 지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 시공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은 엄청난 복잡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구 시스템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보는 것은 활동에 대한 매우 제한된 그림만 보여준다.⁵

⁵ Mark Lawrence, "The 'Anthropocene' — Humans in the Earth System", 하모니 위드 네이처에 관한 제2차 상호호 대화, 2012년 4월(www.harmonywithnatureun.org)

29. 과학자들은 그들이 지구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모든 요소에 걸친 이러한 복잡성과 상호연계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를 되돌아보면 기후 모델은 상당히 단순했으며 대기와 태양 복사로부터의 입력만을 나타냈다. 1980년대는 수문학과 같은 표면 처리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대기 모델은 해양 및 해빙 모델과 결합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주요 발전은 동적 식생 모델(dynamic vegetation model)을 포함한 것과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방식을 개선한 것이었다.⁵ 생태학 자체는 1970년대 초반 다수의 환경법이 통과된 이후 엄청나게 성장한 과학이다.
30.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단순한 기후 모델이 아닌 복잡한 지구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각 요소와 지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많은 과정이 이 모델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더 배우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모델을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배우수록 더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31. 지구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 사이의 수많은 연관성은 대기권, 생물권 및 수권을 연결하는 복잡한 자연 순환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는 관련된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예상치 못한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더욱 주의해야 함을 나타낸다.
32.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따뜻한 물에서, 그리고 더 많은 햇빛을 받을 때 더 효과적으로 자란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바다 및 담수 유역 삶의 핵심 요소로, 특히 중메틸황(dimethylsulfide)(DMS)이라고 하는 가스를 생성한다. DMS는 해양의 표층수에 축적되어 대기로 빠져나가 황산과 같은 다른 형태의 황 함유 가스로 전환된다. 황산 분자는 작은 입자로 응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 입자는 구름 형성에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은 입자가 더 많으면 구름에 있는 동일한 양의 물이 농도가 높은 작은 물방울 전체에 퍼져 더 밝아진다.⁵
33. 바다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DMS가 생성되고 대기로 유입되어, 상층 대기에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는 밝은 구름을 만들고, 해수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줄이고, 초기 온난화에 대응한다.⁵
34. 즉, 생물권, 수권 및 대기권에서의 상호 작용 결과로, 초기 온난화 효과는 온난화 수준을 감소시킨다. 이 부정적인 반응이 얼마나 강한지, 즉 초기 온난화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혹은 그 과정이 정말 그렇게 작용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른 많은 요인, 예를 들어 풍속 또는 따뜻한 물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중 혼합의 변화 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35. 북극해(Arctic waters)가 따뜻해지면 해빙의 양이 감소하여 해수가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고 더 빨리 가열되며 더 심한 온난화와 해빙 감소로 이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극심한 복잡성을 보여주는 예이다.⁵ 인간은 지구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36. 2014년 5월 12일, 두 그룹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서남극(West Antarctica) 빙상의 큰 부분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녹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해빙이 얼음 인접 부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향후 수 세기 동안 10피트 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37. 과학자들은 인간의 온실가스 방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빙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요인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해수면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수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현저하게 가속화되어 잠재적으로 사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38. 새로운 발견은 1978년에 오하이오 주립 대학(Ohio State University)의 저명한 빙하학자 존 H. 머서(John H. Mercer)가 한 예측의 성취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남극 빙상의 취약한 특성을 설명하고 인간에 의한 급격한 온실가스 방출이 “재난의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공격을 받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머서 박사가 예측한 방식으로 일이 전개됨에 따라 과학자들은 크게 우려하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
39. 21세기 초, 에너지, 제조업 및 운송 부문의 영향을 포함하여 지구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 토양 황폐화 및 소음 공해를 초래했다.
40. 인간 활동의 어두운 측면은 탄소 및 질소 같은 요소의 자연적인 순환의 광범위한 변화, 많은 천연자원의 고갈, 해수면 상승, 사막화, 가뭄·홍수·허리케인과 같은 극한의 사건과 멸종 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보고한 것을 포함하여 많은 영향에 반영된다.
41. 지구의 생명 역사 동안 대멸종이 있었다. 이러한 멸종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가장 파괴적인 사건은 약 2억 5천만 년 전인 페름기(Permian period) 말기에 일어났으며, 이때 지구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질 뻔하였다. 이 사건은 때때로 “대멸종의 어머니(mother of mass extinctions)”또는 “대량절멸(great dying)”로 불린다.⁶ 과학자들은 이제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자연계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후변화와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⁶ Elizabeth Kolbert, *The Sixth Extinction: An Unnatural History*, Henry Holt & Cie, 2014.

42. 가장 최근에는 벌의 실종에 대한 경보가 강하게 올렸다. 약 13,000년 동안 인간이 길들인 벌은 우리가 소비하는 식물의 상당 부분을 수분한다. 한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분의 1은 벌이 수분한 것이다.

43. 길들인 벌은 세계 전체 벌 개체 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농업 생산의 주역이다. 사육된 벌 및 야생벌의 개체 수는 해마다 크게 변동한다. 가뭄은 벌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야생 식량의 양을 감소시킨다. 폭풍과 자연재해는 인간의 교란으로 이미 약해진 군체를 완전히 파괴하여 개체를 황폐화한다.

44.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네 번째 상호대화의 토론자인 뉴햄프셔 주 세인트 안셀름 대학(Saint Anselm College)의 바바라 보도(Barbara Baudot)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꿀벌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은 자연과 환경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한다. 벌집을 인간 기업을 위한 이동식 수분 공장으로 선택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산업 양봉가들은 벌집의 조화를 교란했다. 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본능은 거의 파괴되고, 그들의 먹이는 살충제로 오염되며, 짧은 개화기 동안 단일 재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절멸되기도 한다.”

상업 작물의 다양성 및 품종의 개발과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대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가로막는 많은 위험 중 하나일 뿐이다.

45. 2014년 5월 9일 하버드 보건대학(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은 소량의 네오노티노이드 기반 살충제(neonicotinoids-based insecticides)를 사용하더라도 꿀벌 군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겨울철 대규모 소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하버드 과학자들은 두 가지 형태의 네온닉스(neonics)에 노출된 벌집들이 노출되지 않은 벌집보다 군체 붕괴 장애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46. 네오노티노이드의 약어인 네온닉스는 니코틴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신경 활성 살충제의 일종이다. 이 종류의 살충제 개발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네온닉스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된 최초의 새로운 종류의 살충제이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⁷

47. 멸종에 이를 정도의 상당한 개체 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종의 그룹은 양서류이다. 양서류 종의 최대 40%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학자인 데이비드 B. 웨이크(David B. Wake)와 밴스 T. 브레덴버그(Vance T. Vredenburg)는 현재 양서류의 멸종률에 기초하여 “대량절멸”과 유사한 재앙적 성격의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⁸

⁷ <http://www.xerces.org/neonicotinoids-and-bees> 참조

⁸ <http://www.pnas.org/content/105> 참조

만약 웨이크와 브레덴버그가 맞다면,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역사상 가장 희귀한 사건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두 사람은 “어떤 허약한 종이 자신의 운명과 지구의 다른 대부분 종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자신도 모르게 성취했다”고 말했다.⁶

48.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있는 놀라운 속도에 비추어, 그리고 식량 생산과 농업에서 생물다양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2017년에 식품과 농업을 위한 세계 생물다양성 상태에 대한 국가 주도 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다. 여기서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곤충, 낙농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세한 박테리아 또는 전 세계의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수천 가지의 작물과 소와 같은 생물다양성이 식량 안보, 생계 및 환경 건강에 갖는 기여를 강조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여, 유전적 다양성은 식량 생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탄력성, 적응성을 개선하고, 자연계의 장기적인 복지 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특성 저장고의 전형이다.
49. 인류는 식량과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 공동체와 연구자들은 식량 생산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에 의존한다. 자연계가 침식되면, 인류는 기후변화에 의해 이미 발생한 것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조건에 식량 생산을 적응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한다.

IV.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 (Earth system governance)

50. 지구 시스템 과학은 데카르트 학파(Cartesian), 인과관계, 이원성 과학에서 생명의 복잡성을 포용하는 연구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것은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자리를 내주었다.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연결성에 비추어 인간 행동을 더 잘 관리하는 법률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구 시스템 과학이 제공하는 전체론적 과학 지식을 활용한다. 지구 시스템 과학과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는 지구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에 대해 서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51. 인간 종의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종과 생태계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구 시스템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전개된 직접적인 결과로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 프로젝트(Earth System Governance Project)가 2007년에 수립되었다. 과학 디베르시타스(Diversitas), 국제 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국제 전 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인간차원 프로그램(International Human Dimensions

Programme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세계 기후 연구 프로그램(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등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별 역량으로 1990년대부터 존재해 왔지만, 지구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 특히 에너지(탄소), 식량, 물 및 건강의 근본적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52. 오늘날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은 전 지구 시스템이 지난 50만 년에 걸쳐 나타난 정상 상태 밖에서 잘 작동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이 자연적 변동성을 훨씬 넘어서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간이 현재 지구 및 지구의 복잡한 생화학 시스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제도, 조직, 메커니즘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 프로젝트 수립에 따라 과학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도 지구에서 인류의 역할과 인간이 자연의 포함되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⁹
53. 지구시스템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거버넌스 및 지구 환경 변화 분야에서 가장 큰 사회 과학 연구 네트워크이다. 국제 연구 프로그램은 우리 지구의 생지화학적(biogeochemical) 시스템에서 현재의 부정적인 전환을 저지하고 역전시키기 위해 정치적 해결책과 새롭고 더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탐구하는 도전을 계속한다. 이 연구의 규범적 맥락은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문제로 간주할 뿐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 정의를 위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지속가능발전이다.
54. 여기에서 거버넌스 개념은 전통적인 정부 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보다 덜 위계적인 구조(대부분의 현대 거버넌스 방식에도 어느 정도의 위계가 포함될지라도) 보다 분권화되고, 자기 조직화에 개방적이며, 산업계와 NGO에서부터 과학자, 원주민 공동체, 시 정부, 국제기구 및 일반 대중 전체에 이르는 비국가 행위자까지 포함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55.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 연구 연합의 의장이자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네 번째 상호대화의 패널리스트인 암스테르담 VU대학의 프랭크 비어만(Frank Biermann) 교수는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지구에 대한 우리 이해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환경정책”이라는 용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인류는 전 지구 시스템 핵심 요소들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56. 비어만 교수는 또한 오늘날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는 정부가 만든 집단기구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정부에게도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가장 중요하게도,

⁹ <http://www.earthsystemgovernance.org/about>

이것은 유엔의 주요 도전 과제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성을 감안할 때, 비어만 교수는 국제 거버넌스와 기구에 대한 진지한 개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19세기부터 내려온 규칙에 따라 기능하는 제도로는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를 탐구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정부 간 시스템의 개혁이 사회 변화의 유일한 차원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행동 유형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개인 시민들의 행동 변화, 사회에서 시민 사회 조직의 새로운 참여, 그리고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한 방향 전환은 모두 진보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및 국가적 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글로벌 제도 열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¹⁰

57. 환경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범위의 과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는 환경 입법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법 공포가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그리고 그 후 50년이 지난 지금, 환경법은 지구 생태계의 기본 구조와 온전함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58.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세 번째, 네 번째 상호대화에서 각각 패널토론과 사회를 맡았던 린다 시한(Linda Sheehan) 지구법센터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of the Earth Law Centre)은 “환경법은 물, 공기, 땅, 야생동물의 상호 연결을 무시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의 단일 매체 관리법(single-stressor laws)들은 인간이 전 세계적 규모의 대기 오염을 통해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쳤다. 따라서 생태계가 모든 측면에서 건강, 번영, 그리고 진화에 대한 내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법 체제가 점차 표준이 되고 있다.¹¹
59. 린다 시한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지구에 기반을 둔 법률적 접근법 아래 양방향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것, 즉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 존중이 없으면, 법률은 이점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목표는 동등한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에 기초하는 법체계로, 이는 인간과 자연계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를 반영하고 실행한다. 필요한 것은 현대 과학과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윤리적 의식을 통합하는 지구법 체계이다. 우리가 윤리적 · 물리적 종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확장하는 과학적 · 윤리적 “의식(awareness)”과 지구 공동체에서 우리의 위치를 반영하는 지구에 근거한 법체계를 제정해야 한다.

¹⁰ Frank Biermann, “Governance in the Anthropocene: Towards Planetary Stewardship”, fourth 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22 April 2014 (www.harmonywithnatureun.org/index.php?page=view&type=12&nr=40)

¹¹ Linda Sheehan, “Earth Day Revisited: Building a Body of Earth Law for the Next Forty Years”, in *Exploring Wild Law: The Philosophy of Earth Jurisprudence*, Peter Burdon, ed. (Wakefield Press, Kent Town, South Australia, 2011).

60. 미국 여러 지역 사회는 이미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는 법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주로 지역 수로와 토지를 해치려는 외부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자연 공동체 및 생태계의 존재하고 변형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를 분명히 인정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있다.
61. 2012년 8월 뉴질랜드에서는 황가누이 강이 생명체이며 사람과 강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체의 권리를 갖는 법적 실체(legal entity)로서의 강을 법적으로 인정한 협정을 마오리족(Whanganui Iwi)과 왕실(Crown)이 체결하였다.¹
62. 인도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은 T.N. 고다바르만 티루물파드와 인도 정부 간의 소송(2012)(legal case of T.N. Godavarman Thirumulpad v. Union of India)에서 환경정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적 원칙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 세대 간 형평성은 인간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주의 원칙에 부리를 두고 있다. 비인간은 인간에게 도구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는 자연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비인간도 본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다.¹
63. 에콰도르의 경제학자이자 학자이고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네 번째 상호대화의 패널리스트인 판데르 팔코니(Fander Falconi)는 원칙의 문제로서 그리고 권리의 문제로서 환경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권리가 인류에게 확대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에 권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팔코니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의 권리는 환경정의의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64. 2008년, 에콰도르는 자연(Nature)에 양도할 수 없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 조항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새 헌법은 “생명이 재생산되고 존재하는 자연(Nature)이나 빠차마마(Pachamama)는 존재하고, 지속하며, 유지하고, 중요 순환,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을 재생산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 헌법은 자연의 권리를 그 순환, 기능, 진화 과정의 유지와 재생, 그리고 복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완전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5. 2010년 에콰도르에서 빌까밤바 강(Vilcabamba River)의 권리를 대신해 지역 원로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를 위한 법정 승리가 이뤄졌다. 지방 정부는 폐기물을 강에 버리고, 강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에 홍수를 유발하면서 도로 확장사업을 시작했다. 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강의 흐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았고 주 정부에 피해 회복을 명하였다.¹

66. 2007년부터 볼리비아다민족국가의 새로운 정책은 소득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화 정체성, 공동체, 인간 간의 조화 및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에 대한 존중 측면에서 “잘 사는 것(Living Well)(Vivir Bien)”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였다. 2009년 초,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다. 2010년 12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new Law on the rights of Mother Earth)이 통과되어 지구에 다음과 같은 7가지 권리, 즉 생존하고 존재할 권리, 세포 구조가 바뀌거나 유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권리, 순수한 물에 대한 권리,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 균형을 유지할 권리, 인간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중요한 순환과 과정을 계속할 권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였다. 2012년 10월 어머니 지구 및 잘 살기 위한 통합 발전 기본법(Framework Law for Mother Earth and Integrated Development for Living Well)이 채택되었다.¹
67. 2013년 10월 17일, 멕시코 연방특별구(Federal District of Mexico)에서 지구보호법(Environmenta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Earth)이 시행되었다. 볼리비아다민족국가 및 에콰도르 정부가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를 보호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률 제정에 영감을 받은 이 법 또한 지구를 생명체로 인정한다.¹
68. 새로운 환경법 제정에 포함된 권리와 구체책은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법대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의 권고를 반영한다. 그는 1972년에 자연이 법정에서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고, 그것의 법적 권리는 피해 입은 주체로서 그 자신을 위하여 반드시 집행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피해 입은 권리 보유자, 이 경우에는 환경의 이익에 부합하는 구체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썼다. 자연계를 대신하는 대중의 행동은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지구법 체계(Earth law system)에 필수적이다.¹¹
69. 지구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투쟁하고 번영하며 함께 진화하기 위한 동등한 생애적 권리를 인정하는 지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대 과학과 윤리는 우리가 자연계와의 존경스러운 관계가 갖는 많은 이점을 점점 더 인정하게 한다. 과학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상호 연결을 인정하도록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또한 그러한 상호적이고 존경스러운 권리를 포함하고 실행하는 지구에 기반한 법과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V. 지구 기반 경제학 (Earth-based economics)

70. 지구 시스템 과학에 의해 발전한 전체론적 세계관은 지구 기반 법과 거버넌스뿐 아니라 지구 기반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고 자리를 내주었다. 지구 기반 경제학은 새롭고 과학에 근거한 경제학의 발전에 있어 마찬가지로 지구 시스템 과학에 의지한다.

71. 2013년 유엔 본부(United Nations Headquarters)에서 개최된 의원회의(Parliamentary Hearing)에서 “성장 딜레마” 문제가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이 청문회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200명에 가까운 의회 의원들이 “지속가능발전 다시 생각하기: ‘전환적’ 2015년 글로벌 의제에 대한 탐구(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quest for a ‘transformational’ global agenda in 2015)”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새로운 사고는 단지 생태적 고려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무절제한 성장이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부정적 발전의 요인은 맞지만, 성장에 기반한 경제가 자연계의 지속 불가능한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도 나온다.
72. 의회 의원들은 성장기반 모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는데 중독된 소비지상주의적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화는 일자리와 세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이런 모델이 없다면,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가 줄고,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공공 지출이 줄고, 대출금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하고, 예금액을 소비에 투자하고, 경제적 안정을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증가하는 수의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집합적 관계를 만들면서 항상 성장을 추구한다.¹²
73. 캐나다의 과학자, 정책 분석가이자 위니펙(Winnipeg) 매니토바 대학(University of Manitoba)의 환경학부(Faculty of Environment)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인 바츨라프 스미(Vaclav Smil)은 환경, 식량 생산, 에너지에 대해 광범위한 글을 썼다. 소비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아이폰(iPhones)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시계, 전화, 카메라, 나침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아이템 즉, 스마트폰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적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9개월마다 10억 대의 휴대전화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물질화는 상대적인 측면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74. 그는 또한 이것을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에너지 증가와 비교한다. 현재의 가정은 하나를 갖는 것 대신에 과거보다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위당 소비는 줄었지만, 전체 소비는 늘어난 셈이다.
75. 제4차 하모니워드네이처 상호대화에서 연설하는 회원국 대표들은 또한 지구상 생명의 불안정성에 대해 현재 과학자들, 학계, 시민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고려할 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이 더 이상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¹² Inter-Parliamentary Union, Annual Parliamentary Hearing at the United Nations, “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quest for a ‘transformational’ agenda in 2015”, Summary report, November 2013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76. 2013년 의원회의에서, 의원들은 사무총장과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사무총장의 잘 알려진 견해에 따라 의견을 표명했다. 이 견해는 2014년 7월 7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그의 연설에 제시되어 있다.¹³ 의원들은 성장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복지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번영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분명히, 그것은 점점 커지는 물질적인 성장이나 더 큰 소비자 부가 아니다. 번영은 우리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만큼이나 우리 주변의 자연에 감각을 몰입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소속감인데, 이것이 무언가의 획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한한 지구에서 잘 사는 기술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연 자체의 복지를 포함한다.
77. 이 새로운 생각을 지지하여 2007년에 설립된 스티글리츠 위원회(Stiglitz Commission)는 국내총생산(GDP)을 복지가 아닌 생산량의 척도라고 인식했다. 여기서 복지는 물질적 생활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비물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이전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에 대한 유효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자연과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면서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었다(A/65/314, A/66/302 및 A/67/317 참조)
78.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 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는 GDP에 대한 대안을 마련(결의안 66/288, 부속서, 38절(para.))하기 위해 의장 그룹 친구들(Friends of the Chair Group) 창설 재단을 설립하였다. 2014년 2월, 유엔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제44차 회기에서 GDP를 보완하고 정책 결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포괄적인 진보 조치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을 착수하라는 회의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포괄적인 진보 조치에 관한 의장 그룹 친구들을 설립하였다.
79. 조사 결과, 이 그룹은 앞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수행한 GDP에 대한 분석, 즉 물질적 복지의 지표는 GDP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을 재확인했다. “지속가능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전달되는 주요 경제, 환경, 사회, 인적 자산의 집합과 이러한 자산들이 오늘날의 활동, 정책 및 행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¹⁴

¹³ “리우+20 이행과 우리가 원하는 미래(Future we Want)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 통합 정책 어젠다”에 관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고위급 정치 포럼 장관회의에서 마틴 총공 국제의회연맹 사무총장의 발표

¹⁴ E/CN.3/2014/4, 14절.

80.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2013년 12월 발표한 대표 보고서 “양에서 질로 전환: 질, 효율성, 지속가능성, 역동성을 갖춘 성장(Shifting from quantity to quality: growth with quality, efficiency, sustainability and dynamism)”에서 “GDP 성장 극대화를 위한 단기 성장 전략이 인간과 자연 자본의 착취에 따른 성장의 ‘악순환(vicious cycle)’을 만들어냈다.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그 자체보다는 인간과 지구에 대한 투자의 선순환(virtuous cycle)’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선순환에서 경제성장은 지구의 한계 내에서 공동의 번영과 인간 복지를 위한 수단이다.
81. 새로운 지구 기반 경제 모델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좁은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이미지를 구현할 것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모든 개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고 가정한다.¹² 이 새로운 지구 기반 경제 체제 하에서 인간의 복지와 번영은 더 이상 지구의 희생에 있지 않고 지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네 개의 이전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보고서의 결과와 일치하며, 서로 연결된 지구와 사람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자연의 시장화보다는) 생태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82. 네 번째 상호대화에서, 일부 회원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자연의 지속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과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는 것을 또한 의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현재의 소비 양식과 선진국에서 대중화된 것과 같은 현대 생활양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공평하며, 우리는 보다 검소한 삶, 적은 낭비, 더욱 공평한 자원의 분배 문화로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⁵
83. 지속가능한 농업이 그러한 길의 예이다.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네 번째 상호대화의 패널리스트인 짐 게리첸(Jim Gerritsen)은 미국 북동부에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게리첸 씨는 유기 농업이 완전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유기 농업은 어머니 지구(Mother Earth)의 복잡한 자연 생물 시스템을 모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유기 농업은 토양의 건강, 품질, 비옥함을 유지하여 식물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84. 게리첸 씨에 따르면, 식량의 질, 식량 주권,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성의 조합에 관한 한 유기 농업이 우월한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은 과학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2013년 9월에 유엔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유기 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인 “너무

¹⁵ <http://www.harmonywithnatureun.org/index.php?page=view&type=12&nr=40> 참조

늦기 전에 깨어나라: 기후변화에서 식량 안보를 위해 지금 농업을 진정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라(Wake up before it is too late: make agriculture truly sustainable now for food security in a changing climate)”를 발표하였다.

85. 영속농업(Permaculture)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재 적용 중인 농법의 또 다른 예이다. 영속농업(permaculture)은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 및 자급자족 서식지, 자연 생태계로부터 만들어진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생태설계, 생태공학, 환경설계, 건설, 통합수자원관리의 한 분야이다.
86. 영속농업(permaculture)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함을, 오래 계속되는 무심한 노동보다는 오래 계속되고 사려 깊은 관찰을, 식물과 동물을 각각 분리된 생산체계로 서가 아니라 통합하여 고려함을 함축한다.¹⁶
87.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술과 전략은 위치, 기후 조건 및 가용 자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전체론적 접근법의 원칙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VI. 결론과 권고

88. 유엔에서 기후변화는 점점 더 긴급한 문제이자 최우선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이 빨리 줄어들지 않는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는 화씨 2.5도에서 10.4도 증가할 것이다. 2도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10,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화씨 1.8도 이하의 차이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평균 온도의 작은 변화가 빙하기와 현재 지구 기후 간의 차이를 만든다.¹⁷
89. 지구 온도가 10도 상승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열이 108도 증가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의 1도 상승의 중요성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수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이 온도 상승을 치료할 마법의 치료법은 없다.
90. 그러므로 인간의 건강은 지구의 건강,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생산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냉혹하게도, 기후변화는 세계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¹⁶ 빌 몰리슨(Bill Mollison) 영속농업에 관하여
(http://en.wikipedia.org/wiki/Permaculture#cite_note-4 참조)

¹⁷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실무 그룹 II, “기후 변화 2014: 영향, 적응 및 취약성”, 2014년 3월 31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4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제네바에서 제1차 세계보건기후회의(global Conference on Health and Climate)를 개최할 것이다.

91. 이 10년 안에 인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인간 활동이 호혜성과 존엄성 그리고 자연 존중과 함께 지구가 제공하는 것과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인간이 한 종으로서 성공하려면, 지배적인 경제 및 법률 패러다임을 위에서 지적인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를 재정 축적 이상의, 자연과의 조화 속에 추구하는 복지에 더 근접한 어떤 것으로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고

92. 전술한 논의를 고려하여, 그리고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진행 중인 토론으로부터 2015년 이후 발전 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준비를 위한 통찰력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출한다.

(a)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인류학, 의학, 언어학 등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최첨단에 있는 기존 하모니 워드 네이처의 실무자, 사상가, 학자 지식 네트워크에 현재의 과학 정보, 특히 우수한 센터의 경제, 사회, 환경 과학 정보에 의존하여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의 원리, 동인,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개념화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B) 인류를 자연과 조화하는 삶으로, 또 지구 시스템의 건강과 온전함의 회복으로 안내하는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사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따르면서, 회원국,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그 주제에 관한 지식 네트워크의 확장을 하모니 워드 네이처 웹사이트 (www.harmonywithnatureun.org)를 통해 지원한다.

(C)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위한 모든 준비 활동에서 균형 잡힌 토론과 토의를 통해 지구와 인간의 필요가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총회

배포: 일반

2016년 2월 17일

제70차 회기

의제 항목 20(g)

2015년 12월 22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2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A/70/472/Add.7)]

70/208. 하모니워드네이처

총회는,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¹, 의제 21(Agenda 21)², 의제 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³,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이행 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⁵을 재확인하고,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 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상기하며,⁶

¹ 유엔 환경과 발전에 관한 회의 보고서, 리우 데 자네이루, 1996년 6월 3~14일, vol. I,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출판물, 판매번호 E.93.I.8 및 정오표), 결의안 1, 부속서 1

² Ibid., 부속서 II

³ 결의안 S-19/2, 부속서

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보고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26일~9월 4일 (유엔 출판물, 판매번호 E.03.II.A.1 및 정오표), 1장, 결의안 1, 부속서

⁵ Ibid., 결의안 2, 부속서

포괄적이고 원대하며 사람중심적인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그 세부목표를 채택한 “우리의 세상 바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2015년 9월 25일 결의안 70/1, 2030년까지 의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 극한 빈곤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치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 새천년 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취에 기반하여 완료되지 않은 일을 다루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결의안 2009년 12월 21일의 64/196, 2010년 12월 20일의 65/164, 2011년 12월 22일의 66/204, 2012년 12월 21일의 67/214 및 2013년 12월 20일의 68/216, 2014년 12월 19일의 69/224 및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한 2009년 4월 22일의 결의안 63/278을 상기하고,

1982년 세계 자연 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상기하며,⁷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4월 22일에 개최된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에서 하모니위드네이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 잡힌 통합 촉진에 관한 상호대화를 유념하고,

지구라는 행성과 그 생태계가 우리의 집(home)이며 “어머니 지구”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된 표현임을 인정하고, 일부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욕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촉진함에 있어 지구 시스템 과학(Earth system scienc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증명된 환경 파괴, 잠재적으로 더 빈번하고 강력해진 자연재해 및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 공평하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할 목적으로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⁶ 결의안 66/288, 부속서

⁷ 결의안 37/7, 부속서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볼리비아 다민족국가(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가 꼬차밤바(Cochabamba)에서 주최한 기후변화 및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회의(People's Worl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를 유념하고,⁸

많은 국가가 어머니 지구를 모든 생명과 양분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이 국가들이 어머니 지구와 인간을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의 분리할 수 없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사는 것에 관한 정책 문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에 관한 많은 계획이 있었음을 유념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개념적 틀을 유념하며,⁹

국내총생산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과 지속가능발전 및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초통계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불균등하다는 것과 그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또한 인정하며,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생산 및 소비 방식에서 근본 변화가 필수적이며, 리우 원칙(Rio principles)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고 모든 국가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촉진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많은 고대 문명, 원주민, 원주민 문화가 호혜 관계를 강화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에 대한 이해의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지구상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시민 사회, 학계 및 과학자가 수행한 작업과 그들이 정부 및 민간 부문 조직과 함께 더욱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과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행한 노력을 또한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이 다양한 지식 분야의 학제적 연계 강화를 요구하는 전체론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⁸ A/64/777, 부속서 I과 부속서 II 참조

⁹ IPBES/2/17.

1. 제6차 사무총장 보고서를 유념한다.¹⁰
2.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시민과 사회가 어떻게 그들이 자연계와 상호작용하는지를 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상호대화에서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지구 법학 전문가들 간에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화상대화를 2016년에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총회 제71번째 회기에 요약문을 제출할 것과 화상대화를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3. 매년 4월 22일에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계속 기념하기로 또한 결정하고, 사무총장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회원국들이 이 국제적인 날(International Day)을 국가 차원에서 지키도록 고무한다.
4. 회원국들이 2015년 4월 27일 개최된 하모니 워드 네이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적 통합 촉진에 관한 대화와 같은, 총회 상호대화에서의 토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는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기존 연구 및 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5. 유엔 총회 제2 위원회(Second Committee)의 재활성화 관련 논의를 미해결 상태로 두고,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의 포괄적인 상호대화의 시기 문제를 보류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총장에게 전문가들의 상호대화 참여를 위한 신탁기금 설립을 요청한 결의안을 상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신탁기금이 설립되면 여기에 기부할 것을 요청한다.
7.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동안 회의 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ference)과 사무국 경제사회부 지속가능발전과에 의한 하모니워드네이처 웹사이트 출시를 또한 상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촉진하고, 전통 지식의 사용과 기존 국가 법률에 관한 성공 사례를 포함한 학제적 과학 작업의 통합을 진전하기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지속가능발전과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사용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8. 인류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지속가능발전, 그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¹⁰ A/70/268

9. 국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 (a)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과학 정보에 의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동인과 가치를 반영하는 다른 경제적 접근법을 찾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 관한 전체론적 개념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에 대한 지원과 인정을 촉진할 것
 - (b) 원주민 문화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여, 지구와의 조화를 촉진하고, 자연 보호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부터 지역 공동체 차원에 이르기까지 행하진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
10.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의 세 차원에 관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질과 양을 개발 및 강화하도록 고무하고, 국제 사회와 유엔 체제의 관련 기관이 역량 강화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1. 정책 결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내총생산을 보완하는 포괄적인 진보 측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점에서, 포괄적인 진보 측정 개발과 이 분야의 기존 노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에 관하여 통계 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가 진행하는 작업을 유념한다.¹¹
12. 유엔 총회 제2 위원회 재활성화에 관한 논의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제목의 항목 아래에 “하모니워드네이처”라는 제목의 하위 항목을 제71차 회기의 임시 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다.

제81차 본회의
2015년 12월 22일

¹¹ 경제 사회 이사회의 공식 기록, 2013, 보충문서 4 (E/2013/24), 1장, C, 결정문 44/114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3, Supplement No. 4 (E/2013/24), Chap. I, sect. C, decision 44/114.)



총회

배포: 일반

2015년 8월 4일

원문: 영어

제70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20(g)*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총회 결의안 69/224호에 의거하여 제출된다. 이 결의안에서 총회는 총회 의장에게 제69차 회기에서, 2015년 4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하모니워드 네이처(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포괄적인 상호대화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사무총장에게 결의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70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무총장 보고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2015년 4월의 상호대화에 반영된 것처럼 하모니 워드 네이처를 통해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 A/70/150.

1. 서문

1. 총회는 “하모니위드네이처”라는 제목의 결의안 69/224호에 따라 총회 의장에게, 제69차 회기에서, 2015년 4월 27일¹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기념식 동안 회원국, 유엔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소집될 총회 본회의에서 이 주제에 관한 상호대화가 개최될 수 있도록 소집을 요청하였고, 제70차 회기에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논의 자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최근의 총회 결의안은 2015년 이후 발전 의제 공식화에서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제5차 상호대화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성찰하고,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기후 변화 해결을 포함한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다.
3. 본 보고서의 개요는 제5차 상호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사와 최신 문헌이 이 사안들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를 제시한다.
4. 제5차 상호대화에서는 (a) 하모니위드네이처 패러다임, 즉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하모니위드네이처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검토, (b) 인간중심주의 사고, 즉 사람은 건강한 환경에 살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와 생산 양식은 특히 생태계 악화, 토양 침식, 사막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해양 산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람만을 중심에 두는 사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원주민의, 연구의, 정치적, 실증적, 감정적, 정신적 지식을 포함한 지식의 동시 발전(cogeneration)은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대화의 많은 연사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개발금융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와 2015년 11월과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연결된 과정의 성공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총회의 공개 실무 그룹(Open Working Group) 보고서 서문에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욕구 사이에서 완전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A/68/970, 정오표(Corr.))

¹ 공식적인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은 4월 22일임.

1, 9 절 참조). 제안된 세부목표 12.8은 또한 목표는 2030년까지“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을 위한 적절한 정보와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인간 활동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간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관계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 간의 본질적인 연결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 제고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할 전환적인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6. 많은 고대 문명, 원주민과 문화가 의존하는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은 이런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전통적인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측면의 개요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국제 사회가 자연과의 조화라는 주제에 관해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II. 현대 과학과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

7. 195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이후, 과학자들은 온실 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 삼림 파괴, 종의 멸종에 대해 경고해왔다. 더욱이 과학자들은 또한 “6번째 멸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관찰해 왔는데, 이는 인간이 지구에서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6번째 멸종은 약 6천 6백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만큼이나 강력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²
8. 독일 포츠담(Potsdam)의 고등지속가능성연구소(Advanced Sustainability Studies)의 과학 부문 책임자(Scientific Director)이자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제2차, 제5차 상호대화의 패널리스트였던 마크 로렌스(Mark Lawrence) 교수는 제5차 상호대화에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위한 견고한 과학적, 정신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9. 로렌스 교수는 또한 과학은 어떤 요소들이 연도별 온도 변화를 통제하는 가에 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과학만으로는 해롭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도전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
10. 또 다른 패널리스트인 뉴욕주립대학 환경과학임업대학(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State University College of New York)의 저명한 교육 전문 교수(Distinguished Teaching Professor) 로빈 키머러(Robin Kimmerer)는 과학이 유일

² Elizabeth Kolbert, *The Sixth Extinction: An Unnatural History* (Picador, 2015).

한 도구는 아니지만, 강력한 도구이며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머러씨는 현대 과학의 특징 중 하나가 완전히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물질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영향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많은 지속가능성 쟁점들은 인간의 가치에서 자연과 문화의 교차점에 있고, 따라서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학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 될 수 없다.

11. 2015년 이후 전개된 세계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려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신중하게 모아야 할 것이다.
12. 학문간 벽을 초월한 연구는 이러한 형태의 지식을 한데 모으는 것을 추구한다. 그것은 기초 과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에 더해지는데, 과학은 그러한 작업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지식을 동시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3. 지식의 동시 발현, 특히 원주민 지식을 포함하는 지식의 동시 발현이 중요하다. 많은 연구 센터와 대학들이 이러한 형태의 학문간 벽을 초월한 지식 생산에 관한 탐구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 중에 고등지속가능성연구소가 있다.
14. 원주민 환경 철학이 설명하는 과학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환경과 직접 접촉하고 관찰하고 상호작용하여 얻은 경험을 보여준다.
15. 과학이 비원주민 지식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 지식이 전통 과학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³ 전통적인 지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지식은 대대로 전해진 살아있는 지식, 실천, 가르침과 경험이고, 생태계의 역학(눈, 얼음, 날씨, 물과 땅)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며, 전체론적이고 그것을 소유한 인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관습법의 기초이고, 역동적이고 축적되고 안정적일 것이다. 전통 지식은 또한 땅의 사용을 지배하는 규칙을 정한다.⁴
16. 전통적인 지식은 생태계 관계와 환경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생태계 관계, 인간-동물 상호작용, 심지어 사회적 관계까지 증진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가 사냥과 다른 활동을 통해 계속 확립되고 재확인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지식은 삶과 세계에 대한 풍부하고 독특한 이해를 형성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지식과 함께 작용한다.

17. 세계 과학 공동체는 1999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World

³ Alan R. Emery and Associates,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s with indigenous people", March 1997 (<http://www.kivu.com/prototype-guidelines-1997> 검색).

⁴ "What is traditional knowledge?" (http://www.nativescience.org/html/traditional_knowledge.html 검색) 참조

Conference on Science)에서, 전통 지식이 현대 과학의 발전을 위해 수행한 중요한 역할은 과학사학자들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되었음을 고려하여 전통 지식을 특히 환경 및 발전 분야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통 지식의 적절성을 인정하고 지지했다.

18. 게다가, 서양 과학의 발전은 전통적인 지식에 크게 의존해 왔고, 서양 과학자들은 식물 생태학에 관한 원주민의 설명과 그들의 분류 체계에 의존했다.⁵
19. 20세기 중반, 해롤드 콘클린(Harold Conklin)의 선구적인 연구에 뿌리를 둔 민족과학이 전통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 과학과 전통적인 지식 사이의 긴밀한 협력의 예가 몇 가지 있다.
20. 한 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제 농업 연구 자문기구(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의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관행과 지역 주민의 원주민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참여 기술 개발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1. 전통적인 지식은 농작물 재배, 육종 및 관리뿐만 아니라, 화전 농업의 원리와 실행, 농업생태학, 혼농임업, 윤작, 해충 및 토양 관리, 그리고 기타 농업 활동에 대한 경험적 통찰력을 제공한다.⁶
22. 서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지식과 서양의 과학은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전통 지식과 서양 과학은 모두 무질서로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는 지적 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식은 실험과 사실의 체계적 축적이 아니라 주로 질적이고 전체론적이며 시행착오에 의한 사실의 통시적 자료와 경험적 축적을 기반으로 한다.
23. 전통적인 지식은 상호적인 관계에서 자연과 그 법칙과 순환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인 지배 체계는 자연과 함께 살고,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에 적응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전통적인 지식에서 파생된다. 그 증거는 전 세계의 원주민 및 전통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성공적으로 자신들과 그들의 환경을 지탱해 온 특정 생태계에 기초하여 고도로 적응된 다양한 전통들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24.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통적인 지식 사이의 차이점은 전통적인 지식은

⁵ Roy Ellen and Holly Harris, "Introduction", in Roy Ellen, Peter Parkes and Alan Bicker (eds.), *Indigenou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ts Transformations: Critic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verseas Publishers Association, 2000).

⁶ Roland Bunch, *Two Ears of Corn: A Guide to People-centered Agricultural Improvement* (Oklahoma, World Neighbors, 1982) (http://marriottschool.net/emp/ WPW_bak/Two_Ears_of_Corn_lg.pdf 검색).

전체론적이고 그것은 환경과 기후의 다른 측면들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전통적 지식은 지식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구조화되는 방식과, 가령, 서로 다른 종이 그들의 자연적 배경에서 그들을 관찰함으로써 상호 연결되는 방식에 의존한다. 반면에, 과학은 분류와 데이터 수집을 사용하여 별도 과학 분야에서의 환경 분석에 의존한다.

25. 만약 과학자들이 지역 지식 보유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연구 관행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에 관한 방글라데시에서의 사례는 지형을 지도화 할 때 원주민의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게 범람원 관리를 개선했는지를 보여주었다.⁷
26. 전통적인 지식과 서양 과학은 물과 주택 관리뿐 아니라 산과 해안 생태계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찾는 데 사용되어왔다. 둘 사이의 협력은 많은 사례에서 나타난다. 스리랑카에서는 가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인 물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식품 저장 및 농작물 보호 전략에 의해 보완되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이 홍수 예방을 위해 사용되었다.
27. 켄트 대학(University of Kent)의 인류학과 생태학 명예 교수인 로이 엘렌(Roy Ellen)은 물질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썼다. 따라서 과학과 전통적 지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지구)을 동일한 관점(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동일한 도구(경험)를 사용하는 두 활동을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들은 “다양한 정도의 불안전성과 주관성으로 현실 세계에”에 접근한다.⁸
28.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섭정명예교수(regents Professor Emeritus)인 버나드 패튼(Bernard Patten)은 환경의 분류와 범주화에 의존하는 기술과학(descriptive science)이 문제를 식별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9. 예를 들어, 캐나다 매켄지 분지(Mackenzie Basin)에 거주하는 딘(Dene)의 주민들은 지역 기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및 물 순환 실험(Global Energy and Water Experiment)의 과학자들을 만났다. 토론에서 어느 쪽도 과학적 지식과 전통적 지식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공동체의 원로들과 과학자들 양측이 제기한

⁷ Paul Sillitoe, “Interdisciplinary experiences: working with indigenous knowledge in development”, *Interdisciplinary Science Reviews*, vol. 29, No. 1 (March 2004) 참조

⁸ “From ethno-science to science, or ‘What the indigenous knowledge debate tells us about how scientists define their project’”,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vol. 4, Nos. 3-4 (2004) 참조

많은 사항이 새로운 공동 지식의 길을 열었다.⁹

30.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얻은 전통적인 지식은 지각을 활용한 조사(perceptive investigation)를 통한 생태계 이해에 기여한다. 더욱이 전통적인 지식은 자원관리, 환경 보존 작업, 환경 평가 및 개발 계획에서 매우 유용했다. 우리의 현실을 보다 전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과학과 전통적인 지식은 함께 작용하여 현재의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III. 지구를 지키는 일

31. 2015년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키머러(Kimmerer)는 지속가능성의 열쇠는 더 이상 훼손된 생태계를 수리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태계로 되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땅과 전체로서의 환경 및 자연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세계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32. 그녀는 “지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는 현재의 세계관은 지구를 향한 존경심이 커질 수 있는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¹⁰
33. 일반적으로 전 세계 문화에서 세대 간에 구두로 수천 년 동안 전달되어 온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다양한 자연관이 개발되어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구현하고 있다.¹¹
34. 오늘날, 전통적인 생태학 지식은 생물이 서로 간의, 그리고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적응 과정에 의해 발달한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지식, 실천, 표현의 누적된 모음으로 해석된다.
35. 전통적인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시스템에 관한 전체론적 지식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모든 당사자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이 접근법이 초래할 가치를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원주민 지식 체계에서는 세속적 지식 및 실천과 성스러운 지식 및 실천 사이에 구분이 없다. 물질이 정신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에 의해 생기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기

⁹ Ming-Ko Woo and others, “Science meets traditional knowledge: water and climate in the Sahtu (Great Bear Lake) Region, Northwest Territories, Canada” *Arctic*, vol. 60, No. 1 (March 2007) 참조

¹⁰ 발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harmonywithnatureun.org/content/documents/302Correcta.kimmererrepresentationHwN.pdf>

¹¹ Fulvio Mazzochi, “Western science and traditional knowledge: despite their variations, different forms of knowledge can learn from each other”, *EMBO Reports*, vol. 7, No. 5 (May 2006), pp. 463-466.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36. 키머러 씨는 또한 생태계의 균형은 주기와 받기, 삶과 죽음, 생산과 소비의 주기와 생물지구화학 주기에서 일어난다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것이 자연과의 조화를 야기하는 상호주의이며, 긍정적인 순환 고리(feedback loops)가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도 마찬가지다. 생태계 기능을 통제하는 규칙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안된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할 필요성을 정의하고,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은 예를 들어, “명예로운 수확”라고도 알려진 소비를 지배하는 원리와 실행에 관한 원주민 규범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37. 명예로운 수확은 인간이 가져간 모든 것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살아있는 세계와 인간 사이의 상호주의 약속이다.
38. 상호주의의 또 다른 예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 유래한다. 이로쿼이(Iroquois)의 위대한 평화의 법(Great Law of Peace)에 성문화된 7세대 원칙은 개인의, 정부의, 기업의 결정, 즉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7세대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세대는 일반적으로 25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175년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A/42/427, 부속서)에서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일치하는데, 이 보고서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양보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39. 원주민의 세계관에서, 땅은 살아있고 사람들은 땅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¹²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문화에서는 이러한 땅과의 연관성이 상실되었다. 최근 들어서야 토지 보존에 대한 더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세계의 다른 원주민들과 공동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아메리카 원주민의 세계적인 목소리가 되었고, 2014년 제4차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회 참여했던 변호사 겸 교수인 고 토냐 고넬라 프리흐너(Tonya Gonnella Frichner) 물과 공기, 땅이 모두 오염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지구는 친척이지, 자원이 아니다.

¹² Tapestry Institute, “Indigenous Earth-based worldview”
(<http://tapestry.institute.org/indigenousearthworldview.html> 검색)

Ⅳ. 관습법과 자연

40. 법철학에서 정의하는 자연적 보편 법칙(natural universal law)이 있는데, 이는 자연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보편적이다.¹³ 상호주의는 자연적 보편 법칙의 일부를 형성하며, 자연계와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원주민 사회의 행동 강령에서 일관된 특징이다. 또한, 관습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41. 관습법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상호관계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의 결과이다. 그것은 주의의무를 창출하거나 인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당사자들의 상호적 행동은 가치가 동등해야 하며, 이는 상호주의 유대가 다른 사람들을 결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가 내일 보답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내에서의 관계는 충분히 유동적이어야 한다. 즉, 의무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상호적이어야 한다.¹⁴
42. 결과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은 윤리 강령, 관습법 또는 자연계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과 같이 원주민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 밀접하게 엮여 있다. 그러므로 자연계에 의존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명예로운 수확과 7세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43.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종의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세계 생태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많은 환경 변호사와 과학자들은 현대 환경 법률 체계를 구축한 기본 원칙은 인간이 단지 사용을 위해 착취할 자원으로써 자연에 접근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 제5차 상호대화의 패널리스트이며, 캐나다 위원회 전국 의장(National Chairperson of the Council of Canadians)이자 워싱턴에 기반을 둔 비정부 조직인 식량과 물 지킴이(Food and Water Watch) 이사회 의장인 모드 발로우(Maude Barlow)는 “우리 세계는 자연을 재산의 한 형태로 본다”라고 말했다. 발로우 의장은 또한 환경 및 다른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이 “인간의 활동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양을 규제할 뿐”이라는 견해를 표현하였다.¹⁵ 국제 전체주의 법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Wholistic Law)의 설립자인 환경변호사 뭄타 이토(Mumta Ito)는 인간이 자연에게 인간 소비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44. 많은 환경 변호사와 다양한 사회과학의 학자들은 관습법을 고려하는 것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¹³ Heinrich Rommen, *The Natural Law: A Study in Legal and Social History and Philosophy* (Indianapolis, Liberty Fund, 1998)

¹⁴ Bruce L. Benson, *The Enterprise of Law: Justice without the State* (Independence Institute, 2011) 참조

¹⁵ 발표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harmonywithnatureun.org/content/documents/301presentation%20barlow.pdf>.

45. 이러한 생각에 따라, 세계의 많은 공동체가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권 운동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일부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보편적인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46. 가이아 재단(Gaia Foundation)은 제5차 상호대화의 성명에서 저명한 문화사학자이자 지질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를 언급했는데, 그는 인간은 모두 지구 공동체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고 번성하며 생명의 발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모든 생명체의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건강과 온전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구 중심 지혜와 원주민과 자연의 실천에 영감을 받아, 그는 이 통치 철학을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이라고 칭했다.
47. 지구 법학의 인정은 가이아 재단이 수행한 작업의 기초인데, 이는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지구 기반 지식과 관행을 되살리고, 그들의 관습적인 지배 체계에 대한 법적 인정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지역 원주민 지배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단결을 재구축하여 개발과 기후변화 등의 위협으로부터 생태계 및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 생태 관리라 불리는 전체적 과정을 개발했다. 전통적인 지식 체계는 공동체가 자연의 법칙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통찰 방법을 제공한다.
48. 증가하는 환경 위협에 대응하여, 이러한 공동체는 다층적인 선례를 확립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는 콜롬비아 정부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로부터 열대우림의 법정 후견인으로 인정받았다. 자연의 법칙(laws of nature)에서 비롯된 그들의 생태 지배 체계는 그들이 이 숲에서 살고 수천 년 동안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49. 지구를 법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성스러운 자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아프리카 관습법은 지구 표면에 침술 지점과 비슷한 성스러운 자연 유적지를 포함한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성스러운 자연 지역은 분수령이나 숲 또는 강일 수 있는데, 지구와 모든 종의 미래 세대의 건강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금지 구역(no-go areas)’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V. 생활과 행동의 변화

50. 인간이 계속해서 지구를 고갈시키기보다는 자연을 보호하려면 인류의 생활 및 행동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생산 및 소비 체계와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중심을 필요로 한다.

51. 증가하는 생태적 위기, 특히 세계 기후 변화는 이미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식량, 물, 깨끗한 공기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최전선에 올리고 있다. 누구도 뒤처지게 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는 따라서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감안할 필요가 한다.
52. 정신적, 윤리적 통찰력과 지침에 대한 요구는 현재 많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이 들리고 있다. 2015년 4월 28일,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회의를 위해 바티칸(Vatican)에서 만났다. 그들은 최종 성명에서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는 과학적인 현실이다”라고 “이것의 결정적인 완화는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의무이다”라고 선언했다.¹⁶ 이 성명은 또한 인간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와 맞서기 위해서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3.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 회의의 발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과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종교 및 과학 지도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54. 바티칸 역사상 최초로 인류와 환경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문서인 2015년 6월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는 우리 현대 세계의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라는 요청이다.
55. 이러한 도전들은 또한 수년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던 많은 사회과학 및 다른 학문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다루어졌다.

VI. 결론

56. 2015년, 유엔이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회원국들은 새로운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건강하고 독자 생존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약속할 알맞은 시기이다.
57. 변혁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이행과 패러다임 전환에는 시간, 노력, 창의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¹⁶ Vatican Radio, “Final declaration on workshop on climate change”, 28 April 2015
(http://en.radiovaticana.va/news/2015/04/28/final_declaration_on_workshop_on_climate_change/1140356 검색)

개선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약속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은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으로서의 변화와 더욱 지구 친화적이고 사람 친화적으로 발전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58. 그럼으로써 인류는 조화로운 변화에 관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인데, 이 길에서 생산 과정은 자연계가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59. 자연은 우리 인간이 그러하듯 존재하고 번성하고 번영해야 하며, 우리는 건강하고 보편적이며 다양하고 조화로운 조건에서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21세기 초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류가 그 앞에 닥친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VII. 권고

60.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국제 및 과학 공동체, 종교 지도자와 선도 그룹 및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어 왔다. 전술한 이 주제 관련 논의, 총회의 상호대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결과 문서, 2012년 이후 채택된 많은 국제 정책 문서 및 2015년 9월 제70차 회기 총회에서 채택될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에 따라, 회원국들은 다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기를 원할 수 있다.
- (a)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총회의 심의와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후속조치 내에서 이 문서 및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이전의 보고서와 지금까지의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다섯 번의 상호대화에서 개요를 서술한 하모니위드네이처 접근법을 고려한다.
- (b)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종교학, 인류학, 의학, 언어학 등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 종사하는 개발 실무자, 사상가, 학자들의 기존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에게 현재의 과학적 정보, 특히 환경, 사회, 경제 과학의 최고기관에서 나온 정보에 의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삶의 개념화를 증진 시킬 것을 요청한다.
- (c) 하모니위드네이처 웹사이트(www.harmonywithnatureun.org)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개발하기

위해 회원국과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 그리고 주제에 관한 지식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지원한다.



총회

배포: 일반

2017년 2월 6일

제71차 회기

의제 항목 19(h)

2016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2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A/71/463/Add.8)]

71/232. 하모니워드네이처

총회는,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¹, 의제 21(Agenda 21)², 의제 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³,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이행 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⁵을 재확인하고,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 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상기하며,⁶

¹ 유엔 환경과 발전에 관한 회의 보고서, 리우 데 자네이루, 1996년 6월 3~14일, vol. I,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출판물, 판매번호 E.93.I.8 및 정오표), 결의안 1, 부속서 I

² Ibid., 부속서 II

³ 결의안 S-19/2, 부속서

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보고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26일~9월 4일 (유엔 출판물, 판매번호 E.03.II.A.1 및 정오표), 1장, 결의안 1, 부속서

⁵ Ibid., 결의안 2, 부속서

포괄적이고 원대하며 사람 중심적인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세부목표를 채택한 “우리의 세상 바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2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2015년 9월 25일 결의안 70/1, 2030년까지 의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일할 것이라는 약속,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인식,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취에 기반하여 완료되지 않은 일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지원 및 보완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이행 목표 수단의 맥락화를 지원하고, 세계적인 동반자 관계 및 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든 수준의 자원 및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도전을 다루겠다는 강한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제3차 국제개발금융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 관한 2015년 7월 27일 69/313 결의안을 재확인하며,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결의안 2009년 12월 21일 64/196호, 2010년 12월 20일의 65/164호, 2011년 12월 22일의 66/204호, 2012년 12월 21일의 67/214호, 2013년 12월 20일의 68/216호, 2014년 12월 19일 69/224호, 2015년 12월 22일 70/208호 및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한 2009년 4월 22일의 결의안 63/278을 상기하고,

1982년 세계 자연 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또한 상기하며,⁷

일부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자연과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과 사회가 그들이 자연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재고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열리고 하모니 위드 네이처 웹사이트에서 진행된 총회 상호대화에 서 적극적이었던 사람들 포함, 지구법학 전문가들 간에 개최된 하모니 위드 네이처에 관한 화상대화를 감사함으로 유념하고,

지구라는 행성과 그 생태계가 우리의 집(home)이며 “어머니 지구”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된 표현임을 인정하고, 일부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⁶ 결의안 66/288, 부속서

⁷ 결의안 37/7, 부속서

인정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욕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론적 방법론을 촉진함에 있어 지구 시스템 과학(Earth system scienc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문서로 기록된 환경 파괴, 잠재적으로 더 빈번하고 강한 자연재해 및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의 공평하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할 목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볼리비아 다민족국가(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가 코차밤바(Cochabamba)에서 주최한 기후변화 및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회의(People's Worl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를 유념하고,⁸

많은 국가가 어머니 지구를 모든 생명과 양분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이 국가들이 어머니 지구와 인간을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의 분리할 수 없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사는 것에 관한 정책 문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관한 많은 계획이 있었음을 유념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개념적 틀을 유념하며,⁹

국내총생산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과 지속가능발전 및 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관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초통계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불균등하다는 것과 그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또한 인정하며,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⁸ A/64/777, 부속서 I과 부속서 II 참조

⁹ IPBES/2/17.

필수적이며, 리우 원칙(Rio principles)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고 모든 국가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촉진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많은 고대 문명, 원주민, 원주민 문화가 상호 유익한 관계를 강화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에 대한 이해의 풍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전통 지식, 혁신, 실천이 사회적 복지와 지속가능한 생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전 지구적인 노력과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하며,

지구상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시민 사회, 학계 및 과학자가 수행한 작업과 그들이 정부 및 민간부문 조직과 함께 더욱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과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행한 노력을 또한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이 다양한 지식 분야의 학제적 연계 강화를 요구하는 전체론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유엔발전체제 내에서 포괄성의 중요성과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나라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 강조하며,

1. 2016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웹사이트에서 개최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화상대화 주관,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 전문가들¹⁰의 첫 번째 총회 화상대화 전문가 요약 보고서를 감사와 더불어 유념한다.
2. 회원국들에게 기존 연구와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¹¹, 지구 법학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화상대화 요약 보고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적 통합을 촉진하는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총회 상호대화의 결과와 권고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3.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석하여 전문가 요약 보고서의 권고에 대하여 논의하여 시민과 사회가 자연계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재고하도록 고무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인간과 지구 간 관계의 윤리적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회 의장에게, 제71차 총회에서, 2017년 4월 21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동안 소집될 본회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대화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¹⁰ A/71/266 참조

¹¹ A/65/314, A/66/302, A/67/317, A/68/325 and Corr.1, A/69/322 and A/70/268

4. 매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계속 기념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회원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국제적인 날을 준수하도록 고무한다.
5.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정부와 사무국 경제사회부(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Secretariat) 간의 합의를 감사와 더불어 *유념하며*,¹²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하모니 워드 네이처에 관한 총회 상호대화 참여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의 신탁 기금하에 하모니 워드 네이처와 관련하여 예정된 활동에 이바지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하모니워드네이처와 관련하여 예정된 활동에 이바지할 것을 요청한다.
6.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촉진하고, 전통 지식의 사용과 기존 국가 법률에 관한 성공 사례를 포함한 학제적 과학 작업의 통합을 진전하기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 및 활동에 대한 기여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사무국 경제사회부 지속가능발전과(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Secretariat)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사용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7. 인류를 자연과 조화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지속가능발전, 그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8. 필요에 따라, 해당 국가들에 요청한다.
 - (a)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과학 정보에 의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동인과 가치를 반영하는 다른 경제적 접근법을 찾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 관한 전체론적 개념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에 대한 지원과 인정을 촉진할 것
 - (b) 원주민 문화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여, 지구와의 조화를 촉진하고, 자연 보호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부터 지역 공동체 차원에 이르기까지 행하진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
9.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의 세 차원에 관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질과 양을 개발 및 강화하도록 *고무하며*, 국제 사회와 유엔 체계의 관련 기관이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¹² www.harmonywithnatureun.org/trustfund.html 검색

10. 정책 결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내총생산을 보완하는 포괄적인 진보 측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점에서, 포괄적인 진보 측정과 이 분야의 기존 노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의 진행 중인 작업을 유념한다.¹³
11. 유엔 체제 관련 기구들이 각각의 권한과 자원 내에서, 현재의 결의안을 이행함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국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2. 사무총장에게 제72차 총회에서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제목의 항목 하에 “하모니 워드 네이처”라는 제목의 하위 항목을 제72차 회기의 임시 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다.

제66차 본회의
2016년 12월 21일

¹³ 경제 사회 이사회 공식 기록, 2013, 보충문서 4 (E/2013/24), 1장, C, 결정문 44/114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3, Supplement No. 4 (E/2013/24), Chap. I, sect. C, decision 44/114.)



총회

배포: 일반

2019년 1월 11일

원문: 영어

제73차 회기

의제 항목 20(h)

2018년 12월 20일의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제2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A/73/538/Add.8)]

73/235. 하모니워드네이처

유엔총회는,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¹ 의제 21(Agenda 21),² 의제 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³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⁴ 및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행 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을 재확인하고,⁵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 총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¹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 보고서(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vol. I,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I.8 and corrigendum), 결의안 1, 부속서 I.

² Ibid., 부속서 II.

³ 결의안 S-19/2, 부속서.

⁴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보고서,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2002년 8월 26일- 9월 4일(유엔 발간, Sales No. E.03.II.A.1 와 정오표(corrigendum), I 장, 결의안 1, 부속서.

⁵ Ibid., 결의안 2, 부속서.

future we want)”의 결과문서를 상기하고,⁶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람 중심인 일군의 보편적이고 전향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과제, 2030년까지 완전한 의제 이행을 위한 부단한 작업에 대한 약속, 극단적 빈곤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 근절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큰 지구적 과제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라는 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과를 토대로 미완성 사업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채택한, 2015년 9월 25일의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70/1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지지하고 보완하며, 구체적인 정책 및 활동으로 세부목표의 이행 수단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환경 조성과 자금조달의 과제를 위해 강력한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한, 2015년 7월 27일 제3차 국제개발금융회의의 아디스아바바 실천 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 관한 결의안 69/313을 재확인하고,

1982년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상기하며,⁷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차밤바에서 볼리비아 다민족국가가 주최한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 회의(Peoples' Worl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를 유념하고,⁸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주택 및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재확인하고,⁹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2009년 12월 21일 64/196호, 2010년 12월 20일 65/164호, 2011년 12월 22일 66/204호, 2012년 12월 21일 67/214호, 2013년 12월 20일 68/216호, 2014년 12월 19일 69/224호, 2015년 12월 22일 70/208호, 2016년 12월 21일 71/232일, 2017년 12월 20일 72/223의 결의안과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한 2009년 4월

⁶ 결의안 66/288, 부속서.

⁷ 결의안 37/7, 부속서(annex)

⁸ A/64/777, 부속서(annexes) I 과 II 참조

⁹ 결의안 71/256, annex.

22일 63/278 결의안을 상기하고,

또한 2012년 12월 8일 도하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 계획에 따른 합의된 결과(Agreed outcome pursuant to the Bali Action Plan)”라는 제목의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¹⁰의 결의안의 1절(section) 2항(paragraph)에서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평등한 접근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2016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때 개최된 자연과 조화로운 삶에 관한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더욱 상기하고,

2008년 몬테끄리스티(Montecristi)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를 최초로 포함시켰던 에콰도르 헌법(Constitution of Ecuador)이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었음을 유념하고,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시민과 사회가 재고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2018년 4월 23일 개최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의 실천에서 전반적인 지구법학의 주제로 총회 의장이 소집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에 감사를 표하고, 몇몇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행성 지구(planet Earth)와 그 생태계가 우리의 근원지이며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는 다수의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의 표현임을 인정하고, 몇몇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연의 권리를 유념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표명하며,

파리협정(Paris Agreement)¹¹을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이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고무하고, 아직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국은¹² 적절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고무하며,

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 온전성의 보장과 몇몇 문화권에서 어머니 지구로 인식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호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또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치를 할

¹⁰ FCCC/CP/2012/8/Add.1, decision 1/CP.18

¹¹ FCCC/CP/2015/10/Add.1, decision 1/CP.21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채택

¹² 유엔, Treaty Series, vol. 1771, No. 30822.

때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개념 중 일부의 중요성을 유념하고,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론적 접근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구 시스템(Earth systems)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유념하며,

서류로 작성된 환경 파괴, 잠재적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 높은 자연재해 및 인간 활동에 의해 초래된 자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의 공평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수의 국가가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를 모든 생명과 자양분의 원천으로 여기고, 이들 국가는 어머니 지구와 인류를 상호연관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구성된 살아있는 공동체로 생각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책 문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법안 발의(initiatives)가 있었음을 유념하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개념적 틀을 유념하고,¹³

에스카수 협정(Escazú Agreement)으로 알려진, 최초의 구속력 있는 협약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환경문제에서의 정보 접근, 대중 참여와 정의에 대한 지역 협정(Regional Agreement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을 위해 유엔 본부에서 채택 및 서명을 시작했음을 유념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로 조속한 발효를 고무하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환경 악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발전의 지표도 아니며, 지속가능발전 및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영역에서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의 불균등한 가용성을 인정하고 그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또한 인정하며,

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리오 원칙(Rio principles)을 고려하여 선진국은 선도하고, 모든

¹³ IPBES/2/17 참조

국가는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촉진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의 발전과 농촌 인구를 위한 더 좋은 삶의 여건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한 많은 고대문명, 원주민, 원주민 문화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공생의 연결성(symbiotic connection)을 이해하는 풍부한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며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식, 혁신, 실천이 사회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세계적인 노력과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인정하며,

몇몇 국가가 자연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고려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음에 유념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자연(Nature) 또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활동이 지속가능발전 촉진의 맥락에서 전문적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해 왔다는 점 또한 유념하며, 세 가지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대중의 인식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고무하며,

지구상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학계, 과학자, 공동체와 원주민이 수행한 작업을 인정하며, 생산 및 소비에서 더 지속가능한 모델과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 조직의 노력도 인정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2.8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양식에 관련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엔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활동을 시작한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Harmony with Nature Knowledge Network)’ 전문가의 작업을 유념하고,

지속가능발전이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의 학제적 연계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 전체론적인 개념임을 고려하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이라는 인식과 모든 국가와 국민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목표와 세부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기를 희망함을 재확인하고, 가장 뒤처진 곳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약속하며,

어떤 국가나 인간도 낙오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가장 뒤처진 이의 포용과 참여의 보장을 포함하여 가장 큰 도전이 있는 곳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며,

1.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주목한다.¹⁴
2. 회원국에게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도록 요청하며, 가능하다면 하모니위드 네이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의 결과와 권고사항¹⁵,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다루는 하모니위드네이처에 대한 총회(General Assembly)의 첫 화상대화(first virtual dialogue)의 전문가 요약보고서¹⁶,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역의 균형된 통합을 촉진함에 있어 하모니위드네이처에 대한 총회의 상호대화를 고려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한다.
3. 총회 의장에게 2019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호대화를 제73차 총회에서 소집할 것을 요청하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의 조화가 기여하는 점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과 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자연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재고하도록 고무해주시기를 요청한다.
4. 사무총장이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고려한 어머니 지구의 보호에 대한 지역적·국가적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수행하도록 고무한다.
5. 매년 4월 22일에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계속 기념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를 요청하고, 회원국이 국가차원에서 그 날을 기념하도록 고무한다.
6.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정부와 유엔의 경제사회사무국 간의 합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념하며¹⁷, 하모니위드네이처에 대한 총회의 상호대화에서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포럼의 신탁 기금하에 하모니위드네이처와 관련 지정된 활동에 기여하도록 회원국을 초청한다. 그리고 하모니위드네이처와 관련된 지정된 활동에 기여하도록 관련 이해 관계자를 초대한다.
7. 사무총장에게 경제사회사무국 지속가능발전 목표과(Division for Sustainable

¹⁴ A/73/221

¹⁵ A/65/314, A/66/302, A/67/317, A/68/325, A/68/325/Corr.1, A/69/322, A/70/268 and A/72/175

¹⁶ A/71/266 참조

¹⁷ www.harmonywithnatureun.org/trustfund.html. 검색

Development Goals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 관리하는 하모니워드네이처의 홈페이지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체적 접근법을 촉진하는 생각과 활동에 대한 정보와 기여를 수집하고 기존의 국내법과 전통적 지식의 이용에 대한 성공 사례를 포함하여 학제적 과학 작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8. 세 가지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이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도록 안내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끌 것이다.
9.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국가에 요청한다.
 - (a)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과학 정보를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동인과 가치를 반영하는 다양한 경제적 접근법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세 영역에 대한 전체론적인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심도있게 구축하기,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촉진하기
 - (b) 원주민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을 포함하여 지구와의 조화를 촉진하고, 그러한 문화로부터 배우며, 자연 보호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역 사회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기
10.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식물·미생물과 무생물 환경에 대한 해로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자연과 조화로운 인류의 공존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사무총장이 이번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한다.
11.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의 세가지 영역에 대한 국가 기본 통계 데이터의 품질과 양을 강화하고 개발하도록 고무하고, 국제사회와 유엔관련기구가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12. 정책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광범위한 진전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통계 위원회 (Statistical Commission)가 진행 중인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더 광범위한 진전 조치를 개발하고 이 분야의 기존 노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는 작업에 주목한다.¹⁸

¹⁸ 경제사회위원회 공식 기록(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3, Supplement No. 4 (E/2013/24), chap. I, sect. C, decision 44/114.

13. 유엔 체계의 관련 조직들이 각각의 권한과 자원 내에서, 현재의 결의안 이행에서 어느 국가도, 어느 개인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
14. 사무총장이 제74차 회의에서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74차 회기(seventy-fourth session)의 임시 의제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항목 아래에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 라는 하위 항목(sub-item)을 포함하기로 결정한다.

제62차 본회의
2018년 12월 20일



총회

배포: 일반

2018년 7월 23일원

문: 영어

제73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20(h)*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총회 결의안 71/223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회는 총회 의장에게 2018년 4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을 기념하기 위한 72차 세션에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를 소집하도록 요청했으며, 사무총장에게 제73차 회기에서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4월 23일 개최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제8차 상호대화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상호대화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의 구현에서 지구법학을 다루고 있으며, 법·정책·교육·대중참여에서의 지구법학의 이행 추세를 다루고 있다.

* A/73/150.

I. 서문

1. 2017년 12월 20일 총회는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9번째 결의안인 결의안 72/223을 채택하여,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동안 2018년 4월 23일 회원국, 유엔기구, 독립적인 전문가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개최되는 72차 세션에서 상호대화를 소집하도록 총회 의장에게 요청했다. 대화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2.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인식을 하도록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을 구현하는 데 있어 지구법학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2. 총회의 제8차 상호대화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A/72/175)와 총회 결의안 72/223에 의해 구성되었다.
3. 본 보고서에서는 상호대화에서 강조된 점을 서술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법률, 정책, 교육 및 대중 참여를 통한 지구법학의 동향을 기술한다. 대화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지구 중심 법과 생태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을 위한 적용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유망한 접근법, 동향 및 성과를 설명했는데, 그중 많은 것이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회원들에 의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시작되거나 촉진되었다.²

II.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에서 중요점(Highlights)

4. 2018년 4월 23일 총회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 본부에서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여덟 번째 상호대화를 개최하였다.³ 대화의 주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의 구현에서의 지구법학”이었다. 오전과 오후 패널 토의에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⁴
5. 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소비와 생산 수준과 양식이 인간의 생명, 웰빙, 건강, 그리고 지구 행성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장은 자연과

¹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인간이 더 넓은 공동체의 한 부분일 뿐이며 그 공동체의 각 구성원의 안녕이 지구 전체의 안녕에 달려 있다는, 법과 인간 거버넌스의 철학을 말한다.

² <http://www.harmonywithnatureun.org/experts/> 참조

³ 대화의 개요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www.harmonywithnatureun.org/dialogues/.

⁴ 패널 토의에 참석한 회원은 Juliana Braz, Karen Brown, Roberto Caldas, Jorge Calderón, Method Gundidza, Kathryn Gwiazdon, Kirsti Luke, Laura Movilla Pateiro, Marsha Moutrie, Jorge Iván Palacio and Leah Temper이었다. 사회자는 Craig Kauffman이었다.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균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제안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과 소비 양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세계 경제 및 법률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에콰도르의 상임 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 of Ecuador)는 환경 위기가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생산적 및 기술적 변화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이는 인류와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하였다. 인류의 생존은 그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달려 있고,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서 자연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자연의 권리 인정하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 잘 사는 것)”개념을 명시하였다.
7. 인도의 상임 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 of India)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함으로써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이 현재의 세계 경제와 생활 방식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인간은 현대 기술이 발전하기 훨씬 이전에 지구상의 생명체의 상호 의존에 대해 이해해 왔고, 육지, 물, 바다를 보호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관행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자연 개체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8. 볼리비아 다민족국가의 부상임대표(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는 인간이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자신을 복잡하고 섬세한 생명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탈 인간중심주의적 패러다임(non-anthropocentric paradigm)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사회가 생산과 소비의 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볼리비아 헌법은 지구와의 조화, 균형, 형평과 유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부엔 비비르”라는 원주민 원칙을 문서상으로 명시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사회 변혁을 위해 지구법학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개혁을 촉진해왔다.
9.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인간이 자연에서의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다른 생명체와 무생물의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는 방법을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의 부족과 경쟁의식(silo mentality)으로 인해 인간은 그들 자신을 더 큰 생명시스템(living systems)에 내포된 살아있는 생태계로 보지 못했다. 문제는 권리 기반(rights-based)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방법이었다. 자연 자원의 과도한 소비를 멈추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나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보완하는 자연에 관한 협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엔은 그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10. 유럽의회의 또 다른 의원은 극심한 환경 위기는 사람들의 사고 전환과 함께 자연을

단순히 생태계 서비스로 보는 차원을 뛰어넘어 자연의 내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제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법 체계는 “권리”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 세대와 자연에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권리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헝가리에서 발라톤 호수(Lake Balaton)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운동과 같이, 이론적인 법적 접근이 자연 개체(natural entities)에까지 권리가 확장된 구체적인 사례로 대체될 때 심층적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

11. 어머니 지구의 권리 운동(Rights of Mother Earth movement)⁵의 국제 캠페인 대표는 유엔이 어머니 지구 권리 선언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 캠페인은 122개국 약 852,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대중 참여 증가와 자연의 권리를 지지하는 법적 사례의 증가를 통해 추진력을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엔의 세계 선언 초안 작성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12. 유엔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대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모의 유엔 프로그램 참여를 설명했다. 이러한 대중 교육 활동으로 청소년들은 지구법학, 지구 중심 법, 생태경제학 등 유엔이 다루고 있는 국제적 이슈를 알게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과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을 위한 2030 의제에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3.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스페인, 뉴질랜드, 미국, 짐바브웨 출신의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의 구현에서의 지구법학 주제를 그들이 대표하는 학문의 관점에서 그 전개와 적용의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였다.
14. 인권(human rights)과 헌법은 자연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제조약 및 협약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인권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올해 초, 미주 인권 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했다. 위 재판소는 또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과 원주민 및 부족민의 권리의 상호보완성을 인정했다. 자연과 환경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다른 유기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15. 전문가들은 회복적 정의, 자연의 권리 집행, 자연 자원의 복잡한 관리,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모든 종의 미래 세대의 권리와 상호교류(cross-fertilization)를 위한 수단과 함께 법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률을 법원이 인정한 기존 법리와 결합한 지방 정부의 사례와 사법제도의 시행 없이

⁵ www.rightsofmotherearth.com/. 참조

시민 교육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구현한 사례를 공유했다. 자연에 대한 법적 지위 개념에 대한 판사와 변호사의 인식 제고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16.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익숙해지는 새로운 일상적 경험을 만들어 자연을 자본의 무한한 원천이 아닌 그들의 고향으로 이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인간과 생태의 장기적 건강보다 우선시되는 현 경제시스템과는 달리, 자본 비축적의 원리(principle of the non-accumulation of capital)에 기반한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와 같은 대안적 전략과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인간, 그리고 축적(accumulation)이 아닌 충분(sufficiency)을 지향하는 지역 경제에 달려 있다.
17.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회원들은, 전 세계 원주민들이 인간과 어머니 지구의 일부인 다른 모든 개체 간의 상호적이고 상호 지속적인 관계를 감사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참가자는 뉴질랜드의 마우리 부족인 투호 족(Tūhoe)의 경험을 공유했는데, 투호 족은 자연의 요소들(elements of nature)과 친족 관계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사적 고향인 테 우레웨라(Te Urewera)를 법인격(legal personhood)을 가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인정하는 조약을 정부와 체결하였다. 더불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트라토 강(Atrato River)과 그 지류를 다양한 형태의 생명과 문화를 지원하는 살아있는 개체로 인정하여, 그들이 권리를 갖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로 만들었다.
18. 토양 비옥성을 회복하고 자연의 비-인간적인 요소(non-human elements)의 건강을 보장하는, 호혜의 원칙에 기반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화 전반에 걸쳐 강조되었다. 참여자들은 교육의 중요성과 자연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강조했다.
19. 또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이 자연의 권리와 자연을 보살피는 인간의 공동 책임 및 의무를 인정하는 법적, 경제적 제도의 지속적인 진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III. 지구 중심 법 시행 동향

20.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의 채택이 증가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공약이 늘고 있다.⁶ 이와 관련하여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또는 자연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입법 초안에서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단체 및 입법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⁶ www.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 참조

21. 어떤 경우에는 비정부기구와 시민 사회 협회(civil society associations)가 입법자(국회 또는 의회 의원)에게 자연권과 관련된 법안 발의, 법원 판결 및 법적 판례의 발전에 대해 알리고 조언했다. 환경 재해의 결과로 시민 사회가 자연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22. 관습법이나 원주민 법에 근거한 자연의 법인격 인정은 서구의 실증법(Western positive law)에 원주민의 우주론을 통합한 예로써, 인간이 자연 세계와 하나라는 비전으로 법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의 내재적 가치의 근본적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A.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국내법

23. 2017년 9월 21일 호주 빅토리아 의회는 ‘야라 강 보호법 2017(Yarra River Protection, Wilip-gin Birrarung murrn: 비라롱(Birrarung)을 살아있게 하자라는 의미)’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17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야라 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불가분의 생명체이고, 전통적 소유자들이 강에 대해 갖는 본질적인 연결성과 함께 비라롱이라 부르고 있는 육지와 수로의 관리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24. 서반구에서 가장 큰 보초(barrier reef)가 있는 벨리즈(Belize)는 벨리즈 정부가 해양 석유 활동을 종식하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해양의 지속가능성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산호초를 보존하라는 전 세계적인 압력에 따라 2017년 12월 29일에 시행된 (석유 활동의) 무기한 활동 중단(moratorium)의 채택은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초창기 사례에 속한다.
25. 브라질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페르남부쿠(Pernambuco)주 보니투(Bonito) 시의 유기법(Organic Law) 개정으로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어 2018년 4월 25일 파우달류(Paudalho) 시에서 자연권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었으며, 다른 주의 자치단체도 잇따라 비슷한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자연권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와 환경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한데 모은 비정부기구인 “마파스(Métodos de Apoio à Práticas Ambientais e Sociais: MAPAS, 환경 및 사회실천 지원 방법)”와 입법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취되었다.
26. 2018년 4월 5일, 콜롬비아 대법원은 비정부기구인 데후스띠시아(Dejusticia, 정의)가 대리하여 콜롬비아 어린이 및 청소년 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후 변화와 미래 세대에 관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콜롬비아 아마존 지역의 권리를 인정하였고, 수많은 국제협약과 해당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제와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산림 벌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콜롬비아 대통령과

환경부에 이 지역의 산림 벌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콜롬비아 아마존의 생명을 위한 세대 간 협정을 맺을 것을 명령했다.

27. 위 판결은 아프리카-콜롬비아 단체(Afro-Colombian organizations), 원주민 단체, 비정부 기구인 띠티에라 디그나(Tierra Digna, 존엄한 대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아트라토 강(Atrato River)을 “보호, 보존, 유지,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복원을 함의하는 권리의 주체”라고 인정한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28. 2017년 9월 25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16년 4월 22일 어머니 지구에 대한 행정 명령의 결과물인 ‘어머니 지구 평화와 복지 협정(Mother Earth Peace and Wellness Agreement)’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12년 12월 21일 코스타리카의 가이아 재단(Gaia Foundation)과 어머니 지구 위원회(Mother Earth Council)가 코스타리카의 8개의 원주민 대표단과 함께 시작한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을 지는 방법으로 (각 개인이) 어머니 지구의 의식적 진화의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f the conscious evolution of Mother Earth)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협정은 코스타리카를 탄소중립 국가로 전환하려는 국가 목표에 개인적인 책임 의식을 보태어 코스타리카 각 시민이 자신의 생태 발자국을 최소화하여 어머니 지구와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29. 2008년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자연의 권리가 보장되었고,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을 보호하는 일련의 명령을 내렸다. 2018년 4월 6일, 법원은 빌까밤바 강(Vilcabamba River)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로써 도로 건설로 피해를 입은 강둑 복원을 위해 2011년에 명령된 조치가 합헌임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두 명의 지역 주민이 강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는 자연의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이 법원에서 강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었다.
30. 인도에서는 2017년 5월 4일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입법부에서 나르마다강(Narmada River)은 살아있는 존재이자 국가의 생명줄이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인도 내의 히말라야 빙하뿐만 아니라 갠지스와 야무나 강(Ganges and Yamuna Rivers)에 권리를 부여한 우타라칸드 고등법원(High Court of Uttarakhand)의 결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2018년 7월 4일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모든 동물을 권리가 있는 법인격(legal persons)으로 인정하고 우타라칸드의 모든 시민을 동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자로 지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31.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로열티 제도(Loyalty Islands)의 카나크 족 헌장(Charter of the Kanak people)은 인간을 그들 조상의 영토의 일부로, 그리고 개인의 권리는 한 무리(group)의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s)로 표현하고 있다. 위 헌장에 따라 로열티 제도 지방은 2016년 4월 6일 자연의 특정 요소가 고유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환경법의 첫 단계(first phase)를 채택하였다.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회원인 발레리 까바네스(Valérie Cabanes)는 카나크 족은 관습적인 토지관리가 자연 요소를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으며, 그들은 자연의 특정 요소에 법인격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32. 2017년 12월, 뉴질랜드의 타라나키 산(Mount Taranaki)은 에그몬트(Egmont) 국립공원(Taranaki Maunga) 내의 모든 정부 소유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법인격(legal personhood)을 부여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에 Te Urewera와 Whanganui 강에 법적인 지위가 부여된 바 있었다. 정부와 8개의 타라나키 이위(Taranaki iwi, 마오리족 사회의 단위)는 에그몬트 국립공원(Taranaki Maunga)에 대한 양해각서(record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였고, 이 공원을 지역의 마오리족(Māori)과 정부의 공동 책임 하에 두었다.
33. 2018년에 뉴질랜드 정부와 응가티 랑이 이위(Ngāti Rangi iwi,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Whanganui iwi의 하나)는 테 와이우 오 테 이카 기본약정(Te Waiū-o-te-Ika Framework)으로 알려진 왕개후강(Whangaehu River)에 대한 개정약정(redress framework)을 제공하는 합의 증서(deed of settlement)에 서명했다. 합의 문서(settlement documents)는 이 강을, 테 와이아모에(Te Wai-a-Moe, Crater Lake)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주변과 공동체에 생명과 치유를 주는 물리적, 형이상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살아있으면서 불가분인 전체로 인정했다.
34.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 6월 1일 드웨사 시웨베(Dwesa-Cwebe) 원주민 공동체들이 고유한 전통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부 해안에서 홍합을 채취할 수 있는 관습법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공동체들은 홍합 공동체의 건강한 생존과 어업을 보장해 온 홍합 채취 관리 관습법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이 판결은 식민지 간섭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관습법과 공동 소유 제도가 정당한 권위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B. 자연권을 부여하는 진행 중인 국내 입법

35. 브라질에서는 변호사 라파이에츠 소브링뉴(Lafayette Sobrinho)와 비정부기구인 빠차마마(Pachamama)가 2017년 11월 5일에 미나 제라이스(Mina Gerais)주에 위치한 도시(Doce)

강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Doce) 강의 법적 보호 요청은 2015년 11월 5일 발생한 벤투 후드리게스(Bento Rodrigues) 댐 재해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재해는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로 평가되었다. 그 재난으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했다. 약 6천만 톤의 철 폐기물이 도시(Doce) 강으로 흘러들었고, 독성 오염물질이 대서양까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6. 브라질 포르탈레자(Fortaleza) 시에서는 지역 사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긴급 환경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이어 학계와 시민사회 대표 간 토론회가 열렸다. 자연의 권리 인정에 관한 법안 초안이 현재 제안되었다.
37.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1958년 헌법과 2004년 환경 헌장을 추가로 개정하여 더 많은 생태학적 고려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혁을 시작했다. 여러 의회 의원들은 생물체의 권리, 동물 복지, 지구의 공유자산(global commons), 생태계 파괴범죄(ecocide), 비환경적 회귀의 원리(principle of non-environmental regression)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20개 이상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지구 중심의 헌법적 절차를 지향하는 추세를 시사하고 있다.
38. 인도에서는 우타라칸드(Uttarakhand) 법원과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 의회가 나르마다(Narmada) 강에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데 영감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갠지스 강(Ganges)에 대한 국법안(a national act)을 수상에게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이 신성한 강에게 법인격을 제공할 것이다.
39. 미국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지방조례를 계속 채택하고 있다. 입법의 첫 단계로, 2018년 7월 9일, 콜로라도 주 크레스톤(Crestone) 타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타운은 미국 남서부에서 가장 큰 대수층 중 하나로 멕시코 북부의 일부에까지 물을 공급하는 샌 루이스(San Luis) 계곡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크레스톤 시장은 지오베르시브 재단(Geoversiv Foundation), 지구법 센터(Earth Law Center), 그리고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을 만들기도 했던 캘리포니아 산타 모니카 시 전직 변호사와 협력하고 있다.

C. 자연의 권리 관련 정책 동향

40. 아르헨티나에서는 헌법 학자들이 ‘환경 문제에 관한 산타페(Santa Fe) 지방 헌법 개혁(reform of the Constitution)에 대한 기여’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public document)를 정치 및 헌법 개혁국(Directorate of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다가오는 주 헌법 개혁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41. 아루바(Aruba)에서는 라이쯔(RAIZ) 법령 정치 운동이 나무, 바다, 식물, 동물과 같은 자연 개체의 법적 지위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비바 본/비바 콘텐츠(Biba Bon 야호 좋아/Biba Contento 야호 만족스러워)” 수막 까우사이(Sumak Kawsay)의 개념을 포함한 자연의 권리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는 자연을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자연 자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42. 2018년 5월 31일 네덜란드 도네라델(Dongeradeel) 시의회는 바덴(Wadden)해 생태계의 권리와 새로운 거버넌스 기관에 의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동의안을 채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바덴 해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간대 모래와 갯벌이 이어져 있다.
43. 스웨덴에서 사미(Sami) 의회가 2018년 5월 25일 어머니 지구의 권리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을 승인했다.⁷ 사미 족은 다른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사미 의회의 두 여성 의원이 작성한 의회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인간이 우리 모두를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는 관점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이는 원주민들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우리 사미 족은 우리가 땅에 속해있다고 믿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믿는다."
44. 우간다에서는 '자연자원 및 개발 옹호(Advocates for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단체가 자연자원 위원회(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와 협력하여 지구법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 의원과 함께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 Act)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45.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영국에서는 녹색당(Comhaontas Glas)이 비정부기구인 자연의 권리(Nature's Rights)와 긴밀히 협력하여 2018년 2월 당의 환경정책문서를 수정하여 자연과 환경이 존재, 지속, 유지 및 복원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녹색당은 또한 아일랜드 헌법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자연의 권리를 헌법 및 법적 틀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국가들과의 공개 협의 및 대화를 요청했다.
46. 비정부기구인 '자연의 권리(Nature's Rights)'는 또한 영국 남서부에 있는 프롬(Frome) 시의회와 협력하여 로든 목초지(Rodden Meadow)와 프롬 강(River Frome)의 권리를

⁷ A/64/777, 부속서 II 참조

인정하는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을 모색하고 있다. 시의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의 권리’ 단체가 설계한 공식 협의를 했는데, 참가자의 96.6%가 생태계 파괴로부터 로든 목초지와 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권한 부여에 찬성했으며, 94%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다음 단계는 조례 초안이 포함될 규제 보고서와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47.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아프리카 원주민/공동체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Communities in Africa)’은 가이아 재단(Gaia Foundation) 및 아프리카 생물다양성 네트워크(African Biodiversity Network)와 협력하여, 신성한 자연 지역 및 영토 보호에 관하여 2017년에 채택된 위원회 372 결의 이행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아프리카 법 모델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의에서는 아프리카 생태계 보호에서의 신성한 자연 지역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와 발전에 유리한 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아프리카인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자연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48. 나이지리아에서는, 에티오피 강 신탁 재단(River Ethiopia Trust Foundation)과 지구법센터(Earth Law Center)가 에티오피(Ethiopia)강의 권리를 위한 초안을 완성했는데, 이 안이 채택되면 이 강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법적 권리를 갖는 강이 될 것이다.
49. 지구법센터(Earth Law Center)는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많은 중요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이 센터는 유엔이 공해(high seas, 특정국의 내수나 영해에 미포함된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 조약 협상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양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벌이며 32개국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왔다. 지구법센터는 또한 자연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권리에 기초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해양 보호 지역에 대한 지구법안(Earth law framework)을 완성했다. 또한, 센터는 우루과이에 본부를 둔 고래류 보존 단체(Organiz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Cetaceans)와 함께 해당 국가의 해양 지역 법적 권리에 대한 제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50. 지구법센터는 강 보호를 위하여 전 세계 자연의 권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강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선언문 초안을 갱신하고 있다. 이 선언은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입안되고 있는 법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 선언은 아르헨티나의 아미구스 브리프(amicus brief)와 콜롬비아의 안치까야 강(Anchicayá River)에 대한 법적 권리를 찾는 법정 의견서(amicus brief)에 인용되었는데, 이 의견서는 국제 지구법센터, 환경단체인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s)과 국제 인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Human Rights)에 의해 미주 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콜롬비아 국가 평의회

(Council of State of Colombia)에 제출되었다.

51.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계속해서 자연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2차 미주환경법규회의(Inter-American Congress on the Environmental Rule of Law)는 ‘미주 지역의 환경법률 경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무공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의하면 위 회의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사무국, 유엔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세계 환경법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가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원칙 2(principle 2)의 “자원에 대한 권리(Right to Nature)”를 인정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환경 법규에 관한 세계 선언(World Declaration on the Environmental Rule of Law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구체화한 권리를 법적 및 제도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하며 회원국을 지원하는 작업을 하였다.
52. 2017년 9월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에 설립된 생태법 및 거버넌스 협회(Ecological Law and Governance Association)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환경법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수백 명 승인으로 만든 2016년 오슬로 선언문(Oslo Manifesto)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선언문의 부속서로 개발된 시에나 연대 선언문(Siena Statement of Solidarity)은 환경법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과 거버넌스의 틀을 제공한다.
53. 또한, ‘환경법에 관한 세계 위원회의 윤리학 전문가 그룹(Ethics Specialist Group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은 환경윤리 및 법률 센터(Center for Environmental Ethics and Law) 및 지구법 센터(Earth Law Center)와 함께, 생물권 윤리 운동(Biosphere Ethics Initiative)에서의 자연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법의 윤리적 법적 함의를 탐구했다. 이들 기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학을 탐구하고 하천 권리에 대한 보편적 선언을 계속 발전시키는 협력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IV. 지구법학 교육

54. 이전 보고서에 소개된 많은 대학과 기관은 지구법학 및 자연의 권리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왔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 세계 더 많은 학술 기관에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중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지지 활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A. 지구법학에 관한 정규 교육

55.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는 국립 리토랄 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the Littoral) 법학 및 사회과학부가 자연의 권리에 관한 이론, 실습, 학제 간 접근에 대한 대학원 온라인 강좌, ‘자연의 권리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의 행동주의와 갈등에 관한 겨울 세미나’,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지지를 위한 과제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연구 세미나’ 등을 통해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56. 호주의 뉴캐슬 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서 권리의 주체로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으로의 전환에 대한 세미나를 포함하여 국제환경법에 관한 여름 강좌를 제공한다.
57. 브라질의 캄피나스 대학(Faculdades de Campinas)에서는 유엔 의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2학점 과정이 국제 관계 학부 프로그램의 공식 커리큘럼의 일부로 개설되었다. 2018년 1학기 동안 25명의 학생이 하모니위드네이처에 대한 수업과 토론에 참석하여 지구법학과 생태경제학의 개념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물로 학생들이 2030 의제, 특히 인권 옹호의 중요성에 대해 작성한 전자책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하모니위드네이처의 의제와 관련된 최근 동향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58.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단치 알리에리 학교(Dante Alighieri school)가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United Nations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에서 영감을 얻은 학제 간 프로젝트를 2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생물학, 화학, 영어, 지리학, 역사학, 수학, 물리학 및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 분야를 다루는데, 이러한 분야는 자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59. 2010년 볼리비아 다민족국가는 공교육 커리큘럼이 어머니 지구와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생활 개념과 일치하도록 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볼리비아의 교육이 지적 및 물질적 생산, 창조적 작업, 그리고 인간 공동체를 어머니 지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 체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교사를 위한 보완적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서 실행되었다. 2012년 이후 13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교육을 받았고, 2013년 현재, 이 프로그램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60.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가 25개 기관, 80명의 협력자, 40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대학원 연구 및 교육 파트너십인 “인류세를 위한 경제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생태법·거버넌스 협회와 긴밀하게 조율된 이 법 및 거버넌스 연구 계획의 전제는 현대 과학 및 전통 지식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함께 인간-지구 관계를 상호 향상하는 방향으로 법률 및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61.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와 버몬트 대학교(University of Vermont)에 기반을 둔 국제 파트너십인 “생태대를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the Ecozoic)”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박사 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이 박사 과정에서는 생태대(Ecozoic)를 위한 새로운 리더를 교육하며,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치유 및 복원하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양각색의 양식(a different mode of inhabiting the Earth)을 정의하고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행동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인간이 초래한 행성의 생명 유지 능력의 하락을 완화하는 고등 교육 자원과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2. 2018년 4월 19일, 코스타리카의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어머니 지구의 의식적 진화에 대한 선언 원칙을 공교육체계에 통합한 “내가 답이다(I am the answe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코스타리카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언문에 구현된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12일 코스타리카 전국 총장협의회(National Council of Rectors of Costa Rica)는 어머니 지구 평화의 길(Senderos de Paz Madre Tierra) 프로젝트 개발에서 공립 대학의 활동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어머니 지구의 의식적 진화에 대한) 선언 원칙은 유엔 평화대학(United Nations-mandated University for Peace)과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63.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에 있는 에스피리투 산토 대학교(Universidad de Especialidades Espíritu Santo)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헌법, 세계 경제 개발, 환경법 및 생태학 과정을 포함한 여러 강좌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시켰다.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중요 행위자로 원주민의 역할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64.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는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에 관한 내용, 특히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격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원주민 권리는 공법(public law), 자원관리법, 수자원관리법, 법윤리학(legal ethics)의 비교 맥락에서 인정되고 있다. 많은 학생이 학부 또는 명예 연구 프로젝트(honours research projects)의 주제로 자연의 권리를 선택했다.

65. 2018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지구 신탁관리 모임(International Earth Trusteeship Gathering)은 인간과 지구(Earth)의 관계를 치유하고, 지구의 신탁 관리자로서 인간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거버넌스, 법 및 법적 구조, 실제 사례 및 지지에 대한 시도를 모았다. 목표는 201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70주년을 전후하여 행동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66. 스페인의 타라고나(Tarragona)에 있는 로비라 이 비르길리 대학(Universitat Rovira i Virgili)의 타라고나 환경법 연구 센터(Tarragona Centre for Environmental Law Studies)에서 제공하는 환경법 분야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자연의 권리에 대한 여러 세미나가 포함되었다. 2018년 6월에는 ‘인권과 자연의 권리: 라틴아메리카의 최신 사례(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nature: state of the art in Latin America)’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67. 스웨덴 오스터파르네보(Osterfarnebo)에 있는 파르네보 민속 고등학교(Farnebo Folk High School)에서는 자연의 권리 및 부엔 비비르(Buen Vivir) 개념에 관하여 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했다. 이 과정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두 가지 법적 개념, 즉 원주민과 자연과의 관계에 뿌리를 둔 자연의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사미(Sami)의 개념을 통하여 부엔 비비르의 내적 및 외적 변화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68.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Colorado College)이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및 콜로라도주 크레스톤(Crestone) 지역 내 민족지학(ethnography)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지속가능성과 인류세(Sustainability and the Anthropocene)”라는 지구법학 주제의 강좌를 도입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의 탈라노아 대화 포털(Talanoa Dialogue Portal)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69. 베닌(Benin), 카메룬,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짐바브웨 출신의 아프리카 전문가 그룹이 지구법학 실무자가 되기 위해 가이아 재단의 3년 과정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합숙훈련과 야생 체험을 하고 원주민 원로들과 진보적 사상가가 지도하는 서면 및 실기 과제를 완성한다.

70.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다수의 대학이 신헌법주의에 입각한 자연의 권리와 자연의 법인격(legal personhood)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법의 모든 측면을 바라보고 논의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볼리비아 다민족국가에 있는 산 안드레스 데 마요르 대학(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석사 과정과 헌법상의

권리 및 행정에 대한 박사 과정을 제공한다. 콜롬비아의 리브레 데 콜롬비아 대학교(Universidad Libre de Colombia)는 깔리(Cali)와 페레이라(Pereyra)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시몬 볼리바르 안데스 대학교(Simón Bolívar Andean University)는 비판적 입헌주의 과정을 포함하여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석사학위과정을 제공한다.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University of Valencia)은 신헌법주의 강좌를 포함하여 헌법상 권리에 관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1. 2017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교육, 시청각, 문화 집행기관(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Agency)을 통해 자연의 권리 및 평화구축에 관한 새로운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3년간의 협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안데스 공동체 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Andean Community)와 에콰도르 고등 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 사무국(Secretariat of higher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f Ecuador)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대학들이 참가하고 있다. 2017년 2월 26일과 27일 키토에서 프로그램을 여는 회의가 열렸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첫 확산 행사(dissemination events)는 같은 해 9월에 콜롬비아 까르타헤나 데 인디아스(Cartagena de Indias)에서, 그리고 같은 10월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릴 예정이며, 2018년 10월에는 브라질 국립 연구 협의회 및 법학대학원 과정(Brazilian National Council on Research and Graduate Courses on Law)의 제9차 국제회의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72. 지구법센터(Earth Law Center)는 2019년 초 완공 예정인 지구법 교과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미국 로스쿨 사상 첫 자연의 권리 교재가 될 것이다.

B. 지구법학에 대한 비정규 교육 및 대중 참여

73. 2017년 8월 호주 멜버른 대학교 자원·에너지·환경법 센터(University for Resource, Energy and Environmental Law)는 호주 지구법 연합(Australian Earth Laws Alliance)과 함께 “강의 법적 지위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호주, 뉴질랜드, 남아메리카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74. 브라질리아에서는 2018년 3월 제1회 국제 물 정의 모의재판(International Water Justice Moot Court)이 열렸는데, 이 행사는 세계환경법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와 세계환경 사법연구소(Global Judicial Institute on the Environment)가 조직한 물 정의에 관한 판사 및 검사 국제회의(Conference of Judges and Prosecutors on Water Justice)에서 조직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케냐,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하와이, 뉴욕)의 법대생들은 강의 법인격과 기후 위기가 수법

(water law)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학생들은 호주, 바베이도스, 멕시코, 노르웨이, 태국 및 동아프리카 국가의 고등 법원 판사로 이루어진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발표했다.

75. 2018년 9월 파울다데스 데 캄피나스 대학(Faculdades de Campinas college)이 유엔 협회 세계 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과 협력하여 국제모델 유엔 브라질(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Brazil)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 행사에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토론 주제가 포함된다. 이 행사는 젊은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6. 2017년 9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ópolis)에 있는 산타카타리나 연방대학교(Federal University of Santa Catarina)가 인권과 자연의 권리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브라질 환경법 연구자들과 생태법·거버넌스 협회(Ecological Law and Governance Association) 간의 대화를 강화하였다.
77. 2017년 11월 5일 브라질에서 국가 문화의 날을 맞아 비정부기구인 빠차마마(Pachamama)와 브라질 전역의 다양한 사회운동 대표, 원주민, 예술가, 법률 전문가가 “보로로카(Pororoca)”라는 강의 보호를 위한 국가 동원 캠페인(national mobilization campaign)을 열었다. 보로로카는 “시끄럽고 맑다”라는 뜻의 원주민 어로 아마존 강과 갠지스 강 등 특정 강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인 만조(tidal bore)를 가리킨다.
78. ‘제7차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회의: 신 라틴아메리카 헌법주의(The s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The New Latin American Constitutionalism)’가 2017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포르탈레자(Fortaleza)에서 “자연과의 조화와 부엔 비비르(Buen Vivir)”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참여한 지식인, 변호사, 법학자, 공공기관의 대표자, 활동가, 원주민과 학생 간의 토론이 빠차마마 선언문(Pachamama Manifesto)으로도 알려진 포르탈레자 헌장(Charter of Fortaleza)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결과 문서에서 위 회의는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윤리적·법적 원칙과 빠차마마(Pachamama)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즉각적으로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79. 2018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브라질의 세라 연방대학교(Federal University of Ceará)는 생태학, 천연자원, 생태경제학, 환경교육, 자연의 권리, 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 윤리, 영성 등에 대한 토론을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주의가 하모니워드네이처 패러다임에 미친 공헌과 학문 간의 융합을 포함하여,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지식 영역 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80. 2018년 6월 3일과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국제포럼(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for the Rights of Mother Earth)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비정부기구인 마파스(MAPAS), 상파울루의 환경장관, 그리고 상파울루 시의 자연의 권리 인정 법안 작성자인 질베르토 나탈리니(Gilberto Natalini) 시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자연이 권리 입법과 헌법에 관한 전문가, 정부 관료, 종교 및 영적 지도자, 원주민 대표들은 자연의 권리를 확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81. 포럼이 끝난 후, 마파스의 회장은 브라질 내 다른 도시의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안 채택에 관심이 있는 브라질 시의원 연합 총회(general assembly of the Brazilian union of city councillors) 회원들에게 연설하였다. 마파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위해 구체적인 공공정책 도입하는 입법자들 및 농업(agribusiness)이 환경에 해를 끼쳐 왔기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농부들을 지원해 왔다.
82. 브라질 법학대학원 과정과 연구에 관한 국가위원회(Brazilian National Council on Research and Graduate Courses on Law)와 시몬 볼리바르 안데스 대학(Simón Bolívar Andean University)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키토(Quito)에서 “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헌법주의와 법 이론, 국가이론 및 법률 교육의 과제(Empirical research in law: the new Latin American constitutionalism and the challenges for law theory, State theory and law education)”라는 주제로 제9차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과 주제에는 환경법, 지속가능성, 자연의 권리 등이 포함되며,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United Nations Harmony with Nature Knowledge Network)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모니워드네이처 워크숍이 열린다.
83. 2018년 6월, 인문과학연구센터(Maison de la Recherche en Sciences Humaines)는 프랑스 캉(Caen)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학과 단체가 후원하는 제4회 토니 오포사(Tony Oposa) 세대 간 모의 재판(Intergenerational Moot Court)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현행 국제법의 보호에 대해 토론했으며, 많은 학생은 원주민의 우주론의 일부인 원주민의 환경 지식과 자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4. 프랑스 브림(Blismes)에서는 비영리단체인 트리글라브 서클(Triglav Circle)이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영감을 받아 환경, 농촌 및 농업문제, 현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강화에 초점을 둔 모임을 개최했다. 트리글라브 서클은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를 언급함으로써 인간사(human affairs)에서의 영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땅과 동물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함으로써 농촌과 작은 마을을 되살리는 영속농업(permaculture)과 미생물 의존(biodynamic)농업 및 유기농업을 도입하려는 지역의 노력에 주목했다.

85.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8년 4월 녹색 학교(Green School)가 여러 국가의 약 40여명의 교육기관 소속 교사, 이사, 직원을 대상으로 1주간의 녹색교육과정(Green Educator Course)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와 목소리(Rights and voice of Mother Earth)”라는 주제에 대한 워크숍이 포함되었으며, 참여 교사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교과 과정에 지구법학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86. 이탈리아에서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생태계를 관리하는 방법? 다학문적인 접근법(How to govern the ecosystem? A multidisciplinary approach)”이라는 제목의 국제회의가 2017년 초 볼로냐대학교에서 열린 데 이어, 볼로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Department of Law of the University of Bologna School of Law)에서 동일한 제목의 전자책을 발간하였다. 위 문서에는 학술대회 전 과정과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회원인 기고 학자들의 논문이 실려 있다.
87. 또한, 라벤나 플라미니아 재단(Flaminia Foundation of Ravenna) 및 일 세르키오 협회(il Cerchio association)는 볼로냐대학교 법과대학과 함께 2018년 4월 16일과 17일, 서구식 모델 내외에서의 대안적 형태의 정의(alternate forms of justice within and outside Western models)에 관한 회의를 후원하였다. 여기서 상설 민중 재판소(Permanent Peoples' Tribunal)의 시모나 프라우다파리오(Simona Fraudatario) 교수가 어머니 지구의 권리와 환경 정의에 관한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88. 2018년 5월 이탈리아 레체(Lecce)에서는 살렌토 대학(University of Salento)의 센트로디 리케르카 유로아메리카노(Centro di Ricerca Euroamericano)와 협력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가 축제가 조직되었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지구의 날(Earth Day)**의 축하 행사를 장려하는 행사이자, 헌법상 생태학에 관한 상설 세미나 실현과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에 기초한 확산 강의(dissemination laboratory)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생태계의 헌법 헌장 및 민주-다양성(demo-diversity) 지침-국제실무문서로서 생물다양성에서의 민주주의)- 작성을 위한 하모니워드네이처 실무단 조직이 제안되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른 대학에 확산시키는 지구생태보전그룹(Global Ecological Integrity Group)에 가입했다.
89. 멕시코 푸에블라(Puebla)에서는 2018년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아토야크 강의 보호와

그 수로 보호에 대한 ‘제1회 살아있는 강 포럼(Living Rivers Forum)’ 및 페스티벌 ‘아토야크 시코메(Atoyac Xicome)’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다문화 및 다학문 플랫폼으로 출발한 국가적 선례였다. 포럼과 페스티벌에는 지역 사회 구성원, 비즈니스 커뮤니티 회원, 국회의원, 과학자, 철학자, 생태학자, 예술가, 청년, 전통 수호자와 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는 아토야크 강(Atoyac River)에 대한 권리 부여를 위한 입법 구상을 포함하여 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 과제에 대한 성찰, 분석, 의식, 토론을 위한 포괄적인 장을 제공하였다.

90. 포럼의 성과에 멕시코 국가 하천 체계(National Network of Rivers of Mexico)의 창설, 아토야크 강의 권리 보장 서명, 그리고 아토야크 강을 자연 보호 구역으로 선언하는 법적 성명서(legal statement)가 포함되었다. 특히 아토야크 강의 권리 보장 서명에는 관리 계획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Living River 2018-2031”이 포함되었는데, 이 계획은 39개 정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91. 2018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멕시코 베라크루스(Veracruz)에서 제1회 콤브레 타진(Cumbre Tajin)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생태학적 권고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자연의 권리 부여, 그리고 원주민 전통과 어머니 지구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92. 2018년 5월, 스페인 타라고나(Tarragona)에 있는 로비라이 비르길리 대학교(Universitat Rovira i Virgili)는 타라고나 환경법 연구 센터 및 타라고나 환경법 학생 협회와 연계하여 제3회 타라고나 국제 환경법 콜로키움(Tarragon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lloquium)을 개최하였다. 논의는 지구 중심의 법적 패러다임에서 자연의 권리와 인권의 균형, 유럽 연합에서의 자연의 권리, 그리고 강 권리의 인식에 집중되었다. 또한 타라고나 환경법 연구 센터는 브라질 파우마스(Palmas)에서 열린 ‘제12회 환경적, 헌법적, 국제적 대화에 대한 국제 세미나’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열린 ‘법, 환경과 자연의 상태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조직하고 참여했는데, 후자 세미나에서는 자연의 권리와 웰빙(well-being)이 주요 주제였다.
93. 제네바(Geneva)에서는 비정부기구인 오브젝티브 사이언스 인터내셔널(Objectif Sciences International)이 2017년 12월 11일과 12일 제6차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법학자뿐 아니라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법안 발의에 관한 실무자 네트워크(networks working)에 소속된 30여 명 이상의 발표자가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2018년 12월 11-12일에 열릴 것이다.
94. 영국의 가이아 재단(Gaia Foundation)과 아프리카 전역의 협력 기구는 아프리카 지구법학

운동(African Earth jurisprudence movement)을 전개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짐바브웨 출신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구법학 변호사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이 2017년 7월 재단의 3년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자연의 법을 존중하고 **지구**와 다시 연결하는(reconnecting) 대변인이 되어 왔다. 지역 사회 대화, 공개 프레젠테이션,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인쇄 매체를 통해, 그들은 지역, 국가, 국제 청중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지구법학을 위한 아프리카의 목소리(African voices for Earth jurisprudence)’ 단체는 스위스에서 열린 ‘나이스 퓨처(Nice Future)’ 회의에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여덟 번째 대화인 “오 피르 데 땡(Au coeur des temps, 시간의 중심이란 의미)”에 전환 행위자(transition actors), 농민, 산림인, 과학계, 원주민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프랑스의 ‘기아 퇴치 및 개발을 위한 가톨릭 위원회-토지 연대(Comité catholique contre la faim et pour le développement-Terre solidaire)’에 의해 조직된 ‘웰빙을 위한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Well-Being)’에 참석했다.

95. 자연의 권리를 위한 글로벌 동맹(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은 자연의 권리가 인정, 존중, 집행되는 법체계의 채택과 실행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계속했다. 위 단체는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의(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당시 제4회 국제 자연의 권리 법정(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을 개최했는데, 이는 이틀간의 모의 재판으로 법체계(legal systems)가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 파괴에서 주요 역할을 했음을 폭로하는 행사였다. 위 법정 모의재판에서 19개국의 사례가 나왔다. 증인들은 파쇄작업, 유정, 정유소, 탄광 근처에서 살았던 경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파괴적인 활동들로 인해 자연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 지구**의 수호자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범죄화되는지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모의 법정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 지구 권리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어왔으며, 이는 종종 인권 침해를 수반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96. 비슷하게, 상당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참여형 연구 프로젝트인 ‘환경정의의 글로벌 아틀라스(Global Atlas of Environmental Justice)’는 전 세계의 생태학적 갈등 및 생명을 위협하는 추출 활동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을 지도화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97. 유엔 협회 세계연맹(The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은 2018년 2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모의 유엔 회의에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다. 이 토론은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유엔 협회 세계연맹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작업에 관해 작성한 것이다. 주제는 모의 총회 위원회에 지정되었고, 고등학생들은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성명서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토론에 참여한 후에, 의제 항목에 대한 합의에 따라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하였다.

98. 지구법 센터는 자연의 권리에 배타적 초점을 둔 최초의 로스쿨 학생회인 버몬트 로스쿨 지구법 클럽(Earth law club at Vermont Law School)을 창설하는 것을 도왔고,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자연의 권리에 대한 모의 재판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줬다

V. 결론

99.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국가법에 통합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법부가 강, 숲 또는 빙하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회복하도록 하는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시 또는 지방 입법 기관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왔다.
100. 정규 및 비정규 과정을 통해 지구법학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탄력을 받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 대학 및 기관이 지구 중심의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에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공하여 전문 및 공공 영역에서 지구법학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전문가 중 다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영화 제작자에게 자연의 권리에 대해 자문했었던 경력 작가이다.⁸
101. 전 세계의 학계, 대학,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연방법원, 연구기관들은 지구법학을 발전시키고 환경법에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입법의 전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세미나, 회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은 지구법학 및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다.
102. 본 보고서에서 다룬 많은 활동에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핵심적 지지자였다. 그들은 캠페인을 시작했고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에 대한 많은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그들은 유엔이 지구와 모든 종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반영하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의 초안 작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103.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 또는 비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법과 정책의 변화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가능해졌

⁸ www.harmonywithnatureun.org/references.

다.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2.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발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104. 유엔은 지구법학에 관한 법률, 정책, 교육 및 대중 참여에서 최근과 향후의 변화 및 조치, 그리고 지구와의 존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중 선언, 성명 및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를 숙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105. 전문 실무자, 사상가, 학자로 구성된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확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삶의 구현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물리, 화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영성학 및 인류학에서 의학 및 언어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천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106. 그들은 또한 기존 및 새로운 법 선례에 대한 기본 검토와 판례 편찬, 공공 및 정부의 선언문 작성을 수행하도록 권장되었으며,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세계 선언’요청 등의 활동을 하여, 회원국들이 그 주제에 대한 지구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 원칙과 공동 입장을 설정하였다.
107. 마지막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삶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기타 이해 관계자가 취하는 접근법과 관련 행동들은 모두 ‘하모니위드네이처’ 웹사이트 (www.harmonywithnatureun.org)를 통해 계속 소개되고 지원될 것이다.



총회

배포: 일반

2020년 1월 17일

원문: 영어

제74차 회기

의제 항목 19(i)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2019년 12월 19일에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on the report of the Second Committee (A/74/381/Add.9)]

74/224. 하모니워드네이처

총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¹, 의제 21(Agenda 21)², 의제 21의 추가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³,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⁴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실행 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을 재확인하고, ⁵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2009년 12월 21일의 64/196, 2010년 12월 20일의 65/164, 2011년 12월 22일의 66/204, 2012년 12월 21일의 67/214, 2013년 12월 20일의 68/216, 2014년 12월 19일의 69/224, 2015년 12월 22일의 70/208, 2016년 12월 21일의 71/232, 2017년

¹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 데 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 vol. I,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I.8 과 정오표(corrigendum), 결의안 1, 부속서 I.

² 같은 문서, 부속서 II.

³ 결의안 S-19/2, 부속서.

⁴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2002년 8월26일-9월 4일(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II.A.1 과 정오표), I장, 결의안 1, 부속서.

⁵ 같은 문서, 결의안 2, 부속서.

12월 20일의 72/223, 2018년 12월 20일의 73/235 결의안을 상기하고,

또한 2009년 4월 22일의 63/278 결의안에서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로 지정한 것을 상기하고, 그날의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나아가 1982년 세계 자연 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상기하고,⁶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주최로 코차밤바에서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 회의(Worl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에 주목하고,⁷

행성 지구와 그 생태계는 우리의 고향이며, “어머니 지구(Mother Earth)”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적인 표현임을 인식하고, 일부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이라는 맥락에서 자연 또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 사회, 환경적 요구 간에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Brazil)에서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주제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 회의 결과문서를 상기하고,⁸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사람 중심의 보편적이면서도 변혁적인 지속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채택했던 “세상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2015년 9월 25일 70/1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2030년까지 본 의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할 것을 약속하고, 극심한 빈곤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큰 지구적 과제이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약속과 미완의 과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이를 보충하고 지지하고, 구체적인

⁶ 결의안 37/7, 부속서.

⁷ A/64/777 참조, 부속서 I 과 II.

⁸ 결의안 66/288, 부속서.

정책과 행동에 관한 이행 목표를 맥락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환경 조성과 자원 조달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한 제3차 발전 자원 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 관한 2015년 7월 27일의 69/313 결의안도 재확인하고,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주택 및 지속가능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가 채택한 새로운 도시 아젠다(New Urban Agenda)를 추가적으로 재확인하고⁹, 이 실행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생활양식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재확인하고,¹⁰ 모든 당사국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¹¹ 당사국 중 파리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아직 하지 않은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과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서 자연에 기반한 해결안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시민과 사회가 자연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후 행동(climate action) 및 교육의 실행 차원에서 2019년 4월 22일에 “어머니 지구 접근법(Mother Earth approach)”이라는 주제로 총회 의장에 의해 소집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를 감사한 마음으로 유념하고, 몇몇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촉진의 맥락에서 자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많은 국가가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를 모든 삶과 자양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어머니 지구와 인류를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공동체로 간주함을 인정하고,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Cancún, Mexico)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상호대화를 상기하고,

⁹ 결의안 71/256, 부속서

¹⁰ FCCC/CP/2015/10/Add.1, decision 1/CP.21.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

¹¹ 유엔, 조약 모음집(Treaty Series), vol. 1771, No. 30822.

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완전성 보장의 중요성과, 일부 문화에서 어머니 지구로 인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호의 중요성을 유념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라는 개념의 중요성 또한 유념하며,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도달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구 시스템 과학(Earth system scienc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문서에 기록된 환경 악화, 즉 더 빈번하고 강력한 자연재해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의 공평하고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관계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 하의 기초통계자료가 균등하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 및 그 질적 및 양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리오 원칙(Rio principles)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되 모든 나라가 그 과정에서 혜택을 얻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방식을 촉진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잘 사는 것(living well)에 관한 정책 문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관한 많은 시도가 있었음을 유념하고,

유엔본부에서 채택되고 서명 개시가 이루어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환경 문제에 정보 접근, 대중 참여, 정의에 관한 협약(Regional Agreement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자 최초의 구속력 있는 지역 협약인 에스까수 협약(Escazú Agreement)을 유념하고, 위 협약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로써 조기 발효되도록 장려하고,

많은 고대 문명, 원주민 및 원주민 문화가 풍부한 역사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는 공생적 연결을 맺어 왔음을 인식하고,

원주민 사회의 전통 지식, 혁신, 관습이 사회 복지(social well-being)와 지속가능한 생계(sustainable livelihoods)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몇몇 국가에서 그들의 법률, 정책, 교육적 관점에 기초를 둔 자연보호에 관한 선언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맥락 및 지속가능발전 세 가지 차원 하의 교육 및 대중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고무시키는 차원에서, 자연(Nature)이나 어머니 지구(Mother Earth)의 권리에 관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활동이 전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시민사회, 학계, 과학계, 지역 사회, 원주민이 지구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리기 위해 수행한 작업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서의 보다 지속가능한 모델 및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 조직과 함께 수행한 일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세부목표 12.8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목표를 가진 유엔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Harmony with Nature Knowledge Network)의 전문가 작업을 유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학제 간 연계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서약을 다시 반복하고, 인간의 존엄이 근본이라는 인식과 함께 모든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가장 뒤처진 곳에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재다짐하며,

1.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주목한다.¹²
2.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¹³, 지구법학을 다루는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의 첫 번째 화상대화에 대한 전문가의 요약 보고서,¹⁴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균형잡힌 통합을 촉진하는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에 대한 보고서의 기존 연구와 보고서의 결과 및 권장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회원국에게 요청한다.
3. 총회 의장이 2020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소집될 본회의에서

¹² A/74/236.

¹³ A/65/314, A/66/302, A/67/317, A/68/325, A/68/325/Corr.1, A/69/322, A/70/268, A/72/175, A/73/221 and A/74/236.

¹⁴ A/71/266 참조

상호대화를 제74차 총회에서 소집하여, 회원국, 유엔 체계(United Nations system), 독립적 전문가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법학에 대한 법률, 정책 및 교육에서의 행동과 변화를 포함하여 지난 10년 동안 적용된 국가 및 지역적인 시도를 논의 및 비교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생물 다양성 보호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시민과 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자연 세계와 상호 작용 방법 재고 촉구를 요청한다.

4.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어머니 지구의 보호에 대한 지역 및 국가적 노력의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무총장이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그 보고서에서 이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5. 매년 4월 22일에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준수하기로 하고, 사무총장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하며, 각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세계의 날로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6. 볼리비아 다민족국가의 정부와 유엔경제사회사무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Secretaria)간의 합의에 감사를 표하고,¹⁵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에 개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의 신탁 기금(trust fund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배정 활동에 회원국이 참가하기를 초대하며, 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당사자들을 초대한다.
7. 사무총장에게, 지속가능발전 목표과(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모니워드네이처의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활동과 아이디어에 관한 정보와 기여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고, 전통 지식의 사용과 기존 법률에 대한 성공 사례를 포함하여 학제 간 과학 작업의 통합을 진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8. 인류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체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요구한다.
9. 다음과 같이 국가들에게 요청한다.

- (a)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현재 과학 정보를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동인(drivers)과 가치, 그리고 행동을 반영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확인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의 총체적 개념을 진전시켜 줄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¹⁵ www.harmonywithnatureun.org/trustFund 검색

강화하기, 그리고 인류와 자연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과 자원을 촉진하기.

- (b) 원주민 문화에서 전형적으로 엮을 수 있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하기, 그들의 문화로부터 자연보호를 배우기, 그중에서도 유엔기후변화협약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 플랫폼(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latform) 수립에서 이루어진 모범 사례와 진전을 활용하여 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10. 생태계를 보호 및 보존하고 동물, 식물, 미생물 및 무생물 환경에 대한 유해한 관행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인류의 공존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안을 다루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1. 모든 국가가 세 가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 기초 통계 자료의 질과 양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독려하고, 국제 사회와 유엔 체계의 관련 기관이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1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측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가 광범위한 진보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분야의 기존 노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음에 유념한다.¹⁶
13.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2030 의제(2030 Agenda)의 핵심 약속을 재확인하며,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과 가장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는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가장 뒤처진 이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14. 사무총장에게, 제75차 총회(The General Assembly)에서 유엔총회에 현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항목 아래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라는 하위 항목을 두는 것을 제 75차 총회의 임시 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다.

제52차 본회의
2019년 12월 19일

¹⁶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공식기록, 2013, 부록(Supplement) No. 4 (E/2013/24), I 장, C 부 (sect.), 결정(decision) 44/114.



총회

배포: 일반

2019년 7월 26일

원문: 영어

제74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19(i)*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총회 결의안 73/235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총회는 총회 의장에게 73차 세션에서 2019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을 기념하기 위해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를 소집하도록 요청했으며, 사무총장이 74번째 회기에서 이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019년 상호대화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63/278)을 선언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지 10년을 기념하며, 2009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첫 번째 결의안으로 더욱 지지되었다. 본 기념 보고서는 어머니 지구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인류의 진화하는 의식을 강조하며, 이 진화는 법률, 정책, 교육 및 대중 참여(public engagement)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머니 지구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을 심화하는 지구중심의 패러다임(Earth-centred paradigm)으로 전환이 긴박함에 따른 것이다.

* A/74/150

I. 서문

1. 2018년 12월 20일, 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10차 결의안인 결의안 73/235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총회 의장에게 제73차 회의에서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 전문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하에 2019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상호대화를 소집하도록 요청한다.
2. 총회 의장은 “교육 및 기후 행동의 이행에서 어머니 지구 접근법(Mother Earth approach in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climate action)”을 주제로 자연(Nature)과 조화에서의 교육과 자연(Nature)과 조화에서의 기후 행동에 대한 두 개의 패널로 구성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상호대화를 소집했다. 이 대화는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A/73/221)로 더욱 구체화했다.
3. 대화에 참여한 토론자들¹은 전 세계적인 입법, 정책, 교육 및 대중 참여를 강조하면서, 비인간 중심적(non-anthropocentric) 또는 지구 중심적(Earth-centred) 패러다임을 향해 지난 10년 동안 이론 진전을 축하했다. 그들의 전체 발표 및 토론은 하모니워드네이처 전용 웹사이트²에서 볼 수 있다.
4. 본 보고서는 토론자들의 발표와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³의 전 세계 회원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7월에서 2019년 7월까지의 성과와 진행 상황을 다루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증대와 깊은 관심이 입법, 정책, 교육에서 지구 중심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

II.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과 하모니워드네이처의 10주년을 기념하며

5. 2019년은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선언하고(63/278), 하모니워드네이처의 필요성을 분명히 표현한 10년 전에 채택된 총회 결의안을 기념한다(64/196). 이 결의안은 현재의 파괴적인 개발 모델이 자연과 인간 존엄성에 똑같이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¹ Silvia Bagni, Delphine Batho, Antonio Herman Benjamin, Frank Bibeau, David R. Boyd, Valérie Cabanes, Freddy Delgado, Thomas Egli, Gabriela Eslava, Cillian Lohan, Elizabeth MacPherson, Markie Miller, Liam Sy Paquemar, Luis Armando Tolosa Villabona, Ngozi Unuigbo and Ivan Zambrana-Flores. 사회자: Alessandro Pelizzon.

² www.harmonywithnatureun.org/dialogues.

³ www.harmonywithnatureun.org/experts.

⁴ 보고서에서 다른 지구 중심 패러다임(Earth-centred paradigm)의 맥락에서, 자연(Nature) 또는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는 사물(object)이나 소유물(property)이 아니라 법의 주체로 그 고유한 가치가 인정되는 법인격(legal personhood)을 가지고 있어서 보고서 전반에 걸쳐 대문자 N으로 작성한다. 이 대문자는 총회 결의안 73/235, 29번째 서문 단락(preamble para.)에서 인정되고 통합되었다.

인정한다. 결의안은 자연에 법적 권리 또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이바지해 왔다.

6. 총회 의장이 2019년 4월 22일 상호대화 개회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자연을 돌보는 것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고, 그들의 생명 순환(life cycles)을 존중하는 것”이며 “무절제하고, 지속불가능한, 끊임없는 자연의 착취를 포기하고, 생태계의 자연 순환과 자연 스스로 보충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7. 상호대화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는 우리의 살아있는 지구에 대한 숭경(reverence)과 입법, 경제, 교육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8. 볼리비아의 ‘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산림관리· 개발부(Minister for Environment, Biodiversity, Climate Change and Forest Management and Development)’차관은 볼리비아가 인간을 개별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합체, 즉 문화 및 경제시스템의 복잡한 그물망 안에서 엮인 개인들인 사회적 집합체로 이해하면서, 자연에 대한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s)를 확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어머니 지구의 권리는 생명, 재생산, 물 등에 대한 권리의 확장이다.
9. 인도 상임 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는 많은 고대 문화가 생태계에 대한 숭경(reverence)의 전통을 가지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으며, 또한 주변 자연의 풍부함을 보호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도의 정신은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10. 방글라데시 상임 대표는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양육하는 지구와 지역 주민들의 정신을 보존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적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어머니 지구(Mother Earth)와 땃줄로 연결되어 있다. 태곳적부터 그들은 자연의 풍요로움에서 번성해 왔다. 홍수 등 자연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러한 현상이 어머니 지구와의 본질적인 유대를 방해할 수 없었다.”
11. 에콰도르 상임 대표는 2008년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곧 그 존재, 유지, 재생산이 존중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생명 순환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 순환에 대한 손상의 복원과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12. 브라질 고등 법원의 안토니오 헤르만 베자민(Antonio Herman Benjamin)판사는 “자연은

더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Nature is no longer just a thing)”라고 말했다.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한때 자연을 단지 요소들의 집합체로 여긴 전통적 법률 체계로부터 심오한 변화를 반영하고 이제 자연을 모든 생명의 의미와 토대로 본다, 한때 철학계와 윤리학계의 화두였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는 법적 패러다임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13. 더 나아가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 다민족 기관장(Director of the Mother Earth Plurinational Authority of Bolivia)은 다양한 존재로 구성된 다원적 세계에서는, 자연계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우리가 인간을 자연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연에 대해 별개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볼리비아의 경우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라는 용어는 자연 세계를 포함하는 복잡한 생명 체계의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포함한다.
14.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위원이자 기후정의 보고관(Rapporteur on Climate Justice)인 실리언 로한(Cillian Lohan)은, 위원회가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지구를 보호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를 적용하여, 어머니 지구 접근법(Mother Earth approach)에 기반하여 경제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구상(policy initiative)에 대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15. 프랑스 국회 의원이자 생태 세대(Generation Écologie) 회장인 델핀 바토(Delphine Batho)는 자연과의 집단적 관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두 가지 기본 단계를 수반하는데 하나는 인간이 자연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구성 요소인 강, 숲, 나무, 바다 및 산을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16. 응고지 우니그베(Ngozi Unuigbo)교수는 “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그리고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모든 연령대에서 정규 및 비정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7.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R 보이드(David R Boyd)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권고했다. 생태학적 소양을 가르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증진하며,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18. 대화 사회자인 알레산드로 펠리존(Alessandro Pelizzon)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하모니위

드네이처에 관한 광범위한 집단 토론이 지구 중심 패러다임의 깊이, 다양성 및 범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교육이 ‘비인간 세계의 재정의된 법적 개념화(redefined legal conceptualization of the non-human world)’로 심오한 존재론적, 의미론적 전환을 가져와서 패러다임 발전의 중심이었다고 강조했다.

19. 다음 부분(section)에서는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2018년 7월 ~ 2019년 7월의 구상(initiatives)과 현재의 성과를 기록한다. 법률, 정책 개발, 정규 및 비정규 교육, 대중 참여에서의 진전은 지난 10년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향해 지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세계 많은 사람의 헌신을 반영한다.

Ⅲ. 지구 중심 법과 정책(Earth-centred laws and policies)⁵

20. 전 세계의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가 자연과 자연계가 존재하고 번성할 권리(the rights of Nature and the natural world to exist and flourish)를 인정하는 법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새로운 법률은 자연을 권리의 주체 및/또는 법적 “인격체(person)”로 인정하고 법에 의해 보호되도록 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해 함께 일한 비정부 기구, 시민 사회 협회, 입법자 및 입법 기관 간의 협력의 산물이다.
21.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자연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인정받고 자연계를 보호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확대해왔다. 또한, 이미 법률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한 국가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는 사법적 결정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고 있다.
22. 관습법과 원주민 법은 서구의 실증법(Western positive law)을 자연과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모델로 계속 역할을 한다. 점점 더 많은 원주민 집단이 그들이 오랫동안 삶의 기본 진리로 이해해왔던, 즉 인간은 자연 세계의 일부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들을 규율하는 법(governing laws)에 반영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A.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국가법(National legislation)

23. 2019년 1월 30일,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투라그 강(Turag River)에 대한 불법 침해에 반대하는 단체인 ‘방글라데시 인권과 평화(Human Rights and Peace for Bangladesh)’가

⁵ <http://www.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

제출한 청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공공신탁이론(doctrine of public trust)에 입각하여, 강에 법인격 지위를 부여하고 강둑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을 즉각적으로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24. 2019년 3월 21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인간 존엄성 원칙에 근거하여 생태적 관점을 채택하였고 비인간 동물(non-human animals)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법의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결성을 발전시키는 생명중심적 사고(biocentric thinking)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25. 2018년 12월 20일 브라질 페르남부쿠 주 파우달로 시(the city of Paudalho, Pernambuco, Brazil)의 유기법(Organic Law)에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 법은 산 세베리노 허모스 천연 샘물 권리(San Severino Ramos Natural Water Spring rights)를 인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현지 법률 No. 878/2018에 따라 자연의 물은 존재하고 번창하며 진화할 권리가 있다.
26. 2019년 6월 17일 콜롬비아 메데인 상급 법원(the Superior Court of Medellín, Colombia)은 까우카 강(Cauca River)과 유역 그리고 지류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이 결정은 2016년 아트라토 강(Atrato River)에 부여된 것과 같이, 강이 보호, 보존, 유지 및 복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후견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27. 2019년 5월 30일, 콜롬비아 톨리마 행정 재판소(the Administrative Tribunal of Tolima, Colombia)는 그 관할 하에 있는 세 개의 강인 꼬엘로(Coello), 콤베이마(Combeima), 꼬코라(Cocora) 강의 유역과 지류를 포함하여 강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재판소의 결정은 세 개의 강이 국가 및 지역 사회에 의해 보호, 보존, 유지, 복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별적 실체라는 것이며, 강 유역에서의 광산 탐사 및 개발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28. 2019년 3월 19일, 라 플라타 지방 민사 법원(the Municipal Civil Court in La Plata)은 콜롬비아 우일라(Huila)에 있는 라 플라타 강의 권리(the rights of La Plata River)를 인정하였다. 이 결정은 엘 레몰리노(El Remolino) 지역 주민들이, 정화조를 방치하여 강을 오염시킨 공공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결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엘 레몰리노 주민의 권리와 강 및 생태계의 권리를 옹호한다.
29. 2018년 8월 9일 콜롬비아 보야까(Boyacá) 법원은 피스바 빠라모(Pisba Paramo) 국립공원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이 소송은 6개 자치단체의 지역 주민이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빠라모와 그 물의 순환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채 바라모에서 광산 채굴을 허용하는 경계선을 설정한 것에 반대하여 제기한 소송의 결과였다. 재판소는 환경부에 45,000헥타르의 바라모를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30. 2019년 1월 에콰도르에서 관광지에 돌고래 수족관을 설치하려는 베네수엘라 회사는 이전에 동물 복지 문제로 환경부가 거부한 청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국가의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돌고래 수족관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이전에는 에콰도르에서 주로 광업 문제, 생태계 보호 및 원주민 집단 권리에 자연의 권리가 적용되었는데, 해양권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31. 2019년 6월 10일, 멕시코 콜리마 주의의회(the Congress of the state of Colima, Mexico)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가 자연의 이해와 권리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는 콜리마의 정치 헌법(political constitution of Colima) 수정안을 승인했다. 지역 헌법(local constitution) 제2조와 제16조는 모든 생태계와 종으로 구성된 자연이 권리의 주체인 집단적 실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보호, 보존 및 복원은 공공, 민간, 사회 부분의 공동 책임임을 인정하도록 수정되었다. 블랑카 리비에르 로드리게스(Blanca Livier Rodríguez) 하원 의원은 지구법 센터(Earth Law Center)의 법적 지원을 받아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였다.
32. 2014년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연방 기관인 멕시코 게레로 주 인권위원회(The Loc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in the state of Guerrero, Mexico)는 수칠판(Zoochilpan) 동물원 사례와 같은 동물 학대 위반 사항에 대해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받기로 했다.
33. 2019년 3월 7일 우간다에서 의회는 2019년 국가 환경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제4조는 “자연은 진화과정에서 생명 순환(vital cycles), 구조, 기능 및 그 과정을 존재하고 지속하고 유지하고 재생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 법에 따라 자연권 침해에 대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자연자원 및 발전의 옹호(Advocates for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단체는 가이아(Gaia)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34. 2019년 5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록 부족 의회(Yurok Tribal Council)는 만장일치로 클라마스(Klamath) 강의 권리를 확립하는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이 결의안으로 유록 부족은 자연권을 법률로 채택한 네 번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되었다.
35. 2019년 2월 26일 오하이오 주 톨레도(Toledo)의 유권자들은 ‘이리 호수 권리 법안(Lake Erie Billy)’에 투표했는데, 이 법안은 호수와 그 주변 구역이 존재하고, 번성하고 자연적으로

진화할 권리를 보장한다.

36. 2018년 말, 미네소타 주 오지브웨(Ojibwe)의 화이트 어스 밴드(White Earth Band)는 마누민의 권리(Rights of Manoomin("야생 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조약이 보장하는 주요 식량(primary treaty food)의 일부인 야생 쌀과 담수(freshwater)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아니쉬나베(Anishinaabe, 북미의 원주민)의 야생 쌀, 성스러운 풍경, 전통 법과의 관계 및 책임을 재확인하며, 기업이나 정부가 마누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임을 선언한다.
37. 2019년 6월,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자연 공동체와 생태계의 근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선언하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권리 조례(Sustainability Rights Ordinance)를 도시의 많은 환경법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 규정부(municipal code division)의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자연권 인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한 2018년 8월 법률로 민간 우물(private water wells)을 금지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거듭 인정하였다.
38. 2018년 7월 9일 콜로라도 크레스톤 타운의 이사회(the Board of Trustees for the Town of Crestone)는 만장일치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B.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입법의 진행

39. 2019년 4월 22일 칠레에서 헌법에 어머니 지구의 권리(Rights of Mother Earth)를 포함하기 위한 시민 청원이 상원에 제출되었다. 상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0. 2019년 5월, 에콰도르 대법원은 6,226마리의 상어를 신고 가다 적발된 선박의 물수를 명령한 야생동물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의 에콰도르 조정 기구(Ecuadorian coordinating body of organizations defending nature and the environment)인 비정부기구는 판결문에 언급된 자연권에 대해 서면진술서(written argument)를 제출하였다.
41. 에콰도르의 자연의 권리 사건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법정의 조연자(friends of the Court)”로서 참여하도록 허락되는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 법정의 친구)"는 판결이 어떻게 공공 및 환경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이후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의 조정 기구 소속 환경변호사인 우고 에체베리아(Hugo Echeverría)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유명한

갈라파고스에서 기소된 여러 환경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적 주장을 위해 아미쿠스 쿠리아이 브리프(amicus curiae briefs, 법정 조연자 의견서)를 작성했다.

42. 2019년 2월 5일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자연의 권리의 법적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택된 사건(selected cases)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법정구속력(binding jurisprudence)이 있고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법원이 이와 같은 권한을 자연의 권리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자원의 착취와 그로 인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준 및 제한을 다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43. 2019년 5월 20일에 출범한 에콰도르 자연의 권리 감시기구(Ecuadorian Legal Observatory on the Rights of Nature)⁶는 국가의 자연의 권리 판례 편집본(집)이 있는데, 이는 헌법 용어에만 근거하여 자연의 권리의 적용 가능성을 법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에콰도르는 이 분야에서 여전히 선두주자이다. 2018년 10월 20일은 에콰도르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가 채택된 지 10주년이었다.
44.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 프롬(Frome) 시의회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프롬 강과 그 지류(tributaries)와 로든 초원(Rodden Meadow)를 보호하기 위해 프롬 강의 권리를 위한 조례(bye-law for the Rights of the River Frome) 초안을 작성했다. 2019년 최종 심의회 승인을 받았고, 프롬 시는 중앙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45. 미국에서는 위스콘신주에 있는 ‘호 청크 네이션(Ho-Chunk Nation)’의 레쿠마니 빌 그린디어(Rekumani Bill Greendeer)는 2018년 9월 ‘공동체 환경법을 방어기금(Community Environmental Legal Defense Fund)’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권리에 대한 제안된 결의안을 호 청크 일반 위원회(Ho-Chunk General Council)에 제출했다. 네이션(Nation)의 입법부는 제안된 결의안에 표현된 우려와 보호를 다루기 위해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 헌법 개정을 결정했다.

C. 자연권 관련 정책 동향

46. 2018년 8월, 호주 상원 의원인 메린 파루키(Mehreen Fahuqi)는 호주 상원 첫 연설에서 자연의 권리 법, 특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세계 최대 산호초), 머레이 달링 분지(Murray-Darling Basin) 및 대찬정 분지(Great Artesian Basin)와 같은 상징적인 생태계에 대한 자연의 권리 법의 채택을 촉구했다.

⁶ www.derechosdelanaturaleza.org.ec. 참조

47. 벨기에 레니크(Lennik, Belgium) 시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을 대신하여 부적절한 농지 재건에 개입했다. 변호사들은 벨기에 기후 사건(Belgian climate case)에서 보호수 100그루를 대신하여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나무의 보호는 지역 당국의 의무이다. 이 소송 참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48.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 Brazil)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 제안이 ‘헌법, 정의, 시민권 위원회(Committee on Constitution, Justice and Citizenship)’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주요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법률 체계 내에서 향후 이행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9. 2019년 1월 광미사 댐(mine tailing dam)의 붕괴로 인간과 생태계에 비극이 발생한 브라질 브루마지뉴(Brumadinho)에서 ‘환경 및 사회적 실천을 위한 지원 방법(Métodos de Apoio a Práticas Ambientais e Sociais)’이라는 단체는 도세 강 동맹(Aliança do Rio Doce) 운동 및 기타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자연의 권리와 파라오페바(Paraopeba River) 강의 권리 증진을 포함한 환경 및 사회 회복 행동 계획에서 일하고 있다.
50. ‘환경 및 사회적 실천을 위한 지원 방법(Métodos de Apoio a Práticas Ambientais e Sociais)’이라는 단체는 브라질 페르남부쿠 가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Pernambuco) 및 페르남부쿠 연방 농촌 대학교(Federal Rural University of Pernambuco)와 협력하여 다니엘 코엘료(Daniel Coelho) 의원 및 기타 여러 단체와 함께 카피바리브(Capibaribe) 강의 권리에 대한 법적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1. 2019년 비정부기구인 펜더 오션 디펜더스(Pender Ocean Defenders)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펜더 섬(Pender Island, British Columbia, Canada)에 있는 지구법센터(Earth Law Center)와 협력하여 남부에 서식하는 범고래(killer whale)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제안했으며 펜더 아일랜드 관리위원회(Pender Island Trustees)가 고래의 고유 권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정하도록 요청했다.
52. 엘 살바도르(El Salvador)에서 비정부기구인 시 보르 로스 데레초스 데라 나투랄레사(Sí por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자연의 권리에 찬성의 의미)가 엘 에스피노 라군(Laguna El Espino)을 아후아차판(Ahuachapán) 시의회에 권리의 주체인(subject of rights) 살아있는 개체로 인정하는 시 조례안(a proposed municipal ordinance)을 작성하고 있다.
53. 2019년 6월 5일, 엘살바도르 입법부는 "숲은 살아있는 주체"라는 선언을 승인했다. 시 보르 로스 데레초스 데라 나투랄레사(Sí por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와

지구법센터(Earth Law Center) 또한 숲의 권리에 대해 선언안(a proposed declaration)을 입법부에 제출했다.

54. 유럽에서는 다섯 개의 정치적 정당이 자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ecocide)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 개념을 유럽 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가져갈 것이다. 유럽 녹색당(European Green Party)이 제시한 새로운 조약(treaty)은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기후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고히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과 함께 자연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55. 세계자연보전연맹 프랑스 위원회(French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committee)를 지지하는 프랑스 변호사 그룹은 2020년 세계보존회의(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검토될 자연의 권리 운동의 초안을 작성했다.
56. 이탈리아에서, 비정부기구인 ‘자연의 권리(Nature's Rights)’는 치비타 까스텔라나(Civita Castellana)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연의 권리 원칙을 정책과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초로 "자연의 권리 구역(Nature's Rights Zone)"을 선포했다.
57. 2018년 12월 10일 네덜란드에서는 지구 신탁관리 이니셔티브(Earth Trusteeship Initiative)가 자연권을 포함하는 ‘인권 및 지구 신탁관리의 책임에 관한 세계 선언을 위한 헤이그 원칙(Hague Principles for a Universal Declaration on Responsibilities for Human Rights and Earth Trusteeship)’을 발표했다.
58. 2018년 12월 11일 네덜란드 의회 의원들은 야생에 대한 권리, 미래 세대의 권리, 동물과의 비폭력적 상호작용에 대한 권리, 자연권을 포함한 깨끗한 지구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 사회로부터 청원을 받았다.
59. 2018년 12월 뉴질랜드 호크스 베이(Hawkes Bay) 지역의 이위(iwi)부족은 테마타 봉우리(Te Mata Peak)의 법인격을 인정해달라는 보고서를 지방 정부에게 제출하였는데 2016년 법인격을 부여받은 황가누이(Whanganui) 강의 법인격과 유사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60. 나이지리아에서 에티오페 강 재단(River Ethiope Trust Foundation), 지구법 센터 및 기타 협력당사자들이 2019년 에티오페 강 권리법(River Ethiope Rights Act) 초안을 작성하여 에티오페 강이 아프리카에서 법적 권리가 있는 살아있는 실제로 인정된 최초의 강이 되었다. 2016 나이지리아 국가 수자원법(Nigerian National Water Resources Act of 2016)에 강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나이지리아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검토 중이다.

61. 스웨덴의 포샤가(Forshaga)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정부조직인 ‘어머니 지구 권리(Rights of Mother Earth)’와 협력하여 해당 카운티 및 시의회 관할권 내 클라랄벤(Klarälven) 강 지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
62. 2019년 5월 15일 자연의 법적 권리에 관한 스웨덴 의회 세미나에서 스웨덴의 자연권은 “생태계, 자연공동체(natural communities) 및 종(species)을 포함한 자연은 자연적으로 존재, 번성, 재생, 진화할 수 있고 복원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고, 집행하고 방어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헌법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63. 우간다의 부리사(Buliisa) 지역에 있는 바군구(Bagungu) 공동체는 자연의 권리를 담고 있는 관습법과 지역 사회 생태 관리 체계를 문서화하고 있다. 이 지역의 비정부기구인 ‘아프리카 문화 및 생태 연구소(African Institute for Culture and Ecology)’와 ‘자연자원과 발전 옹호(Advocates for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는 알버트 호수(Lake Albert)를 포함한 신성한 자연 유적지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64.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St. Louis, Missouri, United States)에서는 콜드 워터 크릭(Cold Water Creek) 및 지역 내 다른 모든 상호 연결된 수로에, 존재하고 재생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공공정책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풀뿌리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이 결의안은 또한 세인트루이스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녕이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라는 복지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65. 2019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창조를 위한 카이로스: 지구를 위한 희망을 고백하다 - 부퍼탈 청원(Kairos for Creation: Confessing Hope for the Earth – The Wuppertal Call)’을 주제로 독일 부퍼탈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개신교 교회 선교 협회, 독일 복음교회, 연합 복음주의 선교부, 브레드 포 월드(Bread for World), 세계 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주최하였다(다가오는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채택된 권장 사항 및 목표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생태계 파괴(ecocide)가 범죄로 인정되고 자연의 권리에 관련된 유엔 위원회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어머니 지구의 권리(Cochabamba 2010)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세계 헌장(의) 법적 틀, 곧 지구 국제법학 체계(Earth International Jurisprudence System)를 만드는 유엔 내 절차”의 추진을 포함한다.

IV. 지구 중심의 교육(Earth-centred education)

66.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정규 및 비정규 교육 모두 지구 중심 교육을 장려하고, 자연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에 초대하며,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플랫폼(United Nations Harmony with Nature platform) 전반에 걸친 공동작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많은 대학과 학술기관이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및 박사 과정까지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어머니 지구 접근법, 자연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육 과정을 도입하거나 강화해왔다.
67. 교육, 기후 행동 및 시민 사회는 집단적 대응 안에서 깊이 얽혀 있다. 대중 참여를 위한 활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공동의 목표와 함께 계속 다양해졌다. 풍부한 문헌 및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자들은 법적 패러다임에서의 꾸준한 진전을 따라갈 수 있다.

A. 정규 교육(Formal education)

68.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 국립 리토랄(Littoral)대학교의 법사회과학부는 자연의 권리에 관한 프로그램과 온라인 과정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3판과 제4판을 제공하고 있다. 동계계절학기에서는 “아마존과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와 권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69. 호주 지구 법 동맹(The Australian Earth Law Alliance)은 2016년에 호주 그리피스 법대(Griffith Law School)에 호주 최초로 대학 수준의 지구법학 강좌를 도입했다. 그 이후로 이 강좌는 매년 개설되었으며 2019년 11월에도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 발전 추세에 따라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의 권리에 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전임 박사 장학금(full time PhD scholarships)을 두 개 만들었다.
70. 호주 서던크로스대학의 법과 정의 대학(The School of Law and Justice at Southern Cross University)은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생태 법학(Ecological Jurisprudence)”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71. 방글라데시에서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인간 행동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는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전환의 틀 내에서 청정 및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수행할 기후 의식이 있는 시민과 숙련된

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 서비스 프로그램(national service programme)을 성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72. 브라질 상파울루 마릴리아 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Doctoral Programme in Law at the University of Marilia, São Paulo, Brazil)은 마투 그로소 도 술(Mato Grosso do Sul)연방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과 협력하여 토론과 과학 논문을 촉발하기 위해 “발전 이론(Theories of Development)” 분야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였다.
73. 브라질의 캄피나스 대학(Faculdades de Campinas college)은 국제 관계에 관한 정규 학부 교과 과정에서 유엔 의제와 관련 있는 주제에 관한 강좌를 시작했다. 2019년 1학기에 학생들은 하모니위드네이처에 대한 수업과 토론에 참여하여 생태 경제학의 개념과 그 실례를 탐구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관한 전자책을 제작하여 평화의 문화와 하모니위드네이처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홍보했다.
74. 2018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단치 알리에리 대학(Colégio Dante Alighieri)은 지구 중심의 학제 간 프로젝트(생물학, 화학, 영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학, 포르투갈어 및 기술)를 개발하였다. 유엔의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약 300명의 학생, 코디네이터 및 교사가 도서, 방송 자료, 토론을 이용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브라질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개발한 최종 산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75. 볼리비아에서 문화간 탈식민지화 교육 프로그램(intercultural decolonization education programme)은 원주민 국가의 지역 지식과 지혜를 서구 현대 과학의 지식과 결합하여 각각의 기여와 장점을 인정한다. 이 국제 프로그램은 남남 협력 프로그램(South-South cooperation programme)인 콤파스(COMPAS, Comparing and Supporting Endogenous Development, 내생 발전 비교 및 지원)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7개국과 가나, 인도, 스리랑카 및 짐바브웨에서 개발되었다.
76. 볼리비아는 또한 모든 공립대학에서 가용한 지속적인 문화 간 탈식민화(intercultural decolonization)를 이루어왔다. 마요르 데 산 시몬 대학(Universidad Mayor de San Simón)과 마요르 데 산 안드레스 대학(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은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의 지원을 받아 그 노력을 주도해 왔다. 약 284명의 학생이 기술적 단계에서 교육을 받았고 247명은 학부 및 대학원 단계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데 참여했다.

77. 1991년 인도 대법원은 환경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2003년에는 교육 기관에 전국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그 결과 130만 개 이상의 학교와 60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3억 명 이상의 학생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받았다. 16인승 열차에 탑재된 혁신적인 모바일 과학 전시회인 “사이언스 익스프레스 기후 행동 스페셜(Science Express Climate Action Special)”에는 16년 동안 1,500만 이상의 학생이 방문했다.
78. 네덜란드의 미래세대연구소(Future Generations Lab)는 니엔로드경영대학교(Nyenrode Business University)와 협력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말까지 바덴 해(Wadden Sea)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사업을 시작했다.
79. 2019년 4월과 5월 대한민국에서 지구와 사람(People for Earth)은 법무법인 원의 프로 보노 센터(Pro Bono Center)와 협력하여 “A-Z: 지구법학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분기별 지구법학 강의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 강의 시리즈는 대한 변호사 협회의 법조인(judicial officers), 변호사(lawyers), 법대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의 주제는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헌법 및 경제법을 포함하며, 지구법학의 의의와 방향을 포함한다.
80.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대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는 지구법학 및 자연의 권리에 대한 강좌 내용을 더욱 확대해왔는데, 특히 2019년 7월에는 자연자원법, 2019년 3월에는 비교법으로 확대했다.
81. 나이지리아의 베넌 대학교(University of Benin) 법학부는 2019년에 자연의 권리 주제를 학부 및 대학원의 국제 환경법 강좌에 반영하고 있다.
82. 스페인에서는 발렌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Valencia)가 2018년 9월 헌법 석사 학위를 확대하여 자연의 권리 채택과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입헌주의에 대한 연구를 포함했다. 2019년 7월 까스띠야 라 만차(Castilla-La Mancha) 대학교는 헌법 정의, 헌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전문가 과정에서 “환경권과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의 모듈(module, 교과목 단위)을 평화, 자연, 상호문화화(interculturality) 관련 주제에 대한 유럽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젝트(European Erasmus + project (OPT-IN))의 틀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B. 비정규 교육 및 대중 참여(Informal education and public engagement)

83. 호주 지구법 연맹(Australian Earth Law Alliance)은 ‘공동체와 자연권을 위한 호주인 재판소(Australian People' Tribunal for Community and Nature's Rights)’를 설립했으며,

여기에서 전문 참여자는 호주의 생태계 파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시민과 지구 변호사(Earth lawyers)가 제출한 사례를 듣는다.

84. 벨기에서는 자연에 대한 명시적 권리의 인정으로의 전환을 옹호하는 여러 여론 기사가 국내 신문이 게재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헨드릭 쇼켄스(Hendrik Schoukens)와 같은 작가는 법률 문헌에서 글 소재를 선택하고 있다.
85. 브라질 연방사법위원회(Federal Justice Council of Brazil)와 세아라 산타 카타리나 고이아스 연방대학(Federal Universities of Ceará, Santa Catarina and Goiás)은 기술 협력 협정 하에 함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의 목적은 연구, 교육, 출판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하모니위드네이처와 관련한 국제적 구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86. 2019년 4월 22일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에,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병행 대화(a parallel dialogue)가 에드슨 파친(Edson Fachin) 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브라질리아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 대화는 브라질 연방 사법 위원회(Federal Justice Council of Brazil)가 주최한 것으로, 브라질 사법 체계의 정의와 판사를 위해 자연과 조화로의 전환에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주제로 하였다.⁷
87. 2019년, 브라질 포르탈레자(Fortaleza)에 있는 파리아스 브리토 대학(University of Farias Brito, Fortaleza, Brazil)은 시각 자료로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자연의 권리를 환경헌법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88. 브라질 상파울루 시의원 까이오 미란다(Caio Miranda)는 ‘환경 및 사회적 실천을 위한 지원 방법(Métodos de Apoio a Práticas Ambientais e Sociais)’이라는 단체와 협력하여 “자연의 대사(Ambassadors of Nature)”라고 불리는 공립학교용 지구법학 중심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12월에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비정부기구인 오브젝티브 사이언스 인터내셔널(Objectif Sciences International)이 개최하는 연차회의에서 젊은 참가자들이 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89. 2019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캄피нас 대학(Faculdades de Campinas)은 유엔의 하모니위드네이처 및 유엔 협회 세계 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과 국제 모의 유엔(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의 지원을 받아 모의 유엔(Model United Nations)의 여섯 번째 세션을 개최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캄피нас 대학 모의유엔(Faculdades de Campinas Model

⁷ www.harmonywithnatureun.org/dialogues.

United Nations)은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인식을 높여 2030년까지 그들의 공동체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방식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

90. 2019년 1학기 동안, 캄피나스 대학은 자연과의 조화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하모니위드네이처 대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했고, 고등학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Harmony with Nature Knowledge Network)의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교류했다. 캄피나스 대학은 2019년 가을에 두 번째 스터디그룹을 운영할 것이다.
91.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의 “인류세를 위한 경제학” 파트너십과 “생태대(Ecozoic) 프로젝트를 위한 리더십”은 생태법과 거버넌스 협회(Ecological Law and Governance Association) 및 기타 조직 단체와 협력하여 2019년 생태법과 거버넌스에 관한 월간 웹 세미나 시리즈를 공동 후원했다. 2019년 5월 캐나다 생태경제학회(Canadian Society of Ecological Economics)는 “변화의 경제 참여(Engaging economics of change)”를 주제로 온타리오주 워털루(Waterloo, Ontario)에서 격년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생태법: 핵심 주제와 발전(Ecological law: key themes and development)”이라는 특별 세션이 포함되었다.
92. 2019년 6월 25일 코스타리카 환경 차관은 어머니 지구 평화의 길(Mother Earth Peace Path)과 웰니스 관광 프로젝트(Wellness Tourism Project)를 32개의 국립공원과 수십 개의 서식지 및 보호 구역으로 구성된 국가 보존 시스템(National Conservation System)에 포함하기 위해 가이아 재단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방문객에게 기후 변화와 자연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어머니 지구 평화 및 웰빙 협정(Mother Earth Peace and Wellness Agreement)에 서명을 촉진하는 것이다.
93. 2019년 6월 21일 세계 요가의 날(International Day of Yoga), 코스타리카 대학교는 어머니 지구의 의식적 진화 원칙인 지구법학과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촉진하기 위해 하모니위드네이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또한 어머니 지구 평화와 웰니스 협정(Mother Earth Peace and Wellness Agreement)에 기여한다.
94.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코스타리카의 라 포르투나(La Fortuna, Costa)에서 제1차 세계 웰니스 및 스파 관광 회의(first international wellness and spa tourism congress)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어머니 지구 웰니스 관광 선언문(Mother Earth wellness tourism manifesto)’에 서명했으며, 당국에 전체적 균형 개념을 토대로 지구법학을 촉진하

는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모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인권, 헌법주의,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자연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브라질 법학대학원 과정과 연구에 관한 국가위원회(Brazilian National Council on Research and Graduate Courses on Law)’의 제6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95. 칠레에서는 자연의 권리 중심의 여러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9년 4월 17일 발파라이소(Valparaíso)에서 ‘칠레 대학 라틴아메리카 미학 연구 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Latin American Aesthetics of the University of Chile)’와 발파라이소의 지자체, ‘칠레의 어머니 지구 권리 운동(Chilean Rights of Mother Earth movement)’의 주최로 자연의 권리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알토 호스피시오(Alto Hospicio)에 있는 생태공원인 타라파까(Tarapacá)는 재활용 재료로 설계된 재현 가능한(replicable) 도시 정원 모델이다. 이 에코 파크는 2019년 4월 25일 이 지역에서의 자연의 권리 시행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알토 호스피시오(Alto Hospicio) 지자체, 비정부 기구인 마니토 베르데(Manito Verde)와 ‘사막의 여성 단체(the collective Women of the Desert)’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 와이까(La Huayca)에서 칠레 북부의 자연의 권리 운동 창설에 초점을 맞춘 비전협의회(Council of Visions)가 개최되었다.
96. 엘살바도르의 아후아찬(Ahuachán)에서 시 보르 로스 데레초스 데라 나뚜랄레사(Sí por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자연의 권리에 찬성의 의미)는 2019년 6월 8일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행사로 “임업권과 지구법학에 관한 대화”라는 제목의 대화를 개최했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미래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학생을 초대하였다.
97. 2019년 3월,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문화에서 온 인스티투토 까사 코뮴(Instituto Casa Comum) 조직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교육 협력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빠차마마(Pachamama) 또는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는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보살핌과 존경을 받아야 할 살아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데 이는, 협력의 주요 초점 중 하나다.
98. 2019년 6월, 생태법 및 거버넌스 협회(Ecological Law and Governance Association)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 환경법 위원회 윤리전문가 그룹(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Ethics Specialist Group)은 트리에스테 대학(University of Trieste)에서 열린 제27회 글로벌 생태 보전 모임(Global Ecological Integrity Group)에서 하모니워드네이처의 주요 원칙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그룹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위한 필수 거버넌스 구성 요소인 생태적 온전성(ecological integrity), 지구 민주주의 및 지구법학을 발전시키는 학제 간 그룹이다.

99. 2019년 지구법센터(the Earth Law Center)는 선도적인 환경법학자 및 실무자들과 연합하여 “지구 법(Earth Law)”이라는 제목의 로스쿨 교과서를 볼터스 클루버(Wolters Kluwer, 정보서비스 회사)와 출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책은 동물권, 인간의 환경권 그리고 공공 신탁 이론(public trust doctrine)을 포함한 자연권 및 관련 운동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100. 프랑스에서는 2018년 11월 18일 비영리 단체인 콩파니 데 마탱 블루스(Compagnie des matins bleus)가 나무의 권리 세계 선언(declaración universal por los derechos del árbol)과, 나무의 권리 선언 및 국제 협약의 초안 작성을 위해 전 세계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5일 프랑스 국회에 주목할 만한 나무(noteworthy trees) 보존에 관한 콜로키움에서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 5월 18일 프랑스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101. 2018년 11월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오리엔탈 대학교(Orientale University of Naples, Italy)가 “자연은 권리의 주체인가? 주권, 책임 및 사회적 갈등(Nature as a subject of rights? Sovereignty, liability and social conflicts)”의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유럽 연합과 미국의 자연권 운동, 자연과 동물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 및 원주민의 접근법을 비교한다.
102. 2019년 1월,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퀸즈 대학의 법학대학원(the School of Law at Queen’s University in Belfast, Ireland)은 북아일랜드와 더 넓은 영국 내에서 자연의 권리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고려하기 위해, ‘북아일랜드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 Northern Ireland)’와 ‘지역 사회 환경법 방어 기금(Community Environmental Legal Defense Fund) 간의 공동 행사를 주최했다.
103.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2018-2019년에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에서 개최되는 2020년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세계 환경법 위원회 윤리전문가 그룹(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Ethics Specialist Group)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프랑스 위원회(France Committee)와 협력하여 13개 회원 조직의 지원을 받아 지구법학에 기반을 둔 2020년 의회를 위한 기초 제안서를 발전시켰다. 이 제안은 모든 수준의 의회 계획을 알리려고 했다. 한 가지 핵심 주제는 특히 자연을 보호할 의무를 포함하여 “자연의 권리의 지지, 효과적이고 공평한 거버넌스 보장”이 될 것이다.
104. 2018년 7월 세계자연보전연맹 환경법 콜로키움(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cademy of Environmental Law Colloquium)은 스코틀랜드의 스트래스클라

이드 대학(University of Strathclyde)에서 매년 모임을 주최했다. 세계 환경법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위원 60명의 발표문에서는 특히 자연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105. 2018년 11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Sharm el-Sheik)에서는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역할에 대한 과학, 정책 및 시민사회 간 과학-정책 대화에서는 “2050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향해(Towards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by 2050)”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참여단체는 생태계 관리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 위원회(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ommission on Ecosystem Management), 국제생물과학연합(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유럽 연합 과학-정책 인터페이스 메커니즘(European Union science-policy interface mechanis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미주 지구 변화 연구 연구소(Inter-American Institute for Global Change Research),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었다.
106. 자연의 권리 루마니아(Nature’s Rights Romania)와 빠차마마 루마니아(Pachamama Romania)는 여러 학교, 부쿠레슈티 경제 연구 대학(Bucharest University of Economic Studies), 클린체니 스포츠 대학교(Clinceni Sports College)와 아브람 양구 국립대학(Avram Iancu National College)등 수많은 학교와 대학에서 지구법학과 자연권 개념을 홍보해 왔다.
107. 자연의 권리 탄자니아(Nature’s Rights Tanzania)는 여섯 개의 카게라(Kagera) 지역 지구와 협력하여 지역 학교에서 환경 교육 계획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 교사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다.
108. 2018년 12월 7일, 캔터베리 대학교 법대(University of Canterbury School of Law)는 뉴질랜드 법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원주민의 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 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물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와 강을 위한 법적 권리의 역할에 대해 논했다.
109. 나이지리아 강 보존(Conservation of Nigerian Rivers)재단, 에티오피 강 신탁 재단(River Ethiopie Trust Foundation), 상시 환경 관리 유한회사(Alltime Environmental Care Limited)는 나이지리아의 자연의 권리를 지지하고 인식증진을 위해 지구법학에 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모니워드네이처에 대한 연례 전국적인 상호대화는 2020년 4월 22일에 시작될 것이다.

110. 대한민국에서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구와 사람(People For Earth)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생태학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제1회 생태대 문화를 위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cozoic Culture)’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국내외 1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 회의는 지구 환경 보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현재의 노력을 검토했다.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변화를 생태 문명의 가치 및 실천과 연결하고자 했다. 이 회의는 “문명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우리의 노력”, “대안 생태경제 시스템의 모색”, “생태 문화와 지속적인 교육의 미래 과제”에 관한 세션을 포함하였다.
111. 지구와 사람(People for Earth)은 ‘제2회 생태대 문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2019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춘천시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지구 정의의 회복과 동아시아의 역할”이며 주요 세션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구와의 조화, 미래에 관한 대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구법학의 국제적 확산”, “자연의 권리와 비무장지대의 미래”이다.
112. 2019년 1월 태평양 지역 환경 프로그램 사무국(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인 ‘개발연구소 및 국제비교환경법센터(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et the Centre International de droit comparé de l’ environnement)’는 태평양의 권리에 대한 지역 회의를 개최하여 태평양을 권리가 있는 자체 법인으로 인정하는 결의안 초안 작성에 이용될 연구를 시작했고 이 결의안은 2020년에 채택될 예정이다.
113. 필리핀에서 ‘필리핀 미제레어 파트너십(Philippine Misereor Partnership Inc.)’은 법을 통해 어머니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의 발전 및 지지 세력인 사회 행동을 위한 국가 사무국/카리타스 필리핀((National Secretariat for Social Action/Caritas Philippines)’과 협력하고 있다.
114. 2019년, 스페인 오비에도 대학(University of Oviedo)의 연구원은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정보를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자연의 권리 인식에 관한 선언문이 사이언스(Science)지에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115. 2019년 2월, 스페인 타라고나에 있는 로비라 이 비르길 대학(Universitat Rovira i Virgil)의 타라고나 환경법 연구 센터(Tarragona Centre for Environmental Law Studies)는 히로시마 대학(University of Hiroshima)과 함께 자연의 권리에 대한 세미나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 제4회 타라고나 국제 환경법 콜로키움(IV Tarragon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lloquium)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권리

의 주체로서 자연 인식에 대한 진행 중인 작업과 연구를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116. ‘자연의 권리에 관한 제2차 국제 지구 권리 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Earth Rights Conference on the Rights of Nature)’가 2019년 5월 10일과 11일에 스웨덴에서 개최되었다.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인 베테른 호수(Lake Vättern)의 권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베테른 호수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유럽대륙 전역에 걸쳐 자연의 권리 법률을 채택하기 위한 캠페인을 조정하기 위해 자연의 권리 세계 동맹(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을 위한 유럽의 거점을 출범시켰다.
117. 스위스에서, 비정부 기관인 ‘어머니 지구의 권리(Rights of Mother Earth)’는 2018년 7월에 유엔이 어머니 지구의 권리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의 정식 초안 작성에 참여하도록 고무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2019년 5월 현재, 캠페인은 26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으며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머니 지구의 권리(Rights of Mother Earth)’와 ‘오브젝티브 사이언스 인터내셔널(Objectif Sciences International)’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12월 제네바에 있는 유엔에서 어머니 지구 권리 선언을 위한 첫 행진을 조직했다.
118. ‘오브젝티브 사이언스 인터내셔널’은 제네바에서 2018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자연권에 관한 제7회 연례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자연의 권리 법안 구상(rights of Nature initiatives)에서 일하는 네트워크에서 30명 이상의 연사를 모았다. 다음 회의는 2019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119. ‘오브젝티브 사이언스 인터내셔널’은 또한 자연의 권리에 관련한 실제 연구에 대해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 ‘우수 회의(meetings of excellence)’라는 다양한 여름 과학 캠프를 조직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개인이 어머니 지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120. 네덜란드에서 2018년 6월, ‘사물의 의회(Parliament of Things)’는 바다의 법인격을 탐구하기 위해 문화 프로젝트로 ‘북해대사관(North Sea Embassy)’을 출범시켰다. 2019년 7월, 북해대사관에서는 일련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 바덴(Wadden)해 생태계의 권리 그리고 물의 법인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1. 우간다에서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 인식: 우간다의 지구법학 확립” 보고서를 2018년 11월에 출간하였는데, 이는 변호사와 사법부의 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여기에는 우간다 법원 내에서의 자연의 권리 추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122. 2019년 6월 영국에서 가이아 재단(Gaia Foundation)은 '지구법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을 기념했다. 아프리카 지구법학 운동(African Earth Jurisprudence movement), 소셜 미디어 게시물, 신문과 텔레비전 인터뷰, 그리고 온라인과 협력하여 “지구법학의 바른 이해(Demystifying Earth jurisprudence)”라는 대화형 이야기(interactive story)가 전 세계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123. 영국에 등록된 국제 피어 리뷰 저널인 *The Ecological Citizen*은 독자층과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명시적으로 지구 중심적 저널이며, 지구법학, 지구 중심 법률, 자연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124. 2019년 4월 영국의 핀드혼 재단(Findhorn Foundation)이 자연의 권리 단체(Nature's Rights) 및 타 단체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와 의식(Climate change and consciousness)”에 관한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에는 지구법학, 원주민의 지혜 그리고 자연의 권리에 대한 주제로 세계적인 발표자들이 참석하였다.
125. 미국에서 오리건 대학과 코스트 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ies of Oregon and of Coastal Carolina)은 국제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transnational rights of Nature networks)를 지도화하고 자연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크레이그 카우프만(Craig Kauffman)과 파멜라 마틴(Pamela Martin)이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연의 권리 조직에 대한 세계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26. 미네소타에 있는 ‘오지브웨의 백색 지구 밴드(White Earth Band of Ojibwe)’는 야생 버의 전통적인 채집 및 가공과 관련한 시각적 및 실습 학습으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대한 교육 이니셔티브에 집중하고 있다. 목표는 식량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을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진입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127. 2020년 봄 유엔 본부에서 유엔 세계 시민 회의(the World Council of Peoples for the United Nations)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의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리암 시 파케마르(Liam Sy Paquemar)가 창작한 지구 온난화에 관한 데뷔 공연 전시회를 선보였다.
128. 유엔협회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은 ‘오브젝티브 사이언스 인터내셔널’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포함함으로써 모델 유엔 프로그램에 하모니워드네이처의 반영을 확대하였다. 이는 고등학생(2019년 2월)과 대학생(2019년 10월)을 모아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 결의안을 협상하도록 할 것이다.

V. 결론

129. 지난 10년 동안 지구법학은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법적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인간의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양한 관할지역(jurisdictions)에서 헌법 조항의 채택, 입법안 발의(legislative initiatives) 및/또는 지구의 고유 권리를 인정하는 사법부 결정에서 비인간 세계(non-human world)를 법적 주체로 내세운 점이다.
130. 법률 교육과 법률 이론을 재정의하는 것이 지구 중심 접근법의 개발에 중심이었다. 이는 그 주제에 대한 정규교육을 통해 또는 학생들에게 스터디 그룹, 워크숍, 세미나 및 회의와 같은 비정규교육으로도 이 주제를 노출함으로써 전 세계 대학의 교육과정의 급속한 성장에 반영되었다.
131. 교육, 기후 행동 및 시민 사회 간의 상호 연결은 지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대응에서 깊이 연계되어 있다. 다양한 법적 접근방식에 의해 공유된 것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 대한 거부로, 이는 존재를 둘러싼 우주(surrounding cosmos)로 정의되는 관계의 연결망(network of relationships)의 외부에, 또 상위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거부이다.
132. 또한, 많은 비정부기구와 시민 단체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유엔에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선언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는 지구와 모든 종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133.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학 전통들이 이끄는 지구 중심의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다원적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생태계와, 육지 및 바다 경관, 그리고 문화와 전통의 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데 달려 있다. 자연과의 조화는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상상해 온 삶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VI. 권고 사항

134.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인간 활동의 해로운 영향은 유엔, 국제기구, 국제 과학 공동체, 영적 지도자, 공동체 그리고 원주민 지도자, 전 세계 이해관계자가 널리 알고 있다. 기후변화가 지구상의 모든 종에 미치는 실존적인 위협과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는 자연 세계의 생태계에 대한 암울한 예측에 직면하여,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선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엔은 지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공정한 전환과 관련하여 법률, 정책, 교육 및 대중 참여에서의 최근 또는 향후 변혁 및 조치에 정통하고자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a) 지구와 모든 종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계적 약속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선언의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학계, 비정부 기구 및 시민 사회 단체 간의 공식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그러한 보편적 선언은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국제적 윤리 기준나침반(international moral compass)을 제공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지구법학 입법(Earth Jurisprudence legislation)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
- (b) 전문 실무자, 학자, 그리고 사상가로 구성된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2030년 의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구현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기



총회

배포: 일반

2020년 12월 30일

원문: 영어

제75차 회기

의제 항목19(g)

지속가능발전: 자연과의 조화

2020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75/220. 자연과의 조화

이 총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¹, 의제 21², 의제 21의 추가적인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³,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⁴,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이행계획(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⁵을 재확인하고,

하모니위드네이처에서 2009년 12월 21일의 64/196, 2010년 12월 20일의 65/164, 2011년 12월 22일의 66/204, 2012년 12월 21일의 67/214, 2013년 12월 20일의 68/216, 2014년 12월 19일의 69/224, 2015년 12월 22일의 70/208, 2016년 12월 21일의 71/232, 2017년 12월 20일의 72/223, 2018년 12월 20일의 73/235, 2019년 12월 19일의 74/224 결의안을 상기하고,

¹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vol. I,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I.8 and corrigendum), resolution 1, annex I.

² Ibid., annex II.

³ Resolution S-19/2, annex.

⁴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ust–4 September 200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II.A.1 and corrigendum), chap. I, resolution 1, annex.

⁵ Ibid. resolution 2, annex.

또한, 2009년 4월 22일의 63/278 결의안에서 4월 22일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한 것을 상기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나아가 1982년 세계 자연 현장을 상기하고⁶,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차밤바에서 볼리비아 정부가 주최한 기후 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 회의에 주목하고⁷,

지구와 생태계는 우리의 집이며, “어머니 지구”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된 표현임을 인식하고, 일부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나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구 간에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상회의 결과보고서를 상기하고,⁸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사람 중심의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대상을 채택했던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어젠다”라는 이름의 2015년 9월 25일 70/1 결의안과, 2030년까지 의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겠다는 약속과 국민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큰 지구적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인식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를 쌓아 올리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통합적인 부분이고, 이 의제를 지지하고 보완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이행 목표의 수단들을 전후 사정과 관련짓는 데 도움이 되며,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차원에서 활성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자금을 조달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한, 제3차 발전 자금 조달에 관한 국제회의의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에 관한 2015년 7월 27일 69/313 결의안도 재확인하고,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주택과 지속 가능 도시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신도시 의제를 재확인하고⁹, 이 의제의 이행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

⁶ Resolution 37/7, annex.

⁷ A/64/777, annexes I and II. 참조.

⁸ Resolution 66/288, annex.

⁹ Resolution 71/256, annex.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파리 협약¹⁰을 재확인하고, 모든 참가국에 그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¹¹ 참가 국에게는 적절한 곳에서 가능한 한 빨리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 수단들을 기탁하도록 고무하며,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에 토대를 둔 해결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자연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재고하도록 시민과 사회를 고무하고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과 기후 행동 구현에서의 “어머니 지구 접근”이라는 전반적인 주제 아래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 2019년 4월 22일에 개최된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상호대화에 감사를 표하며, 일부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이라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주목하고,

제74차 총회 기간에 열렸던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상호대화가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COVID-19로 인한 인류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심각한 혼란, 삶과 생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2030 여젠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전진을 가속하고 미래의 충격 위험을 줄이는 것을 돕는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회복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 궤도에 오르려는 야망을 재확인하고, COVID-19 팬데믹은 단결, 연대 및 새로운 다자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가 어머니 지구를 모든 생명과 영양분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이 국가들이 어머니 지구와 인류를 상호 연관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들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간주함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13차 회의를

¹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FCCC/CP/2015/10/Add.1, decision 1/CP.21로 채택됨.

¹¹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771, No. 30822.

맞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상호대화를 상기하고,

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과 일부 문화권에서 어머니 지구로 인식하는 생물 다양성 보호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때 일부 “기후 정의”라는 개념의 중요함도 주목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한 전체적 접근을 촉진하는 데 지구 시스템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입증되고 있는 환경 파괴, 더 빈번하고 극심한 자연재해,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구와의 공정하고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초 통계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균등하지 않다는 것과 그 통계자료들의 질적 양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과, 모든 국가는 리오 원칙을 고려하면서 선진국이 주도하고 모든 국가가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책 문서들을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계획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또한, 유엔 본부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환경 문제의 정보, 대중 참여 및 정의에 관한 지역 협정, 즉 에스까수 협정(Escazú Agreement)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한 유형으로는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며, 조기 발효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한 협정을 채택하고 서명을 개시했음에 주목하고,

많은 고대 문명, 원주민과 원주민 문화가 상호 유익한 관계를 조성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 관계를 이해하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전통 지식, 혁신, 관행이 사회복지와 지속 가능한 생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같은 전 지구적인 노력과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일부 국가는 입법, 정책, 교육적 관점에 근거하여 자연 보호에 관한 선언을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많은 국가에서 자연이나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공식 및 비공식 교육 활동이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맥락에서 전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생겨났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세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에 대한 전체적 접근을 장려하고,

지구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학계, 과학자, 지역공동체와 원주민이 수행한 작업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위한 좀 더 지속 가능한 모델과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부문 조직들과 함께 그들이 한 노력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의 12.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확실히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활동에서 협력하고 있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들의 작업에 주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학제 간 연계강화가 필요한 전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낙오자는 없을 것이라는 맹세를 거듭 강조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이라는 인식과 모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을 위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재확인하며, 가장 뒤처진 곳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다짐하고,

1.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한다.¹²
2. 기존 연구와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¹³와, 지구 법학을 다룬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총회의 첫 화상 대화에 대한 전문가 요약 보고서¹⁴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 잡힌 통합을 촉진하는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의 결과 및 권고를 적절하게 고려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청한다.
3. 총회 의장은 제76차 총회에서 2022년 4월 22일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소집될 본회의에서 상호대화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거기에는 회원국, 유엔 체제, 독립적인

¹² A/75/266.

¹³ A/65/314, A/66/302, A/67/317, A/68/325, A/68/325/Corr.1, A/69/322, A/70/268, A/72/175, A/73/221, A/74/236 and A/75/266.

¹⁴ A/71/266. 참조.

전문가들과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자연과의 조화의 관계를 논의하며, 시민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자연 세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재고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4. 상황에 따라, 사무총장이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고려했던, 어머니 지구의 보호에 대한 지역적 지방적 국가적 사업의 전개에 관해서, 하모니위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5. 매년 4월 22일에 어머니 지구의 날을 계속 기념하기로 정하며, 사무총장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회원 국에게 국가 차원에서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할 것을 권장한다.
6. 볼리비아 정부와 유엔 경제사회국 간의 합의에 감사를 표하며¹⁵, 그중에서도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에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참여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의 신탁기금 아래, 자연과의 조화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기여할 것을 회원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7. 유엔 경제사회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연과의 조화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하고, 전통 지식의 사용과 기존 국가 법률에 관한 성공 사례를 포함하여 학제 간 과학 작업의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부금을 모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8.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이는 인류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보전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9.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을 국가에 요청한다.
 - (a)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과학 정보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는 동인과 가치 및 행동을 반영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세 가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체적인 개념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더욱더 구축하고, 인류와 자연 간의 기본적인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도모할 것
 - (b) 원주민에 의해서 예시되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할 것, 무엇보다도 원주민 문화에서 자연 보호를 배울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역 사회와 원주민 플랫폼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

¹⁵ www.harmonywithnatureun.org/trustFund에서 이용 가능.

수립에서 이루어진 모범 사례와 진전을 고려하면서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

10. 생태계를 보호 및 보전하고 동물, 식물, 미생물 및 무생물 환경에 해로운 관행을 피하는 것이 자연과의 조화 속 인류의 공존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1. 모든 국가는 세 가지 측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가 기본 통계 자료의 질과 양을 개발 및 강화할 것을 장려하며, 국제 사회와 유엔 체제 관련 기관이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2. 정책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더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와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진전 조치를 개발하고 이 분야의 기존 노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해 통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 주목한다.
13. 가장 취약한 국가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고,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2030 어젠다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14. 인류의 안녕은 자연의 보전과 건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COVID-19 회복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위해 더 나은 기반을 구축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할 것을 국제 사회에 요구한다.
15. 현재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77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항목 아래 “자연과의 조화”라는 세부 항목을 제77차 총회의 임시 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의한다.

제48회 총회
2020년 12월 21일



총회

배포: 일반

2020년 7월 28일

원문: 영어

제75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18(g)*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사무총장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총회 결의안 74/224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총회는 의장에게 2020년 4월 22일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74차 회의에서 하모니워드네이처 상호대화를 소집할 것과 결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75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상호대화는 취소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작성되었다. 2009년 하모니워드네이처에 대한 첫 번째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10년간의 프로그램을 기념하고, 2010년에 개최된 하모니워드네이처 첫 번째 상호대화가 이뤄지고 10년 후에 작성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탈-인간 중심 사상에 뿌리를 둔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지구 중심 법학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구 법학에 대한 가장 최근의 희망적인 진전 중 일부에 관한 개요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성과를 강조하는데, 이 시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에서 인간중심 사회에서 지구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더욱 잘 보여준다.

I. 서문

1. 2019년 12월 19일 총회는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제11차 결의안 74/224를 채택하여, 제74차 회의에서 회원국, 유엔 기구, 독립적인 전문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020년 4월 22일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상호대화를 소집할 것을 총회 의장에게 요청했다.
2. 하모니워드네이처 열한 번째 상호대화를 2020년 4월 22일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1월에 진행 중이었으나, 3월 중순까지 COVID-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취소했다(COVID-19 동안 총회가 결정한 절차는 74/544에 따라 채택된 74/547 참조할 것).
3. 상호대화 취소 결정에 관한 성명서에서 에콰도르는 현재의 불확실한 시기를 고려할 때,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Nature)¹의 조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 성찰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자연과의 조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데 본질적이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소비 및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하며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
4. 성명서에서, 자연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에콰도르는 COVID-19 팬데믹이 생태계의 허약한 건강 상태와 야생동물의 남용 및 불법 거래와 관련이 있으며, 인권 행사는 생물 다양성 보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에콰도르는 일단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면 유엔 내에서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모범 사례의 공유와 마찬가지로 상호대화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5. 2020년 4월 22일 어머니 지구의 날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총회 의장은 오직 “인간중심 사회에서 지구 중심 글로벌 생태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어머니 지구가 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³
6. 의장은, 그렇게 하려면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구법학과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고 모든 곳과 모든 사람을 위한 회복력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고대 문화의 가르침을 고취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현하기

¹ Nature의 대문자 사용은 유엔 총회 결의안 73/235 서문의 29번째 단락과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의장의 사전 보고서 (A/74/236)에서 인정되고 거기에 포함되었다.

² <https://www.un.org/pga/74/wp-content/uploads/sites/99/2020/04/A-74-L.46.pdf>.

³ www.un.org/pga/74/2020/04/21/international-mother-earth-day/.

위해 시민사회, 민간부문, 학계 및 대중매체 간의 협력을 장려한 회원국에게 찬사를 보냈다.

7.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성명서에서, 사무총장은 모든 사람이 COVID-19 팬데믹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바로 지구 환경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기후 파괴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팬데믹은 전례 없는 경종을 울렸고, 회복은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진정한 기회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⁴
8. 성명서에서, 사무총장은 인간과 지구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과 기후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부문과 프로젝트에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COVID-19 복구 노력을 이루기 위한 6가지 기후 관련 조치를 제안했다.
9. 2020년 상호대화의 부재로,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⁵ 지식 네트워크의 많은 전문가가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한 변혁적이고 재생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 법학을 다루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을 반영했다. 이러한 대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왔다.
10. 1960년대 이후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을 야기하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의 농도, 삼림 벌채 및 종들의 멸종에 대한 과학자들의 증거로 뒷받침된 지속 불가능한 발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수생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1. 하모니위드네이처 첫 번째 상호대화 이후 10년을 기념하는 이 보고서는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가르침에 뿌리를 둔 생태 경제학과 지구 중심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구 법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희망적인 발전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다.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돌파구와 취해진 조치를 통해서 아직 전개 중인 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다.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활동에 대한 170개 이상의 예를 편집한 본 보고서에 대한 특별 보충 자료는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⁶ 이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COVID-19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이 인간이 진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 함께 세상을 다시 더 좋게 만들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⁴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says COVID-19 'wake-up call' demands recovery built on green economy, marking Earth Day 2020", press release, 20 April 2020.

⁵ See www.harmonywithnatureun.org/experts/

⁶ <http://harmonywithnatureun.org/unDocs/>.

II. 예견된 팬데믹의 연대기

12. 10여 년 전에 연구자들은 새로운 전염병 335개의 출현을 확인했으며, 그중 최소 60%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되거나 척추동물에서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되었다. 전염병학자들은 현재의 COVID-19 바이러스 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와, 2009년의 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 2012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발병, 2014년 서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친 에볼라 전염병을 일으킨 기타 바이러스들을 포함하여 현재 빈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환경변화와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⁷
13.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이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과의 첫 번째 공동 워크숍을 통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할 계획이었다.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및 COVID-19 발병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초기 연구 결과는 2021년에 발표될 다음 패널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14. 2019년 5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에 관한 최초의 정부 간 글로벌 평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플랫폼은 수분 매개체 종과 민물고기의 멸종과 산림 생태계의 소멸이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지구 온난화와 질병 전파를 악화시키는 등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중 상당수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패러다임, 목표 및 가치를 포함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전반에 걸쳐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편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⁸
15. 그러나 자연계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변화를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COVID-19 팬데믹과 연관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단계와 유사하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 파괴가 COVID-19 팬데믹의 환경 파괴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⁹

⁷ Zoonoses series, *Lancet* (30 November 2012).

⁸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The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Eduardo S. Brondizio and others, eds. (Bonn,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secretariat, 2019).

⁹ Mark Lawrence, “The ‘wicked problem’ of the COVID-19 pandemic”, Institute for Advanced Sustainability Studies, 9 April 2020.
www.iass-potsdam.de/en/blog/2020/04/wicked-problem-covid-19-pandemic 검색

16. 전염병, 기후변화 같은 복잡한 과제와 인류세 시대의 다른 과제들에 대한 대응은 관련된 개인과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의존한다. 과학은 상당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할 수 있지만, 현대 과학은 설명에 있어서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사실적이라고 노력하며, 의도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배제한다.¹⁰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는 인간이 기후 변화와 미래의 전염병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와 인류의 미래에 기본이다.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지구를 보장하는 열쇠는 인류와 땅 및 자연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한 견해는 원주민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은 생명의 의미가 모든 생명 간 공존의 균형에 달려 있으며, 그 균형은 “법은 땅에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믿음과 관련된 가치와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¹¹
18. 인류가 지구상의 생명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 자연을 조작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필요 대 욕구”의 개념과 가치관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VID-19로부터의 회복은 지금 시작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시하며, 생태 경제학 및 지구 중심법의 계획과 발전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다.

III. 지구 건강 및 인간 복지를 위한 생태 경제학

19.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생태 경제학 발전의 모자이크가 등장하면서, 지구 건강과 인간 복지가 연결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COVID-19 팬데믹의 결과로 가시성과 추진력을 얻었다. 복지의 척도로서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대안이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 영역에 등장하고 있으며, 생태 경제학 분야의 발전이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 예를 들어, 캐나다 복지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와 부탄의 국민 총 행복 지수에서 영감을 받았다.¹² 10년 넘는 기간 동안, 워털루 대학에 연구기반을 두고 있는 캐나다 복지 지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캐나다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했다. 그 틀은 시스템 기반

¹⁰ Robin Wall Kimmerer, remarks given at the fifth interactive dialogue of the General Assembly on Harmony with Nature, held on 27 April 2015. [Files.harmonywithnatureun.org/uploads/upload70.pdf](https://files.harmonywithnatureun.org/uploads/upload70.pdf). 검색

¹¹ Excellence Reporter, “Dr. Anne Poelina: the meaning of life and the law of the land”, 8 March 2018.

¹² Canadian Index of Wellbeing,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2016 CIW National Report* (Waterloo, Ontario,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nd University of Waterloo, 2016); Mairi-Jane V. Fox and Jon D. Erickson, “Design and meaning of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U.S. fifty-state model”, *Ecological Economics*, vol. 167 (January 2020); and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Bhutan’s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University of Oxford).

접근 방식을 통해서 공동체의 활력, 민주적 참여, 교육, 환경, 건강한 인구, 레저 및 문화, 생활 수준 및 시간 사용 같은 영역에서 캐나다인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레점(leverage points)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21. 2018년에 미국에서 버몬트주는 GPI를 경제적 성과와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로 도입하는 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주가 되었다.¹³ 그 이후로 콜로라도, 하와이, 메릴랜드, 오레곤, 워싱턴을 포함한 19개 주가 버몬트주에 합류했다.
22. 2019년 초에 복지 예산을 발표한 자신다 아데른(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정부의 지출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부나 경제 성장이 국가의 발전을 측정해야 하는 척도가 아니며, GDP만으로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GDP는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누가 소외되었는지를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¹⁴ 2019년 5월 이후, 정신 건강 강화, 아동 빈곤 감소, 원주민 지원, 저공해 경제로의 이동, 디지털 시대의 변형 같은 복지와 관련된 목표를 지원하는 데 정부 지출이 필요했다.
23. 2019년 12월, 카트린 야콥스도티르(Katrín Jakobsdóttir) 아이슬란드 총리는 경제 성장 수치에 집중하는 대신에 친환경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우선순위를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¹⁵ 야콥스도티르는 환경 파괴가 아이슬란드에 새로운 사회 지표를 통합하게 만든 핵심 요소이며, GDP를 통한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4. 2019년 7월 24일 연설에서 스코틀랜드 초대 장관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은 GDP가 한 나라의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분열과 불평등이 심화하는 세상에서 정부가 단지 부가 아니라 건강과 복지에 관한 좀 더 광범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⁶
25. 브라질에서는 경쟁 대신 협력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익보다는 환경 보호, 인간의 다양성,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침으로 삼는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개념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다. 단순한 공급망은 생산자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중개자들을 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었다. 소규모 생산자와 시민사회단체는 농업 생태학적 방법을 추진해왔으며, COVID-19 위기 이후, 연대경제 아래 있는 농식품 사업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증가했다.

¹³ Eric Zencey, *The 2018 Vermont Genuine Progress Indicator Report* (University of Vermont, March 2018).

¹⁴ Sigal Samuel, "Forget GDP – New Zealand is prioritizing gross national well-being", Vox, 8 June 2019.

¹⁵ Katrín Jakobsdóttir, Prime Minister of Iceland, "Iceland and the well-being economy", Chatham House, video, 3 December 2019.

¹⁶ Nicola Sturgeon, First Minister of Scotland, "Why Governments should prioritize well-being", TEDSummit 2019, video, July 2019.

26. 빈곤을 해결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성장 지속 경제학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탈성장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¹⁷ 2008년 파리에서 개최된, 생태 지속 가능과 사회평등을 위한 제1차 국제 경제 탈성장회의(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Degrowth for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이후 중요해진 탈성장이라는 용어는 복지를 위한 척도로서 GDP에 대한 비판 그 이상을 포함한다. 그 용어는 사회적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으며, 보살핌, 연대, 협력의 공통 가치,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이는 포스트-성장 운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탈성장(*décroissance*), 포스트 성장(*Postwachstum*), 정상상태 혹은 노년 경제, 성장 없는 번영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¹⁸ 프랑스어 *décroissance* 또는 이탈리아어 *decrescita*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용어의 기원은 대재앙의 홍수가 일어난 후 정상적인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강과 관련이 있다.¹⁹

27. 2020년 6월 초에 첫 번째 온라인 탈성장 회의가 개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중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과 전략으로서 탈성장을 논의했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탈성장은 다른 사회적, 생태적, 정의 기반 담론과 운동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위한 공통적인 생각과 경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28. 다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경제 성장 없이도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실 세계를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238명의 학자는 EU와 그 회원국에게 GDP보다 인간과 생태학적 복지가 우선시되는 성장 이후의 미래를 계획할 것을 촉구했다.²¹

29. 국가 및 지역 정부의 협력인 복지 경제 정부 파트너십(Wellbeing Economy Governments Partnership)의 목적은 21세기 발전이 인간과 생태계 복지 모두를 수반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복지 경제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야망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파트너십은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웨일즈로 구성되어 있다.²²

30. 2020년 4월,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 2020-2025 순환 전략²³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¹⁷ Geoffrey Garver, "A systems-based tool for transitioning to law for a mutually enhancing human-Earth relationship", *Ecological Economics*, vol. 157 (March 2019), pp.165–174.

¹⁸ Dan O'Neill and others, "The EU needs a stability and wellbeing pact, not more growth", *Guardian*, letter, 16 September 2018.

¹⁹ www.degrowth.info/en/what-is-degrowth/.

²⁰ Degrowth Vienna 2020, "Today – tomorrow: reflections on the conference and how to move forward", YouTube, video, 2 June 2020.

²¹ Dan O'Neill and others, "The EU needs a stability and wellbeing pact, not more growth."

²² <https://wellbeingeconomy.org/wego>.

암스테르담은 도넛 경제학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새로운 원자재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활동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²⁴ 암스테르담은 폐기물을 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재를 재사용함으로써 2050년까지 완전한 순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도시는 원자재를 추적하고 어떤 사업이 순환 경제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31. 2020년 1월 31일, 프랑스에서는 헌법 위원회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유럽에서 금지되는 독성 살충제를 해외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환경 보호 대 자유 기업²⁵에 대한 획기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환경과 인간 건강의 보호와 자유 기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환경 보존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새로운 경계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32. 2020년 6월, 기후에 관한 시민협약(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은 프랑스 영토 내의 생태 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권한의 수립, 프랑스 형법에 생태 파괴(ecocide)의 인정, 국가법에 지구 경계의 설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입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2021년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제안을 처리할 후속 그룹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²⁶

IV. 어머니 지구를 위한 휴식의 순간, 변혁의 기회

33. 최근 몇 달 동안, 세계는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봉쇄가 생물다양성과 지구 건강에 미친, 짧지만 유익한 영향을 목격했는데, 거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소음 공해의 감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와 육상 및 해상 운송에 부과된 제한 때문이다. 경제활동도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에너지 수요도 감소했다. 몇몇 주요 도시에서 미립자로 된 오염물질이 전례 없이 감소했고, 일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일일 평균 배출량에 비해 2020년 4월 말에는 그것의 최저치보다 17% 더 낮았다.²⁷

²³ www.amsterdam.nl/en/policy/sustainability/circular-economy.

²⁴ Kate Raworth, "What on Earth is the doughnut?"

²⁵ Constitutional Council, Union des industries de la protection des plantes (Prohibition of the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 of certain plant protection products), Decision No. 2019-823 QPC, 31 January 2020.

²⁶ Wild Legal, "Convention citoyenne: le président s'engage pour la reconnaissance du crime d'écocide", press release, 29 June 2020.

²⁷ IQAir, "COVID-19 air quality report: 2019 coronavirus pandemic lockdowns result in unprecedented reductions in deadly particle pollution", 22 April 2020; Corinne Le Quéré and others, "Temporary reduction in daily global CO2 emissions during the COVID-19 forced confinement", Nature Climate Change, vol. 10 (2020), pp. 647–653; and VOA News, "Scientists report coronavirus shutdowns have reduced seismic 'noise'", 31 March 2020.

34.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속도에 따라, 팬데믹은 2020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디에서나 4.2%에서 7.5%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2020년에 관측된 대부분의 변화가 경제, 운송 또는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35. 그러나 이러한 오염과 소음의 감소는 건전한 환경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세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봉쇄의 결과였다. 지금까지 팬데믹에 대한 행동적 대응은 단기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모든 종의 생명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잠시 멈춘 행동 및 사회적 대응만으로는 순 제로 배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감소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팬데믹 이후 입법, 정책 및 공동 행동을 통해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V. 지구 건강과 인간 복지를 위한 지구 중심법의 모자이크

36. 지난 10년 동안, 지구 법학이라고도 알려진 지구 중심 법²⁸은 점점 더 많은 회원국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지구 법학의 철학과 실천을 통해, 인류는 그 복지가 지구의 복지에서 비롯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종의 미래 세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고 지구 법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37. 형평성, 협력, 대화, 포용, 이해, 합의, 존중, 상호 영감처럼, 그러한 패러다임에 의해 발전된 가치는 인류세를 넘어서는 여정에서 생태 경제학이 제시한 동일한 열망을 보완해준다. 그러한 가치는 현재의 성장 기반 경제체제의 존재 이유인 수익성의 지배적인 논리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법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인간 중심적인 환경 보호법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38. 자연을 보호하는 데 환경법이 효과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근대 사법(private law)으로 촉진된 지구의 끝없는 착취라는 개념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환경법의 취약성은 항상 사법의 문턱에서 멈추었다는 사실과 직결된다.²⁹

²⁸ Information on legislation and policies featured in section V is available on the Harmony with Nature website, at <http://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 and www.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Policies/.

²⁹ 9 Gonzalo Sozzo, Derecho Privado Ambiental: El Giro Ecológico del Derecho Privado (Sante Fe, Argentina, Rubinzal-Culzoni, 2019).

39. 게다가, 환경법은 이미 모든 카드가 뽑혔을 때 게임에 들어갔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새로운 환경법은 사유재산권에 몇몇 환경 의무만을 추가했을 뿐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환경법은 계속해서 재산과 상법의 “가난한 친척”이었으며, 주변부에서만 불충분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 뿐이었다.³⁰
40. 지난 50년간 인권은 우리가 사는 환경과 얽혀 있다는 인식이 커졌지만, 환경법은 오염을 줄이고 인간의 권리가 의존하는 종과 서식지 손실을 막는 데 크게 실패했다. 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것이며 인간의 권리를 보완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41.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붕괴가 가속되면서, 자연의 권리를 먼저 보장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지탱하는 생태계가 존재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인간의 생명권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지각 있는 각 존재의 권리는 더 큰 생태 공동체의 완전성, 균형 및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모든 존재의 권리에 의해 제한된다.
42.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첫걸음은 비인간인 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이며, 존중되어야 하고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간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쉽게 인정받는 동물들과 관련하여 확산하고 있다.³¹
43.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변호사들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이 필요한 포획 동물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s)는 코끼리와 침팬지를 “사람”으로 취급하고 감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코끼리와 침팬지를 대신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법 및 동물권에 대한 법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44. 인류와 지구를 공유하는 나머지 지각 있는 존재들 사이의 평화롭고, 도덕적이며,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0년 5월에 열린 동물법에 관한 제1차 국제 가상회의(First International Virtual Congress on Animal Law)에서 4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2,000명에 가까운 참가자와 연사가 모였다.

³⁰ Klaus Bosselmann,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Transforming Law and Governance*, 2nd ed. (Milton Park, Abingdon, Oxfordshire, United Kingdom, Routledge, 2017).

³¹ David R. Boyd, *The Rights of Nature: A Legal Revolution that Could Save the World* (Toronto, ECW Press, 2017).

45. 원주민의 세계관과 우주론, 전통 지식, 관습법 역시 다른 지각 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의 거버넌스 체제가 지구법에서 파생되어야 한다는 이해를 구현하고 있다. 이것의 예는 원주민 조상의 땅, 성스러운 유적지, 지식과 실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대대로 보존해온 자연경관 및 야생동물과 조화를 이루며 계속 살 수 있다. 전통적인 원주민 식량 체제도 어머니 지구와의 상호존적인 사회 문화적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식량 소비와 식량 생산을 분리하는 세계화된 기업 식량 체제와 대조적이다.
46. 지난 10년 동안, 헌법과 국제법에서 원주민의 관습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근대 환경법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관습법에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3건의 법원 판결은 처음으로 원주민의 이야기가 법적 다원주의 개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그들의 견해가 실증적 법체계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47. 2019년 11월 7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면서 원주민과 물 사이의 정신적 문화적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과테말라의 농업 변혁과 광산법(*agrarian transformation and mining law*)이 물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격과, 물이 살아있는 존재, 즉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으므로 오염으로 죽임당할 수 없는 주체일 수 있음을 배제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물은 순환하는 살아있는 실체이며,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마야인에게는 나우알(*nahual*, 수호신)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48. 2020년 2월 6일, 미주인권재판소는 야가 온아뜨(*Laka Honhat*, 우리의 땅) 협회의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 대 아르헨티나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Wichi(마타코 *Mataco*, 남아메리카 원주민), Iyjawaja(초로테, *Chorote*), Komlek(토바, *Toba*), Niwackle(츄루피, *Chulupi*), 그리고 Tapy'y (타피에테, *Tapiete*)족 사람들은 살타 지방(*Salta Province*) 북부에 있는 조상 땅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공동체 재산에 대한 증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³²
49. 판결문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원주민 사회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는 그들의 영토에 관한 간섭의 결과이며, 이것이 전통적인 식량 공급과 깨끗한 물에 대한 수렴-채집인들의 접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로, 미주인권재판소는 물, 음식, 건강한 환경,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선례를 만들었다.
50. 2020년 4월 1일, 브라질 검찰총장 아우구스토 아라스(*Augusto Aras*)가 서명한 브라질

³² Centre for Legal and Social Studie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found Argentina guilty and ruled in favour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Salta", 7 April 2020.

아마존의 아크레(Acre)주 아사닌카(Ashaninka)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전대미문의 법원 합의는 거의 40년 전에 아사닌카 사람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배상을 보장했다. 1980년대에 유럽의 가구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그들의 토지가 삼림 벌채되었다.³³

51. 지방 차원에서 국가 차원까지의 정부 정책들은 관습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기여했다는 인식을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22일 우간다에서는 불리사(Buliisa)구 지방정부 위원회가 “부토카(Butoka, 어머니 지구)와 지구 모든 종의 미래 세대에 대한 바군구족 지도자들의 우려”와 “지구와 땅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그들 조상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군구(Bagungu) 지킴이 부족(custodian clans)의 관습법에 대한 결의안에 서명했다. 아프리카 지구 법학 실무자들과 가이아 재단은 베냉, 케냐, 짐바브웨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있다.

52. 최근 연구는 자연의 권리를 증진하는 조직 및 네트워크의 밀도와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적 조항이 등장하는 국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자연의 권리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과 자연의 권리와 나란히 하면서도 명시적으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 활동들을 하는 조직 및 운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⁴

53. 지난 10년 동안,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은 이미 채택되었거나 현재 35개국에서 채택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기록하고 분석했다.³⁵ 또한 하모니워드네이처는 자연을 법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인간”이나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법률이나 정책의 초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채택하여 시행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와 입법기관의 협력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A. 채택된 주요 법률

54. 2019년 3월 21일 브라질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NGO 단체 ‘환경적 실천에 대한 지원 방법(Métodos de Apoio à Práticas Ambientais)’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연의 권리 원칙을 토대로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앞부분이 청록색인 아마존 앵무새(Amazona aestiva)의

³³ Naira Hofmeister, “\$3 million and an official apology: Brazil’s Ashaninka get unprecedented compensation for deforestation on their land”, Mongabay, 16 April 2020.

³⁴ Craig Kauffman, “Mapping transnational rights of Nature networks and laws: new global governance structures for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Toronto, 29 March 2020.

³⁵ Argentina, Australia, Bangladesh, Belize, Belgium,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razil, Canada, Colombia, Chile, Costa Rica, Denmark, Ecuador, El Salvador, France, Guatemala, Hungary, India, Ireland, Italy,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Philippines, Portugal, Romania, Spain,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Ugand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oly See.

권리를 인정하였다. 2019년 6월 11일, 플로리아노폴리스 시의회는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플로리아노폴리스시의 기본법 133을 표결에 부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55. 캐나다에서는 Tsilhqot'in 국민(Tsilhqot'in Nation, 역자주: 브리티시 컬롬비아에 사는 원주민)에 속하는 제1국민 ?Esdilagh(?Esdilagh First Nations, 그 이름은 “땅이 물과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될 수 있음, 역자주: 브리티시 컬롬비아의 북카리보지역의 제1국민 공동체)가 ?Elhdaqox(Sturgeon River, 일명 프레이저강으로 알려져 있음)의 전통적인 관리자로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공식 서류로 기록했다. 2020년 5월 28일 Tsilhqot'in 추장협의회(Council of Chiefs)에 의해 승인된 ?Esdilagh 스터전(Sturgeon)강 법은 사람, 동물, 물고기, 식물, 그리고 “땅”(nen)과 “물”(tu)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콜롬비아에서는 자연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6건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1개의 법령이 만들어졌다.
 - (a) 2019년 7월 12일, 칼리에 있는 제3 치안 법원(the Third Court of Penalties and Security Measures in Cali)은 팡세 강을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오염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인용한 영장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 (b) 2019년 7월 15일, 나리뇨주는 칙령(Decree) 348에 서명함으로써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 (c) 2019년 10월 24일, 네이바 지역 제1 형사법원(the First Criminal Court of the District of Neiva)은 막달레나 강과 그 유역과 지류를 국가의 보호, 보전, 유지, 복원에 대한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
 - (d) 2019년 9월 11일 페레이라에 있는 제4 치안 법원(the Fourth Court of Penalties and Security Measures in Pereira)은 오투 강을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
 - (e) 2019년 11월 12일, 평화 특별 법원(Special Jurisdiction for Peace)은 아와족의 광활한 영토인 카차 수(Katsa Su)를 권리 주체이자 무력 충돌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 (f) 2019년 12월 5일, 킨디오(Quindío) 행정법원은 킨디오 강을 보호, 보전, 유지, 복구에 대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였다.

(g) 2020년 6월 17일, 연방 대법원은 건잡을 수 없는 삼림 벌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살라망카 국립공원을 권리 주체로 선포했다.

57. 2019년 6월 19일, 에콰도르의 임바부라 지방 법원은 광산 활동이 자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로스 세드로스(Los Cedros) 보호림의 손을 들어줬다.
58. 또한 2019년 7월 17일 에콰도르에서 수쿰비오스(Sucumbios) 지방의 한 법원은 시낭고(Sinangoe) 지방 코판(Cofán) 원주민이 시낭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협의권(collective rights of free and informed prior consultation, 역자주: 원주민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동의권), 물의 권리, 자연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제기한 주장을 인용했다. 법원은 그들의 땅에 대한 채굴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59. 2019년 8월 16일, 에콰도르 케베도(Quevedo)의 한 판사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자연의 권리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 노동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지적하면서, 로스 리오스(Los Ríos) 주의 농민들에게 유리한 보호 명령을 인용했다.
60. 2020년 3월 2일, 찬디가르(Chandigarh)의 편잡(Punjab) 및 하리아나(Haryana) 고등법원은 수크나(Sukhna) 호수를 그 호수의 생존, 보존 및 보전을 위한 법인격체로 선언하고, 찬디가르의 모든 시민이 호수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
61. 네덜란드에서는 동어라델(Dongeradeel)시가 다른 두 지방 도시와 합병하여 노아르리스트 프라이즐린(Noardeast-Fryslân)시가 되었는데, 2019년 7월 11일 노아르리스트 프라이즐린 시의회는 와든해(Wadden Sea)에 특별권을 부여하는 동의안을 채택하고 독립적인 관리 기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62. 2019년 9월 30일, 나이지리아 연방 환경부는 프레스코 회사가 에티오페강(River Ethiopie)에서 행한 오일 야자 및 고무 활동에 대항해서 에티오페강 트러스트 재단(River Ethiopie Trust Foundation)이 제기한 탄원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프레스코사에게 탄원이 제기한 조건을 준수하고, 그렇게 하여 강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모든 환경권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63. 2020년 1월 16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메노미니 부족은 메노미니강의 “고유한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이 결의안에서 이 부족은 다른 조항 중에서도 “복구, 회복, 보존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들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활동이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이러한 권리들이 또 이웃 부족들과 그 밖의 정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64. 2020년 6월 20일 미국 아이다호(Idaho)의 네즈 퍼스(Nez Perce) 부족 총회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에서 총회는 스네이크강(Snake River)을 존재하고 번성하고 진화하고 흐르고 재생할 권리와 회복할 권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실체로 인정한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세계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구 법을 통해 그 믿음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B. 진행 중인 주요 입법 과정

65. 2020년 7월 2일, 아르헨티나에서는 파라나 삼각주(Paraná Delta) 습지의 권리를 인정받아서 습지의 온전성을 보전하려고 대법원에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66. 2019년 11월 28일 호주에서는 자연권과 미래 세대 법안 2019(the Rights of Nature and Future Generations Bill 2019)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호주 의회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제출한 첫 번째 법안이다.
67. 2020년 8월 엘살바도르에서는 NGO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개헌안을 입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렘파 강(Lempa River)의 권리를 인정하는 발의안도 진행 중이다.
68. 2019년 12월 12일 멕시코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주 헌법과 연방 헌법에 명시한 발의안이 멕시코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발의안은 2020년 말 연방의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69. 나이지리아에서는 에티오페강 권리법안이 상원에 제출되어 강 권리에서 법적 진보를 이루었다.
70. 2019년 10월 필리핀에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건의 자연의 권리 법안이 발의됐다. 그 법안들은 2020년에 이들 의회에서 채택될 것이다.
71. 2020년 7월 23일, 스페인 무르시아의 로스 알카사레스(Los Alcázares)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염수 석호인 마르 메노르(Mar Menor)와 그 유역에 권리를 부여하고 생태계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72.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는 녹색당이 자연권,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번성하고 재생하고

진화할 권리와 복원, 회복, 보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연적인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C. 주요 정책

73. 칠레에서는 권리의 인정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는 새 헌법을 개발하려는 헌법 제정 절차를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가 2020년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현 팬데믹의 제약을 받고 있다.
74. 덴마크에서는 대안당(Alternativet)이 2019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는 정치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75. 2020년 2월 엘살바도르에서는 아우아차판(Ahuachapán) 시의회가 엘 에스피노 석호(Espino Lagoon)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76. 2019년 10월 19일, 프랑스에서는 루아르(Loire)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첫 번째 의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시작했는데, 그 의회에서는 루아르강의 동식물군과 강의 다양한 유기 및 무기적 요소가 대표로 발탁될 것이다.
77. 멕시코에서는, 제64대 의회의 수자원, 식수 및 위생 위원회(Commission of Hydraulic Resources,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of the Chamber of Deputies of the sixty-fourth Legislative)가 물에 관한 새로운 일반 법 제정 초안 작성에 동의했는데, 이 초안은 강과 수자원의 권리, 그리고 기타 많은 인간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78. 2020년 5월 7일 스페인에서는 발렌시아 시 정부가 식물 협약(Acord del Botànic)에 제안된 대로, 발렌시아의 자치령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79. 웨덴에서는 스웨덴 지구의 권리 변호사들(Swedish Earth Rights Lawyers)과 스웨덴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 Sweden)라는 단체들이 베테른 호수(Lake Vättern)의 권리에 대한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 선언문 초안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베테른 호수 내 모든 자연적인 물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80. 2019년 7월 스위스에서는 ID-EAU가 론강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
81. 2020년 6월 4일 미국에서는 환경 및 기후 위기에 관한 민주당 전국 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risis)가 자연의 권리 원칙을 미국 연방법에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과 자연에 관한 2020 민주당 강령을

위한 환경 및 기후 정책 권장 사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많은 카운티에서 강이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번성하고, 재생하고, 진화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와 복원될 권리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즉,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는 웨키바(Wekiva)강과 에콘로크해치(Econlockhatchee)강에 대한 권리 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알라추아(Alachua) 카운티의 청원자들은 산타페강(Santa Fe River) 권리장전이 통과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으며, 리 카운티 시민들은 칼루사해치(Caloosahatchee) 권리장전의 채택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82. 교황청에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집한 범아마존 지역 주교회의의 특별 총회(Speci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for the Pan-Amazon Region)의 최종 문서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83. 앞서 언급했듯이, 생태 경제학 및 지구 중심법과 정책의 모자이크는 탈인간 중심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및 NGO는 과학적 지식, 고대 문화의 지혜 및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역기능 관계의 영향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고 있다. 그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지구적인 사회가 가능하고 자연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변화의 주된 원동력이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학계와 많은 NGO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은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모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대중 참여의 결과, 이러한 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의 자연의 권리 페이지는 2020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24시간 동안 12,000개 이상의 새로운 뷰를 생성했다.³⁶
84. 또한 202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브라질에서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하모니 선언문(Harmony Manifesto)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문에서는 자연의 대상화를 지속시킨 가치와 원칙의 소멸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 채택을 촉구했다.
85. 202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세계 담수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는 담수 생물군계의 재생력과 강이 흐를 권리를 조명할 목적하에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다.
86. 지난 5년간, ‘자연의 권리에 관한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으로의 자연 통합(the Partnership on the Rights of Nature: Integrating Nature into the Implementation

³⁶ https://pageviews.toolforge.org/?project=en.wikipedia.org&platform=all-access&agent=user&redirects=0&start=2020-07-06&end=2020-07-08&pages=Rights_of_nature 참조.

of the SDGs)’은 전 세계 유엔 관련 단체들의 기여에 힘입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그 하위 목표에 자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왔다. ‘비정부기구 주요 그룹의 커먼스 클러스터(The Commons cluster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ajor group, 역자주: 유엔 산하기관)’가 선도 기관으로 활동했으며, 그 결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면서 자연을 통합하기”라는 제목으로 모두 세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각 보고서는 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서로 다른 일련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보고서들은 여기에서 논의된 모든 영역에서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87. 2020년 유엔 75주년을 기념하여, 총회는 지구 의회(Earth Assembly)의 역할로 소집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지구 의회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탈 인간 중심적 혹은 지구 중심적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다자주의에서 안식처를 찾는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인류는 자연의 대상화와 그러한 세계관이 수반하는 모든 불확실성의 결과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위기관리 상태에 영구적으로 적응된 채 계속 살아가든지, 아니면 근원에서부터 자연의 주체화와 함께 자연 세계와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인류의 존재를 이끌어가도록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되었다.

VI. 결론

88. 2008년 에콰도르가 자연(Nature) 혹은 파차마마(Pachamama, 안데스 지역에 사는 케추아족의 세계관에서 어머니 대지로 알려져 있음)에 헌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부여한 국가가 되고, 볼리비아 정부가 국가 행동의 지침을 위해서 2009년 헌법에 부엔 비비르(buen vivir) 원리를 인정하여, 결국 유엔 총회가 4월 22일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선포하고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첫 번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을 때, 이 국가들은 그들의 탈 인간 중심적인 결정이 전 세계의 법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다.
89.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증빙되었듯이, 지난 10년 동안 유엔의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은 매년 4월 22일, 어머니 지구의 날에 열리는 총회의 상호대화 에 영감을 준 중요한 공헌과 그밖에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과 조직의 핵심 교리를 문서화하고 분석했다.
90. 이번 보고서에서 다뤄진 생태 경제학과 지구 중심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발전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지구 자연계의 점진적인 파괴를 비난해온 과학자, 활동가, 원주민을 비롯하여, 지구 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어느 범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생애 초반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면한 젊은이들의 강력하고 전 지구적인 운동과 자연을 위한 권리 기반 운동의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1. COVID-19 팬데믹의 출현은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규모를 강조한다. 세계 보건 위기로 인해 필요해진 봉쇄는 탄소 배출과 채굴 활동을 크게 줄였다. 어떤 면에서, 위기에 대한 단호한 비상 대응은 위험이 충분히 클 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심층적인 구조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팬데믹 동안, 환경 보호 장치에 대한 반발이 매우 우려스럽다.
92.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은 지배적인 성장-지속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구현하려는 모든 노력과 재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서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교훈을 활용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해 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정상성을 공동으로 상상하고 창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93. 보고서에 제시된 생태 경제학과 지구 중심법의 사례와 발전은 지구와 사람을 보호할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러한 새로운 경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으며, 지구 중심적인 대안에 관심과 추진력을 제공하는 활동의 최전선에 있다.
94. 75년 역사를 통틀어 유엔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다. 이제 책임은 탈 인간중심주의의 옹호자이자 자연계를 대표하는 목소리이며, 모든 인간과 비인간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1세기 지구 중심적 전환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구에 있다.
95. COVID-19에서의 회복 과정은 인간이 진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총회

배포: 부록은 온라인과
영어로만 이용 가능함
하모니워드네이처에
관한SG보고서
(A/75/266)에 대한 부록

제75차 회기

임시 의제 항목 18(g)*

지속가능발전

하모니워드네이처

부록

개요

이 특별 부록은 하모니워드네이처 보고서(A/75/266)를 보완한다. 이 부록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동안 170개 이상의 고무적인 지구 법학 사례 및 발전, 법률과 정책의 발전, 전 세계의 공식, 비공식 교육, 학습과 공공 봉사 활동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진보는 지구와 사람의 보호를 위한 탈 인간 중심적 혹은 지구 중심적 접근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행사와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동, 연기 또는 취소되었으며, 다른 행사는 2020년 후반으로 다시 일정이 조정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적 도전과 성과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 중심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학교, 대학, 학술 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많은 발전은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려 그들이 유엔 하모니워드 네이처 프로그램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I. 서문

1.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동안 전 세계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는 자연과 자연 세계가 존재하고 번성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채택했다.¹ 많은 경우 이러한 새로운 법률은 비정부기구, 시민 사회 단체, 입법자와 입법 기관의 협력의 산물인데, 이들은 자연을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 주체/또는 법 “인격”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하고 시행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2.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식, 비공식 교육을 이용하여 자연의 권리를 지지하는 인식과 토론, 행동을 촉진하고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플랫폼 전반에 걸친 협력과 공동작업을 강화하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확대해왔다.
3. 많은 학교, 대학, 학술 기관이 지구법학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도입하거나 강화했는데, 이 지구 법학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연계성이 생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우리 법률 시스템의 근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편, 이 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려는 공동의 목표와 함께 대중의 참여가 다양해졌다.

II. 지구 중심법 시행 동향²

A.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주요 법률

4. 2019년 3월 21일 브라질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NGO 단체 ‘환경적 사회적 실천에 대한 지원 방법(Métodos de Apoio às Práticas Ambientais Sociais)’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연의 권리 원칙을 토대로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앞부분이 청록색인 아마존 앵무새 (Amazona aestiva)의 권리를 인정했다. 2019년 6월 11일, 플로리아노폴리스 시의회는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플로리아노폴리스시의 기본법 133을 표결에 부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5. 2020년 4월 1일, 브라질 검찰총장 아우구스토 아라스(Augusto Aras)가 서명한 브라질 아마존의 아크레(Acre)주 아사닌카(Ashaninka)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전대미문의 법원 합의는 거의 40년 전에 아사닌카 사람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배상을 보장했다. 1980년대에 유럽의 가구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그들의 토지가 삼림 벌채되었다.

¹ Nature의 대문자 사용은 유엔 총회 결의안 73/235 서론의 29번째 단락과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사전 보고서(A/74/236)에 인정되고 포함되었다.

² 이 부문에서 채택되거나 다루지고 있는 입법과 정책에 관해서는 <http://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 참조.

6. 캐나다에서는 Tsilhqot'in 국민(Tsilhqot'in Nation, 역자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사는 원주민)에 속하는 제1국민 ?Esdilagh(?Esdilagh First Nations, 그 이름은 “땅이 물과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될 수 있음, 역자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북카리보지역의 제1국민 공동체)가 ?Elhdaqox(Sturgeon River, 일명 프레이저강으로 알려져 있음)의 전통적인 관리자로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공식 서류로 기록했다. 2020년 5월 28일 Tsilhqot'in 추장협의회(Council of Chiefs)에 의해 승인된 ?Esdilagh 스테전(Sturgeon)강 법은 사람, 동물, 물고기, 식물, 그리고 “땅”(nen)과 “물”(tu)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2020년에 콜롬비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트라토(Atrato) 강 유역에 대한 거버넌스 기구에 과학기관, 대학, NGO, 국내 및 국제 환경 기구, 공공 및 민간 기관, 시민 사회로 구성된 복수 이해관계자 위원회(a multi-stakeholder commission of stewards)를 만들도록 명령했다. 그 결정은 이 위원회가 몇몇 국가 감독 기관, NGO, 연구소, 청원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로 통합된 전문가 위원회의 지원과 감독을 받도록 했다.
8. 또한, 법원은 여러 국가, 지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이 사회 환경 프로그램에 착수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아트라토 강 유역의 독성 및 역학 연구, 오염 제거, 불법 채광 및 벌목을 최종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주거지를 떠나는 것을 막는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침해된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식량 안보를 회복할 종족 발전 계획을 위한 것이다.
9. 2019년 7월 12일 칼리에서 제3 치안 법원(the Third Court of Penalties and Security Measures)은 분지와 지류를 포함하여 팽세 강을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오염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영장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었다. 법원은 또 깨끗한 물, 존엄한 삶, 건강과 건강한 환경에 대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했다.
10. 2019년 7월 15일, 나리뇨(Nariño) 주는 특별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들을 강조하고 그 지역들을 권리자(rights-holders)로 채택하여 그 지방의 전략적인 생태계 보호, 보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칙령 348에 서명함으로써,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나리뇨 당국은 농업 국경의 확장, 산업용 가축사육, 불법 채굴과 불법 작물로 인한 삼림 벌채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11. 2019년 9월 11일, 페레이라에 있는 제4 치안 법원(the Fourth Court of Penalties and Security Measures)은 유역과 지류를 포함한 오투(Otún) 강을 시, 지방 및 국가 당국의 보호를 받고, 보전되고, 유지되며 회복될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 법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생명, 건강,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를 강조했다.

12. 2019년 10월 24일, 네이바(Neiva) 지구에 있는 제1 형사법원은 막달레나 강과 그 유역 및 지류를 국가의 보호, 보존, 유지, 복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했으며, 그럼으로써 환경부와 공공 환경 기관인 막달레나강 자치지역 협회(Corpación Autónoma Regional del Río Grande de la Magdalena)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물, 건강, 존엄한 삶,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옹호한다.
13. 2019년 11월 12일, 평화 특별 법원(Special Jurisdiction for Peace)은 아와족(Awá)의 광활한 영토인 카차 수(Katsa Su)를 권리 주체이자 무력 충돌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나아가 이들 지역 사회와 환경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32개의 원주민 시의회(cabildo)와 생태계를 피해자로 인정했다.
14. 2019년 12월 5일, 콜롬비아 킨디오(Quindío) 행정법원은 킨디오 강을 보호, 보전, 유지, 복원을 위한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
15. 2020년 6월 17일, 콜롬비아 대법원은 살라망카 국립공원을 건잡을 수 없는 삼림 벌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리 주체로 선포했다.
16. 2019년 6월 19일, 에콰도르에서 임바부라(Imbabura) 헌법재판소는 광업 활동이 자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로스 세드로스 보호림(Los Cedros Protected Forest)의 손을 들어주었다.
17. 또한 2019년 7월 17일 에콰도르에서 수쿰비오스(Sucumbios) 지방의 한 법원은 시낭고(Sinangoe) 지방 코판(Cofán) 원주민이 시낭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협의권(collective rights of free and informed prior consultation, 역자주: 원주민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동의권), 물의 권리, 자연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제기한 주장을 인용했다. 법원은 그들의 땅에 대한 채굴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18. 2019년 8월 16일, 에콰도르 케베도(Quevedo)의 한 판사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자연의 권리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 노동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지적하면서, 로스 리오스(Los Ríos) 주의 농민에게 유리한 보호 명령을 받아들이고 인용했다.
19. 2019년 11월 7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면서 원주민과 물 사이의 정신적 문화적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과테말라의 농업 변혁과 광산법(agrarian transformation and mining law)이 물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격과, 물이 살아있는 존재, 즉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으므로 오염으로 책임당할 수 없는 주체일

수 있음을 배제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물은 순환하는 살아있는 실체이며,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마야인에게는 나우알(nahual, 수호신)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20. 2020년 3월 2일, 찬디가르(Chandigarh)의 편잡(Punjab) 및 하리아나(Haryana) 고등법원은 수크나(Sukhna) 호수를 그 호수의 생존, 보존 및 보전을 위한 법인격체로 선언하고, 찬디가르의 모든 시민이 호수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
21. 멕시코에서는 닭싸움 업계가 닭싸움 금지가 포함된 베라크루스 주의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Bill of Veracruz)이 다른 인권 중에서도 문화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동물 학대 및 불필요한 고통을 수반하는 어떠한 관행도 [연방] 헌법이 보호하는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멕시코에서 비인간 동물권을 인정하는 선례가 됐다.
22. 네덜란드에서는 2018년에 와든해(Wadden Sea)에 대한 특별권에 관한 동의안을 채택한 동어라델(Dongeradeel)시가 다른 두 지방 도시와 합병하여 노아리이스트 프라이즐린(Noardeast-Fryslân)시가 되었는데, 2019년 7월 11일에는 노아리이스트 프라이즐린 시의 회가 와든해에 특별권을 부여하는 동의안을 채택하고 독립적인 관리 기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23. 2019년 9월 30일, 나이지리아 연방 환경부는 프레스코 회사가 에티오페강(River Ethiope)에서 행한 오일 야자 및 고무 활동에 대해서 에티오페강 트러스트 재단(River Ethiope Trust Foundation)이 제기한 탄원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프레스코사에게 탄원이 제기한 조건을 준수하고, 그렇게 하여 강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모든 환경권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24. 2019년 11월 22일에 우간다에서는 불리사(Buliisa)구 지방 정부 위원회가 “어머니 지구(Butoka, Mother Earth)와 지구 모든 종의 미래 세대에 대한 바군구족(Bagungu) 지도자들의 우려”와 “지구와 땅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그들 조상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킴이 바군구족의 관습법에 대한 결의안에 서명했다.
25.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는 시가 환경 스태프와 지속 가능 대책위원회를 성장시켰으며, 시의회는 2019년 현재 이 도시의 ‘지속 가능 권리 조례(Sustainability Rights Ordinance)’가 보장하는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지속 가능 권리 달성을 향한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승인했다. 2020년 2월 25일에 이 도시의 2019 지속 가능 권리 보고서가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제출되었다.

26. 2020년 1월 16일, 미국에서 위스콘신주의 메노미니족(Menominee)은 메노미니강의 “고유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 결의에서 이 부족은 특히 “복구, 회복, 보존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들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활동이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러한 권리들이 또 이웃 부족들과 그 밖의 정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27. 2020년 6월 20일 미국 아이다호(Idaho)의 네즈 퍼스(Nez Perce) 부족 총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에서 총회는 스네이크강(Snake River)을 존재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흐르고 재생할 권리와 회복될 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실체로 인정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세계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구 법을 통해 그 믿음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8. 2020년 2월 6일, 미주인권재판소는 야까 온아뜨(Laka Honhat, 우리의 땅) 협회의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 대 아르헨티나 정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Wichí(마타코, Mataco, 남아메리카 원주민), Iyjawaja(초로테, Chorote), Komlek(토바, Toba), Niwackle(츄루피, Chulupí), 그리고 Tapy'y (타피에테, Tapiete)족 사람들은 북부 살타 지방에 있는 조상 땅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공동체 재산에 대한 증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³ 판결문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원주민 사회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는 그들의 영토에 관한 간섭의 결과이며, 이것이 전통적인 식량 공급과 깨끗한 물에 대한 수렵 채집인들의 접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로, 미주인권재판소는 물, 음식, 건강한 환경,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선례를 만들었다.

B. 진행 중인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정

29. 2020년 7월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모들이 대리한 어린이 집단과 비정부 기구인 파라나 생태 포럼(Paraná Ecological Forum)과 환경 정의 시민연합(Civil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AJAM)이 파라나 삼각주 습지의 건전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대신하여 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파라나 삼각주는 살아있고 숨 쉬며 발전하고 맥박이 뛰며 느낀다”라고 표현하면서,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뉴질랜드의 다양한 헌법, 입법, 비교 법적 판례들을 청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했다. 이 청원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병을 넘어서는 것이다. 삼각주는 자체의 생명을

³ Centre for Legal and Social Studie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found Argentina guilty and ruled in favour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Salta”, 7 April 2020.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보호받고 권리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30. 2019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산타페 주의 헌법을 개헌해서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 주의 헌법을 두고 현재 지방 자치 단체 구성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31. 2019년 11월 24일 호주에서는 자연의 권리와 미래 세대 법안 2019(the Rights of Nature and Future Generations Bill 2019)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호주 의회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사전에 제출한 첫 번째 법안이다.
32. 2020년 8월 엘살바도르에서는 비정부기구 ‘생태 반란 운동(Ecología Rebelde Movement)’, ‘자연의 권리 찬성(Sí por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물과 농업을 위한 공동협회(Asociación Comunitaria Unida por el Agua y la Agricultura, ACUA)’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다. 개헌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자연은 생명을 낳고 재생산하고 실현하기 때문에 자연도 권리 주체로 인정된다. 개헌안은 그들의 존재, 생명주기,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의 유지 및 재생을 완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나아가 비정부기구인 ‘자연의 권리 찬성’은 엘살바도르의 주요 강이자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분지를 공유하는 렘파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안서를 마련하는 중이다.
33. 2019년 12월 12일 멕시코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주 헌법과 연방 헌법에 명시하는 발의안이 멕시코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발의안은 2020년 말 연방의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2월 11일, 멕시코 상원에 지구의 권리를 인정하는 발의안이 제출되었다. 두 발의안 모두 2020년 말에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34. 2019년 8월 나이지리아에서는 에티오피아 트러스트 재단(the River Ethiope Trust Foundation)과 나이지리아 하천 보전 재단(the Foundation for Conservation of Nigerian Rivers)이 지구법 센터와 협력하여 나이지리아 강의 권리 및 에티오피아 강의 권리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35. 2019년 10월 필리핀에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건의 자연권 법안이 발의됐다. 그 법안들은 2020년에 이들 의회에서 처리될 것이다.
36. 루마니아에서는, 하원이 돌고래를 “비인간 사람”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루마니아 활동가이자 전 하원 의원인 레무스-플로리넬 세르네아(Remus-Florinel

Cernea)가 발의했다. 법안의 제3조는 돌고래를 인간과 동일하게 형법의 조항 아래에 두고 있다.

37. 2020년 7월 23일, 스페인 무르시아의 로스 알카사레스(Los Alcázares)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염수 석호인 마르 메노르(Mar Menor)와 그 유역에 권리를 부여하고 생태계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입법안을 승인했다. 무르시아 대학교 법철학 교수인 테레사 비센테(Teresa Vicente)는 마르 메노르 시민 협정(a citizen Mar Menor Pact),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가, 학자, 정치인들이 후원하고 있는 이 법안을 입안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르시아 지방 의회는 석호와 그 유역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이 발의안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38.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는 녹색당이 헌법에 자연의 권리,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번성하고 재생하고 진화할 권리와 복원, 회복, 보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연적인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39.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는 비정부기구인 자연의 권리가 프롬(Frome) 시의회와 함께 프롬 강과 로든 메도우(Rodden Meadow) 강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오염에 관한 법이 존재하면 조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중앙 정부가 거부했다. 시의회는 다음 조치를 검토 중이다.

C. 자연의 권리 관련 정책 동향

40. 브라질에서는 2019년 6월 비정부기구 MAPAS가 “브라질 환경 경영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고려한 공공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41. 더욱이 브라질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의 모델로서 농생태학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 정책 수립이 진전을 이루었다. 농생태학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진화 관계를 인식하고 생산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연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42. 2020년 3월 18일 칠레에서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온라인 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제한의회 절차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새행되는 국민투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행사의 목적은 자연의 권리 인정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현재를 반영하는 헌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일련의 다른 회의들이 열릴 것이다. 현재 팬데믹의 제약으로

인해 국민투표 날짜는 202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43. 덴마크에서는 대안당(Alternativet)이 2019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는 정치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44. 2020년 2월 엘살바도르에서는 아우아차판(Ahuachapán) 시의회가 엘 에스피노 석호(Espino Lagoon)를 권리 주체로 만들자는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45. 2019년 10월 19일, 프랑스에서는 루아르(Loire)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첫 번째 의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시작했는데, 그 의회에서는 루아르강의 동식물군과 강의 다양한 유기 및 무기적 요소가 대표로 발탁될 것이다. 이 계획은 뉴질랜드의 황가누이(Whanganui) 강과 콜롬비아의 아트라토(Atrato) 강에 부여된 법인격에서 영감을 얻었다.
46. 2019년 3월 29일 프랑스 툴롱에서는 동물의 법인격에 대한 세 번의 콜로키엄을 마친 후 로스쿨 학생들이 툴롱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은 비인간 동물의 법적 지위와 국제적 차원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을 재확인한 2012년 7월 7일 케임브리지 선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47.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프랑스 위원회를 지원하는 프랑스 변호사 그룹은 IUCN 총회에서 검토할 자연의 권리 동의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현재 일정이 2021년 1월 7일에서 15일로 조정되었다.
48. 2019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독일에서는 독일 개신교 교회와 선교 협회, 독일 복음주의 교회, 복음 선교 연합, 세계를 위한 빵,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를 앞두고)가 주최한 ‘창조를 위한 카이로스: 지구에 대한 희망 고백 – 부퍼탈 요구(Wuppertal Call)’라는 제목의 대회가 부퍼탈에서 개최되었다. 채택된 권고사항과 목표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생태계 파괴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엔 자연의 권리 위원회를 설립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지구 법학 시스템 즉, 구속력 있는 어머니 지구 권리 헌장(Cochabamba 2010)의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한 유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WCC의 11차 총회는 2020년 후반기에 열릴 예정이며, 부퍼탈 요구에서 제출한 권고사항과 목표를 다룰 것이다.
49. 2019년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이 생태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강조하기 위해 정부 부처 명칭을 ‘환경, 육지 및 해양부’에서 ‘이탈리아 생태 전환과 지속가능부(Italian Ministry for Ecological Transition and Sustainability)’로 변경하는 청원을 제안했다.

50. 2019년 7월 1일, 이탈리아 칼라브리아(Calabria) 지방의 아크리(Acri) 시의회는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청원을 승인했는데, 이 톨레도 시민들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오하이오주를 상대로 에리 호수의 권리 인정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승인 목적은 “환경 혁명”을 지원할 필요성을 공인하는 것이었다.
51. 2020년 6월 20일 멕시코에서는 제64대 의회 수자원, 식수 및 위생 위원회가 물에 관한 새로운 일반법 제정 초안 작성에 동의했는데, 이 법은 그 외 다른 많은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강과 수자원의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52. 2020년 5월 7일 스페인 발렌시아 시정부는 식물 협약(Acord del Botanic)에서 제안했듯이, 발렌시아의 자치조례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53. 2020년 5월 30일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노동운동은 생태계 파괴를 범죄로 규정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웨덴 노조 연맹 위원장 칼 페터 토르발트손(Karl-Petter Thorwaldsson)과 올로프 팔메 국제센터(Olof Palme International Centre) 사무총장 안나 선드스트롬(Anna Sundström)이 생태계 파괴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스웨덴 지구권 변호사협회와 스웨덴 자연의 권리라는 단체가 베테른 호수(Lake Vättern)의 권리에 대한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 선언문 초안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베테른 호수 내 모든 자연적인 물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54. 2020년 7월 스위스에서는 ID-EAU 협회에 의해서 새로운 초국가적 시민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은 스위스에 있는 론강의 발원지에서부터 프랑스의 델타에까지 이르는 론강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초국가적 운동은 ‘론강의 호소(Appel du Rhône)’라는 기치 아래 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서식지의 보호보다는 보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행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55. 2020년 6월 4일 미국에서는 환경 및 기후 위기에 관한 민주당 전국 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risis)가 자연의 권리 원칙을 미국 연방법에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과 자연에 관한 2020 민주당 강령을 위한 환경 및 기후 정책 권장 사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56. 2020년 1월 3일 플로리다주에서는, 많은 카운티에서 강이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번성하고, 재생하고, 진화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와 복원될 권리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즉,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는 웨키바(Wekiva)강과 에콘로크해치(Econlockhatchee) 강에 대한 권리 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알라추아(Alachua) 카운티의 청원자들은

산타페강(Santa Fe River) 권리장전이 통과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으며, 리 카운티 시민들은 칼루사해치(Caloosahatchee) 권리장전의 채택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57. 202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유서 깊은 최고의 미주리 역사박물관에서 세계 담수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는 글로벌 존재 재단(the Global Being Foundation)과 지구법 센터(ELC)가 주관하며 온라인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대미시시피강과 미주리(역자주: 미시시피 강은 미주리 강으로 합류되는 상류 미시시피, 미주리에서 오히려 강까지 흐르는 중류 미시시피, 오히려에서 멕시코만까지 이르는 하류 미시시피,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세 부분을 합친 미시시피 강을 대미시시피 강이라고 함)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한 풀뿌리 민중 운동이 있었다. 주최 측은 시민 공간을 활성화하고 담수 생물 군계의 재생력과 강의 흐름 권리를 조명하기 위해 다양한 강 관련 단체, 강과 연결된 원주민, 젊은이, 농부, 예술가, 미시시피강 강변 124개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
58. 2020년, 비정부기구인 지구법 센터는 미시시피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결의안은 202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담수 정상회의에서 시민들이 최종 결의안을 제시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공동체들에서 논의되고 있다.
59. 지구법 센터는 곤충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도 작성했다. 이 안은 자연의 권리를 생태계와 그 생태계 내의 꽃과 동물, 그리고 곤충에게 확장하고, 동물군의 일부인 곤충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60. 게다가, 지구법 센터는 생태 중심법 개념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내놴다. 이 수단들은 전 세계 연안의 해안 정착지에 있는 지역공동체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의 예를 지구법 및 관련 개념을 토대로 제공한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에 의해서 통과되기 위한 조례안 견본(sample ordinance)이 포함되어 있다.
61. 2019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교황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집한 범아마존 지역 주교회의의 특별 총회의 최종 문서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62. 2020년 4월, 비정부기구인 ‘스웨덴 자연의 권리’ 단체와 ‘어머니 지구 권리’는 2020년 이후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프레임 워크(the post-2020 Global Framework of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초안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구들은 자연의 권리가 인간과 자연 관계의 필수적인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63. 또한 해양권(Ocean Rights)에 대한 요구, 즉 인간이 해양을 소비 자원이 아닌 지구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8월 ‘하나의 해양’ 심포지엄은 자연의 권리가 국가 관할권을 넘어서 해양 생물다양성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다른 진전으로는 2019년 6월 유엔 해양 회의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태평양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개인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법적 보호권을 태평양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64. 지난 5년간, ‘자연의 권리에 관한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으로의 자연 통합(the Partnership on the Rights of Nature: Integrating Nature in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은 전 세계 유엔 관련 단체들의 기여에 힘입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그 하위 목표에 자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왔다. ‘비정부기구 주요 그룹의 커먼스 클러스터(The Commons cluster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ajor group, 역자주: 유엔 산하기관)’가 선도 기관으로 활동했으며, 그 결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면서 자연을 통합하기”라는 제목으로 모두 세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65. 각 보고서는 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서로 다른 일련의 목표들(SDGs)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보고서들은 여기에서 논의된 모든 영역에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각 보고서에는 환경, 교육과 연구, 사회와 기반 시설, 문화, 경제와 금융, 개발, 기술, 정책과 법과 농업 분야의 실행 수단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주요 논점에 대한 개관으로서 개요서도 포함되어 있다.
66. 환경과 자연권 단체 연합은 세계 강 권리 선언의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⁴ 그 선언은 국제법 판례와 하천 건강의 생태학적 원리에 따라 모든 하천의 기본권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과학자, 원주민 지도자, 변호사 등 2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기여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정부 관리들이 이 선언문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자국 내 강의 권리를 확립하고, 유엔이 강의 권리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III. 지구 법학에 관한 교육

A. 지구 법학에 관한 공식 교육

⁴ <http://files.harmonywithnatureun.org/uploads/upload987.pdf>

67. 2020년 현재 아르헨티나 리토랄(Littoral) 국립대학교 법과 사회과학부는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자연권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강좌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연권의 인정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한다.
68. 2020년 1월, 호주 서던크로스대학교 법학부는 생태 법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했다. 이 강좌는 학생들에게 많은 이론적 관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론 결과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에 제출되었다.
69. 2020년 초 브라질에 있는 캄피나스(Faculdades de Campinas, FACAMP) 대학은 유엔 의제 안에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비교 연구를 마쳤다. 20명의 참가자는 생태경제학을 고려하여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분석했으며, 이 토론에 원주민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교육과 입법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70. 2019년 5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opolis)에 있는 제4지역 연방재판소(the Regional Federal Tribunal of the 4th region, TRF4)는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 결정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연대 원칙에 초점을 맞춘 환경법 강좌를 추가했다.
71. 코스타리카에서 가이아 재단은 "내가 답이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코스타리카 공립 학교에 파리 협약,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어머니 지구의 의식적 진화를 위한 원리 선언(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the Conscious Evolution of Mother Earth), 어머니 지구 평화와 복지 협정(the Mother Earth Peace and Wellness Agreement) 같은 주제들을 표준화하려고 한다.
72.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대학교가 2019~2020학년도 동안 다양한 강사를 초빙해서 자연의 권리와 성장하는 법적 운동을 다루었다.
73. 에콰도르에서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대학인 과야킬 대학교가 2019-2020학년도에 환경권과 자연의 권리에 관한 과정을 모든 학생을 위한 대학 필수 교과 과정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74. 2019년 10월 5일 엘살바도르의 아우아차판(Ahuachapán)에서는 비정부기구 ‘자연의 권리 찬성’이 “엘 에스피노 석호(El Espino Lagoon), 제안 선언의 권리 분석 주체”라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75. 2019년,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 대학교가 “기후 변화, 환경 및 자원”에 관한 과정을

개발했다. 교과목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 자연의 권리 및 지구 법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76. 2019년, 아오스타 밸리(Valle D'Aosta)에 있는 그레소니 라 트리니테(Gressoney La-Trinité) 초등학교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생명애 교실(Biophilia Classroom)이 시작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회복 교실”이 제공되었는데, 이 교실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학습 과정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7. 2019~2020학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생명 중심 보육학교가 교과과정에 영속농업(permaculture)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14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교는 지구에 대한 호기심, 인식 및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생물 중심 교육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는 학생들이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78. 2019년 멕시코에서는 게레로(Guerrero) 대학교 법학부가 제4회 자연의 권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학 석사 프로그램은 자연의 권리에 관한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는데, 이 주제에 관한 협동연구의 일부는 출판되었다. COVID-19 동안, 이 프로그램은 다른 자연의 권리 단체들과 함께 웨비나를 실시했다.
79.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 대학교가 '자연의 사권'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원주민의 원리에 영감을 받은 이론들을 통해서 사유 재산과 자연의 권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물’과 ‘사람’ 사이의 전통적인 시각의 이분적 사법(binary private law)을 개선할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80. 2020년 2월 3일, 네덜란드 틸뷔르흐(Tilburg) 대학교의 공법 및 거버넌스 학부는 "인류세 시대 강의 권리, 자연과의 조화"라는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강과 관련하여 자연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개념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틸뷔르흐 대학교는 또한 자연의 권리를 다루는 "인류세의 헌법화"라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81. 2019년 7월, 나이지리아에서는 아부자 대학교와 지구 법 센터가 나이지리아와 가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자연에 대한 교육, 훈련, 옹호와 홍보를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2020년 1월 에티오피아 강 트러스트 재단(River Ethiopia Trust Foundation)은 나이지리아의 지구법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RETFON 자연과의 조화 아카데미(RHNA, Harmony with Nature Academy)를 설립하자는 제안서 초안을 작성했

다.

82. 2020년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진이 “강의 권리-강의 권리에 관한 법률 혁신의 흐름과 결과 탐구”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강에 법인격을 부여한 뉴질랜드, 콜롬비아, 인도의 법적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83. 2019년 스페인에서는 로비라 이 버질리(Rovira i Virgili) 대학교가 자연의 권리에 대한 여러 세미나를 포함하는 환경법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로비라 이 버질리 대학교와 타라고나에 있는 타라고나 환경법 연구 센터(CEDAT)는 자연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환경 정의에 관한 과정을 조직했다. 게다가 2019년 발렌시아 대학교는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라틴아메리카의 입헌주의라는 주제를 헌법 석사학위 과정에 추가했다.
84.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마드리드 카를로스 III 대학교(스페인)의 리셀로테 비아에네(Lieselotte Viaene) 교수는 문화/자연의 현대적 구분을 넘어 물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척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이다. “강 – 인간을 뛰어넘는 물의 권리/인간의 권리? 원주민의 물 존재론, 다수의 법적 만남 및 상호 법적 해석(RIVERS - Water/human rights beyond the human? Indigenous water ontologies, plurilegal encounters and interlegal translation)”이라는 프로젝트는 유럽 연구 위원회(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가 지원할 것이다. 프로젝트 “강(RIVERS)”은 과테말라, 네팔, 콜롬비아의 상황과 유엔 인권 체제에 초점을 맞춰 자연 자원으로서의 물과 인권을 넘어서 원주민의 비전/관행을 탐구한다.
85. 이러한 ERC 연구 프로젝트 “강”은 2019년 11월 8일에 “자연의 권리: 법적 혁명인가 존재론적인 갈등인가”라는 국제 세미나에서 시작되었으며, 거기에 원주민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 빅토리아 탈리 -코푸스(Victoria Tauli-Corpus), 유엔 원주민 문제에 관한 상설 포럼 의장 앤 누암(Anne Nuorgam), 콜롬비아 평화 특별재판소 원주민 판사 벨키스 이스키에르도(Belkis Izquierdo), OHCHR-콜롬비아 부대표 기예르모 페르난데스-말도나도(Guillermo Fernández-Maldonado),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 인류학과 학과장 담마르 켐종(Dambar Chemjong)이 참석했다.

B. 지구 법학에 관한 비공식 교육과 대중참여

86. 아르헨티나에서는 ‘동물권 감시기구(the Animal Rights Observatory)’가 온라인 국제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는 6월 말에 시작되어 9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져 비인간 동물권 인정 투쟁에 헌신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각국에서 온 60여 명의 강연자가 공동 협력 공간에서 종 차별 반대와 차별 철폐 지침에 따라 동물을 주제로 강의할 것이다. 이 국제회의의 주요 목적은 동물의 방어 및 법적 보호 수단을 법률 전문가와 사회에 제공하여, 올해 5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조직·전송된 제1회 국제 동물법 화상회의가 수행한 작업의 연장선에서 동물 대의가 국경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화상회의는 이러한 종류의 활동들의 실현을 촉진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나머지 다른 세계에서 되풀이되었다.

87. 베냉에서는 비정부기구인 GRAVE-베냉이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할 필요성과 지구 법학의 이해를 높여려는 언론과 공공 지원 활동과 더불어, 린자-당보(Lindja-Dangbo), 래체(Latchè), 코그보메이(Kogbomey), 와몬(Wamon)이라는 공동체들과 함께, 전통 종자 다양성의 부활과 숲의 보호를 위한 원주민 지식과 관행을 복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88. 2019년 7월 베냉, 카메룬, 케냐,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 시민 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 아프리카 지구 법학 배심원단이 되기 위한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가이아 재단이 이끄는 3년 훈련 과정은 지구 중심 정책과 실천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자연에 대한 존중으로 뒷받침되는 관습법에 대해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하며, 지구 법학을 지지하는 아프리카 신세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9. 2019년,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대학교는 인류세의 생태법에 관한 제1회 국제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스페인 출신 연구자들과 교수들이 모인 그 콜로키엄의 목적은 자연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접근과 관점을 통해 시급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90. 2020년 7월 22일, 제24차 브라질 대중지지(Public Advocacy) 회의에서 브라질 대중지지 연구소는 여타 주제 중에서 자연의 권리를 다루는 생태학 비평과 환경에 대한 강사를 초청했다.
91.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브라질 마리아(Marília) 대학교에서 제13차 “과학 입문” 심포지엄과 제9차 대학원 모임(Postgraduate Meeting)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연구와 지속 가능성, 함께 지구의 미래를 위해”이었고, 행사의 일환으로 교내에 토종나무 70그루를 심었다.
92. 2019년 12월, 브라질 비정부기구인 MAPAS는 비정부기구인 국제과학목표(Objectif Sciences International)가 추진한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연의 권리” 회의에서

교육 프로그램인 ‘자연의 대사(Nature’s Ambassadors)’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생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93. 2019년 12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 있는 산타카타리나 연방대학교에서는 “새로운 라틴아메리카의 입헌주의: 탈식민주의 경제의 생활, 창조, 생산”이라는 주제 아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제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참가자들은 생태경제학, 지구 법학, 지구 윤리 등 자연과의 조화에 부리를 두고 있는 피해와 희망 체제에 관해 분석했다.
94. 2020년 4월, 브라질 상파울루의 마리아 대학교에서 발행한 논증 법학 학술지는 모든 출판물에 수록될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새로운 상설 섹션을 소개했다. 이 섹션의 목적은 지구법학과 관련된 현재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조사 및 문서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95. 2020년 5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 마리아 대학교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회원인 호주 서던 크로스 대학의 알레산드로 펠리존(Alessandro Pelizzon) 교수를 초청하여 “자연적이지도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 생태 법학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권리에 관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은 마리아 대학교가 두 달에 한 번 주최한 지구 법학에 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의 일부였으며,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시의 전 시장과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회원인 마르샤 무트리(Marsha Moutrie)와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의 루벤 마르티네스 달마우(Rubén Martínez Dalmau) 교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무트리는 “미국 자연권 운동의 역사”에 대해 발표했고, 달마우 교수는 “위기의 시기에 자연의 권리에 대한 보호”에 관해 강의했다.
96. 202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브라질 세아라(Ceará) 시에 있는 파리아스 브리토(Farias Brito) 교육 센터는 자연(Nature)을 포르투갈어 N자로 쓰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자연계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하고 자연의 대상화를 거부한다.
97. 이날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들인 브라질 학자 그룹은 자연의 대상화를 영속시키며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가치와 원리의 소멸을 요구하는 하모니 선언문(Harmony Manifesto)을 발표했다. 하모니 선언문은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1. 철자 “N”으로 쓰는 주체로서의 자연(Nature) 2. 사보다는 공의 우위(Primacy of the common over the private) 3. 민주적이고 상호문화적인 세계 입헌주의(global Constitutionalism)를 제도화하는 지구적 대중적 시민권 4. 자연과 우주의 모든 존재 사이의 조화, 5. 어머니 지구의 권리 선언 채택.
98. 2020년 11월에는 바네사 하슨 드 올리베이라(Vanessa Hasson de Oliveira) MAPAS 회장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프란치스

코 교황과의 만남에 참석할 예정이다.

99. 비정부기구인 MAPAS는 브라질 페르남부쿠 가톨릭대학교의 학술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교육, 경제, 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공공 정책을 도입하여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사는 것을 촉진하려는 지방 자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100. 2019년 브라질 출신 교수이며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소속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데라니(Cristiane Derani)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기준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법, 인간, 환경”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2020년 데라니 교수는 “경제 환경법의 주제들, 6대 멸종 그리고 생태경제를 위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책을 출판했다.
101. 2020년 8월 1일, “파차마마 숭배.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와 길: 하모니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화상 포럼이 개최될 것이다. 이 온라인 행사는 자연과의 조화와 어머니 지구(Pachamama)의 권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식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션들은 하모니 선언문 발표를 비롯하여 자연의 권리, 커먼스(the commons), 지구 시민권,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이번 포럼에는 브라질 연방 사법위원회, 세아라(Ceará) 연방 대학교, 고이아스(Goiás) 연방 대학교, 산타카타리나 연방 대학교, 상파울루대학교(브라질), MAPAS(브라질), 멕시코와 칠레 어머니 지구의 권리, 마디나투 마나와라(Madinatu Manawara) 공동체(세네갈), 아프리카 카 워도(아프리카), 어머니 지구의 권리(스위스),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국제 연맹, 양심적인 세계 협정(Conscious World Pact, 국제), 유엔 정신(United Nations of the Spirit), 라틴아메리카 지속 가능 정착 위원회(Council for Sustainable Settlements in Latin America, CASA), Xicome, 제5 태양의 민족(Nation of the Fifth Sun), 파사마마 뉴스(Paxamama News), 물 지킴이 네트워크(Water Guards Network), 여성 생명 지킴이 서클(Circle of Women Guards of Life)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학계, 법조인 출신 참가자들이 모인다.
102. 2019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교와 미국 버몬트 대학교가 이끄는 생태대를 위한 리더십(the Leadership for the Ecozoic, 이하 L4E)은 “인류세에서 생태대까지(From the Anthroocene to the Ecozoic, 이하 A2E)”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불균등한 지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GND) 시리즈를 위해서 그린 뉴딜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다. 2020년에 L4E는 새로운 월간 웨비나 시리즈인 『인류세부터 생태대까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 L4E 법과 거버넌스 연구 그룹은 또한 생태법과 거버넌스 협회의 웨비나 시리즈를 공동 후원한다.

103. 2019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교와 미국 버몬트 대학교(UVM)가 이끄는 L4E 파트너십은 “인류세부터 생태대까지(A2E)”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인류세 프로젝트를 위한 경제학을 축하하는 것이자, L4E 파트너십에 새로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불균등한 지구의 GND 시리즈를 위해서 그린 뉴딜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했다. 2019년 봄, 버몬트 법리뷰지는 L4E 법과 거버넌스(L&G) 연구 그룹 구성원들의 생태법 관련 논문들로 특집호를 발간했다. L&G는 생태법과 거버넌스 학회(ELGA) 웨비나 시리즈를 계속 공동 후원하고 있으며, 2020년 생태법 사례 연구에 대한 첫 웨비나를 개최했다. 2020년에 L4E는 새로운 월간 웨비나 시리즈인 『인류세부터 생태대까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L4E 정책연구실(Policy Lab)이 UVM에서 문을 열었다. L4E는 학생화원들이 주도하는 많은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벌링턴(Burlington)에서 개최된 탈성장 페스트 2020, 2020년 6월 CANSEE의 온라인 학생 심포지엄, 생태경제학/생태대 위키의 개발, ‘포스트 인간의 합법성, 그 외에 신유물론과 인간을 초월한 법’ 같은 주제로 인권과 환경 저널 특집호 공동 편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L4E 회원들은 광범위하게 출판활동을 벌이고 있다.
104. 2019년 8월 콜롬비아에서는 제3차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국제포럼에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국제포럼 협의회”가 창립되었다. 포럼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미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05. 2019년 11월, 코스타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 가이아 재단이 복지(Wellness)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는 ‘어머니 지구 복지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관광객들은 전통적인 온천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복지 서비스와 기후변화 및 자연과의 조화를 연결하려고 한다. 2020년 4월, 가이아 재단은 “어머니 지구 평화의 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스타리카 부룬가 지역에 있는 테라바 원주민 공동체에 위치한 ‘테라바 평화의 길’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후 변화와 복지 교육을 위한 모범농장 조성을 통해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공식 교육을 촉진하는 것이다.
106. 2020년, 코스타리카 대학교는 가이아 재단의 지도아래 미로 지구 법학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이 대학교는 어머니 지구의 평화, 복지 협약, 어머니 지구의 의식적 진화를 위한 원칙 선언의 가치를 상징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07.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산토 도밍고 자치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움부즈맨 윌리엄 비바스(William Vivas) 박사가 자연의 권리에 대해 연설했다. 인권에 관한 두 번째 포럼은 2020년 가을에 열릴 계획이며, 이 포럼에는 자연의 권리에 관한 대화가 포함될 것이다.

108. 프랑스에서는 비정부기구인 ‘우리의 사업을 모두에게(Notre Affaire à Tous)’와 ‘야생법(WildLegal)’이 중학교에서 대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지구 법학에 관한 법적 전문지식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현재 환경법의 한계와 자연의 권리의 인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
109. 세계자연의권리동맹(the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을 위한 새로운 유럽 허브가 프랑스의 비정부기구인 ‘우리의 사업을 모두에게’와 ‘야생법,’ ‘자연권 프랑스(Nature Rights France),’ ‘프랑스 자유-다니엘 미테랑 재단(France Libertés-Foundation Danièle Mitterrand)’에 의해 형성되었다. 2021년 1월 다음 IUCN 총회에서 이 허브는 약 30개의 조직을 통합하여, 유럽 자연의 권리 재판소(European Rights of Nature Tribunal) 행사로서 ‘수생 생태계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모의재판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5월 7일에 세계자연의권리동맹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덴마크의 학생 단체 카서스 클리마(Casus Clima), 녹색 학생 운동(Den Grønne Studenterbevægelse), SIMA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권리 워크숍을 열었다.
110. 2019년 이탈리아에서는 에라무스플러스프로젝트(Eramus+ Project, 역자주: EU의 교육 장학금의 일종) 산하 페르마플러스프로젝트(Perma+ Project)가 비정부기구인 ‘유럽 안전식품 옹호(Safe Food Advocacy Europe, SAFE)’와 협력하여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영속농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될 이탈리아 학부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영속농업 아카데미(Academia Italiana di Permacultura)를 비롯하여 대학과 농업, 원예, 생명공학, 경제학, 철학에 이르는 여러 학과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111. 2019년에는 야외 교육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자연학교(Scuole Naturali)가 시작되었다. 등록된 사용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교육 경험에 관한 읽기 자료 및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
112. 2019년 이탈리아 메라테(Merate) 시는 협동조합인 시네레스시(Sineresi)와 보육원 메라 케 지로토노의 집(Nido Girotondo di Merate)에서 교육자들이 아동의 자연 결핍 장애를 더 잘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어린이에게 야외 활동을 장려하고 자연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3. 2019년 2월 이탈리아 지방 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에서 방영되는 지역 TV 채널 텔레로마냐(Teleromagna)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 중에, 볼로냐 대학 교수이자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인 실비아 바그니(Silvia Bagni)가 자연의 권리에 관해 인터뷰했다.
114. 2019년 10월 23일, 시에나 대학교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자연과의 조화: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하모니워드네이처 프로그램의 발전에 관해서 대학생, 연구원, 교수들이 토론을 벌였다.
115. 2019년 말에 이탈리아 몬테 디 브리안자(Monte di Brianza)에서 숲자유대학(Free University of the Forest)이 시작되었다. 이 대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연에서의 경험을 ‘첫 번째 스승’으로 삼고 인간과 환경 간에 더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16. 2019년 말 이탈리아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교육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SOSTenibilmente)’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서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 환경운동가, 공무원, 언론인에게 강좌를 제공한다.
117. 이탈리아 출신 연구자 루카 코시메(Luca Coscieme)가 조직해서 2020년에 완성된 한 연구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60개 이상의 언어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자연의 다양한 개념화는 지구 환경 거버넌스의 포괄성과 합법성에 대한 열쇠다”인데, 이 연구는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다양한 관계가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118. 2019년, 카메리노(Camerino) 대학교에서 “이탈리아의 생태학적 가치의 보호”가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동물, 식물 및 서식지의 법적 인격체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계, 유럽 및 이탈리아 수준에서 해당 분야의 최근 진행 상황을 다루고 있다.
119. 2020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하는 아마존(Querida Amazonia)”이라는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황은 사람을 돌보는 것과 생태계를 돌보는 것 사이의 깊은 상호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 권고문은 어머니 지구에 대한 학대와 몰살의 종단을 요구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초대를 확장해서, 우리 자신이 자연 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120. 2020년 6월 5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의미의 대학(University of Meaning)의 개막 연설을 했는데, 이 대학은 스콜라스 오쿠렌테스(Scholae Occurrentes, 역자주: 세계적인 교육 네트워크)가 교육과 생태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최한 것이었다. 전 세계 170개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이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온 9명의 영부인이 참석하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구절을 낭독했다.
121. 2019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서는 비정부기구 ‘지구와 사람(People for Earth)’이 “2019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PLZ Forum for Ecozoic Era 2019)”이라는 제목으로 제2차 생태문화(Ecozoic Culture)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주제는 “자연권과 생태 변화”였고, 기후 위기에 대한 도전과 대응, 전환기 이후의 거버넌스 체제와 대안적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은 기존의 법체계가 다루지 않은 것이었다. PLZ 포럼 말미에 발표자들은 자연의 권리와 생태 변화를 위한 청소년 선언문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 인식과 행동을 촉구하는 변호사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 변호사 선언문은 이 행사에 참가한 한국 및 국제 변호사들이 채택했다.
122. 2019년 네덜란드에서는 “와든 해(Wadden Sea)의 네덜란드 해역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표되었다.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법인격이 “자연의 권리(Natureship, Natureschap)” 형태로 와든 해에 부여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와든 해 자연의 권리가 생태계를 모든 생명에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서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23. 2019년 11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인 펴케 위즈데콥(Femke Wijdeckop)은 “지구를 위한 목소리”라는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구법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다른 10명의 '녹색 개척자'를 인터뷰하고 있다.
124. 2019년-2020년에 네덜란드 비정부기구인 ‘북해 대사관(Embassy of the North Sea)’은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정책 입안자가 모여서 홀로세(Holocene)에 대한 환경 영향을 논의하는 수많은 행사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또한 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학생 디자인 대회도 개최하고 “북해의 목소리” 팟캐스트도 시작했다.
125. 2020년 5월 27일, 헤이그에서 열린 해양 레이스 정상회담이 주최한 온라인 스트리밍 세션은 자연의 권리가 어떻게 우리의 푸른 행성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가속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126. 2020년 1월, 나이지리아에서는 에티오페 강 신탁 재단과 나이지리아 강 보전 재단(the River Ethiope Trust Foundation and Foundation for Conservation of Nigerian Rivers)이 지구법 센터와 협력하여 에티오피아 강에 관한 제2차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 전원이 서명한 ‘에티오페 강 권리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Ethiope River)’으로 이어졌다.
127. 2020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페루에서는 좋은 삶과 수막 까우사이(Sumak Kawsay) 2020을 위한 이니셔티브 제7회 국제대회(the Seventh International Meeting of Initiatives for Good Living and Sumak Kawsay 2020)가 온라인으로 개최될 것이다. 이 대회 동안에 여러 대화 테이블이 구성되고, 그중 한 테이블에서는 페루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다룰 예정이다.
128. 2020년 필리핀에서는 미세레오르 파트너십 주식회사(Misereor Partnership INC, PMPI)가 “정의롭고 친환경적인 회복을 상상하기: 온라인 대화”라는 제목의 일련의 웨비나를 시작했다. 강연에는 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공동체 기반 접근에 관한 인디라 라스나위드만(Indira Lacerna-Widman, 카탈라재단 이사)의 강연, 세계 자연의 권리 운동에 관한 마리 마길(Mari Margil, 미국 민주환경권리센터 이사)의 강연, 생태 정의에 관한 다니엘 프랭클린 필라리(Daniel Franklin Pilari, 성 빈센트 신학교)의 강연, 국가의 법적 틀에 자연의 권리를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리사 훈티베로스(Risa Hontiveros, 필리핀 자연의 권리 법안 작성자) 상원의원의 강연이 포함된다.
129. 비정부기구인 ‘대안 학습과 변화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ternative Learning and Transformation, SALT)’는 케냐 동부 타라카(Tharaka) 지역의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지구 중심 관습법과 원주민 관행을 활성화하고 기후 변화 시대에 회복력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9년에는 타라카족의 관습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일부인 신성한 자연 유적지에서의 전통 의식이 재도입되어, 그들의 영토에서 자연의 순환에 질서와 균형을 회복했다.
130. 2019년 9월 24일, SALT의 시몬 미탐보(Simon Mitambo)는 두 명의 다른 아프리카 지구 법학자와 유엔의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 우간다의 데니스 타바로(Dennis Tabaro)와 짐바브웨의 메소트 군디자(Method Gundidza)와 함께 세계자연의권리동맹(the Global Allinace for the Rights of Nature, GARN)이 개최한 ‘물은 생명이다’라는 주제에 관한 웨비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구 공동체가 끊임없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본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성한 생명의 원천인 물과 원주민과 전통적인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다.

131. 2019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아프리카 사법연구소가 5일간의 판사 양성 과정을 열었다. 아프리카 9개국의 판사들이 지구법학과 생태 중심적 사법적 의사 결정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다.

132. 게다가, 비정부기구인 씨체인지(SeaChange)는 2020년 9월 개봉을 위해 “나의 문어 선생님(My Octopus Teacher)”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는 위대한 아프리카 바다 숲에 초점을 맞춰서 과학자, 정책 입안자, 개인이 바다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133. 2019년 5월 14일, 스페인에서는 세비아 대학교와 안달루시아 법, 환경, 지속가능발전 학회(Association of Law,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인권과 어머니 지구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자연과의 조화 원리와 파차마마 권리의 현황, 토대 및 효과”라는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134. 2019년 6월 스페인 타라고나 주 로비라 이 버질리(Rovira i Virgili) 대학교에서 제4차 타라고나 국제 환경법 콜로키엄(TIEC)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정의와 환경소송 및 자연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소송에 관한 토론이 포함되었다.

135. 2019년 11월 5일,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교는 “민주적 입헌주의에서 권리 주체로서의 자연과 자연의 권리: 이론, 정책 및 실천”과 “자연의 권리 도서 기금”이라는 두 권의 책을 위한 특별 행사를 열었다. 교육 센터 파리아스 브리토(Farias Brito)는 “민주적 입헌주의에서 권리 주체로서의 자연과 자연의 권리: 이론, 정책 및 실천”이라는 책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했다. 이 책은 안데스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에과도르, 키토), 리브레 대학교(콜롬비아, 보고타), 발렌시아 대학교(에스파냐, 발렌시아) 간에 이루어진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였다. 고이아스 대학교는 페르난도 안토니오 데 카르발류 단타스(Fernando Antonio de Carvalho Dantas) 교수와 게르마나 올리베이라 데 모라레스(Germana Oliveira de Moraes) 교수의 지도아래, 연방-브라질 사법위원회(the Federal-Brazilian Justice Council)의 틀 안에서 이책이 브라질 사법제도에서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포르투갈어판을 출간할 예정이다.

136. 2020년 초 스페인 로비라 이 버질리 대학교와 일본 히로시마 대학이 자연의 권리에 관한 세미나를 계획했다. COVID-19로 인해서 그 세미나는 2020년 후반으로 연기되었다.

137. 2019년 11월,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교회총회(the General Synod of the Church of Sweden)가 자연의 권리를 전 교단 조직의 교육에 포함하는 동의안을 승인했다. 스웨덴 교회(Church of Sweden)는 스웨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138. 스웨덴의 자연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비정부기구 ‘생태 교육학(Ecopedagogy)’은 사람들이 권리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의 공동창조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했다. 이 기구는 스웨덴에 있는 나머지 다른 지구 권리 운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39.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NGO인 ‘국제 과학 목표(Objectif Sciences International)’가 제8차 자연의 권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100명이 넘는 연사와 법학자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의 참석자들이 함께 모였다. 다음 회의는 2020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릴 것이다.

140. ‘국제 과학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훈련하고 지도하기 위해 우수 모임(meetings of excellence)이라고 불리는 다중 과학 여름 캠프를 조직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인에게 어머니 지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141.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어머니 지구의 권리’는 유엔이 어머니 지구의 권리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의 공식 초안 작성에 참여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현재 301,69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142. 2020년 3월 가이아재단, 아프리카 생태 문화연구소(African Institute for Culture and Ecology, AFRICE), 천연자원 및 개발 옹호자(Advocates for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ANARDE), 전국 전문환경운동가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vironmentalists, ANARDE)는 “생명 지킴이-우간다 대호수의 문화와 자연을 되살리기”라는 제목의 새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는 바군구(Bagungu) 원주민이 어떻게 지구 중심 문화와 기후에 민감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을 되살리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143. 2020년 3월, 우간다 캄팔라에서는 지구 법학에 관한 국가 차원의 콜로키움이 계획되었다. 아프리카 생태 문화연구소, 천연자원 및 개발 옹호자와 가이아 재단이 주최한 이 프로그램은 COVID-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144.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생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글로벌 생태 네트워크(the Global Ecocentric Network for Implementing Eco Democracy, GENIE)’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공공 지원을 계속 늘려왔으며, 비인간 자연을 표현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지지 사업을 지원하는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145. 영국에서 동료 심사 간행물로 등록된 『생태 시민』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 지상주의에 맞서기’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2020년 동안 온라인 정기 간행물은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제공했다.
146. 2020년에는 팔그레이브 맥밀런 출판사(Palgrave Macmillan Publishing Company)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 창출 글로벌 시민 교육: 전략과 접근”이라는 교재를 출판할 것이다. 이 책은 지구 중심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 평화, 비폭력, 인권 같은 주제에 관여하는 한편, 자연의 권리와 지구 법학에 관한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들의 연구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147. 미국 뉴욕에서는 유니언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후원하에 지구 윤리센터(the Center for Earth Ethics, CEE)가 2020년 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의 집중 워크숍 수업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종교사, 경제분석, 원주민 지식, 지구 법학 사례 연구 같은 주제가 포함되었다. 또한, CEE는 법과 신학 분야를 연결하고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별 연구에 관해서 유니언 학생들과 협력하고 있다.
148. 지구법 센터(The Earth Law Center, ELC)는 하웰 보전기금(Howell Conservation fund)과 협력하여 미국 산호초 대책팀에 ‘암초의 권리’에 대한 웨비나를 했다. 이 웨비나는 산호초 보전 방법에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포함하도록 산호초 보전 방법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한편 산호초 도구들(a Coral Reef toolkit)은 산호초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산호초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149. 게다가, 지구법 센터는 자연의 권리를 시행하기 위한 최초의 청사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다 보조금법 및 정책 저널(Sea Grant Law and Policy Journal)에 발표된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에 대한 자연의 권리 구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특집으로 실렸다. 또한 지구법 센터는 자연의 권리를 포함한 생태 중심법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지구 법학회(Earth Jurisprudence Society)를 출범시켰다. 이 학회의 목표는 수만 명의 변호사, 판사, 정치인, 그리고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지구를 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150. 지구법 센터는 2020년에 곧 출간될 교재 “지구법: 떠오르는 생태 중심법, 실무가 안내서”의 원고를 완성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지구 중심(또는 생태 중심)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지구 변호사들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 세계 최초의 로스쿨

교재이다.

151. 지구법 센터는 자연의 권리와 해양의 권리에 관한 두 권의 전자책도 출판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 가지 해결책』은 지구법 개념에 관한 간결한 분석을 제공하는 한편, 『해양의 권리: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한 로드맵』은 해양 보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개괄해주고 있다.
152. 2019년 9월, 짐바브웨 비키타(Bikita)의 여성 종자 관리인들이 굿 푸드 페스티벌(Good Food Festival)에서 전통 지식, 유기농 및 전통 음식,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3일간 모였다. 관리인들은 지구 구전설화재단(Earth Lore Foundation)과 협력하여 그들의 식량 주권을 확립하고, 다양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극한 기후에 대한 회복력이 있는 토종 종자의 ‘잃어버린’ 품종들을 되살리며, 자연의 권리를 내재적으로 인정하는 관습법을 시행하고 있다.
153. 2020년 5월, ‘지구 옹호 청소년(Earth Advocacy Youth, YEA)’이 출범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대담한 생태 중심 해결책과 관행들을 식별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YEA의 임무는 정부, 조직, 교육 시스템과의 정책 작업을 통해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154. 2020년 6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지구 현장 세계 축제에는 음악가, 예술가, 정치인, 과학자, 활동가, 청소년, 원주민, 세계 신앙 대표 71명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 지구 현장 20주년을 기념한 이번 행사는 에스켈재단(Esquel Foundation), 테라솔 대안협회(Association Alternativa Terrazul), 지구 현장 브라질 네트워크(the Earth Charter Brazilian Network), 30개 단체의 협력으로 조직되었으며, 브라질 여배우 마리아 파울라 피달고(Maria Paula Fidalgo)가 참석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있었다.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방송된 전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의 음악적 개입과 성찰은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8만 명 이상의 생방송 시청자를 기록했다. 그것은 지구 현장의 핵심 신조인 “새로운 생명 존중에 대한 각성, 지속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결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가속화, 즐거운 삶의 축제로 기억되는 시간이 되자”라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상기시켜주었다.
155. 2019년 생태법 및 거버넌스협회(the Ecological Law and Governance Association, ELGA)는 IUCN 세계환경법위원회, 환경윤리 및 법센터, 지구법 센터, 호주지구법동맹(the Australian Earth Law Alliance), L4E와 협력하여 생태법 및 거버넌스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가 진행하는 월간 웨비나를 개최했다. 생태법 및 거버넌스협회는 또 라이브 및 화상 접속을 통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글로벌

생태 보전 그룹 연례모임에서 “생태법과 거버넌스를 상상하기”라는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생태법과 거버넌스의 우수 사례를 탐구하기 위해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교에서 두 번째 격년 회의를 열었다. 산타카타리나 연방 대학교에는 남아메리카 생태법 및 거버넌스 센터가 설립되었다.

156. 2019년 10월 이탈리아 시에나에서는 생태법 및 거버넌스 협회가 제2회 시에나 대학교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심포지엄의 주요 초점은 생태법 및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상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에 이르기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보다 생태학적으로 지향하는 이행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157. 2019년 내내 세계환경법위원회 윤리전문가집단(ESG)은 이 위원회의 생물권 윤리 계획(Biosphere Ethics Initiative)에서 지구 법학, 지구 민주주의 그리고 지구 신탁 관리(Earth trusteeship)가 갖는 윤리적 법적 함의를 탐구했다. 세계환경법위원회 윤리전문가집단은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의 “지구 신탁 관리의 부상”이라는 국제교류 플랫폼과 포르투갈 포르투 대학교의 지구 시스템 및 국제법에 관한 학술대회와 호주 지구법 동맹(the Australian Earth Laws Alliance)과 “호주에서 지구 윤리 만들기: 경로와 과제”라는 제목의 호주 가톨릭 대학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158. 2019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자연의 기본권에 관한 EU 헌장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 3명에게 연락했다.
159. 2019-2020년에 가이아 재단은 새로워진 지구 법학 분기별 소식지와 격주 뉴스 다이제스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국제 청중에게 손을 내밀며 계속 지구 법학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출판된 기사 및 홍보 자료에는 가이아의 칼로타 번(Carlotta Byrne)이 저술한 “지구 법학: 등장 및 비상시의 가이드,” 대화형 “지구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 및 “지구 법학: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칼로타 번은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회원으로, 인간 중심적인 접근에서 지구 중심적인 접근에 이르기까지, 법체계에서의 엄청난 변화가 많은 사회에서 자연과 맺은 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160. 국제환경경제개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n Environment Economics and Development, IECENSE)는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와 협력하여 가치와 윤리의 역할에 근거한 지구 법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초점을 맞추

것이다.

161. 2019년 10월, 비정부기구인 지구의 권리를 위한 아이들(Kids for Planet Rights)이 지구의 권리를 위한 최초의 유럽선언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문은 7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썼으며, 2019년 11월 27일 유럽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선언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구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고무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그것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과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거의 2년 동안, 언론인 엘사 그랑지에(Elsa Grangier)는 그들의 작업에 이어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출시했다.⁵
162. 2020년 3월, 엘사 그랑지에는 “큰 꿈: 지구에 헌신한 이 아이들(Dream Big. These Children Who are Committed to the Planet)”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청소년 조직인 ‘지구의 권리를 위한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지구의 권리 선언(Declaration for the Rights of the Planet)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163. 2020년 3월, 비정부기구 환경윤리법센터, 도시 연합 네트워크(United Urban Network)와 협력한 가운데 개리 라이즈 프로젝트(Gary Rise project)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 윤리, 생태법,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 사구 지역의 땅과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4. 2020년, UNITAR가 스코틀랜드 생태 마을 모범사례로 인정한 핀혼(Findhorn)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의식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비정부기구인 ‘자연의 권리’가 워크숍을 가졌다.
165. 2020년 4월 22일, “어머니 지구와 자연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라는 제목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웨비나에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의 몇몇 전문가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자연의 권리를 촉진하는 여러 라틴아메리카 NGO들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생방송으로 4,000명의 청중에게 송출되었고,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전송을 시청했다.
166. 2020년 6월 21일,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완전한 성숙의 땅을 위한 지점(Solstice for Abya Yala)”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행사의 녹화방송을 시청했다.

⁵ <https://www.francetvpro.fr/france-tv/communiqués-de-presse/first-european-declaration-of-r>

167. 이러한 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대중의 참여가 증가했다. 위키백과의 자연의 권리 페이지는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4시간 동안 12,000건 이상의 새로운 조회수를 생성했다.
168. 2019년과 2020년에는 자연의 권리를 다룬 수많은 새로운 출판물이 등장했다. 이러한 것들에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민주적 입헌주의에서 권리 주체로서 자연”과 “자연의 권리: 이론, 정치 그리고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
169. 옥스퍼드 국제 환경법 안내서 2020년 판은 지구법학과 “실천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자연의 권리”에 관한 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실무자들이 이론 성공과 도전에 대해 논의하는 다양한 기고문도 특집으로 나오고 있다.
170. 2019년, 루틀리지 출판사(Routledge Press)는 『기후 윤리의 적용에 관한 라우틀리지 안내서(2021)』라는 제목으로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지식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공동 편집한 교재를 출판했다. 이 출판물의 목적은 시민 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출판물에는 (자연의 권리와 관련하여)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지구 법학에 관한 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